

310.123  
779.5  
7274



# 新 SNA의 새로운 움직임

調査統計局 統計分析課



## 머 리 말

本 資料는 日本經濟企劃廳의 “季刊 國民經濟計算”에 收錄된 UN 統計委員會 및 OECD 國民經濟計定 專門家 會議資料(1982 ~ 1987)와 日本 專修大學 作間逸雄 教授의 研究資料를 翻譯한 것으로, 國民計定推計에 있어 今後 作業順位 및 範圍의 擴大와 概念 및 體系의 一部 更新과 明確化 等に 關한 內容을 收錄하고 있다.

따라서 現行 國民經濟計定 體系中 앞으로 改善, 發展되어야 할 內容과 方向에 대하여 關心있는 분들에게 많은 參考가 되리라 期待한다.

1989. 3.

統 計 分 析 課 長

# 總 目 次

I. SNA에 관한 將來作業 實施를 위한 一般的 提案 .....	3
〈附錄 1〉 OECD 國民經濟計定專門家會議의 概況 .....	125
〈附錄 2〉 國際比較프로젝트專門家會議 概況 .....	137
II. 國民經濟計定에서의 歸屬利子取扱 .....	147
〈附錄〉 OECD 國民經濟計定專門家會議의 概況 .....	181
III. SNA 改正事業의 進展報告 .....	193
— SNA 改正에 관한 進陟報告 .....	195
— SNA 改正事業의 進展 .....	233

# I. SNA에 관한 將來作業 實施를 爲한 一般的 提案

本稿는, OECD의 國民經濟計定專門家會議(1982年5月17日~19日)에 提出  
된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 Review of Major Issues  
and Proposal for Future Work and Short-term Changes(ESA/STAT/AC.  
15/2 15 April 1982 ”를 번역한 것임.

## — 目 次 —

머리말 .....	9
<b>第 1 部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將來作業 實施를 위한 一般的 提案</b> .....	<b>13</b>
A. 歷史的背景과 1968 年 國民經濟計定體系 .....	13
1. 背景 .....	13
2. 1968 年 國民經濟計定體系 .....	14
B. 1968 年 以後의 展開 .....	17
1.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實施 .....	17
2. 國民經濟計定 핸드북시리즈 .....	19
3. 國民經濟計定質問書 .....	22
C. 將來의 作業과 그 實施 .....	24
1. 必要한 將來作業의 性格 .....	24
2. 將來作業의 實施 .....	27
3. 將來作業의 組織과 스케줄에 關한 提案 .....	28
<b>第 2 部 國民經濟計定體系의 更新 및 他統計와의 接合에 關한</b>	
<b>主要論點의 評價</b> .....	<b>32</b>
A. 更新과 明確化 .....	33
1. 消費의 計測 .....	33
(a) 政府에 의해 支拂된 個人消費 .....	33
(b) 住民의 全消費 .....	35
(c) 消費를 위한 補助金の 取扱 .....	39
(d) 企業의 消費支出 .....	40
(e) 非市場歸屬 .....	44

2. 所得의 計測 .....	50
(a) 所得計測에 있어서의 인플레이效果 .....	50
(b) 土地, 地下資源 및 無形資産의 取扱 .....	53
(c) 年金, 保險 및 資本移轉 .....	57
(d) 화이난샬·리이싱 (financial leasing) .....	63
(e) 交易條件 .....	65
3. 計定構造와 部門分割 .....	73
(a) 計定構造 .....	73
(b) 企業과 家計部門의 分割 .....	75
(c) 公共部門 .....	77
(d) 部門分割에 關한 他論點 .....	84
4. 計定の 擴張 .....	86
(a) 4 分期計定 .....	86
(b) 地域計定 .....	89
(c) 社會人口統計 .....	90
B. 他統計와의 接合 .....	95
1. 海外去來 .....	95
2. 公共部門統計 .....	101
3. 金融統計와 資金 循環 .....	104
4. 所得分布統計 .....	105
5. 活動分類와 投入, 產出 .....	110
<b>第 3 部 當面行動을 위한 提案 .....</b>	<b>115</b>
A. 海外部門에 關한 提案 .....	115

1. 輸出入의 記錄時點 .....	116
2. 화이난설 · 리이싱 .....	116
3. 所有權 移轉없이 船積되는 貨物 .....	116
4. 賣買差益의 收益과 損失 .....	117
5. 直接投資企業의 再投資收益 .....	117
6. 金 .....	117
7. 領土의 定義 .....	118
8. 違法 去來 .....	118
9. 海外去來計定の 範圍 .....	118
10. 子會社間 財貨의 移轉 .....	118
11. 財産所得에 賦課되는 源泉稅 .....	119
12. 仲介去來 .....	119
B. 其他提案 .....	119
1. 國防支出 .....	119
2. 未完成 建築物 .....	120
3. 自己所有計定 資本形成 .....	120
4. 住宅의 定義 .....	121
5. 家 蓄 .....	121
6. 附加價值稅 .....	122
7. 公共企業의 利益과 損失 .....	122

## 머 리 말

1. 國際聯合統計委員會는 1981年 第21會期에서

「(a) 國際聯合의 國民經濟計定體系 將來作業方向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報告(E/CN.3/AC.915)를 支持하며 거기에 記入된 優先順位를 一般的으로 承認한다.

(b) 國民經濟計定體系에는 統計體系의 틀로서, 또는 關聯統計의 基準을 作成함에 있어 出發點으로서 重要な 役割이 있으며, 따라서 계속 國際聯合統計局이 調整機能에다 한층 더 力點을 두고 이 分野의 活動에 指導的 役割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c) 國民經濟計定體系는 그 綜合性 때문에 經濟 諸統計의 特定分野에서 行해지고 있는 基準보다 上位에 位置해야 한다는 것에 따라 그와같은 基準이 檢討中에 있을 경우에는 各 統計作成機關은 國民經濟計定體系와의 融合性을 確保할 수 있도록 努力하고 특히 差異가 發生할 경우에는 差異가 發生하는 理由를 說明하여 國民經濟計定體系와 充分한 調整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d) 具體的인 提案은 當面 必要한 國民經濟計定體系의 明確化와 更新에 關聯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可能하면 海外去來(경우에 따라서는 他 分野도 包含)에 關하여 特別히 專門家會議의 援助를 받아 統計委員會 第22會期에 提出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 入手possible한 資金과 人員의 테두리안에서 새로운 種類의 情報에 對한 需要에 對應하기 위하여 長期的인 視野를 갖고 調查研究에 着手해야 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f)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以後의 作業은 資料와 方法에 關한 보다 擴



範하고 更新된 매뉴얼의 作成이나 長期的 調查研究를 포함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와같은 作業結果를 廣範圍하게 弘報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國民經濟計定핸드북」시리즈를 使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우선 海外去來에 對한 것을 드래프트 매뉴얼(draft manual) 시리즈에 包含시켜야 한다.

(g) 國民經濟計定體系의 概念에 關한 作業에 대해 國際機關, 各國 및 各國의 그룹에서 提案하고 있는 協力を 환영하고 作業 相互間의 矛盾이나 重複을 避하기 위한 協力, 協議를 받아들여 決定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본다. (61. 참조)

2. 本 報告<sup>(註)</sup>에서는 國際聯合統計委員會에 따른 以上과 같은 見解를 다 음 3가지 點을 위한 出發點으로서 固着시키고 있다. (1)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今後 作業을 實施해 나가기 위하여 一般的인 提案을 할 것, (2) 國民經濟計定の 更新, 明確化, 他統計와의 接合에 關한 主要한 問題를 再評價할 것, (3) 國民經濟計定體系에 關한 當面 行動에 대하여 限定的이고도 具體的인 提案을 할 것. 委員會에 의해 定해진 方向에 따라 統計體系의 틀로서 國民經濟計定體系 및 關聯統計의 基準을 確立하여 調整하는 國際聯合統計局의 機能에 本 報告에서는 重點을 두고 있다. 이것은 1980年 5月의 「國民經濟計定體系의 今後 作業方向에 關한 專門家會議」 報告[53]中에서 明白히 되어 있는 一般的인 優先順位와 同一하다.

3. 本 報告의 第1部는 國民經濟計定體系의 發展과 그 現況, 今後 必要한 作業의 形態, 그러한 作業을 實施하기 위한 方法, 그리고 그것을 組織하고 스케줄을 作成하기 위한 諸提案을 檢討한다. 第2部는 國民經濟計定體系의 更新, 明確化 및 他 統計와의 接合에 關한 여러가지 關心領域을

列擧하여 檢討한다. 마지막으로 第 3 部는 實行可能한 具體的인 提案을 다  
룬다.

(註) 本 報告는 國際聯合統計局컨설턴트의 資格으로 예일大學의 Richard  
Ruggles 教授가 준비한 것이다.

# 第 1 部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將來作業 實施를 위한 一般的 提案

## A. 歷史的背景과 1968 年 國民經濟計定體系

### 1. 背景

4. 國際的인 段階에서는 國民經濟計定作業은 Richard Stone 을 議長으로 하는 國民所得統計에 關한 國際聯盟小委員會의 1947 年의 報告가 出發點으로 “Measurement of National Income and Construction of Social Accounts” [25] 라고 題하고 있다. 同 報告는 1930 年代 中盤 以後 몇개 나라에서 行해지고 있었던 作業을 整理한 것이다. 거기에는 國民所得의 決定에 즈음하여 貯蓄, 投資 그리고 總需要의 役割에 關한 理論的인 關心과 戰時經濟의 運營에 對한 第2次 大戰中の 實務經驗이 反映되어 있다. 또한 戰後 얼마 안가서 유럽經濟協力機構(OEEC)가 國民所得의 標準시스템(SSNA = Standardized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6]을 開發하여 加盟國의 經濟復興計劃을 모니터하고 分析하기 위하여 使用되었다고 한 事實도 있다.

5. 最初의 國際聯合國民所得專門家그룹은 Richard Stone이 議長이 되었다. 거기에서의 作業을 基礎로 하여 最初의 國際聯合 國民經濟計定體系가 1952 年에 刊行되었다 [26]. 이에따라 國民經濟計定體系는 經濟시스템의 成長과 發展에 對해 報告하기 위한 基礎로서 또한 經濟政策樹立의 主要道具로서 各國이 開發해야 할 經濟데이터라는 位置를 確保하게 되었다. 國際聯合統計局에 의한 國民經濟計定統計年鑑(Yearbook of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의 刊行은 各國이 國民經濟計定體系와 一致하는 形式으로 國民經濟計定을 더욱 發展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다.

6. 1952年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基本構造는 OEEC의 SSNA와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相違點도 있었다. 主된 相違點의 하나는 國民經濟計定體系(1952年)에는 要約的인 資本調整計定이 있고, 貯蓄, 投資過程의 基礎를 이루는 金融후로에 關하여 보다 많은 情報을 提供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最初의 努力은 結果的으로는 完全한 成功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하나는 分析에 有益한 程度로 計定이 詳細하게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當時에는 必要한 情報을 提供할 수 있는 國家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 2. 1968年 國民經濟計定體系

7. 1950年代와 1960年代 前半에는 國民經濟計定體系 1952年版을 基本的으로 改正해야 할 必要가 있게 되었다. 그 大體的인 가장 重要한 原因은 入手할 수 있는 經濟데이터量이 增加한 事實이다. 특히 產業聯關과 資金循環의 데이터가, 많은 나라에서 作成되고 이런 種類의 情報은 國民經濟計定에 直接 關係되어 있다는 것이 統計作成者에게나 利用者에게 明白하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形式의 經濟計定데이터를 共通의 틀속에 統合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支持가 있었다. 또한 우선 開發途上國에게는 보다 높은 經濟成長率을 目標로 한 具體的인 計劃과 政策을 매크로經濟의 構造속에서 생각해 내기 위하여는 生産의 構造와 成長에 대해 더욱 많은 데이터가 必要하다고 하는 認識도 있었다.

8. 1968 年에 刊行된 改正國民經濟計定體系 (Studies in Methods, Series F, No.2, Rev.3 以下 新 SNA 라 稱함) 는 이와같은 展開에 對應한 것이다 [27]. 第一로 新 SNA 는 (a) 生産計定을 投入, 産出데이터와 統合하고 또한 (b) 所得, 支出데이터를 資本調達計定이나 貸借對照表와 統合한 綜合的인 構造를 提供하였다. 第二로 新 SNA 는 生産計定을 보다 詳細하게 할 必要가 있다고 強調했다. 二重의 部門分割시스템이 導入되어 生産關聯의 情報에 대해서는 活動種別分類, 所得·支出 및 金融·貸借對照表情報에 대해서는 制度部門別分類를 提供하였다.

9. 新 SNA 의 第 2 章에 行列을 提示하여 記述한 바와같이 國民經濟計定體系는 各國의 國民經濟計定 作成者가 必要로 하는 거의 어떠한 形態의 表에 對해서도 適應性을 가지는 體系, 다시 말해서 一般性의 程度가 큰 體系이다. 아마도 避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實地, 이 一般性의 크기가 混亂을 일으키고 있는 面도 있다. 事實 新 SNA 의 第 2 章을 보면 作成者는 데이터를 國民經濟計定體系에 따라 配列하는 以上の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서 各國의 作成者는 各國 自體의 體系를 바로 設計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다 明確한 指針을 要求하는 사람이 國民經濟計定體系의 第 2 章 以外の 部分에 注意를 集中하는 傾向을 보이는 것은 아마도 이 理由일 것이다.

10. 新 SNA 의 第 5 ~ 7 章에 提示된 定義와 分類가 國民經濟計定體系의 核心이라고 생각하는 資料作成者가 많다. 이 定義와 分類는 國民經濟計定을 새로이 實施하는 國家에서 많이 利用되어 왔으며 매우 有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定義와 分類는 具體的이고도 明確하며 作成者가 自己用으로 決定할 餘地는 比較的 많지 않다.

11. 計定の形式은 新SNA의 第8章에 提示되고 있다. 計定은 世개의 部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各 部門마다 몇개의 計定이 있다. 部門Ⅰ은 國家全體로서의 統合計定이다. 部門Ⅱ의 計定은 「生産, 消費支出, 資本形成計定」이라 불리우고 있으며 活動의 種類別로 分割되어 있다. 部門Ⅲ의 計定은 「所得支出과 資本調達計定」이라 불리우고 있으며 制度部門別로 分割되어 있다.

12. 提示되고 있는 計定은, 新SNA에는 全體系에 포함되는 資料의 選擇으로서 說明되고 있다. 標準計定中에 表示된 全體系에서의 選擇은 第2章(SNA表2.1)의 說明用 行列에 포함되는 選擇과는 多少 相異하다. 標準計定은 어떤 點에서는 그 行列보다도 微細하게 分割되어 있으며 行列에 나타난 情報의 어떤 部分은 計定에서 省略되어 있다. 標準計定은 各國이 거기에 提示된 形式을 採用하기 위한 勸告가 아니고 오히려 例로서 提示한 것에 不過하다. 그러나 諸후로의 定義를 決定하는 것은 主로 諸計定이라는 意味로 計定이 重要な 役割을 다한다. 데이터가 이와같은 후로의 定義에 따라 編輯될 경우에는 이와같은 計定構造는 計定中에 暗默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된다.

13. 標準計定外에 第8章에는 26개의 補助表와 附表가 提示되어 있다. 表의 範圍는 網羅的이 못된다. 結局 計定構造를 完成시키는(혹은 行列을 만드는)데 必要한 모든 情報를 內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데이터編輯 努力을 이 補助表와 附表의 形式을 따르고 있는 나라는 國民經濟計定을 作成하는 것은 안되고 오히려 國民所得에 關한 몇가지 個別統計를 作成하게 된다. 이 方式은 어떤 面에서는 單純하지만 計定方式의 큰 長點의 하나인 計定을 均衡토록 하고 明確化시키는 見地에서의 自動的인 一致

性的 要請을 잃게 하는 것이 된다.

14. 1960 年代初 SNA 改正作業 初期부터 國民經濟計定 情報의 國際的報告에 使用되는 質問書의 開發은 國民經濟計定體系의 改正을 위한 모든 努力 가운데에서도 가장 重要的 部分으로 看做되고 있었다. 國際聯合統計委員會는 質問書의 質問 簡略化와 精選이 必要하기는 하지만 計定構成의 骨格을 質問書가 갖는 것 또한 重要하다는 것을 強調하였다. 그러나 1970 年代初에 作成된 質問書는 行列과 計定, 그 어느것도 따르지 않고 오히려 補助表를 基準으로 하여 主로 作成되었다. 質問書 作成의 基礎가 된 補助表와 마찬가지로 質問書 自體가 完全한 것도 體系的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장 入手하기에 容易하고 가장 重要的 系列을 나타내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 B. 1968 年 以後의 展開

### 1.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實施

15. 新 SNA 에 提示된 計劃에 따라, 體系가운데 新 SNA 에서 包括하지 않은 部分 내지는 극히 一部만 包括하고 있는 部分을 채우기 위하여 補完的인 많은 刊行物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까지의 사이에 新 SNA 에 提示된 計劃의 大部分이 實現되어 왔다. 指針으로서는 貸借對照表와 調整計定〔37〕, 所得分布〔38〕, 投入·產出表〔30〕, 價格 및 數量統計〔36〕, 有形資產〔50〕, 固定價格에 의한 國民經濟計定〔45〕, 生産者價格指數〔46〕, 또한 外國貿易의 價格이 刊行되었으며 指針 以外에서는 國民經濟計定과 貸借對照表를 補完하는 福祉指向措置의 實行可能性研究〔39〕 및 政府機能分類의 改正과 擴張〔58〕도

刊行되었다. 工業 및 農業統計에 關한 勸告는 國民經濟計定體系의 테두리안에서 作成되어 왔다.

16. 1975年頃 國際聯合統計局은 SNA 實施에 對한 各國의 經驗을 評價하기 始作했다. 改正國民經濟計定體系에 關한 多地域間세미나가 1975年 12月에 카라카스에서 實施되었다[34]. 地域內會議도 1975年과 1979年에 美國에서, 1978年에 西아시아에서, 1978年[51]과 1980年[52]에 유럽에서 開催되어 評價에 있어서 重要한 貢獻을 하였다. 評價結果에 關한 中間報告는 1979年의 國際聯合統計委員會 第20會期에 提出되어[41] 委員會는 國民經濟計定體系에 關한 確定的 作業方法을 思考하고, 將來作業의 方向을 論議하기 위하여 專門家會議를 召集해야 한다고 結論지었다. 이 專門家會議는 1980年 4月에 開催되었다[53].

17. 專門家會議는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基本構造에 關하여 全體로서 滿足の 뜻을 表明하고 開發途上國에서나 先進國에서나 基本統計의 統合을 위한 出發點으로서 重要하다는 것을 強調하였다. 統計作成者에게나 利用者에게나 繼續性이 重要하다는 것이 強調되었다. 그러나 國際的인 統計體系안에서의 一致性을 強化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事例가 存在하여 國民經濟計定體系의 어떤 更新과 明確化가 必要하다는 것에 對해서는 全員一致의 合意를 이루었다. 國民經濟計定體系는 各國의 要求에 適應될 수 있는 開放型이면서 또한 柔軟한 體系라는 생각에 對해 一般的인 支持를 얻을 수 있었다. 參加者는 國民經濟計定이 매크로 데이터의 構成일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데이터에 있어서도 構造가 된다고 하는 것에 留意하였다. 새로운 實驗的인 性格의 情報는 國際的으로 比較可能하고 安定的인 베이스로 計定の 核心을 保有할 수 있는 方法으로 表示해야 한다는 생각에 對해 一般的 承認이 이



루어졌다. 國民經濟計定體系에 關한 今後的 作業 優先順位에 對해서는 國際聯合統計局은 國民經濟計定體系의 適用에 問題가 일어나는 것에 對備해서 概念과 分類의 明確化에 關한 作業을 계속해야 하겠지만 體系의 擴大와 發展에 더 많은 資金, 人員을 割當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重要하다고 同專門家會議는 생각하였다. 그리고 많은 重要한 話題가 이 體系擴大, 發展의 範疇에 包含되어 있으므로 資金, 人員이 追加的으로 供給되지 않는 限, 테마의 重要性에 匹敵할 만 한 注目を 받을 수 조차 없다는 雰圍氣를 專門家會議는 가지게 되었다.

18. 國民經濟計定體系 再評價作業을 要約하고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作業의 將來方向을 示唆하는 報告는 1981 年의 統計委員會 第 21 會期의 場에서 檢討되었다 [54]. 同報告에는 地域會議와 카라카스의 多地域間세미나의 見解 뿐만 아니라 專門家會議의 見해도 포함되어 있다. 同報告를 討議한 結果, 이 報告의 書頭에 概要를 提示한 바와 같은 勸告를 委員會가 提出하기로 하였다. 現在의 專門家會議는 委員會의 勸告에 따라 開催되고 있다.

## 2. 國民經濟計定 핸드북시리즈

19. 國民經濟計定體系의 評價中에서 國際聯合統計局이 關與해 왔던 國民經濟計定의 技術的研究를 더욱 繼續的으로 實施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 明白해졌다. 이와같은 技術的研究에는 우선 제일먼저 보다 좋은 說明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國民經濟計定體系 自體는 複雜하므로 複雜하지 않은 方法으로 그것을 說明하는 것이, 國民經濟計定體系에 興味를 가지는 實務者에게 쉽게 理解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두번째로 國民經濟計定과 國民經濟計定데이터의 보다 簡便한 利用法을 說明한 教材에 對한 要

求가 强하다. 세번째로 原資料와 作成方法에 關하여 記錄의 作成이 필요하다. 끝으로 國民經濟計定の 擴大와 發展에 대한 作業에서 發生하는 諸研究을 推進하는 手段이 必要하게 된다.

20. 이와같은 必要에 副應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計定핸드북(The Handbook of National Accounts)이라고 하는 包括的인 題目的 出版物시리즈가 作成되었다. 現在 計劃으로는 머지않아 6卷의 핸드북이 나오게 되어 있고 其他 3~4卷이 計劃되고 있으며, 그밖에 必要성과 可能性이 發生하면 그것에 따라 對處해 나가게 되어 있다. 現在 2卷의 책은 最終評價 中으로 하나는 進行中이며, 第1그룹의 나머지 세개에 대해서는 最終原稿가 完成되었다. 以上 6卷에 對해서는 다음과 같다.

#### 21. 第1卷 國民經濟計定入門

이 卷의 第1次原稿는 現在 準備中이다. 國民經濟計定에 關하여 아무런 豫備知識이 없는 사람을 위한 說明用으로 만들어져 있다. 國民經濟計定데이터의 目的과 利用에 對해 간단히 說明하고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基本構造를 나타내고 必要한 概念과 分類를 導入하는 것이다. 그 完成時期까지, 合意된 明確化, 更新, 더우기 變更을 適切한 程度까지 具體化하는 것이다. 어느 程度까지 更新된 新SNA보다 가까이 하기 쉬운 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特定한 話題에 對한 보다 詳細한 取扱에 對해서는 시리즈의 보다 專門인 책을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 22. 第2卷 國內總生産

本卷에서는 活動種類別 및 最終用途別 國內總生産 作成方法과 基礎資料를 論議하고 있다. 國民經濟計定の 作成者, 특히 새로이 國民經濟計定을 實施하게 된 國家, 혹은 計算體系를 擴大하고 있는 國家의 作成者에게 有益하

도록 目標을 두고 作成되었다. 本卷은 2部로 나뉘어진다. 第1部는 活動 種類別의 總產出, 中間消費, 附加價值, 그리고 附加價値의 費用要素를 論하고 있다. 第2部는 支出形態別로 GDP의 最終支出을 論하고 있다.

### 23. 第3卷 所得支出 및 資本調達計定

國民經濟計定體系의 所得支出 및 資本調達에 關한 部門Ⅲ 計定作成을 爲한 原資料와 編輯方法을 論하고 있다. 第2次原稿는 明確化 뿐만아니라 合意된 更新과 變更을 具體化하는 것이다.

### 24. 第4卷 公共部門統計 (PSS = Public Sector Statistics)

아래와 같이 이 卷은 過去 數年에 걸쳐 至大한 關心의 對象이었고, 公共部門統計의 原資料와 그 編輯方法 뿐만아니라 公共部門統計의 內容과 利用方法에 關해서 다루고 있다. IMF의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 政府財政統計)와의 接습을 위하여 本卷에서는 至大한 努力이 이루어졌고, 本卷과 GFS와는 相當한 程度로 補完關係라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卽, PSS는 GFS에 나와 있는 資料를 반복하여 記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國民經濟計定體系가 다루는 範圍를 넓히는 데 必要한 GFS 現金計定の 擴張과 變更을 論하고, GFS表에 內包되어 있는 데이터와 國民經濟計定質問書用으로 必要하게 되는 데이터와의 詳細한 調整을 포함한다. PSS는 또한 政府機能分類의 改正과 擴張을 포함하고 있다 (別途 Series M No.70도 刊行되었으며, 이 중에서 다루고 있다)[58].

### 25. 第5卷 金融후로(flow)

이 卷의 1次原稿는 新SNA 24表 編輯用資料와 編輯方法의 說明이다. 改正原稿는, 貸借對照表計定과 調整計定을 包含한 어느程度 넓은 分野를 取扱하게 될 것이다. 關聯 領域에 있어서 IMF 統計와의 調整도 行하여야 할

것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 IMF의 협력이 필요하다.

### 26. 第6卷 海外去來

이 卷의 原稿는 專門家그룹會合에 提出된 바 있으며 以下에서 詳細하게 論議된다. 이 原稿는 本 問題의 專門家와 各國의 統計部局, 國際機關에 配布되었다. 本 報告의 第2部에 掲載된 問題에 관한 決定을 기다려 이 卷의 最終版이 完成된다. 最終版에는 IMF의 國際收支대뉴얼 [14] 과의 調整이 包含될 것이다.

27. 핸드북 시리즈 중에서今後 刊行될 것으로 各 方面으로부터의 要望이 있는 것으로는 所得分布統計, 投入產出表, 그리고 地域 및 4分期別 統計가 있다. 其他 國民經濟計定の 利用을 위한 卷에는 廣範한 需要가 있다.

### 3. 國民經濟計定質問書

28. 1980年데이터 蒐集을 위하여 國民經濟計定質問書の 改正版이 使用되게 되었다 [59]. 改正文 質問書는 國民經濟計定體系를 實施하고 있는 나라가 1968年以後 蓄積해 온 經驗이나 比較可能的 데이터의 國際的인 報告에 즈음하여 發生한 여러가지 問題點을 反映한 것으로 되어 있다. 質問書 改正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時系列繼續性を 維持하는 點에 많은 注意를 기울였다. 그러나 새로운 質問書の 主된 目的은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專門家가 아닌 利用者에게도 데이터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 그 目的으로 以下와 같은 方法이 取해졌다.

(1) 質問書는 利用者에게 필요한 情報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設計되었다. 要約的인 데이터가 우선 提示되고 다음에 보다 詳細하게 分割된다. 詳細表는 題目別로 그룹化되어 要約데이터에 關係되도록 되어 있다.

(2) 國民經濟計定體系의 構造中에는 暗默的으로 內包되어 있는데 專門家 以外에는 分明치 않은 諸후로(flow)間的 많은 關係가 明確하게 提示되어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作成과 說明이 容易하게 되어 利用者는 國際的인 데이터體系를 利用者가 친숙한 國內데이터體系와 關聯시켜서 理解하는데 有益하게 될 것이다.

(3) 國民經濟計定體系中에서 特別한 意味로 使用되는 用語를 說明한다. 이 說明은 通常 거기에 內包되는 項目의 構成을 表示함으로써 行한다.

(4) 詳細한 程度는 어느 程度까지 經驗的으로 各國이 提供할 수 있다고 判斷되는 水準에 맞추고 있다. 그러나 詳細한 項目에서 內容이 分明해질 경우에는 비록 그 詳細한 項目의 데이터는 一般的으로는 提供될 수 없는 것일지라도 質問書에 남아 있는 것이 普通이다.

29. 새로운 質問書의 第2의 目的은 將來를 展望하는 일이다. 例컨대 資本調達이나 資本스톡表와 같은 至大한 關心은 表明되고 있지만 데이터를 供給할 수 있는 나라는 그다지 없는 것 같은 것도 包含되어 있다. 또한 新SNA에서 (敍述되어 있기는 하지만) 強調하고는 있지 않아도 지금은 廣範한 需要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概念도 國民經濟計定質問書에는 採擇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몇개의 表에서 보는 市場產出과 非市場產出을 區分하여 公的活動과 私的活動을 區分하여 表示하는 것, 그리고 活動部門別 生産計定과 같이 制度部門別 生産計定을 提供하는 것이다.

30. 質問書는 4個部分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第1部는 要約한 것이지만 綜合的인 情報를 時價, 또한 必要에 副應하여 不變價格으로 싣고 있다. 基本的인 國內總生産計定外에 政府의 收取와 支拂, 企業과 家計의 所得과 支出, 海外去來의 要約, 資本去來計定の 要約, 制度部門別과 活動種類別의 總生産,

끝으로 集計概念間의 關係를 나타내는 表도 들어 있다. 이 部의 7個表는 보다 複雜하고 까다로운 國民經濟計定體系의 標準計定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表는 一國經濟의 概觀을 나타낼 뿐만아니라 第2部以下の 보다 詳細한 데이터의 指針으로서 또한 概念上의 適合성과 統計上의 適合성을 確保하는 構造로서도 使用된다. 반드시 均衡을 維持하지 않는 表일지라도 他表와 同一한 合計額이 되도록 調整되어 兩者의 關係를 明白히 알 수 있도록 하여 놓았다.

31. 第2部에는 時價와 不變價格으로 國內總生産의 最終需要項目(消費, 資本形成, 輸出入)의 詳細한 分割이 政府支出과 資本스톡의 追加의 情報가 들어 있는 附表와 함께 掲載되어 있다. 第3部에서는 新SNA의 第8章이나 Provisional Guidelines on National and Sector Balance Sheets and Reconciliation Accounts of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series M, No.60)[37]에 따른 詳細한 制度部門別計定을 다루고 있다. 第4部에서는 活動種類別分割을 다루고 있다.

32. 質問書用의 새로운 指示와 定義는 空白의 表形式과 함께 1980年에 國際聯合統計局과 經濟協力開發機構가 共同으로 發表한 것이다. 質問書와 指示는 現在의 時系列繼續性を 損傷시키지 않는 範圍에서 定期的으로 再評價되게 될 것이다.

## C. 將來의 作業과 그 實施

### 1. 必要한 將來作業의 性格

33. 國民經濟計定の 發展은 經濟分析과 經濟統計分野에 있어서 20世紀 最大成果의 하나이다. 經濟分析의 觀點에서는 國民經濟計定은 經濟퍼포먼스

(performance)를 測定하고, 經濟시스템의 움직임을 모델化하기 위하여 必要한 經濟的 概念에 經驗的인 內容을 賦與해 왔다. 經濟統計의 觀點에서 國民經濟計定은 綜合的인 짜임새를 提供하고 있으며 統一的인 데이터시스템을 形成하는 方法으로 多種多樣한 經濟情報을 統合하는데 利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統一的 프레임워크(frame work)의 必要性은 經濟데이터의 多樣성과 그 分析的인 用途 雙方이 增大함에 따라 擴大해 왔다.

34. 國民經濟計定體系는 이와같은 進展의 中心的役割을 다하여 왔다. 처음부터 國民經濟計定體系는 經濟퍼포먼스를 測定하여 經濟시스템의 여러가지 部分의 相互關係를 나타내기 위하여 形成된 것이다. 國際的인 시스템으로서 는 많은 相異한 國家에서의 國民經濟計定の 經驗을 具體化한 것이다. 그러나 國民經濟計定體系의 1968年改正은 더욱 發展되어 새로운 面을 열었다. 卽 同改正은 基本的 統計의 틀로서 또 關聯統計의 基準을 確立하는 出發點으로서 使用할 수 있는 綜合的인 國民經濟計定體系를 만들어냈다. 1968年以後 續續 나온 刊行物이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內容을 豊富하게 하고 時間이 지남에 따라 國民經濟計定體系는 普及되어 나갔다.

35. 統計委員會의 勸告가 提示한 바와같이 가까운 將來의 作業은 다음 두가지 點에 焦點을 맞추어야 한다는 一般的인 合意가 存在한다. (1) 모호한 點을 除去하고, 適合성을 確保하여 데이터의 새로운 利用에 適應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計定體系를 明確化하고 更新할 것. (2) 國民經濟計定體系를 他 國際機關의 統計基準과 調和시킬 것.

36. 「國民經濟計定體系의 明確化와 更新은 變化하는 諸條件을 計定에 올리고, 아직 充分하게 實施되어 있지 않은 部分을 發展시키는 것이 必要하다. 現在의 國民經濟計定體系 모든 部分이 모호하지 않고 實地 使用할 수 있

는 形態로 充分히 明瞭하게 說明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實用上 便利하기 때문에 體系中에서 部分的으로 採用되고 있는 原則도 體系가 새로운 種類의 情報을 內包하도록 擴大함에 따라 分析上으로는 受容하기 어려운 可能性도 있다. 이미 言及한 바와같이 國民經濟計定體系의 1952年版과 1968年版도 그것이 作成될 當時의 經濟事情과 政策的 關心을 反映하고 있었다. 1968年以後 새로운 發展이 있었고 새로운 要望이 나와 있다.

37. 國際聯合統計委員會의 方法으로 [調和]는 다음 두가지의 認識에 基礎를 둔다. (1) 國民經濟計定體系는 그 綜合性으로 因하여 個個經濟統計分野에서 開發된 基準보다도 上位에 位置시켜야 한다. (2)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基準과 個別統計基準과의 사이에 무엇인가 相異한 것이 남아 있을 경우, 國民經濟計定體系와의 適合性を 確保하고 그 틀린 點을 說明하여 調整을 充分히 實施하는 것은 個別統計作成者의 責任이다. 만일 特定한 데이터의 組合으로 나타내는 統計시스템의 個個의 相異한 部分이 잘 統合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또한 國際比較可能性이 達成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以上과 같이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優位性を 強調하는데는 合理的인 根據가 있다. 그러나 만약 國民經濟計定體系의 概念과 分類를 모든 利用方法을 위한 基準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이 概念과 分類가 全 利用者의 要求와 잘 合致되게 하는 것은 國民經濟計定體系側의 責任이 된다. 國民經濟計定體系에는 他 國際機關이 必要로 하는 個別의 關聯데이터를 잘 集어넣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뜻에서 調和라함은 말할 필요도 없이 相異한 여러가지 國際機關에 의해 使用되고 있는 概念과 統計基準에 關聯되는 것으로서 各國의 慣例에 關聯되는 것은 아니다.



38. 國民經濟計定體系의 1968年 設計에서 設計의 많은 部分은 充分하게는 實施되지 못했고 現實로 採用된 概念과 分類는 즉시 利用하는데 便利한 것에 限하였다. 專門領域에서 機能을 나타내고 있는 機關은, 물론 各自의 領域에 보다 많은 關心을 기울일 수 있으므로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定義나 分類와는 틀린 편이 더욱 有益하고 使用하기 쉽다는 것을 알았을 런지도 모른다. 그리할 경우 調和란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 使用되었던 概念과 分類方法의 再檢討를 包含하는 것이다. 그 再檢討의 目的은 國民經濟計定體系를 보다 詳細한 것으로 한다던가 國民經濟計定體系를 若干 變更한 다던가 하는 것이 全般的인 國民經濟計定體系의 要請과 特定分野의 特定한 要請의 雙方을 滿足시키는 것이 되는가 어떤가를 決定하는 것이다. 반복해서 強調해온 바와 같이 基準의 適用範圍가 擴大되어가면 統計의 利用者와 作成者 雙方에게 困難한 問題가 생긴다. 그리고 國際段階에서의 調整機能의 方法은 國際聯合統計委에서 커다란 關心을 가져야 할 事項이다. 그러나 이 努力은 國民經濟計定體系와 關聯統計시스템의 雙方을 調整한다는 意思가 있을 경우에 限해서만 成功의 可能性이 있다.

## 2. 將來作業의 實施

39. 更新, 明確化 및 調和는 短期的으로는 다음 두가지 理由에서 새로운 新SNA의 形態로 具體化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하나는 1968年의 新SNA에 記述된 國民經濟計定體系의 根幹에 있는 一般原則은 계속 有用하고 또한 有效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1968年以後의 國民經濟計定體系의 擴張과 發展에 따라 國民經濟計定體系를 한권의 책으로 說明한다는 것은 정말 無理라는 것이다. 上述한 바의 Handbook of National Acc-

ounts의 論議에서도 알아본 바와 같이 國民經濟計定體系의 特定한 側面에 對해 많은 分冊이 必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國民經濟計定體系를 特定한 統計領域과 調和시키기 위해서도, 또한 特定領域의 統計利用者에게 國民經濟計定體系의 詳細表에 들이는 수고없이 充分히 詳細한 情報를 提供하기 위해서도 重要하다.\* Handbook들이 國民經濟計定體系에 대한 보다 基礎的이고 또 詳細한 指針書인 限, 거기에 更新, 明確化, 調和의 作業結果를 內包시키는 것은 適切할 뿐아니라 不可缺한 것이다. 새로운 作業이 終了함에 따라 새로운 卷이 追加되고 現存하는 卷도 定期的으로 改正해야할 必要가 생길 것이다.

40. 이와같은 結果를 알맞게 國民經濟計定質問書에 넣는 것도 必要할 것이다. 그것을 하려면 可能한 限 時系列의 適合性を 維持하도록 注意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表의 形式도, 그 表에 記入하기 위한 指示도, 概論과 分類의 論議를 包含하며 更新과 調和에 關한 作業을 反映한 것이 되어야 한다. 逆으로 지금까지의 質問書에 記入하는 것에 대한 各國의 經驗은 將來作業에 있어서 重要한 資料이다.

### 3. 將來作業의 組織과 스케줄에 關한 提案

41. 國際聯合統計委員會는 當初의 SNA와 1968年의 改正에 對해서 重要한 役割을 다하였다. 그때, 統計委는 該當專門家會議를 크게 信賴하였으며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地域諮問그룹, 특히 유럽統計家會議의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作業그룹의 援助를 얻었다. 그러나 條件은 바뀌어 今後作業을 위해서 는 지금까지의 方法으로는 不適切한 點이 많다.

42. 現在로는 統計委員會가 國民經濟計定에다 할애할 수 있는 時間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統計委員會는 通常 2年에 1回, 겨우 1日半 열릴 뿐으로 關聯되는 數많은 重要問題에 대해 詳細하게 檢討하기에는 不充分하다.

國民經濟計定體系를 統計體系의 틀로서 또한 關聯統計의 基準을 設定하는 基礎로서 認識하는 생각이 높아졌으므로 將來作業의 範圍는 從來에 비해 飛躍적으로 擴大되고 있다. 統計局은 基準調整에 대해 活潑한 役割을 다해야 하지만 國民經濟計定體系에 關聯되는 全領域에 걸쳐 그와 같은 基準을 作成하는데 必要한 人的, 物的資源을 갖고 있지 않으며 上記基準이 實現되는 것을 보기만 하는 機能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이 點은 統計局 豫算이 物價上昇을 公제한 實質로 보아 減少하였고 專門家스텝의 不足이 보다 큰 問題가 됨에 따라 近年에 와서 점점 뚜렷하게 되었다. 將來作業의 組織과 스케줄에 대해서는 새로운 準備가 必要하게 된다.

43. 基準의 調和에 대해서는 體系와 標準의 發展에 直接 關與한 國際機關과 專門機關이 相互協力하는 일이 分明히 必要하다. 그렇게하면 作業은 分擔하게 되고 作業의 方向이 反對가 되거나 重複되는 일도 피할 수가 있다. 더우기 一般的인 基準을 實現해가는 意味로는 直接關與하고 있는 機關이 作業에 參加하는 것은 不可缺하다.

44. 國際機關 專門機關에 더하여 많은 國家의 專門家 參加가 必要하다. 많은 문제에 대해 變更提案의 有用性を 審査하고 그 實施可能性을 評價하는 것을 各國은 自國의 專門家에게 의뢰하게 된다. 그때 各國 專門家の 支持와 贊同은 提案된 基準이 各國에서 받아들이는 데에는 必的의이다.

45. 끝으로, 參加의 繼續性이 重要한 點이다. 그렇게하면, 作業은 組織的

이고 또 繼續的인 베이스로 進行될 수 있다. 該當專門家會議는 때때로 特定한 問題에 焦點을 맞추는 데에는 有用하지만 長期의 組織的인 努力에 不可缺 繼續的인 監理, 監督을 行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46. 各 機關의 계속적인 努力에는 前例가 있다. 1976 年の 19 期 統計 委員會에서 國際標準分類 (ISIC)의 改正에 대해 長期에 걸친 努力이 必要하다는 것이 合意되었다 [28]. 이 目的으로 他 國際機關이나 各國의 專門家와의 사이에서 協力할 것이 合意되어 유럽 統計局 (EUROSTAT)과 國際聯合 統計局 (UNSO)의 後援과 CMEA와 OECD의 活潑한 參加下에 繼續的인 「世界레벨分類에 關한 共同作業部會」가 設立되었다. 이 作業部會는 1977 年以後 規則的으로 會晤을 열고 있다. 同部會는 輸送可能財의 中間 레벨分類을 끝내고 1985 年까지 全面改正을 行할 豫定으로 서비스에 대해 作業하고 있다.

47. 以上과 거의 비슷한 協力的이고 또 계속적인 作業그룹을 國民經濟 計定體系에 대해 設立할 것이 提案되고 있다. 이미 提示한 바와 같이 同 그룹에는 國際聯合統計局에 더하여 體系와 基準에 關心을 가지는 主要國際 機關 (OECD, EEC, CMEA), 專門機關 (IMF, ILO, FAO, 世界銀行, UNESCO, UNRISD)이나 地域委員會의 代表를 包含해야 한다. 또한 各國의 專門家도 포함해야 한다. ISIC 그룹의 경우와 같이 同一個人的 繼續的 參加의 約束을 添加할 필요가 있다. 同그룹은 定期的으로 (적어도 年 1~2 回) 會晤을 가지고 作業의 日程作成과 各國際機關, 各國에다 作業配分, 作業用論文의 檢討, 統計委員會의 承認을 求하기 위한 勸告提案作成 等に 責任을 가진다. 이 繼續的인 作業그룹을 움직이기 위한 費用은 그 參加者間에서 共同 負擔되어야 한다.

48. 將來作業의 詳細한 스케줄 作成은 이 繼續的인 作業그룹이 實施해야 한다. 그러나 現在의 同目的專門家會議가 作業의 大體的인 範圍를 考慮하는 것은 適切하다.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大改正(1968 年에 比할 수 있는)은 必要한가? 國民經濟計定體系의 작은 變更과 擴張에 對해 改正과 다른 取扱을 할 것인가? 改正을 繼續的인 調整프로세스로서 實施할 것인가 또는 어느 目標時點까지 實施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時間的인 윤곽과 스케줄을 作成해야 하는가? 組織上의 뜻에서는 國民經濟計定體系와 國際聯合專門機關, OECD, EEC 그리고 CMEA 間에 보다 커다란 調和를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開發途上國의 計劃作成과 政策의 必要에 알맞게 國民經濟計定體系를 發展시키기 위하여는 어떤 方法을 考案할 수 있겠는가?

## 第2部 國民經濟計定體系의 更新 및 他統計와의

### 接合에 關한 主要 論點의 評價

49. 1968 年의 改正國民經濟計定體系刊行 以後, 이에 關해 國民經濟計定の 地域間 및 地域內 세미나, 國際聯合主催 專門家그룹會合, 他國際機關이나 各國統計部署 主催의 會合에서 많은 質問이 나왔다. 質問 하나하나가 모두 重要性을 갖는 것은 물론 아니다. 重要하고도 基本概念에 關聯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些少한 일로서 어떻게 解決되어도 體系의 形式이나 內容에 큰 影響을 주지않는 것도 있다. 國民經濟計定體系의 更新이나 明確化에 關한 評價論點에 대해서는 보다 意味있는 質問에 焦點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相異한 統計體系間의 不接合에 대해서는 作業을 單純化하고 統計體系間의 重複과 混亂을 避하기 위하여 사소한 差異일지라도 解決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50. 國民經濟計定體系는 綜合的인 體系이다. 그때 그때에 限한 方式으로 個別 要素를 다루는 것은 實現可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많은 경우 特定한 후로(Flow)나 取扱에 대해 생각하면 體系內的 他部分에서의 一致된 取扱이라는 보다 큰 問題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理由에서 更新과 分類에 關聯되는 諸問題를 그룹으로 나눌때에는 많은 論文이나 會議에서 나온 個別問題를 리스트로 作成하는 方法이 아니고 커다란 問題를 設定한 다음에 個別 問題의 位置를 굳히게 하는 것이 有益하다. 問題의 많은 것은 以下の 一般的인 項目下에 整理될 수 있을 것이다. 卽 (1) 消費計測에 關聯되는 問題, (2) 所得의 計測에 關聯되는 問題, (3) 計定構造와 部門分割에 關聯되는 問題, (4) 國民經濟計定體系의 擴張의 4 項目이다. 接合에 대해서는 5개로 分類할 수 있다. 卽 (1) 海外要因, (2) 公

의部門統計, (3) 金融計定과 資金循環, (4) 所得分布統計, (5) 投入, 產出과 活動分類이다.

51. 以下 第2部에서의 論議는 신속히 解決하는 것을 目標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主要問題를 보다 完全하게 列擧하고 問題의 適切한 解決, 相對的인 優先度, 그리고 問題解決의 節次에 대해 專門家會議의 會員들의 見解를 導出하기 위한 것이다.

## A. 更新과 明確化

### 1. 消費의 計測

(a) 政府가 支拂하는 個人消費

52. Jean Petre[18]가 指摘한 바와 같이 過去 30年以上에 걸쳐 政府가 個人에 對해 財貨·서비스를 無料 내지 事實上 無料로 提供하는 程度에서 顯著한 強勢를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活動中 가장 急速하게 伸張한 分野의 하나는 醫療서비스이다. 醫療서비스供給의 方法을 嚴密하게 보면 나라마다, 또한 時期마다 다르다. 醫療서비스의 提供面에서도, 그것을 위한 支拂面에서도 制度上的 方法은 매우 多樣하며 전혀 相異한 方法도 同一한 最終目的을 達成한다. Petre는 國際的인 國民經濟計定體系속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理論的인 觀點에서나, 實際的 觀點에서나 充分히 滿足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고 하고 있다. 分析者는, 分析目的에 따라 現實의 支出후로(flow)에 關心을 기울이는 경우도 있고, 最終消費에 關心을 기울이는 경우도 있다. 이 두가지 概念을 區別하는 것과 그 各各을 計測하는 것 雙方에 問題가 있다.

53.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는 去來者 / 去來接近法에 따라 어느 去來者가 最終的인 便益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去來者가 支出을 하고 있는가 하는 베이스로 實際의 去來를 記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政府 支出로서 혹은 家計 支出로서 무엇이 計上되어야 하는가를 決定하는 것이 역시 困難한 경우가 있다. 個人이 醫療支出에 대해 後拂로 할 경우, 어느 醫師에게서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또 어떤 條件인가를 自由로 선택할 수 있을 때에는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는 個人이 提供된 서비스의 購入者가 되고 政府에 의한 資金提供은 政府의 移轉支出로 된다. 다른 한편 政府가 財貨·서비스供給의 條件과 標準을 設定하여 이것을 詳細하게 規定할 경우에는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는 政府가 購入者로 되어, 支出은 政府中間消費에 포함되게 된다(國民經濟計定體系 項 6,74).

이것은 비록 政府의 役割이 費用의 後拂을 實行하는 경우일지라도 適用되고 있는 方法이다.

54. 實際로는 國民經濟計定體系의 「自由로운 選擇」基準의 適用은 困難한 것도 많다. 例컨대 後拂이 이행된다고 해도 그것이 特定한 條件下에서의 特定한 種類의 支出 밖에는 適用되지 않는 일이 있다. 이것은 自由로운 選擇을 制限하는 것인데 國民經濟計定體系가 어느 程度까지 이 點을 意識하고 있었던가가 分明치 않다. 그리고 비록 相異한 경우 概念上的 區分이 된다고 해도 統計作成上 個個의 케이스를 各各의 區分에 맞추어 넣는 것은 不可能할런지 모른다.

55. 이와같은 困難함을 수렴하고 Petre는 「現金便益」과 「物的便益」을 보다 明確하게 區分하기 위한 基準을 設定하는 것을 提案하고 있다. Petre에 의하면 現金便益은 實地支出의 證據書類를 作成하는 義務를 家



計가 負擔하지 않고 家計가 受取하는 것과 같은 便益에 制限되어야 하면 이 現金便益만이 實際의 移轉支出로서 取扱되어야 할 것이다, 直接的으로, 또는 支出의 後拂(이 경우는 證據書類가 必要하게 된다)을 通하여 政府에 의해 提供되는 財貨·서비스는 모두 物的便益에 分類되고 財貨·서비스에 관한 政府支出로서 記錄되게 된다.

56. 政府의 財貨·서비스 支出에 관한 Petre의 論文에서는 더욱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는 財貨·서비스를 무엇에 使用하는가 그와같은 支出은 모두 中間消費로 된다. 그러나 政府의 役割이 純粹하게 資金提供에만 限할 경우가 있다. 政府自體로서는 財貨·서비스를 受取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政府가 自體로 購入한 財貨를 變化시키지 않고 配布만 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에도 Petre는 個人에게 供給되는 財貨·서비스는 政府의 中間消費가 아니고 最終消費로 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57. 結論: 政府가 支拂하는 個人消費에 對한 國民經濟計定體系的 取扱은 후로(flow)를 記錄하는 去來者/去來原則 보다 一致된 形態로 明確化할 必要가 있다. 특히 家計支出을 政府가 全部 또는 一部 後拂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政府에서 家計로 가는 財貨·서비스 提供의 一環으로서 보다 一致된 取扱을 實行해야 할 것이다.

(b) 住民의 全消費

58. 支出配分에 대해 國民經濟計定은 焦點을 맞추었지만 家計가 所得에서 支出하는 消費뿐만 아니라 家計에 直接으로 便益을 주는 企業, 政府 및 非營利團體에 의한 支出도 카버하는 消費概念이 有益하다고 認識되게 되었던 것은 比較的 最近의 일이다. 「住民의 全消費」(Total consumpt-

ion of the population)라는用語가 이 넓은消費概念에使用되고 있다. 이概念을使用하면制度部門區分의相違에서發生하는消費水準의明確한差異를 어느程度克服하게된다.

59. 이와 같은一般的인概念은相異한文脈속에서여러가지로提案되고 있다. MPS [5.29]에서는住民全消費의概念을具體化하고 있다. 國際聯合의 Provisional Guidelines on Stat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Consumption and Accumulation of Households [38]에서는住民의全消費에 대해 MPS와는多少相異한概念을導入하고 있다. 住民의全消費概念은社會·人口統計의發展과의關係에서, 또國民經濟計定을補完하는福祉指向의政策措置論議 [39]中에서도생각되고 있으며 거기에서는住民全消費의方法이有用하지만企業, 政府 및 非營利團體의支出項目을家計消費支出에直接追加하여推計하는데있어서는統計上相當困難함이 있다는 것이指摘되었다. 最終으로同一한概念이國際比較프로젝트(ICP) [15]에서도使用되고 있다. 거기에서는教育, 健康, 레크레이션, 住宅을 위한政府支出이家計의最終消費支出에加해져「住民의最終消費支出」로블리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概念에 관한作業을要約한報告가 1979年の統計委員會第21會期에提出되었다 [42].

60. 住民의全消費는, MPS에서는個人所得以外를資金源으로하는消費에는企業, 政府 및 他團體의「社會的消費基金」에 의해無料 내지 割引料金屬으로提供되는서비스가包含된다. 이와같이 住民의全消費에는住宅, 教育, 文化, 藝術, 健康, 스포츠, 社會福祉, 레크레이션分野에關한限, 企業에서購入하였을지라도政府豫算 내지 共同組合, 企業이나 他機關에서資金이供給된 것일지라도 모든서비스가包含된다.

61. 所得分配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敘述되어 있다. (파라 그래프 5.7). 「住民의 全消費概念은 政府, 非營利團體 및 企業이 無料 내지 割引料금으로 提供하여 消費者로서의 家計에 明確한 便益을 주는 財貨·서비스의 價値에 包含하도록 한다. 賃金, 俸給에는 包含되지 않는 物的便益에 限해서만 包括 하여야 한다. 全消費에 包含되어야 할 財貨·서비스를 選擇하는데 있어서는 그 價値를 各種 家計그룹에 어떻게 配分할 것인가를 考慮해 볼 必要가 있다.

62. 住民의 全消費는 個人消費의 附加分, 卽 그 便益이 住民全體가 아니고 個人에게 割當될 수 있는 公的支出 내지 企業支出인데 이 가운데에 具體적으로 어디까지의 範圍를 包含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上記 두가지 方法이 大略적으로 同一하다. 그러나 ICP의 論議에서 分明하게 된 바와 같이 보다 詳細한 內容을 定하지 않는 限, 實用에 充足될 수 있는 定義로는 되지 않고 實際로는 MPS와 所得가이드라인에는 相當히 다른 內容이 包含되어 있는 것이 된다. 個人에게의 歸屬可能性 基準에 따르면 個人에게 直接供給되는 醫療서비스와 같이 分明히 全消費에 屬하는 政府支出의 部分도 存在한다. 防衛나 行政과 같이 明確히 除外되어야 할 部分도 있다. 그러나 그 兩極端에는 分類하기 困難한 넓은 範圍의 支出이 있다. 거기에는 個人에게 便益을 주지만 그 費用을 特定한 個人이나 家計에 割當하는 것이 一般的으로 不可能한 스포츠, 레크레이션施設, 公園이나 他地域社會施設, 教育, 各種 福祉서비스, 住宅 등이 存在한다. 더우기 目的이 人口의 福祉에 貢獻하는 消費의 全品目を 計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割當可能性을 基準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떤가가 問題가 될런지 모른다. 政府가 費用을 負擔하는 共同消費(例컨대 公園)는 福祉에 정말로 貢獻하며, 逆으

로 個人所得에서 費用이 負擔되는 私的消費의 많은 部分은 實際로는 共同으로 享受된다. (例컨대 劇場에서의 公演이나 스포츠의 開催). 이와같이 矛盾되는 要素가 있는 것과 決定이 本質적으로 恣意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分野에서의 作業當初부터 알려져 있는 바이다.

63. Petre 論文 [18,19]에는 全消費라고 하는 概念을 標準적인 計定構造에 統合하는 可能性을 考慮하여 以下와 같은 二重의 分類를 檢討하는 것이 有用할 것이라고 結論짓고 있다. 줄을 따라 더해가면 全個人消費와 全

支 出

	一 般 政 府	民 間 非 營 利	家 計	合 計
個 人 消 費				
共 同 消 費				
合 計				住 民 的 全 消 費

共同消費를 얻을 수 있으며 行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더하면 一般政府, 民間非營利團體, 家計 그리고 經濟全體 各各의 最終 消費支出을 얻을 수 있다. 이 表의 몇개 部分, 특히 家計共同消費는 메꾸어지지 않을런지 모른다. MPS와 所得分配가이드라인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Petre의 表에 提示된 欄外에 消費에 대한 企業支出의 寄與를 나타내는 追加的인 欄도 有益할 것이다. 이 點은 以下の (d)에서 다시 論하기로 한다.

64. 그러나 上記와 같은 二重의 分類를 實施하기前에 여러가지 範疇의

定義에 대해 合意에 到達하는 것이 必要하고 그와 같은 合意은 아직 存在하지 않는다. Petre의 論文에는 「個人」과 「共同」의 定義에 관하여 몇가지 提案을 하고 있으며 이것과 代替的인 提案은 本件에 대해 上述한 몇가지 論議 가운데에서 行해지고 있다.

65. 結論 : 國民經濟計定體系는 消費支出과 消費는 現在 充分히 區別되어 있지는 않고 住民의 全消費를 計定에서 直接 얻는 것은 不可能하다. 支出部門에서의 最終 消費支出과 消費타입에 의한 住民의 全消費 雙方을 얻을 수 있도록 보다 明確한 區分을 하여 갈 必要가 있다.

(c) 消費를 위한 補助金の 取扱

66. 消費의 計測에 대해 Petre는 다음 點도 指摘하고 있다. 卽 어떤 種類의 補助金은, 政府가 어떤 種類의 消費品目的 費用一部를 負擔할 경우 하나의 方法으로 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住民의 全消費에 住宅補助나 醫藥品補助를 包含시켜야 한다는 國際聯合의 所得分配가이드라인 認識의 基礎에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생각에서이다. 政府의 補助金, 政策意圖가 價格을 社會적으로 引下할 수 있게 되어 있는 公共서비스로서 個人이 消費하는 財貨서비스의 部分的 支拂을 行하는 것일 경우에 대해 Petre는 可能하다고 생각되는 3個의 取扱方法 概要를 敘述하고 있다.

67. 첫째는 現在の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 取扱하는 것에 대한 繼續으로 支拂을 生産者에 대한 補助金으로 記錄하고, 生産者の 賣却額은 個人이 實際로 購入한 價格으로 記錄하는 方法이다. 이 去來에서는 財貨서비스에 對한 政府의 支出은 나오지 않는다. 이 方法은 現實 市場에서의 去來를 反映하고 있으나 消費되는 財貨서비스의 眞正한 費用을 計測하는 것은 아니다.

68. 두번째 방법은 現在 數個國에서 採用되고 있으며 政府補助와 同額만 家計에 對한 移轉支拂이 行해지고 補助가 行해진 財貨의 購入에 對해 家計는 總費用을 負擔한다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消費된 財貨·서비스의 費用을 反映하고는 있으나 實際去來의 흐름을 記錄한다고 하는 原則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69. 第3의 方法은 補助를 生産者로 부터의 政府購入으로 取扱하고 그 補助는 政府最終消費의 計定에 記錄한다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去來의 흐름을 記錄도 하고 있으며 同時에 家計와 政府가 分擔하는 費用으로 本最終消費를 나타내고 있다.

70. 結論：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는 모든 補助金を 生産者의 所得에 附加하고 消費支出에서는 除外되는 移轉으로 取扱한다. 그러나 住民의 全消費를 計測하는데 있어서 (住宅이나 醫藥品과 같은) 補助는 消費에 附加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補助金에 對한 이와같은 取扱은 明確化하고 適合性이 取해진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 (d) 企業의 消費支出

71. 政府와 달리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의 企業은 最終消費支出은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모든 財貨·서비스購入은 (1)財貨·서비스의 中間消費 혹은 (2) 俸給의 一部로서의 從業員에 對한 物的給付의 어느 것인가에 分類된다. 이 取扱에 對해서는 두가지 問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物的便益에 關한 現在의 取扱이 政府가 支拂하는 個人消費와 關聯하여 本稿에서 論한 去來者 / 去來原則과 일치되는가 하는 問題이다. 第2로 企業最終消費支出의 概念이 住民의 全消費支出을 끄집어 내기 위하여 必要한

것인가의 問題이다.

72. 企業이 從業員을 위하여 醫療서비스를 提供할때 國民經濟計定 體系에서 그 醫療서비스를 賃金의 一部로 간주하여 從業員에 대한 賃金으로서 歸屬計算되고 또한 從業員의 消費支出로서도 歸屬計算된다. 이것은 上記1(a)에서 說明한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取扱, 卽 醫療서비스는 政府가 個人에게 提供하고 政府의 支出로서 記錄한다고 하는 取扱과는 顯著하게 다르다. 그러나 企業은 一般政府와 마찬가지로 個人에게는 分明하게 便利한 것같은 支出을 個人에게 選擇의 餘地를 주는일이 없이 行하는 일이 있고, 더구나 그 便益을 個人이 無料로 利用할 수 있는 施設의 形態를 취하는 경우에는 個人은 코스트(비용)意識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와같은 物的便益을 家計가 可處分所得에서 行하는 支出과 마찬가지로 取扱하는 것이 適當한가 어떤가 하는 問題가 發生한다.

73. 다른 取扱方法으로서는 雇用主는 從業員에 對하여 便益을 供給함으로써 一般政府가 個人을 위해 行하는 것과 性質上 同一한 最終消費支出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 企業最終消費支出은 從業員報酬의 一部(物的便益)로서 記錄되겠지만 從業員에게 實際로 支拂되는 賃金의 一部로는 記錄되지 않을 것이다. 企業最終消費支出은 家計 및 政府의 最終消費支出과 마찬가지로 GDP의 最終用途中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에 의해 물론 最終消費支出의 總計가 變化하지 않는다는 것은 家計消費支出의 減少幅이 企業最終消費의 計上額과 同一하게 되기 때문이다.

74. 이와같은 取扱方法에 따라 國民經濟計定體系(SNA)는 System of Balance of the National Economy (MPS)에 가까워지는 것이 된다. MPS에서는 「企業에 依한 從業員을 爲한 레크레이션, 文化施設等에 關한

支出」이라는 이름의 最終用途카테고리가 認定되고 있다. 몇가지 點에서 MPS의 取扱은 最終消費支出의 單純한 分類問題를 超越하고 있으며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는 中間消費로 取扱될것 같은 支出, 例컨대 食事費補助, 旅費, 接待費, 自動車等の 形式으로 企業이 供給하는 「職務에 付隨되는 特典」을 包含하고 있다. 最近년에는 이와 같은 支出은 最終消費의 一部로서 점점 重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企業支出의 中間消費에서 最終消費로의 再分類를 어떠한 形態로 行한다면 물론 GDP의 크기는 變하는 것이 될 것이다.

75. 國民經濟計定體系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再分類를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는 指摘이 近年에 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論議되고 있다. 卽 企業은 販賣하는 製品과 從業員에게 提供하는 物的便益以外에 最終消費의 인 性格의 財貨·서비스를 正히 提供하고 있다. 企業이 政府로부터의 要請에 따라 行하는 支出은 汚染을 줄이고, 安全度를 向上시키며, 혹은 身體障礙者에 對한 公共福祉서비스를 行하는 것과 같은 것을 目標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義務的인 支出은 同一한 타입의 政府支出의 代替品이다. 이렇게 汚染減少를 위한 企業에 의한 支出은 税金과 汚染減少에 대한 政府支出의 直接的 代替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만일 政府가 支出한다면 그 支出은 最終生産物로 생각될 것이다. 社會가 汚染kontrol費用을 生産者에게 負擔시키는데에 成功하면 最終生産物로서의 性格이 바뀌게 되는 것일까.

76. 企業의 中間消費의 다른 項目에 있어서도 疑問이 發生하고 있다. 卽 라디오, TV, 新聞, 雜誌의 經營을 뒷받침하는데 有用한 廣告費에 대해서이다. 만일 그와 같은 費用이 最終生産物에 包含되는 것이라면 制度가 相異한 國家들 間에 比較可能性이 增大된다. 이것은 그와 같은 活動이 政府豫算에서 치루어질 수 있는 國家도 있기 때문이다.



77. 中間消費와 最終消費의 境界에 關聯되는 最後의 問題는 銀行이나 其他 金融機關이 提供하는 서비스에 대한 것을 말한다. 1952年版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는 歸屬銀行서비스를 特定한 利用者에게 配分하고, 이렇게 해서 家計와 銀行에 配分된 銀行서비스를 最終消費로 分類하였다. 1968年版 國民經濟計定體系는 作成의 容易性を 重視하고 銀行手數料에 關해서 여러가지 單純化를 위한 假定을 採用하였다. 거기에는 明白한 形態로는 支拂이 되지 않는 手數料에 대해 歸屬計算을 認定하고 있으나 銀行서비스의 모든것을 國內生産者 全體를 위한 中間消費로서 歸屬計算한다. 問題의 金融仲介業 活動이 GDP와의 對比에서 작을 경우에는 매크로·레벨에서의 單純化는 問題가 되지 않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金融仲介가 全經濟活動가운데에서 重要的 部分을 占할 경우, 특히 當該國에서 國際金融活動이 重要할 경우, 上記와 같은 單純化를 하게 되면 틀리는 結果를 얻게 된다. (1) 歸屬支拂과 現實支拂을 區別하고, (2) 銀行서비스가 있는 部分을 企業最終消費支出로 認識하는 것이 必要할지도 모른다. 銀行서비스를 他國에 販賣되는 生産物로 認識하는 것은 重要的 金融센터가 되어 있는 룩셈부르크, 스위스, 싱가포르等 小國에게는 特別히 重要하다. 現在는 모든 銀行서비스 取扱이 國內企業의 中間消費로 되어 있으며, 金融센터가 있는 小國의 GDP는 顯著하게 過少評價되고 있다. 上記와 같은 銀行서비스의 새로운 認識에 따라 國民經濟計定데이터와 國際收支데이터와의 調整作業 또한 容易하게 될 것이다.

78. 結論: 國民經濟計定體系는 企業最終消費支出項目을 準備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企業이 從業員 내지 大衆에 對하여 現物로 財貨·서비스를 提供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을 去來者 / 去來原則과 同一하게 取扱하려면 그와같은 去來후로는 企業最終消費支出로서 記錄해야 한다. 만일 住民의 全

消費을 計測하는 努力이 있어야 한다면 企業이 從業員이나 大衆에게 提供하는 最終消費을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評價를 行하고 企業最終消費支出의 概念을 國民經濟計定體系에 다 넣어야 할 것인가 어떤가를 생각해야 한다.

(e) 非市場歸屬

79. 非市場歸屬은 항상 國民經濟計定の 必要한 要素로서 認識되고 있다. 現在の 國民經濟計定體系에 內包되어 있는 非市場要素는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自給自足的인 農業活動, 先進國에서의 自己所有住宅의 賃貸이다. 많은 開發途上國에서는 人口의 大部分이 農業活動에 從事하고 있으며, 農業生産의 大部分이 市場에서 팔리는 것이 아니라 生産者가 直接 消費하고 있다. 國民經濟計定은 이 非市場活動을 把握하여 市場生産과 非市場生産의 合計가 經濟開發活動의 過程에서 어떻게 變化하는가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先進國에서는 自己所有住宅이 總消費의 一部로서 計算해야 할 住宅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는 것으로 一般的으로 認識되고 있다.

80. 新 SNA는 產出에 包含시켜야 할 非市場活動의 範圍와 定義에 關하여 매우 明確하였다. 新 SNA에서의 決定은 主로 두개의 基準을 反映하고 있다. 卽 (1) 市場에서 發生하는 生産과 直接 比較可能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2) 現在の 統計的 情報를 바탕으로 무엇이 計測可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가의 두가지 點이다. 이리하여 國民經濟計定體系는 生産活動이 家計內에서 發生하여 그 生産物이 매우 少量 혹은 전혀 市場에 나가지 않는 活動을 生産에서 除外하였다. 그러나 1968年 改正以後 보다 綜合的인 消費計測手段의 開發에 대한 需要가 顯著하게 높아졌다. 더구나 家計의 標本調査는 先進國 뿐만 아니라 開發途上國에서의 統計作成技法으로서도 보다

重要な地位를 占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調査는 데이터의 蒐集可能範圍를 크게 擴大하고 있다. 國際聯合의 家計調査能力프로그램 (United Nations National Household Survey Capability program)이 今後 2~3年間に 成果를 내기 始作함에 따라 家計調査를 利用할 수 있는 國家의 數는 大幅的으로 增加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種類의 非市場歸屬을 包含하는 것이 眞正으로 有用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必要하게 되고 있다.

81. 自給自足的 生産과 消費에 關해서는 1980年의 專門家會議用으로 準備된 討議資料에서 新 SNA의 約束을 若干 變更하는 提案이 있었다. 專門家會議는 提案된 變更에 異議를 提唱하지 않았지만 現實로 行해지고 있는 各國의 慣行에 對해, 보다 集中的인 研究가 必要하다고 생각하였다. 간단하게 말하면, 上記 變更의 提案은 當該國에서 家計調査의 結果로서 혹은 무엇인가 他手段을 利用한 結果로서 經驗的으로 意味가 있다고 判斷되는 것과 같은 모든 種類의 活動을 包含하는 바와 같이 新 SNA에서의 約束을 擴大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많은 경우 이것은 國民經濟計定體系의 리스트에 실려있지 않은 活動을 包含하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예를 들면 國民經濟計定體系는 신발, 衣服, 金屬工藝品等에 對해서는 어떤 部分이 팔릴 것 같은 경우만이 工業製品의 生産으로서 計上되도록 되어있다. 이 制限에 關해서는 아마도 데이터의 入手可能性問題를 除外하면 充分한 理由가 없다고 생각되어 結果的으로 生産量의 大幅的인 把握漏落이 發生하게 되는 國家가 있을런지 모른다.

82. 더우기 現在는 生産에서 除外되어 있는 非市場活動에 對하여 關心이 높아지고 있다. 家計의 非市場活動을 除外함으로써 國家와 國家間, 혹은 다른 時點間에 比較할 경우, 結論에 歪曲이 生길 可能性이 있다. 많은 國家에

서 勞動市場에 對한 參加가 增加하고 있으며 家計에서의 女性活動의 性質 變化를 調査하는 것은 특히 重要하게 되었다. 지금은 成人女性の 過半數가 雇傭되어 給與를 받고 있는 國家도 있다. 다른나라 혹은 같은 나라에서도 20年前에는 그 比率이 매우 적은 것이었을 것이다. 傳統的으로 女性の 일로 되어온 家事勞動에 대해서 이 女性勞動力參加의 增加가 어떤 影響을 미치는가를 아는것은 重要的인 일이며, 많은 可能性이 있다. 從前에는 給與가 支拂되지 않았던 主婦의 서비스 代身에 給與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雇傭 될런지 모른다. 主婦以外的 家族構成員이 家事를 더욱 많이 分擔할런지 모른다. 勞動力에 新規參加한 主婦는 單純히 從前보다 오랜 시간을, 또는 勤勉하게 일하는, 다시 말해서 家事勞動과 給與를 받는 두가지의 일을 行하는 것이 될런지 모른다. 혹은 家事勞動의 量이 減少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生活時間調査에 따르면 實際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미 敍述한 여러가지 可能性의 모든 組合이다. 이 現像을 考慮하지 않고 產出이나 福祉를 計測하는 것은 重要的 點을 分明히 漏落시키고 있다. 自給自足的인 產出을 生産과 消費에 包含시키는 것과 家計活動을 除外하는 것과의 사이에 新SNA가 境界를 設定한 것은 相當程度가 性에 依한 差別을 反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점차 달라지고 있다. 自給自足的인 活動은 大部分 男性의 活動이며 家事活動은 女性의 것이다. 이리하여 와인 製造는 包含되고 料理는 包含되지 않는다. 動物돌보기는 包含되고, 어린이 돌보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道路建設과 같은 地域支援者의 新規事業은 包含되지만 女性그룹이 經常적으로 하고있는 圖書館, 健康서비스, 學校와 같은 地域社會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균형이 缺如된 取扱은 是正해 나가야 한다.

83. 非市場活動의 影響을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使用하는 計算法이 매우

重要하다. 國民經濟計定體系는 非市場歸屬의 計算에 대해서는 同等한 市場財貨·서비스의 生産者價格으로 해야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國民經濟計定體系가 生産活動에 焦點을 맞추고 있는것에 따른 것이며 自己消費이거나 販賣이거나 間에 特定財(農産物과 같은)의 全産出을 計測하기 위해서는 適切하다. 生産者價格에 따른 計算은 어떤 狀況下에서는 自己의 産出을 市場에서 팔지 않고 消費할 경우에 生産者의 機會費用을 計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는 現在 포함되지 않은 非市場活動의 計算問題가 一層 困難하다. 예컨대 家計活動을 評價함에 있어서는, 勞動市場에서의 主婦의 機會費用을 使用할 것인가, 市場에서의 主婦의 家事勞動에 相當하는 서비스利用 費用을 使用할 것인가를 決定할 必要가 있다. 資源配分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機會費用의 計算이 適當할런지 모르나 家計서비스消費를 計測하는데는 市場計算편이 좋을런지 모른다.

84. 先進國에서 現實로 行해지고 있는 最大의 歸屬計算은 通常 내집(自家)에 대한 것이며 이 경우에는 國民經濟計定體系는 去來者/去來原則에서 相當히 멀리 떨어져 있다. 이와 같이 떨어져 있는 것이 必要한가 또는 妥當한가에 대해서는 疑問이 있을런지 모른다. 自家 住宅의 서비스를 計算함에 있어서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는 住宅所有者를 自己自身에게 賃貸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擬制上的 個人企業所有者로서 취급하고 있다. 歸屬計算된 住宅賃貸價額은 家計消費支出과 擬制上的 企業受取에 포함되어 있다. 擬制上的 企業은 代身에 修繕·維持費用과 固定資本消費에 相當한 財産稅·諸外上을 支拂한다. 그다음 收益은 個人企業의 歸屬所得으로서 家計로 返還된다.

85. 이와 같은 方法의 結果로 나오는 것은 賃貸料가 上昇하는 인플레이션의 時期에는 비록 所有에 關聯되는 費用이 所有者에게 有利하게 變化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住居費의 增加(및 關聯되는 歸屬所得의 增加)가 住宅所有者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住宅所有者의 實際狀況은 賃借가 固定되어 있는 住宅의 賃貸者의 狀況과 더 비슷할런지도 모른다. 賃借固定인 경우, 計定에서는 샤도우프라이스(Shadow price)가 아니고 實際家賃(賃借)이 記錄된다.

86. 家計에 歸屬되는 現實의 消費支出이 歪曲되지 않도록 計定에는 所有에 따르는 實際去來를 나타내야 한다는 論議는 마찬가지로 當然하다고 생각된다. 眞實로 歸屬되어 있는 것은 固定資本의 消費와 企業家所得이다. 이 歸屬計算에 따라 住宅서비스에 대한 支出뿐만 아니라 住宅서비스 消費의 分析도 可能할 것이다.(自己所有住宅에 入居하는 者의 大部分은 住宅費用에 資本消費가 포함된다든가, 더욱 確實한 것은 所有者로서의 自己自身の 收益으로 包含된다든가 한다고 생각하는가 어떤가는 疑心스러울런지 모른다) 自己所有 住宅의 入居者行動은 自己가 實際로 支出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에서 보다 많은 影響을 미칠것 같다. 需要, 市場分析等を 위해서는 이 實際支出이 매우 適切하다. 또한 租稅, 財政政策決定을 위해서는 間接稅의 어느 部分이 財産稅의 形態로 實際家計에 의해 支拂될 것인가, 그리고 個人企業에 의해 支拂되는 金利의 어느 部分이 實際로 내집에 대한 抵當證券金利인가를 아는것이 重要하다.

87. 耐久消費財關係에서도 問題가 發生한다. 國民經濟計定體系에는 自動車를 포함해서 家計가 保有하는 耐久消費財의 서비스를 위한 計定에 歸屬計算이 包含되어야 한다고 記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制度가 多少 달라져 家

庭用品이 住宅(自家 혹은 賃貸)의 費用에 包含된다든가, 或은 自動車가 從業員에 대한 物的便益으로서 賃貸된다든가 或은 無料로 提供되면 이 서비스는 產出과 家計消費支出의 雙方 推計에 包含된다. 事實 이것을 統計上 除外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많은 國家에서 耐久消費財의 重要도가 높아진 것을 볼때 耐久消費財의 取扱과 住宅의 取扱을 달리하는 理由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困難하다.

88. 非市場歸屬에 關한 最後問題는 政府의 下部組織과 耐久財로 提供되는 서비스에 關한 것이다.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는 政府建物の 서비스를 위한 歸屬計算을 包含하고 있다. 그러나 下部組織의 他部分은 만약 適切하게 維持된다면 利用年數의 限界는 없고, 維持를 위한 支出이 提供되는 서비스의 價値를 計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政府豫算의 變動에 따라 下部組織의 維持가 不充分하다든가 資本스톡의 追加로서 計算되는 것과 같은 基本的인 改善이 行해진다든가 한다. 따라서 建物뿐만 아니라 모든 政府資本스톡에 대해 明白한 耐用年數를 割當하여 減價償却을 해야한다고 하는 論議가 있을 수 있다.

89. 그러나 消費로서 定義되는 것의 領域을 넓혀서 非市場活動이나 耐久財의 서비스를 包含시키려는 壓力에도 不拘하고 國民經濟計定の 去來指向의 基礎를 빠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抵抗도 나오고 있다. 이 抵抗은 市場去來의 價値付與의 基礎가 보다 分明하고 데이터가 相對적으로 確固할 것 같다는 생각에만 따른 것이 아니고, 市場去來가 종종 經濟政策 및 社會政策을 實施하기 위한 手段이라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福祉의 綜合的 計測을 할려고 하는 努力이 財政·金融政策分析을 위한 體系의 有用性を 破

壞하는 것에 連結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있다. 福祉의 綜合的 計測과 財政·金融政策의 分析이라는 2個의 問題에 對한 答은 現實의 市場去來가 생기는 베이스에서 部門別計定을 明確하게 하고 非市場活動에 對한 새로운 種類의 情報가 計定후레임워크(frame work)속에서 體系의 보다 傳統的인 使用法에 害를 주는일이 없이 入手可能할 것 같은 方法으로 非市場去來를 提示한다는 것이다.

90. 結論：國民經濟計定體系는 計定에 歸屬을 導入해서 非市場去來를 取扱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自給自足, 家計活動, 自己所有住宅, 耐久消費財 및 政府下部組織에 關하여 明確히 할 必要가 있는 境界問題와 價値付與問題가 存在한다. 實際 市場去來와 非市場歸屬間의 區別을 計定으로 더욱 明確하게 해야하는가 어떤가 하는 問題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特히 이 問題는 開發途上國에서의 自給自足活動과 市場去來를 區別하는데 있어서 重要하다.

## 2. 所得의 計測

### (a) 所得計測에서의 인플레이效果

91. 過去10年間에 主要先進國의 인플레이에 따라 國民經濟計定에의 所得計測에 對해 問題가 發生되고 있다. 높은 名目金利는 金利가 關係하는 固定資産의 購買力 減少를 一部 補完하는 것으로 一般的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이 중에서 所得의 흐름으로서의 利子收入을 記錄하는 問題를 中心으로 많은 論議가 되어왔다. 어떠한 調整을 導入해서 利子支拂을 「眞正한」 利子支拂과 資本償還의 흐름도를 分離할 것인지의 問題가 提起되었다.

92. 國民經濟計定體系는 實際 固定資本消耗와 스톡變化의 2個 項目에



關해서는, 「價格修正 完了」의 情報을 導入하고 있다. 固定資本消耗에 關해서 兩取得費用으로 計測할 수 있는 眞正한 減價償却은 企業의 帳簿價베이스의 實際減價償却으로 代替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企業의 稅目的으로 또는 會計慣行으로서는 固定資本의 帳簿價에 대해 減價償却의 適用이 許諾된다. 價格이 安定되 있는 時期에는 이것은 再取得費用에 의한 減價償却을 上回하는 減價償却費를 發生시키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은 時期에는 만약 帳簿價에 따른 것이라면 必要한 減價償却은 再取得 費用에 따른 減價償却을 下回할런지 모른다. 스톡變化에 關해서는 企業計定에서는 때때로 스톡貨幣價値의 變化가 提示되고 있다. 그러나 產出을 正確하게 測定하기 위해 必要로 하는 것은 스톡의 物理的인 量의 變化價値이며 그것은 國民經濟計定體系가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93. 上記 調整이 國民經濟計定體系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所得의 特定한 要素에 대해 價格水準의 變化影響을 나타내기 위하여 計定中에서 다시 調整하는 것이 適當한가 어떤가를 考慮하는데는 理由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OECD와 EUROSTAT 를 위해 準備된 研究(10) 中에서 Jack Hibbert는 이 問題를 檢討하고 다음과 같은 結論에 到達하였다.

(i) 現存의 SNA 와 ESA의 所得과 貯蓄의 概念은 維持되어야 한다.

(ii) 특히 인플레이션이 相對적으로 높은 時期에 있어서는 統計를 充分하게 說明하기 위해서는 一國經濟에 있어서 主要한 制度部門 各各이 保有하는 資産과 負債의 水準에 대한 데이터는 去來에 關聯하는 主要計定과 統合된 틀속에서 入手可能하게 될 必要가 있다.

(iii) 名目價格 및 固定價格購買力에서의 推計의 基礎로서 相異한 換算比率을 使用하는 分위기를 今後 作業에서 詳細하게 檢討하는 것은 必要하

지만 資産과 負債의 長期에 걸친 인프레損失은 相對적으로 작거나 無視할 수 있는 貨幣保有利得 내지 損失나름이며 어떤 換算比率이 選擇되어도 多分히 相當히 좁은 範圍에 머물게 될 것이다.

(iv) 上記(ii)에서 생각한 바와 같이 體系的인 構造속에서 인프레損失을 推計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그다지 훌륭하지 못한 方法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統計利用者에게는 重要한 價値를 가지는 것이 될 것이다.

(v) 必要로 하는 大部分의 情報은 主要 先進國에서는 이미 入手可能하지만 만약 데이터베이스가 國際적으로 比較可能한 데이터를 提供할 수 있는 形態로 開發되어야 한다면 國際機關이 리드하는 것이 必要하다.

94. 上記結論은 利子が 發生하지 않는 資産에 關係되는 損失과 利子是 考慮하지 않고, 利子が 發生하는 金融資産購買力 損失을 調整 한다는 것은 論理的이 못된다는 判斷에 따른 것이었다. Hibbert는 結論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卽 이 問題를 充分히 取扱하기 위해서 必要한 것은 利得과 損失의 推計가 名目購買力과 不變購買力 雙方에서 算出될 수 있도록 國民經濟計定體系 各 部門의 名目所得·支出計定과 資本調達計定을 調整計定 및 貸借對照表로 共히 完全히 統合하는 것이다.

95. 國民經濟計定體系는 明確하게 그와 같은 完全한 統合된 計定の 組合을 想定하고 있으나 1977년에 開發된 가이드라인 [37]은 그 當時 해마다의 후로計定과 統合된 調整計定과 貸借對照表를 훌륭하게 作成한 國家가 거의 없었던 點에서 暫定的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Hibbert는 따라서 國際聯合統計局, OECD 및 EUROSTAT가 國民經濟計定體系의 評價의 一部로서 調整計定과 貸借對照表의 最終的인 統合體系에 關하여 國際的 合意에 到達할 目的으로 關與하고 있는 技術的 統計的 問題에 대해 더욱 論議를 深化하도록

록 勸告하고 있다. 더우기 會員 各國에 對하여 다음 2가지를 強力하게 要求하고 있다. (1) 制度部門別 貸借對照表의 作成作業을 進展시킬 것, 이때 利用者의 觀點에서는 需要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家計部門에 먼저 專念할 것, (2) 資産과 負債의 保有에 따른 制度部門마다의 利得과 損失을 購買力베이스로 定期的으로 提供할 것.

96. 이렇게 해서 Hibbert의 研究는 「인프레會計」에 關한 原來의 問題를 후로計定과 貸借對照表의 統合이라는 보다 넓은 文脈가운데 바꿔놓은 것이다. 이 再構成은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基本原則과 充分히 符合的이며 經濟의 相異한 部門에 대한 인프레 過程의 影響을 分析하기 위한 體系로서 適切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인프레計定 問題는 이와같이 후로計定과 貸借對照表를 充分히 統合한 方法을 實現하는 最善의 方法은 무엇인가 하는 問題로 轉換되고 있다.

97. 結論：國民經濟計定體系의 所得支出計定은 利子나 他財産所得과 같은 去來후로에 대해 資産의 購買力에 對한 인프레의 效果를 調整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와같은 調整을 所得支出計定에 導入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所得支出, 資本調達, 調整, 貸借對照表計定の 統合된 組合을 開發함으로써 時價와 固定價格의 購買力에 關係되는 資本利得, 損失을 計測하는 편이 適切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開發은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基本原則과 完全히 符合的이며 現存計定을 한층더 進展시킴으로서만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b) 土地, 地下資源 및 無形資産의 取扱

98. 資本形成에 따른 通常的인 方法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價値의 增加 내지 資産의 摩損에 대해서는 計算上 많은 特別한 問題가 發生한다.

이 問題에는 石油, 鐵鑛石과 같은 地下資源은 물론 關係되지만 그것에 限하지는 않는다. 農地, 立木, 그리고 어떤 制度上, 氣候上의 狀況下에서의 水利權과 같은 모든 것이 매우 비슷한 問題를 일으킨다. 特許權이나 著作權과 같은 無形 非金融資產도 이 그룹에 들어간다.

99. 國民經濟計定體系에는 그와같은 資產과 그 利用에 대한 公式的인 統計가 포함된다. 그 資產價値는 原則的으로 同一한 資產의 最近賣却에 反映된 名目 市場價値로 可能한 限 計算되어, 一國 全體와 制度部門의 貸借對照表에 들어간다. 그러나 新規發見, 自然成長 더구나 無形資產의 創出은 資本形成으로는 생각될 수 없고, 그러한 것은 오히려 資本調整計定을 통하여 貸借對照表에 들어간다. 그와 같은 資產開發 費用은 여러가지 方法으로 計定에 들어간다. 農業用地, 果樹園, 農場이나 林產農園 (tree farm)과 같은 原則的으로 更新possible한 資產에 대한 開發費用은 總固定資本形成에 포함된다. 그러나 地下資源과 같은 更新不可能한 資產에 대해서는 探查費用과 開發費用의 區分이 이루어진다. 確認完了한 埋藏物을 開發하는 費用만이 資產化되고, 探查費用은 各期의 費用으로 計上되어 資產으로는 되지 않는다.

100. 이의 取扱에 대해서는 많은 問題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는 資產化해야 할 開發費用으로 包含시키는 範圍에 關한 것이다. 探查와 開發은 이미 別個의 活動이 아니고 오히려 繼續的인 過程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新規發見은 大部分 自然의 선물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것을 資產化해야 할 것 같은 大規模支出을 要求하는 組織的인 開發의 結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探查作業中 어느정도의 比率은 虛費로 돌아가지만 이것은 어떤 意味로 固定資本에 대한 偶發的인 損害와 마찬가지로 豫測할 수 있는 費用으로 간주된다.

101. 第二의 問題는 枯渴에 關한 것이다. 많은 資源은 無盡藏이다 (現在의 取扱이 暗暗裡에 想定하고 있는 것과 같이)라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使用한다는 것은 有限의 資源을 枯渴시킨다고 생각한다면, 이 結果로서 枯渴을 各期의 費用으로서 計上해야 할 것이라는 主張이 나온다. 資源의 基礎量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니고 枯渴分은 新開發分에 依해 메꾸어질 수 있을런지 모른다. 따라서 埋藏量의 純變化-新發見 마이너스 枯渴-는 各期의 產出의 一部로서 生産計定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埋藏量」을 定義하는 것은 어렵고 그 價値를 計算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貸借對照表에 記載하는 것은 「確認」埋藏量이라는 것이 一般的으로 合意되고 있다. 確認埋藏量의 定義는 當該時點의 費用과 價格으로 經濟적으로 採掘可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地下資源의 稀少性이 增加하고 相對的價格이 上昇하고 있는 요즘 世上에 있어서 經濟적으로 採掘可能한 分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는 決定되어 있지 않다. 確認埋藏量의 增加는 新發見에서 招來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相對價格의 上昇에서도 招來되는 것 같다.

102. 1980年의 專門家會議에서는 價格變化의 效果 뿐만 아니라, 新發見과 枯渴 雙方에서 明白한 幅을 가지게 하는 形態로 確認埋藏量의 價値 變化의 計算에 대해 一般的인 支持가 表明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貸借對照表와 調整計定에 適切하게 反映되어야 하고 各期의 후로 計定에 反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計測에 대해서는 概念上의 困難함이 強調되었다. 卽 事實로서 바뀌 놓기 不可能한 것의 變換價値를 推定하려고 하는 試圖라고 指摘되었다. 採掘費用의 適切한 取扱에 關해서는 相異한 見解가 나왔으나 專門家그룹의 多數 意見은 現在의 取扱方式을 繼續하는 것을 支

持하고 探査費用은 本質的으로 他調査費用과 틀린 것은 아니고 만약 한쪽이 資産化하게 된다면 다른것도 마찬가지로 資産化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103. 더우기 明確化를 要하는 이 種類의 資産에 關聯된 그밖의 問題가 몇가지 있다. 하나는 土地와 賃貸料에 關係된다. 國民經濟計定에서는 土地純賃貸料는 財産所得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建物, 設備等の 賃貸料는 서비스購入을 위한 支拂이라고 생각되어 購入者(中間消費로서)와 販賣者(販賣로서) 雙方의 生産計定에 들어온다. 建物 및 設備의 純賃貸料는 이렇게해서 다른 種類의 어떠한 生産活動에서의 受取와 마찬가지로 營業剩餘의 決定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土地의 경우에 賃貸料는 달리 取扱한다. 關係되는 維持費나 不動産稅를 控除한 後の 純賃貸料 收入이 營業剩餘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所得支出計定에서 相異한 所得源으로 提示된다. 支拂되는 純賃貸料는 生産費用의 一部가 아니고 (賃貸된 土地로 業을 營爲하는 農民의 경우일 지라도) 오히려 所得의 再分配이다. 많은 國家에서는 統計上 및 概念上の 困難함을 理由로 土地賃貸料와 建物賃貸料와의 이러한 區別을 하고 있지 않다. 土地賃貸料를 그 土地를 占有하는 建物賃貸料에서 分離하는데 있어서의 統計上の 問題는 特히 크다. 그러나 農業用地的 賃貸料조차 他費用과 달리 取扱을 하는 것에 대한 概念上の 妥當性에 대해서는 疑問이 提起되어 왔다.

104. 明確化에 대한 마지막 問題는 無形 非金融資産에 關係된다.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는 著作權이나 特許權과 같은 無形資産의 購入은 資本調達計定에 나타나고 無形資産의 購入은 土地의 純購入과 마찬가지로 取扱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範疇에는 賃貸權, 採掘權等の 賣却은 包含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서는 最終的인 所有權은 當初의 所有者에게 歸屬한다. 이와 같은 것은 土地賃貸料와 마찬가지로 取扱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國民經濟計定體系質問書에 回答하고 있는 어떠한 나라도 無形資産의 購入과 賣却을 上述한 바와 같이 分離한 데이터를 提供하고 있지는 않다. 無形資産의 購入을 위한 支拂과 그와같은 資産의 利用을 위한 支拂과는 區別되고 있지 않다. 雙方의 合計額은 賃貸料나 利用權의 一要素로서의 財産所得에 多分히 包含되어 있다. 分離를 하는데 있어서, 各國이 統計上の 困難함에 부딪혔는지 혹은 理論的인 基礎에 따라 拒否했는지 如否는 明確하지 않다. 地下資源의 利用權은 通常 一定한 期間이 주어진다. 만약 이 期間의 끝에 가서 資源이 枯渴되면 支拂이 權利利用을 위하여 이루어졌는지 혹은 權利가 完全하게 移轉되었는지를 決定하는 것은 困難하다. 移轉과 利用間의 區別에 대한 同一한 困難함이 著作權과 登錄商標에 있어서도 發生한다.

105. 結論 : 國民經濟計定體系에는 貸借對照表의 一部로서 土地資産과 地下資源資産이 包含되고 있으며 또한 調整計定の 一部로서 그 資産價値의 變化가 포함되고 있다. 地下資源의 경우에는 採掘費用과 枯渴取扱에 대해, 土地의 경우에는 地代取扱에 대해 그리고 無形資産의 경우에 대해서도 疑問이 提起되어 왔다. 이들 問題의 大部分은 概念上の 明確化 問題뿐만 아니라 統計數字作成上の 問題를 包含하고 있다.

(c) 年金, 保險, 資本移轉

106. 生命保險과 年金의 分擔金, 便益에 대한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의 取扱은 從來의 것과 틀리지 않다. 僱傭主負擔의 年金基金에 對한 負擔金과 生命保險料는 從業員 俸給의 一部로서 나타낸다. 生命保險과 年金基金에 있어서

의 家計持分은 家計의 資産과 金融機關의 負債로서 나타내고 이 資産, 負債의 變更은 家計의 調達計定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年金이나 生命保險에서의 給付受取는 家計資産形態의 變化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當期 所得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107. 本來 이 取扱은 長期에 걸친 이와 같은 形態로서의 報酬가 그다지 一般化되지 않았던 1930年代에 提案된 것으로서 當時 이와 같은 給付를 受取하는 것은 大體로 所得分布로 말하면 最上層에 限하고 있으며 거기에서는 資産의 純變化에 따른 所得計算은 非現實的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1968년에 있어서도 더욱 지켜질 수 있는 것이었으나 1982년에는 甚히 疑問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年金에서의 給付가 매우 重要な 役割을 다하였고 比率이 높아지고 있는 老齡者에게 所得의 主要한 源泉이 되고 있는 國家도 있다. 年金受給者에게 重要的 것은 每月 받는 金額이며 그것을 支拂하는 年金基金이나 保險會社の 資産이 아니다. 基金의 資産持分에 대한 年金受給者の 請求權은 純粹하게 假定上의 것이며 實際로는 當該持分을 支配하는 일은 없고 當該持分에 대해 發言하는 일도 없다. 消費者行動의 研究나 生活水準 내지 所得分布의 分析에 利用하기 위해서는 家計의 所得에는 家計自身이 所得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反映해야 할 것이다.

108. 따라서 私的인 年金支拂은(社會保障支拂과 같이) 家計의 當期所得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強해지고 있다. 그와같은 變化는 所得支出計定과 關聯되는 貸借對照表와의 符合性を 유지하기 위하여 年金과 保險의 積立金 蓄積을 어떻게 取扱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提起한다. 例컨대 年金과 保險의 積立金を 家計資産으로 取扱하고 同時에 그 積立金으로부터의 支



拂을 家計의 當期所得으로서도 取扱한다는 것은 符合的이 못 될 것이다.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는 被傭者의 年金이나 保險에 대한 分擔金은 從業員이 受取하는 俸給의 一部로 생각하고 年金 및 保險資産에 依한 投資收益은 家計의 歸屬利子 所得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年金과 保險資産의 增加는 家計의 貯蓄으로 된다. 年金과 保險收益의 支拂은 家計의 資本調達計定の 變動으로 생각되어 家計保有의 年金 및 保險資産에서 控除된다. 이와같은 方法으로 年金이나 保險資産의 正確한 價値를 보는 것은 可能하겠지만 家計의 貸借對照表上에서 이것을 記錄하는 것이 意味가 있는가 어떤가 하는 深刻한 問題가 있다. 이 資産의 價値는 (1) 家計의 將來受給資産의 現在價値, (2) 當該受給資産의 解約返屬金중 어느것도 아니다. 一般原則으로서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는 所得의 將來흐름의 現在價値를 資本計定에 包含하지 않는다. 그러나 現在 市場에서 去來價値를 가지고 있는 모든 資産을 包含하고는 있다. 이 原則과 符合的이 되려면 家計의 貸借對照表에서 年金·保險資産을 除外하고 그 代身에 年金·保險受給資産의 市場價値를 包含시키는 것이 適當할 것이다. 社會保障受給資産과 마찬가지로 雇傭主에 依해 支給되는 年金이나 保險의 受給資産에는 從業員에게는 市場價値를 가지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다른 경우, 特히 從業員이 直接으로 負擔한 경우에는 年金과 保險의 受給資産은 커다란 現金價値를 가지고 있을런지 모른다.

109. 現實로 經濟行動에 影響을 미치는 要素를 보다 잘 反映하려고 하면 年金基金과 保險會社의 資産을 關係會社에 委託하고 그 保有分の 現金買入 價値만을 家計의 것으로 하는 取扱이 생각된다. 이것은 물론 GDP를 變化시키는 것이 아니지만 所得의 흐름을 보다 現實的으로 부합되는

形態로 나타낼 것이다. 이에 따라 私的 年金의 取扱은 公的 社會保障給付와 便益의 取扱에 가까워지는 것도 될 것이다. 社會保障 分擔金の 全體는 本質的으로 家計의 直接稅로서 取扱되고 給付의 全體는 家計所得에 대한 支拂로서 支給된다. 將來의 社會保障給付를 受取하는 權利는 資本化되지 않고 그것은 家計資産으로는 생각되고 있지 않다.

110. 雇傭主 가운데에는 從業員 내지 舊從業員에게 年金이나 醫療와 같은 福祉便益을 提供하는데 供給되는 便益의 費用을 包括할 수 있는 基金의 規則的인 分擔을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있다. 여러가지 便益은 必要에 따라 해마다의 收入에서 支拂된다. 從業員의 觀點에서는 이 便益으로부터의 收入에는 分明히 價値가 있고, 雇傭主의 觀點에서는 이 便益의 支拂은 分明히 勞動을 雇傭하는 費用이다. 이러한 理由로 國民經濟計定體系는 從業員의 俸給에는 그와 같은 「基金化되지 않은」 福祉分擔金を 위한 歸屬을 包含하지 않고, 家計消費支出에는 從業員對象의 歸屬支拂을 包含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SNA 파라그라프 7.17-7.18).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는 歸屬計算은 基金化된 베이스로 便益을 提供하는 것이 雇傭主에게 어느 程度의 費用負擔이 되는가에 따라 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便益을 위해 支拂되는 費用을 充當하기 위한 投資收益을 남겨 하기 위해서는 基金에다 어느 程度의 額數를 規則的으로 拂入해야 하는가 하는 計算을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推定은 매우 主觀的이라고 하는 것은 利子率, 年金과 便益의 調整, 便益을 받는 사람의 數 等과 같은 要素의 將來에 걸친 豫測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이다.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 敍述되고 있는 代替案은 實際로 支拂된 便益과 數量으로 分擔金を 計算하는 것이다. 이 方法은 簡單하다는 點에 長點이 있고 無基金福祉分擔金の 推定을 하고 있는 많은

國家에서 使用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第二의 方法은 確實히 未證明이라는 것을 根據로 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卽 發生한 債務에 代身해서 現時點의 費用支出을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 方法을 取하는 것 보다 오히려 現實에 일어나고 있는 去來만을 나타내는 것이 좋을런지 모른다. 大體로 無基金年金과 福祉分擔金에 對한 國民經濟計定體系의 歸屬計定은 그 去來者 / 去來基準을 侵犯하는 것이다.

雇傭主는 實際로는 分擔하고 있지 않으며 現時點의 支出은 實際로는 現行期間에 供給되는 便益費用과 一致하고 있는 것이다.

111. 損害保險의 取扱에 對해서는 多少 相異한 問題가 發生한다. 生命保險給付와 달리 損害保險給付는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는 受取人의 各期의 所得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혀 다른 種類의 많은 保險請求가 包含되고 있으며 이 모든것을 同一方法으로 取扱해야 하는가 어떤가는 明確치 않다. 第一의 分類는 所得補償이다. 여기에는 失業保險, 事故保險의 一部 그리고 保險에 들어있는 어떤 傷害때문에 잃었던 各期의 所得을 給付하는 일이 目的으로 되어 있는 同一한 支拂이 包含되고 있다. 그러나 또하나 다른 큰 範疇가 있으며 거기에서 補償되고 있는 것은 各期의 所得이 아니고 資本損失이다. 火災, 盜難 및 많은 種類의 盜難保險은 이 範疇에 들어간다. 이 支拂은 各期의 所得이 아니고 오히려 資本損失의 補充이다. 따라서 資本損失과 함께 貸借對照表의 變化로서 그것을 넣는 것이 보다 適當할지도 모른다. 保險請求 가운데 所得補償인 것은 年金에 매우 흡사하며 多分히 同一하게 다루어져야 하겠으나 資本補償의 保險請求는 전혀 다르다.

112. 資本品目으로서의 損害保險便益의 取扱에 對해서는 두가지 反對論이

나와 있다. 第一로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는 各期の 計定에 計上되는 固定資本의 消費中에 固定資本에 對한 偶發的인 損害가 包含되어 있다. 이 立場을 支持하고 있는 論議는 經濟全體로서는 多少라도 豫測할 수 있는 量의 事故損害가 發生하여 그 때문에 事故損害는 業務를 行하는데 있어서 各期の 費用의 一部라는 것이다. 그러나 生産의 그와같은 集計的인 觀點은 去來者 / 去來原則을 汙하게 된다. 例를 들면 같은 理由로 資本形成조차도 多少 豫測可能한 數量이 各年度에 行해지기 때문에 各期の 支出로 생각되게도 될 것이다. 도대체 火災와 같은 偶發的인 事故를 當하는 個別組織의 觀點에서는 損失은 分明히 資本損失이며 計定中에서는 그와 같은 것으로 取扱되어야 한다.

113. 第二로, 한쪽의 主體로부터 資本의 移轉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移轉을 他主體로부터의 資本의 移轉으로 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는 要求하고 있다. 따라서 保險給付를 資本受取로 取扱하는 것은 그것을 保險會社에 依한 資本支出로서 取扱하는 것과 連結된다. 이것은 分明히 바람직스런 結果가 못된다. 國民經濟計定の 이 要請에는 資本移轉의 受取나 支出을 導入하지 않고 計定の 貯蓄과 投資의 同一性을 維持하는 目的이 있다. 그러나 資本財 支出의 경우와 같이, 어떤 移轉이, 移轉의 當事者에게는 資本移轉으로 간주되고, 다른 한편의 當事者에게는 經常移轉으로 간주되는 것이 理論的으로 可能하다는 것이 分明하다. 眞正한 內容은 資本移轉後가 아니면 알 수 없다. 經常計定, 資本去來計定, 그리고 貸借對照表의 統合에 따라 많은 關心을 기울이게 되므로 資本移轉에 關聯되는 人工的인 制限은 점점 取扱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114. 結論 : 國民經濟計定體系는 私的인 年金 및 保險便益支拂이 家計의

經常所得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많은 國家에서 이와 같은 支拂이 重要性을 增加시키고 있는 것은 이 取扱의 適切性에 대한 疑問을 提起하고 있다. 이것에 直接으로 關聯된 疑問은 家計資産으로서의 私적인 年金保險資産의 取扱 및 이 取扱과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去來者 / 去來原則과의 符合性에 대한 것이다. 多少 關聯이 있는 疑問은 資本移轉을 포함하는 損害保險과 便益의 取扱에 關해 提起할 수 있다. 이들 問題는 더욱 明確化해서 取扱에 符合性을 가지게 할 必要가 있다.

(d) 회이난설·리이싱 (financial leasing)

115. 회이난설·리이싱의 話題에는 EUROSTAT에서나 OECD에서도 至大한 關心이 모여지고 있다 [22]. 設備의 購入을 金融을 하는 方法으로서 회이난설·리이싱을 使用하는 것은 近年 들어 (一部에서는 稅制上的 有利한 取扱때문에) 顯著하게 增加하고 있으며 一般的인 리스에 대한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取扱은 이미 適當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116. 회이난설·리이싱은 財貨의 所有者(貸者)와 財貨의 利用者(借者) 사이의 長期契約이며 거기에서는 借者は 相當히 長期間에 걸쳐 特定の 賃料 支拂에 對應하는 財貨를 占有, 利用한다. 그 賃料는 資本支出과 모든 補充的 費用 및 金融費用을 充分하게 카버한다. 維持修理費 및 리이싱에 關聯한 모든 危險費用은 借者에 依해 負擔되어 借者야말로 資産을 選擇하여 供給者와 去來한다. 貸者의 役割은 純粹하게 金融上的의 것이며 그 리이싱은 다른 金融方法(貸付 혹은 割賦購入)인 代替物이다.

117. 오퍼레이팅·리이싱(Operating lease)는 對照적으로 雙方の 當事者로서는 마켓트·서비스로 간주된다. 이 경우 리이싱은 短期이며 貸者가

리스를 위한 資本支出을 充分히 回復하는 것은 一般的으로는 期待할 수 없다. 貸者는 리스와 리스間에 修理와 오버홀(全面解體修繕)을 위하여 資産을 되찾도록 되어 있다. 리스·서비스의 彈力的인 供給을 維持하기 위하여 貸者는 當該 資産의 스톡을 一般的으로 維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이 貸者의 서비스는 金融上의 仲介에 限定되지 않는다.

118. 화이난셜·리싱에 대해 EUROSTAT와 OECD가 提案하고 있는 새로운 取扱은 다음과 같다.

(1) 第1次 리스가 契約될 때에는 貸者에 依해 特定目的용으로 供給되는 貸付에서 借者가 資産을 購入한다는 形式으로 取扱되어야 한다. 移轉은 借者의 貸借對照表와 貸者·借者 雙方的 資本調達計定에 記錄될 것이다.

(2) 賃料支拂은 借者에 依한 中間消費로서 取扱해서는 안되고 粗經常收益에 對한 手數料로서 取扱되어야 한다. 賃料支拂은 貸者 혹은 借者 어느편의 生産計定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固定資本 消耗用으로 總經常收益에서 控除되는 分은 借者에 依해 保有되고 貸者에게 支拂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3) 賃料支拂은 貸付元金の 償還과 貸付殘高의 金利支拂을 나타내는 두가지 部分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金利를 나타내는 部分은 借者和 貸者의 所得·支出計定에서는 借者로부터 貸者에게로 가는 實際金利의 支拂로서 나타날 것이다. 貸付資本의 償還을 나타내는 部分은 借者和 貸者의 資本調達計定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4) 리스된 財貨의 市場價値에 充分히 合當한 金額이 貸借對照表에 記錄되어야 한다. 이에 合當한 金額은 負債로서 金融計定에 記錄되고 여기에는 리스期間의 終期에 있어서 買入을 選擇할 경우의 價値도 包含되어

야 한다.

119. 以上の提案은 EC와 OECD雙方の加盟國에 依해 論議되어 原則的으로 承認되고 있다. 詳細한 것에 대해서는 未解決된 部分도 있고 해서 EUROSTAT가 그 檢討에 臨하고 있다.

120. 結論: 國民經濟計定體系에서는 오퍼레이팅·리이싱과 회이난설·리이싱을 區別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회이난설·리이싱은 本來 資産購入의 金融手段이지 眞正한 賃料가 아니라고 하는것이 一般的인 認識이다. 따라서 회이난설·리이싱을 오퍼레이팅·리이싱과는 相異하게 取扱 하는것이 適當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國民經濟計定體系의 리이스定義는 變更을 要하게 될 것이다.

(e) 交易條件

121. 1980年の 專門家會議에서는 相對價格의 變化를 인플레이션(혹은 一般的인) 價格變化에서 分離하는 方法의 研究가 有用할 것이라는 提案을 하였다. 交易條件의 計測은 이 問題의 特別한 경우이며 實質 GDP의 計測은 交易條件의 變化가 加味되어 있는가 어떤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런지 모른다. 價格과 數量統計의 가이드라인에서는 交易條件效果를 除外할 것을 勸하고 있으나 國際比較 프로젝트에서는 購買力 評價의 計測에 있어서 交易條件을 包含하고 있다는 事實도 있다. 더우기 商品價値의 最近 큰 變動으로 보아 交易條件의 變化에 따른 利得과 損失이 短期豫測에 있어서는 重要한 問題가 될 경우가 있다. 그러나 交易條件 變化의 計測方法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없고 많은 相異한 方法이 現在로서는 使用되고 있다.

122. 1960年代의 論議에서는 交易條件效果는 相對的으로 작고 輸出入價

格指數의 信賴度는 낮고 交易條件指數를 計測하는 努力은 그다지 價値가 없다고 하는 結論으로 된 때도 있었다. 이 狀況은 이제 달라졌다. 卽 問題는 더욱 重要하게 되고 統計信賴度는 어느 程度 改善되어 있다. 따라서 交易條件效果를 計測하려고 하는 새로운 試圖는 有用할런지 모른다고 專門家會議는 생각했다.

123. 結論 : 國民經濟計定體系는 輸出入價格과 數量의 比較를 하는데 있어 輸出入을 國內價格에 따라 實質化하고 있다. 그러나 交易條件에 대해 關心을 가진 다며는 相對價格의 變化와, 一般價格의 變化를 分離하는 것을 計定の 一般的인 構造속에 投入하기 위한 方法을 研究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註 -

[1] Adler, Hans. Selected Problems of Welfare and Production in the National Accounts. Paper prepared for the 17th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August 1981

[2] Aukrust, Odd, and Svein Nordbotten. "Files of Individual Data and Their Potentials for Social Research",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19, No.2, June 1973

[3] Blades, Derek W. "Survey of Country Practices in Compiling Balance-Sheet Statistic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26, No.3, September 1980

[4] Choudhury, Uma Roy. The U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Indian Experience, Paper prepared for the 17th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August 1981

[5]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Standing Commission



- on Statistics. Basic Methodological Regulations of Statistics, 1972
- [6] Ferran, Bernardo. Notes on National Accounts and Developing Countries. Paper prepared for the 17th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August 1981
- [7] Foulon, A. "Proposals for a Homogeneous Treatment of Health Expenditures in the National Account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28, No1, March 1982
- [8] Grootaert, Christiaan. The Conceptual Basis of Measures of Household Welfare and their Implied Survey Data Requirements. Paper prepared for the 17th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August 1981
- [9] Gutmann, Pierre. "The Measurement of Terms of Trade Effect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27, No.4 December 1981
- [10] Hibbert, Jack. Report on the Effects of Inflation on the Measurement of Income and Saving, prepared for EUROSTAT and OECD (Preliminary draft, January 1981)
- [11] Hill, T.P. Price and Volume Measures for Non-Market Services, Statistics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Doc OS/5/75, April 1975
- [12] \_\_\_\_\_. "Do-It-Yourself and GDP",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25, No.1, March 1979
- [1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raft, June 1974
- [14] \_\_\_\_\_. Balance of Payments Manual, 4th edition, 1977
- [15] Kravis, Irving B., Zoltan Kenessey, Alan Heston and Robert Summers. A System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ross Product and Purchasing Power,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5
- [16]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A Standardized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58. Revision and extension of A Simplified System of National Accounts, first published in 1950

- [17] Pathirane, Leila, and Derek W. Blades. Defining and Measuring the Public Sector :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Paper prepared for the 17th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August 1981
- [18] Petre, Jean. The Treatment in the National Accounts of Goods and Services for Individual Consumption Produced, Distributed or Paid For by Government. Paper Prepared for 17th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August 1981
- [19] \_\_\_\_\_. Le concept de la consommation totale de la population et ses incidences sur les valeurs, les volumes et les prix. Paper prepared for meeting o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Project, Luxembourg, 11-15 January 1982
- [20] Saunders, Christopher. "Measures of Total Household Consumption",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26, No.4, December 1980
- [21]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pean System of Integrated Economic Accounts(ESA), revised 1979. EUROSTAT/CA-28-79-415-EN-C
- [22] \_\_\_\_\_. Treatment of Financial Leasing in National Accounts, 21, May 1981. EUROSTAT/A1/CN/8-e
- [23] \_\_\_\_\_. Minutes of the Meeting of the 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 20 and 21 May 1981. EUROSTAT/A1/CN/12-e
- [24] \_\_\_\_\_. Proposals for Incorporating a Dual Breakdown of Final Consumption(By Sector Effecting the Expenditure and By Type of Consumption) into the ESA and the SNA, 13-14 October 1981. EUROSTAT/A1/C1/13-
- [25] United Nations. Measurement of National Income and the Construction of Social Accounts,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National Accounts of the League of Nations Committee of Statistical Experts, Studies and Reports on Statistical Methods No.7, 1974

- [26] \_\_\_\_\_.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 Series F, No.2, 1952
- [27] \_\_\_\_\_.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eries F, No.2, Rev. 3, 1968. Sales No.E.69. XVI.3
- [28] \_\_\_\_\_.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ISIC), Rev.3, 1968, Sales No.E.68. XVI.8
- [29] \_\_\_\_\_. Basic Principles of the System of Balances of the National Economy, Series F, No.17., 1971, Sales No.E.17. XVII.10
- [30] \_\_\_\_\_. Input-Output Tables and Analysis, Series F, No.14, Rev.1, 1973. Sales No.E.73, XVII.11
- [31] \_\_\_\_\_.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Rev.2, 1975, Sales No.E.75.XVII.6
- [32] \_\_\_\_\_. Towards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Series F, No.18, 1975. Sales No.E.74. XVII.8
- [33] \_\_\_\_\_.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All Goods and Services (ICGS); 1975. E/CN.3/493
- [34] \_\_\_\_\_. Report of the Interregional Seminar on the Revised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77. DP/UN/INT-72-104
- [35] \_\_\_\_\_. Comparisons of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the System of Balances of the National Economy. Part One: Conceptual Relationships. Series F, No.20, 1977. Sales No.E.1977. XVII. 6
- [36] \_\_\_\_\_. Guidelines on Principles of a System of Price and Quantity Statistics, Series M, No.59, 1977. Sales No.E.77.XVII.9
- [37] \_\_\_\_\_. Provisional International Guidelines on the National and Sectoral Balance Sheet and Reconciliation Accounts of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eries M, No.60, 1977. Sales No.E. 17. XVII.10
- [38] \_\_\_\_\_. Provisional Guidelines on Stat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Consumption and Accumulation of Households, Series M, No.61, 1977. Sales No.E.77. XVII.11

- [39] \_\_\_\_\_. The Feasibility of Welfare-Oriented Measures to Supplement the National Accounts and Balances: A Technical Report, Series F, No.22, 1977. Sales No.E.77. XVII.12
- [40] \_\_\_\_\_. Social Indicators: Preliminary Guidelines and Illustrative Series, Series M, No.63, 1978. Sales No.E.78. XVII.8
- [41] \_\_\_\_\_. Review of Countries Experiences in Implementing the Revised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78. E/CN.3/507
- [42] \_\_\_\_\_. Total Consumption of the Population: Technical Report, 1978. E/CN.3/512
- [43] \_\_\_\_\_. Progress Report on Harmonization of Economic Classifications, 1978. E/CN.3/514
- [44] \_\_\_\_\_. Studies in the Integration of Social Statistics: Technical Report, Series F, No.24, 1979. Sales No.E.79. XVII.4
- [45] \_\_\_\_\_. Manual on National Accounts at Constant Prices, Series M, No.64, 1979. Sales No.E.79. XVII.5
- [46] \_\_\_\_\_. Manual on Producer Price Indices for Industrial Goods, Series M, No.66, 1979. Sales No.E.79. XVII.11
- [47] \_\_\_\_\_. Improving Social Statistics in Developing Countries: Conceptual Framework and Methods, Series F, No.25, 1979. Sales No.E.79. XVII.12
- [48] \_\_\_\_\_.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Data Bases for Social, Economic and Demographic Statistics, Series F, No.27, 1979. Sales No.E.79. XVII.14
- [49] \_\_\_\_\_. National Accounting Practices in Seventy Countries, 3 vols., Series F, No.26, 1979. Sales No.E.79. XVII.19
- [50] \_\_\_\_\_. Guidelines on Statistics of Tangible Assets, Series M, No.68, 1979. Sales No.E.80. XVII.2
- [51] \_\_\_\_\_.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 and Balances. Report of the Ninth Session Held in Geneva 13-17 February 1979. CES/WP.22/55
- [52] \_\_\_\_, \_\_\_\_, \_\_\_\_. Report of the Tenth Session Held in Geneva 25-28 February 1980. CES/WP.22/63

[53]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Expert Group on Future Directions for Work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7 May 1980. E/CN.3/AC.9/5

[54] \_\_\_\_\_. Future Directions for Work o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1980. E/CN.3/541

[55] \_\_\_\_\_. Relationship of the Revised System of National Accounts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Balance of Payments Manual, 1980. E/CN.3/542

[56] \_\_\_\_\_. Progress Report on the Harmonization of Economic Classifications, 1980. E/CN.3/545

[57] \_\_\_\_\_. The Role of Macro and Micro Data Structures in the Integration of Demographic, Social and Economic Statistics, 1980. E/CN.3/552

[58] \_\_\_\_\_.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 Series M, No.70, 1980.

[59] \_\_\_\_\_. An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structions and Definitions for the National Accounts Questionnaire, 1980

[60] United Nations. Draft Report on the Review of the External Transactions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80. ST/ESA/STAT.103

[61] \_\_\_\_\_.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ficial Records, 1981. Supplement No.2. E/CN.3/564

[62] \_\_\_\_\_. A Review of Proposed Changes to SNA in Respect of External Transaction (Country Replies and UN Position), 1982. ESA/STAS/AC.15/4

[63] van Ginneken, Wouter. Generating Internationally Comparable Income Distribution Data: Evidence from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974), Mexico (1968) and the United Kingdom (1979).

Paper prepared for the 17th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August

1981. Contains a review of international work on income distribution.

[64] Van Tongeren, Jan W. "A Review of Selected Aspect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of National Accounts in the Light of Countries' Experienc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25, No. 2, June 1979

[65] Vanoli, Andre. "Les notions de consommation elargie", Economie et Statistique, No.100, May 1978

### 3. 計定構造와 部門分割

#### (a). 計定構造

124. SNA의 計定構造는 去來者를 二重으로 分類하는 方法에 따르고 있다. 하나의 計定은, 經濟活動分類(産業)에 따른 事業體타입의 單位이고, 다른 하나의 計定은 金融上の 役割과 行動에 따른 制度部門에 依해 分類된 企業타입의 單位이다. 經濟活動 分類計定은 生産, 消費, 支出 그리고 資本形成(크라스II)에 關聯된다. 制度部門으로서는 所得支出, 資本調達, 調整 및 貸借對照表計定이 提供된다(크라스III, VII). 一國(크라스I)의 綜合計定에만 生産計定과 支出計定の 關係 및 所得計定과 處分計定の 關係가 주어진다.

125. 生産과 關聯活動에 對한 活動分類別計定の 制限은 事業體타입의 單位에는 金融上の 獨立性이 없는 것에 따른 것이다. 만약 그것이 보다 큰 企業의 一部이면 그것은 通常 金融上の 意思決定의 中心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 資産, 負債를 母企業이 同一한 他事業體의 資産, 負債와 分離하는 것은 不可能할 것이다. 따라서 活動分類에 依한 事業體의 完全한 計定을 만드는 것은 不可能할 것이다.

126. 그러나 制度部門에 따라 分類된 企業에는 그와같은 制限이 適用되지 않는다. 生産, 所得支出, 資本調達, 調整 및 貸借對照表를 包含하는 計定の 構成은 概念的으로 有用하고, 統計的으로 作成 可能하기도 하다. 計定の 그와같은 完全한 構成은 分析上 여러가지 目的을 위해 매우 有用하다. 이리하여 예컨대, 相異한 制度部門에 依해 支拂되는 被傭者報酬를 決定하는 것은 生産計定이 相異한 制度部門에 대해 作成되지 않는 限 不可能하다.

127. ESA는 生産計定을 活動分類와 制度部門의 雙方을 위하여 提供하고 있는 것이다. 最近의 UN/OECD 國民經濟計定質問書의 改正은 制度部門用的 生産計定도 導入하였다. 그러나 ESA計定과 UN質問書로 採用된 計定과의 사이에는 相異한 것도 남아있다. 이中 어떤 것은 內容上이라기보다 表現上의 問題로 이와같은 問題가 解決된다면 統計作成者와 利用者 모두에게 有益할 것이다. UN/OECD 共同의 國民經濟計定質問書는 EUROSTAT의 要求에 應할 수 있도록 擴張되어야 한다는 提案이 자주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提案이 實現可能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128. 制度部門用 生産計定の 提供에 追加하여 SNA의 文脈에서 생각될 수 있는 ESA計定 構造의 또하나의 모양이 있다. 純營業剩餘(Net Operating Surplus)가 아니고, 바란스項目으로서 租附加價値를 가져오도록 生産計定을 構成하는 일이다. 附加價値는 本質的으로 營業剩餘보다도 有益하고 또한 興味깊은 數字이며 活動種類分割에 있어서 基本的인 數字이다. 國際聯合 國民經濟計定質問書의 第四部는 默示的으로 그와 같은 生産計定을 4.1 및 4.5 表에 包含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標準(크라스Ⅱ) 構造의 部分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

129. 結論的으로 SNA는 制度部門用 生産計定을 明確하게 하지 않으나 그와 같은 計定은 ESA에 포함된다. ESA의 生産計定은 SNA의 生産計定과는 多小 相異한 情報를 提供한다. SNA와 ESA의 計定構造를 보다 相互 密接한 連結이 있는 것으로 하여나가는 것에 대한 實現可能性을 檢討하는 것은 有益할 것이다.



(b) 企業과 家計의 部門分割

130. 各國制度間的 커다란 差異를 調整하고자 1968 年의 SNA는 法人과 非法人企業의 中間에 準法人(Quasi-Corporat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企業概念을 導入하였다. 이 概念은 形式上으로는 法人化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法人과 같이 行動하는 企業도 있다는 것을 認識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131. SNA는 어떠한 企業을 準法人으로 볼 것인가 하는데 대한 指針을 주고 있다. 準法人으로 分類되기 위해서는 企業의 所得支出 및 企業에 關係되는 모든 有形資産·負債와 金融資産·負債가 獨立되어 있고 또한 分離되어 統制·管理되어 이들 項目의 모든것에 대해 完全한 記錄이 入手可能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各國은 이 規定이 使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法人 및 準法人部門에 있어서는 公共準法人만을 包含하고 나머지는 家計部門으로 包含시키는 國家도 있다. 準法人을 전혀 考慮하지 않고 모든 公共非法人企業을 一般政府部門에 包含시키고, 모든 私的 非法人企業은 家計部門에 包含시키고 있는 나라도 있다. 非法人企業을 모두 準法人範疇에 넣고, 實際로는 1952 年 SNA의 企業概念을 維持하고 있는 國家도 있다. SNA가 表明하려고 했던 問題는, 그와 같은 事實에도 불구하고 深刻한 問題이며 解決이 必要하다.

132. 家計部門에 있어 準法人에 該當하지 않는 私的 非法人企業을 SNA에서 는 그대로 남겨놓고 있다. 이로 因하여 生産計定과 所得支出計定에 困難이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는 것은 SNA에서 한편으로는 家計에서 生産計定이 없고 다른한편으로는 非法人企業에는 所得支出計定이 없기 때문이다.

133. 그러나 部門의 定義에 依해 問題가 發生하는 것은 資本調達計定과 貸借對照表計定에 있어서이다. SNA에서는 小規模 非法人企業의 所有者는「企業活動과 企業以外の 活動을 위한 金融去來나 資産保有를 區分하지 않고 管理하는 일이 많다.」( 附錄 5.72) 고 하므로 家計와 小規模 非法人企業을 分離하는 것은 不可能하다는 立場을 취한다. 이 論議는 一見 合理的으로 보이지만 實際로는 家計와 小企業에는 各各 相異한 金融形態가 使用되고 있으며 ( 例컨대, 消費者債務과 企業債務), 金融후로를 分析하기 위하여 有益한 分離方法을 취할 수는 있다. 實際 金融統計, 貸借對照表 및 國民經濟計定과의 統合에 關心을 가지는 者가 論하는 것은 다음 點과 같다. 卽, 實行이 眞實로 不可能한 것은 小企業의 金融活動을 大企業의 金融活動과 分離하는 일이며 ( 例컨대, 企業規模에 依한 企業債務의 分離, 企業規模 大小의 區分點), 이 分離는 만약 小企業이 家計部門內에서 維持된다고 하면 마땅히 必要한 것일 것이다. 家計의 貸借對照表에 나타나야 할 것은 小企業의 營業剩餘가 그 生産計定에서 引出되는 것과 同一한 方法으로 小企業의 貸借對照表에서 引出된 所有者의 純持分 (Net equity) 이다. 非法人企業만의 貸借對照表를 作成하는 것은 家計의 貸借對照表에 나타나는 純持分을 變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家計의 貸借對照表 가운데 家計資産에서는 農地, 商店備品 (Store Fixture), 小企業에서 使用될 것으로 생각되는 在庫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될 것이며 家計의 負債에서는 企業債務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134. ESA에서는 非法人企業에서 私的準法人을 分離하기 위해서, 規模의 基準을 定하고 있다. 이 基準에서 準法人이 되기 위해서 農業에 있어서는 적어도 20名, 工業에 있어서는 적어도 100名, 서비스業에 있어서는 적

어도 50 명의 從業員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 이 基準에는 물론 私的準法人을 전혀 例外的인 狀況으로 하는 效果가 있다. 많은 國家에서 準法人으로 認定될 程度의 큰 非法人企業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그리고 分명한 일이지만 組織의 規模와 法的 形態에 따라 分類된 必要데이터는 때로는 入手不可能하므로 이 適用에 대해서는 問題가 發生하고 있다.

135. 事實 데이터의 出處를 考慮해 본다면 金融統計에서는 무엇인가 金融手段에 대해 組織의 法的 形態나 賃借者 내지 保有者規模의 分布에 關한 情報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企業에 關係하는 金融手段과 家計에 關係하는 金融手段을 區別하는 편이 容易하다. 마이크로데이터 出處에 대해 보면 家計調査나 企業에 關聯하는 諸情報을 包含하여, 이것 또한 家計와 企業을 區分하는 部門定義의 편이 規模와 法的 形態에 따라 企業을 分類하는 定義보다도 훨씬 다루기 쉽다.

136. 結論的으로 SNA는 法人과 準法人企業을 포함하는 非金融法人部門 및 非金融非法人企業을 包含하는 家計部門을 定義하고 있다. 準法人과 非法人企業을 區分하는 基準은 充分히 滿足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非法人企業을 家計에다 包含시키는 데에는 金融統計와의 關係에서 問題가 있다. 이 같은 點에 대해서는 企業과 家計를 위한 보다 適切한 部門分割의 開發與否를 檢討하여 決定해 나갈 必要가 있다.

#### (c) 公共部門

137. SNA는 本文 中에서 公共部門을 明確히 다루고 있지 않다. 開發途上國指向의 補助物인 公共部門이 第9章에서 論議되고 있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에만 公共部門의 情報가 重要한 것은 물론 아니다. 많은 나라

에서 모든 水準의 公共當局은 必야호로 經濟·社會의 兩問題에서 커다란 役割을 다하고 있다. 現代社會의 이와 같은 事實에서 말할 수 있는 것中的 하나는 經濟·社會의 非公共部門에 對한 公共部門 活動의 效果를 分析하여 公共部門 活動의 效果에 關한 情報를 社會의 一般的 利益을 위해 政府가 어떻게 行動하는 것이 最適인가를 決定하는 責任이 있는 사람들에게 提供하기 위한 새로운 方法을 找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國民經濟計定은 물론 去來者로서의 公共主體를 묘사하는 것에만 關係한다. 이것은 國家 全體에 對한 公共部門 活動效果의 一部에 不過하다고 認識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하는 것은 國民經濟計定에서는 規制的 性質의 活動을 無視하고 있기 때문이다.

138. 統計利用者로부터의 需要때문에 이 件에대한 新SNA에서의 論議를 補充하는 公共部門統計의 매뉴얼作成에대해 國際聯合統計局에서 他件에 앞서 作業이 開始되었다. 이 作業에서 많은 問題가 나타나게 되었다. 重要的 것은 公共部門의 範圍와 그 要素가 어떻게 全體를 構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139. 핸드북 第4卷에서 定義되고 있는 公共部門은 一般政府和 公共企業으로 構成된다. 그리고 一般政府는 政府서비스生産者和 公共企業으로 構成되어 있다. 公共企業은 新SNA에서 明確한 形態로 認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一般政府(制度部門)와 政府서비스生産者(活動種類別部門)와의 差를 構成하므로 暗黙의 形態로는 新SNA에 들어가 있다.

140. 一般政府和 政府서비스生産者를 區別하는 SNA의 目標은 「때때로 企業組織에 依해 提供되는」種類的 財貨, 서비스를 公衆에게 販賣한다던가 政府自身에게 供給하는 政府部門, 組織等を 政府서비스生産者가 除外하고 있는

것을 明確하게 하는 것이었다(SNA 파라 5.10 - 5.12). 그리고 政府部門, 組織 等은 특히 그 生産의 評價와 活動種類別分類의 目的으로는 企業組織과 같이 取扱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이 政府活動에는 두개의 小分類가 있다고 하였다. 卽, 첫째로 그 生産한 財貨·서비스가 他政府部門에 供給되는 것(補助機關으로 불리운다)과 둘째로 그 生産한 財貨·서비스를 公衆에게 販賣하는 것이다. 後者は 小規模 그리고, 혹은 不完全한 計定이기 때문에 公共準法人에서 除外되고 있는 非法人公共企業과 같은 것이다. 첫째, 小分類의 典型的인 例는 修理店, 印刷局, 軍需品工場이다. 두번째의 小分類의 例는 보통은 規模는 작지만 公共建物가운데 食堂이다.

141. 그러나 政府活動과 私的企業活動 雙方の 複雜성이 增大됨에 따라 어떤 補助的 活動이 「企業組織에 依해 提供되는」타입인가를 決定하는 것이 더욱 困難하게 되었다. SNA에서 特히 言及되고 있는 農業, 工業 및 建設業活動에 追加하여 行政的, 法的, 人事管理, 計算, 財産管理, 自然保護, 廢棄物蒐集 等の 政府에 依해 行해지는 서비스는 企業組織에 依해 實行되는 行動과 거의 모든 點에서 同一하다. 政府서비스生産者로서의 活動以外の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政府서비스生産者の 活動에서 除外하려고 하는 것은 防衛를 除外하고 거의 政府서비스生産者の 領域에 殘餘되는 것이 없으므로 防衛조차도 疑問點이 있으므로 生産的이 못 되는 것 같다.

142. 그리고 補助機關의 生産이 다른 政府單位에게 供給되는 경우에는 그 價格이 眞正한 市場價格을 反映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 사는 사람(買者)이나 파는사람(賣者)도 같은 組織內에 있기때문에 疑問이 될런지 모른다. 價格이 市場價格을 反映하고 있지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當該單位의 產出로서 計上되어서는 안된다. 이리하여 그와 같은 單位를 政府서비스生産

者와 區別하는 主된 理由는 가끔 없어진다.

143. 따라서 補助機關을 때때로 企業에 依해 生産되는 타입의 產出을 生産할 뿐만아니라 價格을 競爭的으로 붙이고 있는 機關에만 限定하여야 한다는 것은 合理的이라고 생각된다. 價格이 市場價格과 다르다든가, 市場價格에 關한 情報가 缺如되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와같은 單位를 政府서비스生産者에 包含시키는 편이 適切할 것이다.

144. 一般的으로 販賣하는 政府部門企業에 關해서도 問題가 發生한다. 그와 같은 單位는 主로 그 單位의 움직이는 方法에 따라 한편으로는 公共準法人과 다른 한편으로는 政府서비스生産者와 區別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와 같은 單位의 規模가 크고 母機關計定으로부터 分離된 完全한 計定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公共準法人으로 간주되어 政府部門企業(그리고 一般政府)에서 除外되어야 하는 것은 SNA의 明白한 內容이다. 이것은 비록 그 單位가 그 모든 利益을 轉用하도록 要請되고 있다든가, 비록 그 資本需要가 母機關으로부터의 供給에 依해 充足되어 있다고 하여도 事實이다.(그와 같은 경우 問題의 機關은 完全한 生産計定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所得支出計定 및 資本調達計定은 運轉資金과 事業活動을 위한 受拂計定에 限定될지도 모른다) (SNA, 5.1 表의 1(b)), 비록 그 單位가 公共政府의 問題로서 그 全費用을 커버할 수 없는 價格에 그치는 政策을 採用하여 補助금이 必要하게 되어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또한 事實이다(SNA 과라, 5.10). 그러나 물론 補助金規模에는 어떠한 制約이 있으며 Public Sector Statistics의 매뉴얼에는 販賣價格이 製品코스트의 切半未滿을 커버하는데 不週할 때에는 事實上 無料로 分配되고 있으며 單位가 政府서비스生産者機能을 하고 있다고 보는 約束이 採用되고 있다.

145. SNA에서는 여러가지 點에서 法人과 같이 行動하는 「큰」 非法人 企業만이 準法人이 되고 「작은」 公共單位는 一般政府部門에 남는다. 그러나 狀況은 國家마다 특히 開發段階가 相異한 國家마다 크게 달라져 있으므로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가의 正確한 數値를 말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그래서 實際的인 基準은 分離된 適切한 計定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母機關活動에 附隨되는 小規模 活動에는 그와 같이 分離된 計定은 거의 存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推定하고자 試圖하는데에 統計作成者의 時間과 努力을 기울이기에는 그다지 意味가 없을 것이다. 計定이 없으면 準法人으로 取扱할 수가 없다.

146. 公共企業으로 取扱되어야 할 小規模販賣活動을 政府서비스生産者에 附隨하는 活動으로서 取扱해야 할 것과 區分하는 것은 더욱 困難하며 특히 各國의 經驗으로 보아 價値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點이다. SNA 基準은 營業剩餘를 引出할 수 있는 完全한 生産計定을 作成할 수 있는지 없는지이다. 規模를 別個로 한다면 그것은 公共準法人을 區別하기 위하여 使用되는 基準과 實際上 同一하며 그와 같은 計定이 容易하게 入手할 수 있는 單位는 準法人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計定이 人手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活動은 政府서비스生産者로서 取扱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實際로는 이 公共企業의 小分類는 작거나 存在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各國의 經驗으로 이것이 事實인 것이 確認되고 있다.

147. 이리하여 分析上 및 統計上 雙方의 理由로 政府部門企業의 概念을 버리고 當該單位를 (1) 公企業이나, (2) 政府서비스生産者로서 分類하는 데는 그 前에 解決해야 할 많은 論點이 있다. 만약 當該販賣가 大量이고 또한 費用을 回收하려고 하며, 販賣者와 購買者間의 對等한 立場을 나타내는 것

이라면 주로 政府에 販賣하고 있는 補助機關일지라도 準法人公共企業으로 간주하는 것이 適當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販賣가 偶發적이었던가 費用을 回收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當該活動은 政府서비스生産者의 活動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活動計定에서 政府서비스生産者는 制度部門計定에서 一般政府와 合致한다. 그렇게 하면 2個의 相異한 用語를 維持할 理由는 없고 雙方 共히 一般政府 혹은 簡單하게 「政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148. 制度部門의 「一般政府」는 社會保障基金에 關聯하는 部門과 政府의 여러가지 레벨로 再分割된다. 社會保障基金部門은 基金化된 社會保障計劃을 管理하는 政府組織으로 成立되어 있다. 커뮤니티用 혹은 例컨대 老人, 身體障礙者나 寡婦에게 주는 給付, 醫療費의 後拂,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醫療서비스提供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커뮤니티의 큰 部門에 社會保障給付를 行하는 目的으로 政府에 賦課되고 政府에 依해 統制될 計劃이다. 그러나 社會保障基金에서는 雇傭主로서의 役割을 다하는 政府機關에 依해 作成된 公務員을 위한 計劃 및 私企業에서 그 從業員을 위하여 供給되는 同種의 計劃을 除外하고 있다.

149. 政府로서 取扱되어야 할 社會保障基金과 公共 내지 私의 金融機關으로서 分類되어야 할 社會保障基金과를 區分함에 있어서는 境界의 問題가 發生한다. SNA에서의 區分은 주로 管理基準에 따른다. 實際로는 政府에 依한 完全한 金融과 統制에서 公的統制・公的金融이 전혀 없는 完全한 獨立까지 여러가지 制度가 있다. 基金이 存在하지만 搬出과 便益의 레벨을 調整하는 것은 政府의 機能이고, 基金의 裁量 範圍外라고 할 경우에는 基金은 分明히 政府에 包含되어야 한다. 그러나 政府에 依해 統制되는 他用途指定基金의 경우와 同一하지만 그것을 副部門으로 分離해서 생각해야 할 理



由는 없다고 생각된다. 基金管理者가 資本市場에서의 運用에 대해 裁量的인 權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運用의 結果에 따라 據出 및 (혹은) 便益이 決定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基金을 金融機關-公共인가 私的인가는 基金管理者의 選出方法에 따른다.-으로 取扱하는 것이 可能하게 된다. SNA는 이 取扱을 권하고 있지 않다 (과라 5.27 와 5.57). 그러나 制度上的 慣行은 1968年 以後 期間에서 多少 變化되어 왔으며 몇개의 例外도 正當化되어 있을런지 모른다. 強制的計劃은 徐徐히 私的年金·保險計劃으로 바뀌고 있다. 公的管理의 程度가 비록 分擔金과 受惠金에 어떠한 規制가 있다고 해도 私的保險을 添加한다고 하는 要請에 限定될 경우에는 當該計劃은 完全하게 公共部門에서 除外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볼 수 있다. 社會保障을 擔當하는 獨立의 公共金融機關이 存在할 경우에는 그것은 公共部門에 包含해야 하겠지만 一般政府部門에서는 除外하는 것이 理致에 맞는다고 생각된다. 이리하여 一般政府 中の 社會保障副部門이 正當化되는 狀況은 實際로는 없을런지 모른다. 社會保障基金副部門이 存在하는가 아닌가의 問題는 歲入의 源泉으로서의 社會保障分擔金과 歲出으로서의 社會保障受惠金과를 區別하는 問題와는 물론 別個의 問題이다. 이것은 SNA의 一般政府所得支出計定에는 明白히 나타나 있다.

150. 政府서비스生産者를 一般政府和 區別하기 위하여 많은 注意를 하고 社會保障副部門을 定義하려고 하는 試圖에도 不拘하고 政府의 歲入과 歲出에 관한 新SNA의 分類에는 分析上 有用性的 觀點에서 많은 點이 남겨져 있다. 新SNA에는 事實上 歲入의 分類가 없다. 公共部門統計의 不一致에 대한 論議에서 보는 바와같이 一致性的 問題가 얼마간 發生하지만 公共部門 매뉴얼에서는 歲入에 대해 IMF分類를 採用하고 있다. 機能別 政府歲出分類

(COFOG)의 改正版이 1980년에 出版되어(58), 機能別, 形態別 政府歲出에 대한 새로운 表가 改正된 國際聯合 및 OECD 質問書에 포함되어 왔다.

151. 結論: SNA에서는 「政府서비스生産者」라는 活動種類分類와 「一般政府」라는 制度部門分類를 定義하고 있다. 이 分野에서의 SNA 定義는 各國間에 同一한 取扱을 保證하는 充分한 指針이 되지 못한다. 이들 範圍間에 差異는 概念上的 定義, 統計的인 計測, 혹은 分析上 正當化가 困難하게 되었다. 同時에 SNA에서는 歲入의 分類와 같이 本來 必要한 몇개의 分類를 提供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으며 歲出타입에 依한 分類와 같이 그 分類를 더욱 明確化할 必要가 있는 것도 있다. SNA에서 하고 있는 區別이 正當하며 實用的이고 使用하기 容易한가에 대해서도 考慮해야 할 必要가 있다. 社會保障基金副部門도 어떤 狀況下에서 그러한 部門이 存在한다고 할 것인가에 대해 더욱 分明히 할 必要가 있다.

(d) 部門分割에 關한 그밖의 論點

152. SNA의 部門分割이 充分치 못한 點이 아직 두가지 있다. 卽, (1) 非營利法人이 主要部門으로서 家計나 一般政府와 同水準으로 取扱되고 있으며, (2) 모든 企業活動에 대한 情報를 集約하는 全體的인 企業部門이 存在하지 않는다.

153. 主要部門으로서의 非營利法人을 取扱하는 것은 非營利法人에 關한 데이터가 一般的으로 入手不可能하기 때문에 많은 國家에게 困難을 提起하고 있다. 이 結果 SNA의 部門分割體系를 嚴格히 따르는 것은 主要한 去來의 흐름의 部門別分割이 入手不可能한 것을 意味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非營利部門의 相對的인 規模를 바탕으로 한다면 大部分의 國家에서는 SNA에서

要求하는 이와같은 데이터를 入手하기 위하여 사람과 돈을 使用할 價値가 있다고는 생각지않고, 非營利機關은 데이터의 缺如때문에 어딘가 他部門에 포함시키고 있다. 많은 경우 非營利機關이 어디에 包含되는가는 使用되는 統計的 出處의 性質에 크게 依存하게 되므로 分明치 않다. 建設 내지 建物의 賃貸, 從業員의 雇傭, 그리고 中間財貨서비스 購入에 대한 非營利法人의 支出은 企業에 대해 그와같은 데이터를 報告하는 것과 같은 統計出處에 포함되는 傾向이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非營利機關이 家計와 같은 財貨서비스를 購入하여 家計支出이 諸計定에서의 殘差로서 決定될 限界에 있어서 이 家計支出에는 非營利機關이 支出하고 있는 것과 같은 財貨서비스도 包含하게 될 것이다.

154. 主要部門으로서의 非營利機關에 대한 SNA의 取扱은 이리하여 一般的으로는 必要하지 않고 通常은 入手不可能한 詳細데이터를 主要計定에 導入할 것을 要請하고 있으며 SNA 部門分割體系의 보다 一般的인 問題, 卽, 經濟主要部門에 대해 滿足할 수 있는 要約情報가 缺如되어 있다는 問題를 端的으로 나타내는 一例로 되어 있다. 특히 法人, 準法人非金融企業, 金融機關, 그리고 現在 家計와 一般政府部門에 包含되어 있는 非法人企業을 모두 合한 全 企業部門은 매우 有益할 것이다. 이것이 만약 行하여진다면 이 企業部門에 附加되는 小部門으로서 非營利機關을 包含하는 것이 適當할 것이다. 大學, 病院, 研究機關과 같은 많은 非營利團體의 活動相은 公的 내지 私的 企業과 매우 類似하며 그 所得, 支出은 家計의 所得·支出과는 매우 相異하다. 그것을 一般政府에 包含하는 것은 可能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政府의 行動을 分析하기 위한 一般政府計定の 有用性を 減少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더우기 集計된 企業部門이 敎果書의 競爭모델에 따라 움직이는 私

的인 利潤追求企業家の 同質的인 그룹으로 成立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利潤最大化 以外の 생각으로 動機가 된 管理者에 依해 때로 運營되는 非金融公的企業, 中央銀行, 年金基金과 같은 넓은 活動範圍를 包含하고 있다. 非營利團體를 副部門으로 包含하는 것은 이미 存在하는 副部門間의 異質性을 增加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155. 結論적으로 SNA에서는 一般企業部門을 規定하지 않고 企業을 3個의 主要部門으로 分割하고 있다. 더우기 家計에 서비스를 提供하는 民間非營利團體는 대개의 國家에서 規模가 相對的으로 적고 適當한 情報의 入手는 困難함에도 불구하고 主要部門으로 取扱되고 있다. 部門分割을 若干 바꿈으로써 部門間의 關係가 分明하게 되고 經濟에 대한 보다 有益한 方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點에 대해 考慮해야 할 것이다.

#### 4. 計定の 擴張

##### (a) 四分期別計定

156. 四分期別 國民經濟計定은 많은 國家에서 經濟의 短期的인 動向을 보기 위한 重要な 政策道具로 되어 있다. 雇傭, 物價 및 小賣販賣의 月別時系列은 存在하지만 一般的으로는 綜合的인 國民經濟計定情報가 提供되는 最短期間은 四分期이다.

157. 新SNA에서는 四分期메이스로 入手可能한 要約國民經濟計定을 4個의 크라스 I 計定이 提供하도록 示唆하고 있다. 그러나 크라스 I 計定은 대개의 短期的인 現狀把握과 豫測의 目的으로는 지나치게 統合되어 있어 效果的이 아니다. 그리고 例컨대, 크라스 I 計定은 政府와 家計部門을 포함하는 完全한 部門間 相互關係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企業의 稅金控除後所得, 家計貯蓄,

그리고 政府部門바란스의 過不足에서 본 貯蓄의 構成은 提供되고 있지 않다. 企業과 家計에 依한 直接稅支拂은 나와 있지 않고 家計에 對한 政府의 移轉支出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政府의 歲入과 歲出의 四分期데이터가 存在할 경우는 많고 政府의 所得支出計定の 基本的要素를 構成하는 것은 可能하다. 마찬가지로 他行政上の 데이터 및 家計나 雇傭者를 對象으로 한 調査를 利用하여 賃金·俸給支拂이나 他家計所得의 推計를 하고 있는 나라도 많다. 消費支出의 四分期變化는 때로 小賣販賣調査에 따르는 것이며 完全한 四分期 家計의 所得支出計定은 構成可能하다. 外國貿易데이터와 國際收支情報도 通常 四分期로 入手할 수 있다. 따라서 短期動向을 目的으로는 SNA 크라스Ⅰ計定보다도, 分析上 本質적으로 보다 有用한 四分期別 國民經濟計定을 構成하는 것은 可能하다.

158. 다른 한편 SNA의 크라스Ⅱ와 크라스Ⅲ의 計定에서 要求되는 詳細 데이터는 通常 四分期베이스로는 入手不可能한 것도 明白하다. 그러므로 産業別의 詳細한 生産計定, 家計와 一般政府 以外에 制度部門 所得支出計定과 資本調達計定の 데이터는 四分期베이스로는 一般的으로 入手할 수 없다. 이와같은 理由로 新SNA에서는 各國이 國內에서 利用上 中間의인 段階에서 統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認識하고 있다(SNA Para. 1.76~1.82). 그러나 新SNA 自體는 그와같은 國民經濟計定の 四分期別體系의 性質에 대해서는 거의 指針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159. 四分期計定の 設計에 있어서는 2個의 基準을 생각할 必要가 있다. 첫째로, 情報의 種類와 詳細함의 程度에 關한 利用者의 分析上 必要는 어떠한가, 둘째로, 四分期推計를 하기 위한 데이터入手可能性은 어떠한가, 또한 그것이 計定の 形態에 어떻게 影響을 미치는가이다. 各國의 經驗에서 보면

이와같은 2개의 基準에는 矛盾되는 面이 있으며 四分期計定에 있어서의 情報로는 分析者가 眞正으로 얻고자 하는 程度에는 미치지 못하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다. 어느 程度까지 統計體系를 必要로 하는 데이터를 穽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調查를 한다든가 새로운 種類의 行政情報를 作成한다든가 함으로써 이 要求에 答하고 있을런지 모른다. 이렇게 各國에서 行한 四分期別 計定은 短期데이터의 必要성과 推計에 使用되는 資料出處와 方法開發의 相互作用을 反映하여 變化하는 過程을 反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0. 各國慣行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四分期 國民經濟計定體系에는 共通되는 點이 많이 있다. 첫째로, 計定에 採用되고 있는 合計는 經濟全體를 包括하는 것으로서 全體中의 어떤 部分을 包括하는 것이 아니라 意味에서 綜合的이다. 둘째로, 計定の 틀은 經濟의 各部分 相互間 또는 經濟全體와 어떻게 關聯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一致性, 그리고 統合된 情報의 組合을 提供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끝으로 四分期別計定은 비록 그 內容이 年計定보다 大略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쌓여서 每年度의 國民經濟計定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SNA 四分期別 計定은 SNA 體系의 小部分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161. 그러므로 크라스I計定과 크라스II計定 및 크라스III計定の 사이에 있는 四分期別計定은 經濟시스템을 잘 概觀하려는 目的 뿐만 아니라 短期分析을 위한 基礎 提供에 必要하다. 國際聯合 및 OECD의 國民經濟計定質問書는 年度데이터를 위한 諸計定の 要約을 提供하고 있으나 四分期베이스로 入手할 수 있는 種類의 데이터를 생각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短期分析의 要求에 答하려고 한것도 아니었다. 이 問題는 四分期別計定을 開發하여온 各國의 經驗에 依해서만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162. 結論적으로 SNA에서는 四分期計定の 基礎로서 適切한 要約計定の 組合을 提供하고 있지 않다. 그와같은 計定の 作성과 利用에 대한 各國의 經驗은 適當한 指針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매우 有用하며 이 問題에 대한 共同 研究를 할 수 있다면 有益할 것이다.

(b) 地域計定

163. 新 SNA에서는 어떠한 國民經濟計定體系도 地域에 따라 再分割 될 수 있고 SNA에 地域의 次元을 더하는 것이 勿論 必要로 하겠지만, 作業을 必要로 하는 다른 많은 問題를 생각하면 體系의 그와같은 擴張의 優先度는 높지않다고 示唆하고 있다(SNA 附錄 1.90). 開發途上國 指向의 體系 適用을 다른 第9章에서 クラスⅣ計定은 實態上 計定Ⅱ와 計定Ⅲ을 地域(혹은 都市, 農村)에 따라 分割하여 去來를 域役間으로 나누고 있다. 同時에 地域計定에 대해서는 主로 標準을 設定하기전에 보다 實際的인 經驗과 論議가 必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本文中에서는 論하지 않는다고 指摘하고 있다.(SNA 附錄 1.78)

164. 地域情報를 開發하는데 있어서는 四分期情報와 같이 情報에 대한 需要와 데이터의 入手可能性 모두를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地域情報 가운데는 政府의 經濟社會政策實施에서 매우 必要로 하는 것도 있다. 所得이 낮은 地域의 經濟開發을 돕기 위하여 또는 地域間 所得의 再分配를 하기 위한 計劃이 作成되고 있는 國家에 특히 해당된다.

165. 데이터의 入手可能性을 보면, 地域情報의 副産物로서 自動적으로 提供할 수 있는 데이터의 資料出處도 있다. 그리고 完全한 센서스나 稅金申告書와 社會保障報告와 같은 行政데이터의 커다란 集합은 基本데이터의 通

常 作成過程의 一部로서 地域別로 分割된 데이터를 提供할 수가 있다. 다른 한편 全國水準의 推定이 標本調査에 根據할 때에는 信賴할 수 있는 地域分割을 위해 어느 程度까지 標本數를 增大시켜야 하므로 매우 많은 費用이 들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地域데이터 體系에 대해서는 地域分割을 開發하는 費用과 그 有用性이 均衡이 취해진 것이 아니면 안된다. 더구나 完全한 地域計定을 構築하는데 必要로 하는 데이터中에서 國全體數字의 單純한 分割뿐만 아니라 그 以上の 것을 必要로 할 경우도 있다. 地域間후로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地域데이터를 다루는 一般的인 方法은 完全한 計定이 아니고 우선 簡單하게 入手할 수 있는 情報에서 부터 始作하는 것이다. 또한 四分期別計定の 경우와 마찬가지로 各國이 地域情報의 設計와 作成에 대한 各國의 經驗을 共有할 수 있다면 매우 有益할 것이다.

166. 結論적으로 SNA는 地域計定の 作成이 要望되는 것은 認定하고 있으나 實際的인 論議는 하고 있지않다. 四分期別計定の 경우와 마찬가지로 各國의 經驗을 이 問題에 關聯시킬 수 있다면 有益할 것이다.

### (C) 社會人口 統計

167. 1980 年の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의 報告에는 社會人口統計의 構成(FSDS) 開發進捗相은 當初 期待했던 것보다도 늦고 가장 바람직한 方法은 國民經濟計定에서 出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記述하고 있다. 이 文脈으로는 國民經濟計定은 매크로데이터 때문만이 아니라 미크로데이터를 위한 構成으로서도 생각되고 있다. 最終的인 目標는 經濟的, 社會的, 人口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全般的인 統計體系이다. 그와같은 體系에 接近함에



있어서 專門家그룹은 國民經濟計定은 훨씬 發展한 開發狀態에 있으므로 國民經濟計定에서 外的으로 作業하는 것이 適切하다고 示唆하고 있다. 이 目的에 有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國民經濟計定에 若干의 調整과 適應이 必要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들 가운데 어떤것은 消費와 所得의 計測에 關聯하여 또 SNA의 去來者 및 去來原則의 보다 一致性이 있는 適用에 關聯하여 既述한 部分에서 論하고 있다. 社會經濟데이터의 綜合뿐만 아니라 純粹하게 經濟的分析을 할 때에 計定을 보다 有効하게 使用하기 위해서도 많은 點에서 調整이 必要하게 되어 있다.

168. 想定되고 있는 經濟, 社會, 人口데이터의 統合에는 모든 集計레벨에서 데이터를 調整하는 것이 必要하게 될 것이다. 매크로데이터와 마이크로데이터는 代替物이 아니고 補完物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必要로 하는 各의 支援과 補完을 서로 行한다. 雙方이 함께되면 山만하게 한쪽만 存在할 경우보다도 훨씬 強力한 用具가 된다.

169. 마이크로單位水準의 데이터는 많은 方法으로 集計레벨의 데이터를 뒷받침하는 것이 된다. 첫째로, 마이크로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는 매크로데이터의 보다 詳細한 分割을 얻는데 必要한 데이터를 貯藏하는 効果적인 方法이다. 例컨대 所得分配는 보다 傳統적인 分割方法에 依하는 것 보다도 關聯되는 集計와 連累性이 있는 適當한 마이크로·데이터베이스의 集計에 依하는 것이 容易하게 入手된다.

170. 둘째로, 매크로데이터로 觀察되는 變化를 構造上·行動上の 要素로 分離하는 簡單한 手段을 提供한다. 例컨대 所得의 集計레벨變化는 大部分 家計所得의 廣範한 變化, 惑은 高所得과 低所得그룹의 家計分布變化에서 發生

할 것이다. 後者中 特別한 例이지만 農村에서 都市로의 移住이다. 農村地域에 남아 있는 사람의 所得도 前부터 계속해서 都市에 살고 있던 사람의 所得도 거의 變化하지 않고 都市로의 移住者所得이 增加한 것을 唯一한 理由로 集計所得의 增加가 觀察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必要로 하는 政策的對應은 假令 所得의 增加가 社會의 全그룹에 多少라도 同等하게 影響을 미치는 경우에 適切하다고 생각되는 政策的對應과는 全혀 相異한 것일 것이다.

171. 세째로, 適當한 마이크로데이타를 매크로데이타 밑에 놓는것은 매크로레벨에서 觀察되는 데이타와 簡單하게는 集計할 수 없는 特徵이나 屬性을 連結하는 便利한 方法을 提供하는 것이 된다. 例를 들면 家計所得과 家族構成, 居住地, 혹은 社會的, 經濟的 範疇와의 關係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個別家計의 屬性으로서 容易하게 取扱할 수 있다.

172. 逆으로 매크로레벨의 構成도 마이크로레벨데이타의 支援材料로서 마찬가지로 必要하다. 첫째로, 매크로레벨의 構造는 마이크로데이타가 그 內部에서 適當한 構造를 提供하고 全體圖의 概觀을 얻어 特定한 마이크로分析을 適切한 全體觀望속에 자리잡는 것을 可能케 한다. 具體적인 壓力圖體를 다루는 政策決定者에게, 例를 들어 當該그룹이 人口全體 中에서 또 人口部分 中에서 어느 程度로 重要한가를 아는것은 有益하다. 家計總數中 어느 程度가 貧困水準 以下에 있는가?, 貧困水準 以下の 家計中 얼마만큼의 比率이 收入이 있는 雇傭者가 아니며, 또 收入이 있는 경우는 雇傭者의 어느 程度의 比率이 貧困한가?, 貧困家計가 全體의 80%인가 20%인가에 따라, 또 貧困家計가 주로 就業不可能인가 就業可能하지만 失業하고 있는가, 就業하고 있지만 生存賃金を 얻지 못하고 있는가에 따라, 貧困問題에 對한 接近方法은

전혀 다를 것이다.

173. 둘째로, 매크로데이터는 集計의 中間段階에서 마이크로데이터의 重要な 側面의 要約을 提供하는 것으로서 便利하다. 國民經濟計定の 衛星計定 (Satellite accounts)이 이 機能에 有用하다. 그와 같은 中間레벨의 集計는 例컨대 健康, 治療시스템에 對한 資本供與와 같은 問題에 대해 國民經濟計定の 매크로데이터 만으로는 詳細하게 調査할 수 없다. 더욱 詳細하게 調査하기 위하여 中間레벨集計가 利用될 것이다. 世界銀行의 社會計定行列 (SAMS)로서 導入된 家計部門의 副部門分割도 이 中間레벨集計에 해당한다. 거기에는 農家家計, 老人, 혹은 貧困家計와 같은 副部門에 대해 여러가지 檢討를 할 수 있다.

174. 세째로, 매크로데이터는 마이크로分析에서 그 自體로서 重要하다 할 수 있는 論理構成을 提供한다. 例를 들면 消費者物價指數 혹은 生産性變化나 出生率의 變化는 賃金契約의 에스커레이션條項이나 社會保障給付의 인덱세이손과 같은 法的保障이 있는 關聯을 通하여, 혹은 매크로數字에 대한 政策的反應을 通하여 마이크로單位에 影響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매크로레벨의 社會指標는 重要的 統計的 成果物이라고 말할 수 있다.

175. 統合된 情報構造의 觀點에서 본다면 매크로시스템과 마이크로시스템 雙方을 統合하여 明確하게 全體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서, 特定하게 設計할 必要가 있다. 유감스러운 것으로는 매크로시스템開發에 關心을 가지는 사람의 大部分은, 그 基礎로서 存在하며 概念上 그것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의 性質을 考慮하여 보지않았다. 逆으로 家計調査와 會社・官廳으로부터의 데이터收集 모두에 關心을 가지는 사람은 매크로데이터시스템을 마이크로데이터가 適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보지않는 일이 가끔

있다. 매크로분석과 마이크로분석 融合의 重要性은 점차 認識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可能토록 하기 위한 前提條件이 데이터의 統合이다.

176. 必要로 하는 매크로레벨데이터와 마이크로레벨데이터의 統合은 實際로는 意圖해서라기 보다 必要에 依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特定한 政府計劃의 便益과 費用을 計測하는 것과 關聯되는 特定한 政策目的에 데이터를 必要로 하는 點에서 最大의 進展을 볼 수 있다. 統計當局은 이 發展의 推進力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 發展은 때때로 統計의 生産者 보다는 政策上의 利用者에 依해 이루어져 왔다.

그 發展이 合理的으로 方向提示가 있게 하고 또 豫算上의 偶然에 左右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統計生産者 自身이 그 發展을 考慮해야 할 것이다.

177. 結論적으로 SNA는 매크로經濟데이터用の 構造를 開發하는 것에 커다란 成功을 거두었다. SNA의 背後에 있는 것과 같은 一般原則은 마이크로데이터에 適用할 수 있고, 매크로데이터와 마이크로데이터에 同一한 概念上의 構造를 使用하는 것은 兩者의 統合을 促進할 뿐만 아니라 經濟, 社會, 人口데이터의 統合을 가져 올 수 있다. 行政當局의 標本調査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는 國民經濟計定推計의 基礎資料로 또한 政策施行을 爲한 獨立된 데이터로서도 점점 重要하게 되었다. 國民經濟計定設計와 開發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이크로데이터의 統合을 이루는 方法에 特別한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

## B. 他統計와의 接合

### 1. 海外去來

178. 統計委員會의 最近會期에서 報告된 바와같이 [55], 國際聯合統計局은 國民經濟計定 海外去來部分의 內容을 明確히 하고 그 準備에 必要한 方法論을 開發하여 IMF가 모아놓은 國際收支統計와의 比較可能性을 改善하는 企劃에 잠시동안 從事해 왔다, IMF 統計局은 後者의 業務에 活潑히 協力해오고 있다. 이들 目的을 追求하기 위하여 濠洲統計局의 P.N. Atcherley를 國際聯合統計局의 컨설턴트로서 2部로 나누어진 報告가 준비되었다 [60]. 報告의 第1部는 Handbook of National Accounting 시리즈中 1卷의 原稿이며 統計資料出處와 方法論을 論하고 있다. 第2部는 國民經濟計定과 國際收支를 接合시켜 差異가 發生하는 原因을 明確히 하고, 不接合한 것을 보다 적게 하기 위하여 몇가지 代替案을 提示하므로 發生하는 問題를 論하고 있다.

179. 報告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數많은 統計當局이나 國際機關과 論議가 이루어지고 質問書는 各國統計當局 以外의 그룹에도 回付되었다. 多數의 專門家도 코멘트를 했다. 同 報告는 1980年4월에 열렸던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과 統計委員會의 最終會期에서 간단하게 檢討되었다. 統計委員會는 舉論된 문제를 專門家그룹이 檢討하도록 勸告하였다. 그와 같은 論議를 準備함에 있어 報告는 各國統計當局과 國際機關이 코멘트를 위하여 回付되었으며 國際聯合統計局과 IMF의 스태프는 問題點分析을 해왔다.

180. 컨설턴트의 報告는 코멘트를 提供한 사람으로 부터 많은 稱讚을 받았다. 그것은 훌륭한 文書로 SNA와 國際收支메뉴얼간의 差異를 明確히 하

고 SNA에 있어서의 變更과 明確化를 提案하고 있는 點에서 매우 有益하고 重要하다. 一般적으로 各者의 코멘트는 다음과 같은 報告의 어프로치를 支持하고 있다.

「概念的 構造와의 一致性은 主要한 目標로 看做되었지만 分析上의 有用性, 데이터入手可能性, BPM 및 他國際的標準과의 一致性의 觀點에도 어떠한 配慮가 있어야 했었다.」

그러나 코멘트는 SNA와 BPM의 接合이 매우 重要하며, 부득이 差가 생기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接合을 進行해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다. 國際的 가이드라인과 兩立할 수 있는 것은 統計의 編集을 簡單化하고 原資料에 대한 需要競争을 最小化 할 것이다.

181. 以下の 論議에서는 주로 SNA와 BPM間의 接合問題를 취급하여 지금까지 받은 回答을 要約한다. 回答의 詳細한 論議는 背景資料 ESA/STAT/AC.15/4[62]에서 볼 수 있다.

182. Atcherley 報告에서 提示된 SNA와 BPM間 差異 原因의 約 1/4에 대해서는 理論上, 데이터入手上, 혹은 差異가 些少하다고 하는 理由로 BPM에서의 取扱採用, 혹은 BPM의 僅少한 變更만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對해 相當히 廣範한 合意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項目은 第 1表의 書頭に 掲載되어 있다. 質問書의 2.17表 調整項目 中には 不必要하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大部分의 코멘트는 質問書의 表形式에 影響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와같은 調査項目은 質問書에 對한 各國의 回答으로는 거의 全혀 記入되어 있지 않은 것도 想起해야 할 것이다). 數量的으로 이와 같은 變更 가운데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다음 두가지 點에 對해서이다. (a) 直接投資會社의 再投資收益取扱, (b) 화이난설·리싱의 取扱. 두가지 다

〈表 1〉 SNA 對外去來 取扱의 變更提案에 關한 코멘트要約

	反 應		
	贊 成	反 對	其 他
A. 多數가 BPM내지 BMP 의 一部變更支持			
○ 時 期：所有權의 變更	6 <sup>*+</sup>	4	1
○ 화이난설·리-싱：所有權變更의 歸屬	9	-	3
○ 委託貨物：所有權變更	7 <sup>*</sup>	3	-
○ 差益金 賣買의 利益：實現된 Capital gain	6 <sup>+</sup>	2	1
○ 再投資收益：粗額	10 <sup>*+</sup>	1	1
○ 金：貨幣 / 非貨幣	5	2	2
○ 領土의 定義	7	-	-
○ 違法去來：包含	8 <sup>*+</sup>	-	1
B. 多數가 SNA내지 SNA 의 一部變更 支持			
○ 範 圍：去來만	8 <sup>+</sup>	1	-
○ 關連企業間의 移轉	9 <sup>+</sup>	-	-
○ 雇傭者所得：要素所得	9	-	-
○ 飛行場稅：移轉	6	2 <sup>+</sup>	-
○ 強制의 手數料：移轉	6	2 <sup>+</sup>	-
○ 金融資産의 分類：保持	6	1 <sup>+</sup>	3

	反 應		
	贊 成	反 對	其 他
○ 純의 程度 : 保持	8	1	-
○ 公的準備의 切下 : 除外	10 <sup>+</sup>	1	-
○ 後拂되는 旅費 : 保持	8	-	-
○ 번키油 : 運輸	3 <sup>+</sup>	7	1
C. 多數 新提案 支持			
○ 仲介去來 : 純으로 記錄	7 <sup>+</sup>	1	1
○ 非金融無形資産 : 結合	8 <sup>+</sup>	1	1
○ 源泉徵收稅 : 粗로 取扱	6 <sup>+</sup>	2	-
D. 컨센서스 없음			
○ 經常移轉과 資本移轉 : 結合	5 <sup>+</sup>	7	2
○ 輸入 FOB	4	6	-
○ 移動할 수 없는 有形資産 : 他 資産과 同一	5	4	1
○ 長期・短期借入 : 無視	4	7	-
○ SDR : 除外	4	4	2
○ 保險 : BPM 과 同一	4	4	-
○ 株式配當 : 去來에서 除外	2	3	3
○ 貸損 : 經常移轉	4	4 <sup>+</sup>	3
○ 加工中の 財 : 所有權變更	7 <sup>+</sup>	4 <sup>*</sup>	-
○ 移動하는 設備	5	2	2

\* 는, 1980年 專門家會議 反應表示

+는, Atcherley의 素案을 본 많은 專門家の 反應表示



BPM 基準의 採用에 따라 現在 BPM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도 詳細한 說明이 必要하게 된다. 화이난설·리이싱에 대해서는 上述한 바와 같이 SNA 取扱一般이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그러나 居住者와 非居住者 間의 去來의 경우에는 多少 적을런지 모르고 BPM取扱을 採用하므로서의 메리트는 크다. 이取扱은 OECD와 EUROSTAT가 이 問題에 대해 提案한取扱과 大略 비슷하다.

183. 그리고 1/3일 경우에는 SNA取扱이 維持되어야 한다는 基本的인 合意가 回答者 間에 있다. 이것들은 大部分의 경우 그 數量的 重要性은 一般的으로 적고 데이터自體의 問題는 물론 重要하지만 오히려 SNA의 基本的 原理에 關係한다고 생각된다. 第1表의 두번째 欄에는 이 그룹을 掲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BPM에서는 包含되고 있는 再評價를 SNA에서는 經常計定에서 除外하고 있는 것이 있다. 또한 SNA에서는 稅, 料金, 혹은 中間消費로 分類될 項目을 BPM은 運輸에 包含하고 있다. 資産과 負債의 分類 그리고 데이터가 純資産으로서 報告될 때의 資産과 負債의 相殺程度에 關聯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SNA를 通하여 使用되고 있는 請求權의 型에 따른 分類와의 一致性이 支配的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考慮되고 있다.

184. 第1表 第3의 部分에 提示된 3個의 케이스에서는 Atcherley報告는 變更을 提案하고 있다. 그것은 回答者の 大部分의 支持에 依한 變更이며 主로 SNA와 BPM의 差異에서 發生하는 것이 아니다. 非金融無形資産(特許權, 賃借權 等) 取扱에 關聯한다. 이것은 一般的인 問題로 海外去來에 限定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第2部A의 2(b)에서도 論하고 있다. SNA에서는 이들 資産의 安全한 販賣를 包含한 去來는 그 資産의 利用만

을 反映하는 去來에서 分離되어 있으며 後者에서의 收入은 所得支出計定の 財産所得으로서 取扱되게 된다. 그러나 前者는 資本調達計定에서만 나타난다. 實際로는 2개 타입의 去來에 境界를 짓는 것은 概念上으로나, 統計上으로도 어렵고 全般的으로 보아 各國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報告의 提案은 2個의 코멘트를 除外한 다른 모든것과 一致하고 있으며 區別은 斷念해야 한다는 것이다. 理論上的 見地에서 區別을 維持하는 것에 贊成하고 있는 2個의 國家도 統計上은 區別可能性이 없는듯한 點에는 合意하고 있으며 그리고 實際 이제까지 質問書에 이 情報을 提供하여 온 國家는 國內去來에 대해서나 國際去來에 대해서도 存在하지 않았다.

185. 두번째 問題는 財産所得에 대한 源泉課稅에 關聯되는 것이다. 이것은 BPM에서나 SNA에서도 明確하게는 論議되고 있지않으므로 粗 혹은 純의 取扱이 可能하다. 報告에서는 粗 取扱을 支持하고 있으며 回答者의 大多數는 同一한 國內去來取扱과의 一致性을 理由로 同意見이다. 이 取扱에 反對하는 者는 데이터問題를 말한다. 이 경우에 어느 結論에 達하던간에 그것과 같은 取扱이 國際收支에 대해 採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6. 세번째 問題는 商業上的 去來 - 卽, 第三國에서의 販賣를 위한 第二國에서의 財貨의 購入 - 에 關聯되는 것이다. 大部分의 回答者는 商船의 條項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去來를 純(受取量 마이너스支拂量)으로 記錄한다고 하는 報告의 提案에 同意하였다. 더구나 問題는 (a) 事實로서 SNA인가 BPM인가와 이것이 相異한가 아닌가 하는 點 및 (b) 그것이 正確하게는 어떻게 實施되어 갈 것인가 하는 點에 대해 提起된 것이었지만 여하튼 가이드라인의 明確化가 必要하게 되었다.

187. Atcherley 報告에서 提起된 問題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明確한 컨센서스는 나와 있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提起된 問題는 外國去來 뿐만 아니라 國內去來에도 適用되고 當該問題는 그 文脈에서 檢討할 必要가 있다. 이것은 예컨대 經常移轉과 資本移轉의 區別, 短期貸付와 長期貸付의 區別, 保險의 取扱과 같은 問題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어떤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分明히 SNA의 一般原則의 侵害가 되던간에 不適合回避의 目的으로 BPM에서의 取扱으로 바꾸어 나가자고 하는 同報告의 提案은 贊成보다도 많은 反對에 當面하고 있다. 輸入을 f.o.b.로 取扱한다는 提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3個의 問題는 移轉不可能한 有形資産 資産配當, 그리고 IMF 特別引出權取扱에 關聯된다. 이들 全部에 대해 무엇인가의 決定을 하기 前에 다시 作業을 해야 할 必要가 있다.

## 2. 公共部門統計

188. 相異한 國際機關에 依해 刊行된 公共部門統計에 關한 가이드라인을 一致시킬 必要性을 統計委員會는 強調해 왔다. 이제까지 多年間에 걸쳐 國際聯合統計局의 Handbook of National Accounting의 公共部門統計에 關한 卷(第4卷)과 IMF의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매뉴얼 [13]을 各各에 따라 提供되고 있는 相異한 必要를 더욱 認定하면서 緊密하게 接合하려고 하는 試圖가 이루어졌다. 1980年 4월에 會合한 專門家그룹은 1組의 가이드라인을 求하려고 하는 點에서 意見의 一致가 있었다. 相異한 利用者에게는 相異한 要求가 있는 點 또, 1組의 가이드라인이 1組의 데이터를 意味하는 것이 아님을 專門家그룹은 認識하였다. 그러나 相異한 要求는 더욱 具體적으로 說明되어야 하고 또 相異한 要求에 대해 緊急한 必要性이 提示되지 않는 限, 相異는 없는 것으로 推定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專門家그룹은 생각하였다.

189. 그以後 이제까지 사이에 이들 2개組의 標準接合에 대해 많은 進展을 볼 수 있다. 兩매뉴얼改正版이 準備되어 兩者間의 定義上, 分類上의 相違는 大幅으로 적어졌다. 相違가 殘存하는 點으로는 그것이 指摘되고 兩者 생각의 基礎가 說明되고 있다. 利用目的 想定의 差를 反映하고, 예컨대 SNA는 歸屬項目을 包含 또한 發生計定을 使用하는 것에 대해 GFS는 現金去來만을 取扱하는 等 接近法에는 커다란 差가 남아 있다. 그러나 Handbook에서는 現金計定을 出發點으로 보고 있으며 SNA에 要請되는 보다 綜合的인 計定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調整할 수 있는가 하는 點을 論하고 있다. Handbook에서는 더욱이 公共金融機關의 論議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GFS에서는 一般政府와 非金融法人企業에 限定되고 있다. Handbook에서는 GFS에서 커버되고 있지않은 不變價格統計도 커버하고 있다. 그렇지만 GFS와 SNA 兩例에 모두 나타나고 있는 中核的인 項目에 대해서는 Handbook은 原資料와 算出方法을 GFS에 나타나 있는 論議에 大幅으로 依存하고 있으며 두개의 매뉴얼은 補完的이라 간주해야 한다고 示唆하고 있다.

190. 分類의 相違가 殘存하고 있는 하나의 領域은 資本移轉의 取扱이다. 既述한 海外去來의 論議와 같이 SNA의 資本移轉 取扱은 他타입 統計와의 調整問題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한편 當事者에게 資本移轉과 같은 去來는 다른 한편 當事者에게도 資本移轉이 아니면 안된다는 約束은 特定한 데이터에 對해 適用이 困難하기 때문이다. 특히 公共部門分野에서는 財産 및 相續稅(SNA에서는 資本移轉이며 GFS에서는 經常歲入이다)의 分類問題가 發生한 이 一般的인 話題는 既述한바의 第2部の 2.C와 3.C에서 言及되

고 있다.

191. 分類의 두번째 相異는 通貨當局에 關聯되는 것이다. GFS에서는 通貨當局을 揭示하고 있으나 PSS에서는 揭示하고 있지않다. GFS에서는 大藏省 惑은 財務省에 依해 遂行될런지 모를 어떤 貨幣的 機能을 機能上的 同質性을 重視하여 一般政府로부터 分離하고 있다. PSS에서는 制度上的 區分을 重視하여 이 機能을 一般政府에 남기고 있다.

192. 用語法에는 여러가지 差異가 남아있는 것도 있다. GFS에는 稅收入으로서 社會保障分擔金이 包含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 SNA에서는 獨立項目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社會保障分擔金의 定義는 2個의 體系로 同一하다. 마찬가지로 政府支拂의 資本移轉으로 SNA가 부르고 있는 大部分을 GFS에서는 補助金으로 다루고 있다.

193. 끝으로 公共企業의 概念說明과 適用 몇가지 問題가 남아있다. GFS에서는 그 範疇는 IMF가 國家統計의 各要素를 무엇이 政府에 屬하는가에 대한 IMF獨自의 見解에 맞추어 再分類하는 것을 可能하게 하는 用具로서 널리 使用되고 있다. 그러나 Handbook은 各國 獨自의 利用을 위한 案內書로서 作成되고, 따라서 보다 制限的인 見解를 取하고 있다. 이 問題는 既述한바 第2部 第3節에서 論議되고 있다.

194. 公共部門統計에 關한 Handbook의 卷은 現在(1982年2月) 最終的인 評價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統計委員會의 次回會期 以前에 刊行될 것으로 생각된다. GFS改正이 終了되는 것은 1982年初로 보고 있으며 刊行物은 그 後 얼마 안있어서 나올 것이다. 兩機關의 스태프(要員)은 특히 國民經濟計定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利用者로부터 反復要望이 있는 金融統計

와 國民經濟計定 모두를 커버하는 單一가이드라인作成이라는 것에 配慮하고 있다. Public Sector Statistics 와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의 現在版은 그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進展의 主要部分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單一刊行物을 作成하기 以前에 PSS 와 GFS의 새로운 版에 關한 數年 經驗을 蓄積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남아 있는 難點, 明確化의 必要性 혹은 論議의 擴大가 어디에 必要한가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 3. 金融統計와 資金循環

195. 資金循環과 金融統計分野에서는 調整과 接合에 대해 統計委員會의 前回會期에 대한 報告에서 要望되었던 程度의 進展은 보이지 않았다. 上記와 같이 Handbook of National Accounting 의 第5卷에서는 資本調達, 資金循環, 資產負債의 變動, 貸借對照表 및 關聯分野를 커버할 것이다. SNA 第24表를 編集하기 위한 原資料와 作成方法과를 다루는 第1次原稿는 準備되어 왔으며 그것이 커버하는 範圍는 原稿에서 擴大될 것이다.

196. 國際通貨基金은 또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에 公表하고 있는 金融統計를 커버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作業하고 있다. 그 가이드라인의 原稿作成은 끝났다. 調整은 原稿作成中에 可能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實際로는 調整되지 않았다. 國際聯合統計局이 IMF의 매뉴얼 原稿作成 終了前에 그것을 入手하는 것이 要望된다. 그렇게 하면 差異를 찾아내어 可能한 경우에는 그 差異를 없애기 위한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 4. 所得分布統計

197. 分布統計는 1968년에 新 SNA 에 記載된 將來開發計劃의 一部였다. 一連의 作業部會와 專門家그룹會合 그리고 統計委員會가 考慮한 後, Provisional Guidelines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Consumption and Accumulation (M시리즈 No 61) [38.]이 1977년에 刊行되었다.

198. 並行된 움직임으로는 國際聯合의 社會人口統計體系(FSDS) 開發作業이 이루어졌다. 政策의 重點이 住民福祉分布의 純粹에 經濟的인 側面뿐만 아니라 社會的인 側面을 包含하는 것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反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問題의 概念上 側面을 다룬 많은 刊行物이 準備되어 왔다(32, 39, 40, 47). 社會計劃에 대한 政策의 重要性이 增大된 것으로 所得規模의 分布뿐만 아니라 政府와 家計의 相互關係, 特定한 住民그룹, 더우기 地域別, 커뮤니티·타입別 分布에 대한 情報에도 需要가 發生하고 있다. 政策擔當者는 福祉와 所得의 分布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 또 特定한 政府計劃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影響을 받는가에 대해 알 必要가 있다. 이 問題에 對한 初期의 接近方法은 最大需要에 適合하다고 생각되는 時系列의 限定的리스트를 미리 特定시키려고 하는 試圖이었다. 그러나 이 接近方法은 어려움에 逢着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包含시켜야 할 系列을 選擇하기 위한 基準을 確立하는 것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해서 構築된 構造는 일찍부터 陳腐化되는 危險을 범하고 있다. 즉 그것은 記念品으로서는 保存될런지 몰라도 자주 利用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分析을 要하는 많은 問題는 거기에 包含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必要로 할 것이라고 豫測되기 때문이다. 必要로 하는 것은 集計의 모든 레벨에 대해 存在하는 如何한 데이터도 取扱할 수 있는 構造

라는 것이 점점 明白해져 왔다. 특히 SNA와 같은 集計體系와 分布 分析의 基礎인 入手可能度가 높은 마이크로데이터의 集合 모두를 取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最近 國際聯合統計局의 概念上 作業은 이 方向을 指向하여 왔다 (44, 48, 57).

199. 1980年頃 以後 世界銀行開發研究센터에서는 野心的인 生活水準計測研究(LSMS) [8]를 하여 오고 있다. LSMS는 3個局面을 가진 4年間の 研究로서 設定되어 있으며 (1) 概念的作業과 現存데이터의 分析, (2) 實驗的이고 實質的인 새로운 필드作業, 그리고 (3) 開發途上國의 政策問題에 關한 個別데이터를 取扱하는 6個研究作成을 內容으로 한다. 프로젝트當初의 1年半은 主로 概念上 問題로 充當되고 3回의 專門家그룹會合이 開催되었다. 考慮된 問題中에는 等水準의 尺度構築, 雇傭施策과 福祉施策間의 聯關, 所得施策에서 短期的變動抽出, 그리고 社會-經濟 區分次元으로서의 住宅의 特徵과 같은 것이 包含되어 왔다. LSMS는 한편으로는 政策立案者에게 關心있는 問題에 答하려는 것이 可能해 질 수 있는 데이터를 產出할 目的으로 데이터 蒐集節次를 把握하고자 開始된 것이다. 그와같은 問題는 社會의 어느 階層이 地域적으로 適切한 福祉基準에 따라 得을 보고 損害를 보는가, 그리고 特히 어떤 規模에서 그렇게 되는가를 中心으로 한 것이었다. 最終적으로 그 研究는 開發政策의 結果로서 各그룹間의 生活水準이 變化하는 것에 關한 問題에 答하는데 有用하고 可能한 限 簡單한 調査用具, 作業과 分析用具의 混雜을 提案하려고 努力中이다.

200.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概念上의 開發에 있어서 이와 같은 努力과 다른 한편, 데이터蒐集에 대해 現實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罅이 있다. Wouter van Ginneken에 依한 最近의 論文은



後者を 展望하고 있다[63]. ILO는 Felix Paukert가 所得으로서는 主된 所得, 所得單位로서는 家計 내지 家族을 利用하고 56個國에 對해 分布데이터를 蒐集한 1970年 初부터 데이터蒐集에 對한 國際的인 努力의 先頭를 달려왔다. 1975年 世界銀行은 83個國에 對해 Shail jain이 行한 데이터의 蒐集을 刊行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所得概念, 所得單位, 그리고 地理的範圍마다의 分布가 들어있다. OECD가 스폰서로 되었던 Malcom Sawyer의 研究는 1976年에 刊行되어 12개 OECD 諸國에 對해 1家計 當 혹은 1人當의 比較可能的 税金合算所得과 税金控除所得의 分布가 들어 있다. P.Visaria는 世界銀行에 提出한 論文에서 아세아의 所得分布데이터를 評價하고, Oscar Altimir은 라틴아메리카 7個國에 對해 比較可能的 데이터를 作成하였다. 1970年代 末에 CES 加盟國에 依해 EC 地域에 對해 比較可能的 데이터를 作成하려는 試圖가 있었는데 結局 그것은 成功하지 못하고 말았다. 國際聯合統計局은 60個國에 對해 相互比較를 可能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所得分布統計의 調査를 實施하여 1980年에 刊行하였다. ILO는 世界銀行의 LSMS 프로젝트와의 關係에서 約 30個國에 對해 새로운 分布 데이터를 產出하려고 하고 있다.

201. 이와같은 研究의 모든 것에서 分明히 알 수 있는 것은 貨幣所得에 對해서 까지도 概念上 有効한 統計를 얻는 것이 實際로는 困難하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今後에도 계속 進行하려고 하는 試圖는 거의 없고, LSMS의 質問書에서조차도, 概念上의 發展을 위하여 行한 努力에도 불구하고 眞正으로 거기까지 進行시키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棼다란 進展을 볼 수 있도록 하기 前에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많은 問題가 있다. 以下 이 與같은 問題의 몇가지를 簡單하게 敘述한다.

202. 第1의 問題點은 分析되고 있는 것에 關係되는 것이다. 包括되고 있는 範圍는 무엇인가? 報告單位는 무엇이며, 分析單位는 무엇인가? 所得或은 他福祉測定基準의 概念은 무엇인가?

203. 國際聯合의 所得分布가이드라인은 國民經濟計定과 住民의 集計值와의 概念上의 一致性의 重要度를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이것이 目的일 경우에도 集計值와의 統計的一致性이 達成되는 일은 거의 없다. 여기에는 많은 理由가 있으며 그中에는 入手할 수 있는 統計의 固有한 理由도 있다. 標本調査를 實施하면 所得의 몇가지 카테고리, 즉 實際 모든 國家에서의 財產所得 및 企業家所得과 大部分 國家에서의 移轉支拂은 언제나 過少 推計될 것이다. 다른 한편 賃金俸給은 通常보다 完全하게 報告된다. 財產所得은 主로 高所得層에 影響을 미치고 移轉所得은 主로 低所得層에 影響을 미친다. 이와같이 相異한 所得타입이 서로 다르게 過少評價되는 結果로서의 分布에는 歪曲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缺陷을 修正하는 方法을 찾아낼 必要가 있다.

204. 家計調査에 따른 分布데이터는 慣習上 報告單位로서의 定義는 여러 가지이지만 家計가 使用된다. 그러나 行政데이터에서 抽出되는 分布에서는 자주 納稅者나 賃金稼得者와 같은 他單位를 使用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205. 分析單位도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分析單位가 報告單位와 같은 必要는 없고, 家計分布에서 1人當 稼得者 1人當 大人1人當 等の 많은 單位分布에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점점 認識되어 오고 있다. 이와같은 모든 要求의 뜻하는 바에 대해서는 더욱 研究가 必要하며 要求되는 概念과 定義에 대해 作業이 必要하게 된다.

206. 주된 문제는 所得의 概念에 關聯되는 것이다. 實際上 理由로 所得 概念은 通常 主된 所得 혹은 貨幣所得總額 정도에 限定된다. 現行의 ILO 프로젝트에서는 보다 넓은 概念, 즉 國際聯合가이드라인에서 定義된 바와 같은 總所得(total available income)에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는 現金과 現物로서의 賃金俸給(社會保障分擔金과 私的保險分擔金 除外)自己雇傭으로부터의 純所得(自己產出의 消費를 포함), 個人財產과 投資에서 얻는 所得(住宅自己所有의 歸屬집세를 포함), 社會保障과 私的인 保險에서 오는 移轉이 包含되고, 個人所得稅와 財產稅가 控除되어 있다. 그와같은 넓은 概念에서는 通常 使用되는 보다 좁은 概念에서 얻는 것과는 相異한 結論이 얻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라도 LSMS와 FSDS에서 包含하고 있는 福祉의 다른 非貨幣的 要素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住民의 全消費와 關聯하여 이미 敘述한 個人便宜를 위한 政府消費支出의 要素를 包含하지도 않고 있다. 두세사람의 研究者가 單一의 國家(美, 英)에 대해 後者의 分布를 構築해 오고 있으나 이것은 如前히 實驗的인 段階에 있다.

207. 消費計測에 關聯하여 既述한 바 있는 問題는 물론 그 分布를 計測할 경우에도 더욱 다루기 힘든 形態로, 가끔 發生되고 있다. 現物로서의 受惠에 關해서는 受益者의 觀點에서 보면 코스트는 價値의 尺度로서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다시 말해서 受益者는 코스트를 모를런지 모르고, 또 받는 便益에 전혀 다른 價値(혹은 無價値)를 두고 있을런지 모른다는 것은 맞는 것일 것이다. 利用權의 경우에는 潛在的인 受益者는 그 利用權을 여러가지 程度로 使用할런지 모른다. 스포츠用 그라운드를 가끔 使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혀 使用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將來의 利用權, 社會保障受惠, 在職保證은 더욱 困難하다. 이 問題에 대한 作業은 매우 初期段

階에 있다. 物的便益(예를들면, 食糧券)이 있는 것을 受益者가 評價하는 方法에 대해서도 몇가지 研究가 實施되었고 將來利用權의 評價에 대해서도 몇가지 研究가 實施되어 왔지만 이제까지 콘센서스를 낳지 못하고 있다.

208. 이 定義를 包括하는 範圍의 問題와는 別途로 研究를 要하는 統計的 問題도 있다. 하나는 分布의 構築에 그룹화된 데이터를 使用하는 影響에 대한 研究이다. 이것에는 커다란 影響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研究도 있고, 다른 한편 그것은 그다지 影響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도 있다. 마지막 문제는 要約手段과 關聯되는 것이다. 分布情報를 表章하는 適當한 方法에 대해서는 거의 콘센서스가 없다.

209. 分布에 대한 作業을 하고 있는 各機關은 多少일지라도 獨立的으로 作業을 하고 있다. 一致되는 基準을 開發하려고 하면 各機關의 情報交換을 促進하는 手段을 發見하지 않으면 안된다.

## 5. 活動分類와 投入 - 算出

210. 活動分類와 投入 - 算出統計의 分野에서는 國際機關間의 接合의 主된 問題는 國際聯合과 EUROSTAT (EC 統計局)와의 사이에서 생긴다. 國際聯合의 活動分類나 商品分類인 ISIC, ICGS 는 유럽共同體가 利用하기 위하여, EUROSTAT에 依해 개발된 NACE나 CLIO와는 詳細함에 있어서나 基本的인 組立原則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이것은 데이터作成者에게 또 利用者에게도 오랜동안 어려움의 原因이 되어 왔다.

211. 19回 會期에서 統計委員會는 經濟分類接合에 關한 作業의 一般的 長期計劃을 承認하고 貿易·生産을 結合한 商品分類를 最終적으로 만들어 나

가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方向으로서의 第1步로서 全 財貨·서비스의 國際標準產業分類인 ISIC 改正을 考慮하였다. 委員會는 作業計劃으로 包括되는 期間中 助言과 提案을 위하여 協議體設立을 勸告했다. 따라서 世界水準分類에 關한 UN/EUROSTAT 共同作業그룹이 (EUROSTAT의 資金支援) 形成되었다. 第1次 會合은 1977年11월에 열리고 그 以後 大략 2년에 한 번 比率로 開催되어 왔다. UNSO와 EUROSTAT에 追加하여 그 그룹에는 他國際機構(OECD와 CMEA를 포함), 地域機構(ECE와 ESCAP) 그리고 10個國이 參加하고 있다. 同一個人에 依한 繼續的인 參加에 대해 力點을 두고 있다.

212. 第1回 會合에서 同그룹은 結論으로서 여러가지 活動商品分類의 設計에 있어서는 當時 關稅協力委員會에서 作成中이었던 調和시스템(Harmonized System = HS)이 必要한 構築區分을 提供할 수 있다는 意味에서 中心的인 것이라고 했다. 統計委員會는 이 見解에 同意하여 HS에 關한 作業에 對한 國際聯合統計局의 積極的 參加를 強調하였다. 그러나 이 作業에 대해서는 人力과 資金의 制限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程度의 注目は 끝지 못했다.

213. ISIC와 NACE를 調整할 때의 主要問題의 하나는 에너지에 關係되는 것이다. ISIC 現在版은 生産函數指向이며 따라서 에너지原料의 抽出과 精製에 關한 여러가지 段階와 그 生産을 分離하고 있는데 反해 NACE에서는 이들을 에너지部門에 統合하고 있다. ISIC의 改正을 위해 國際聯合統計局이 한 當初의 提案에서는 燃料과 에너지生産을 위한 새로운 區分을 만들고 모든 段階를 包含하려 하였다. 이 提案은 共同作業그룹에서 長期間 論議되었으나 結局 그와같은 變更은 ISIC分類의 基本原則과 合致되지 않

고 에너지를 위해 提示된 概念은 너무 넓은 카테고리로 擴張되면 分類性 格을 變更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拒否되었다.

214. 따라서 作業그룹은 初期段階의 結論으로서 ISIC와 NACE의 接合을 指向하여 가장 成果를 거둘 수 있는 方法은 대강 ISIC 세자리 레벨에서의 中間레벨分類的 構築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ISIC와 NACE (유럽共同體內의 經濟活動一般產業分類) 雙方, 그리고 또한 關聯된 CMEA 分類인 SCEB (CMEA 加盟國 國民經濟部門 分類)의 調整이 可能할 것으로 되어 있었다.

215. 第2回 會合에서 作業그룹은 活動結果가 主로 輸送可能財의 生産이 될 部分의 分類에 焦點을 맞추었다. 建設, 貿易, 金融, 政府 그리고 他서비스는 다음 會期에서 考慮할 것으로 남겼다. 그 目的은 關係되는 3個의 分類 (ISIC, NACE와 SCEB) 가운데 하나에 따라 蒐集될 데이터가 2個의 分類利用을 通하여 얻을 수 있는 데이터와 中間的인 레벨에서 同一하도록 活動의 標準카테고리로 이루어지는 同一 혹은 實際上 同一한 中間레벨分類를 作成하는 일이었다. 中間레벨의 카테고리는 單純한 集計가 同一한 보다 높은 레벨의 그룹을 낳게 하도록 各各의 分類로 整理되어가는 것이라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다. 이것은 國際的인 觀點에서는 便利하지만 作業그룹의 第一會期에서의 論議로는 그와같은 結果에 到達하는 것은 困難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216. 提案된 中間레벨分類에는 57個의 카테고리가 包含되어 있다. 3자리 레벨의 ISIC에는 輸送可能한 財貨와 에너지를 產出하는 産業을 카 버하는 部分에서 40個의 主要그룹을 포함하고 있다. ISIC改正이 完了할 때에는 1968年 ISIC 보다도 3자리 레벨, 4자리 레벨 어느 것에서도 보다 많은 카테고리를 包含할 것이라는 것이 豫想된다.

217. 作業그룹은 바야흐로 輸送不能財貨·서비스를 考慮하는 作業에 옮겨와 있다. 同一한 中間레벨 카테고리가 이 分野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18. 그룹은 EUROSTAT가 行한 個別産業研究에 따라 活動과 製品의 分類를 接合하는 問題에 대해서도 檢討해왔다. 이 檢討作業에서 곧바로 생긴 成果는 HS를 多少 바꾸어 部門分割에서 Industrial Origin 基準을 보다 注意깊게 考慮할 提案을 해왔던 일이다. 또 하나의 成果로서는 ISIC와 標準國際貿易分類(SITC) [31] 關係에 대한 理解가 깊어지고 1985年 以後에 2個의 分類사이에서 보다 密接한 調整을 可能케 했다는 것이다. 또한 1985년까지는 HS가 實施됨으로써 招來되는 關稅協力委員會分類(CCCN)의 主要한 改正이 終了되었을 것으로 豫想된다. 改正版 ISIC와 1985年 以後의 SITC와의 密接한 關係는 우선 첫째로 既述한 바 中間레벨의 活動과 SITC의 2자리 내지 3자리 레벨을 함께 하는 것이다. 貿易·生産財分類를 連結시킨 것을 構築하는 일은 國際聯合統計局計劃의 窮極的인 目標로서 남아 있다.

219. 投入·產出統計와 關聯되는 基準調整問題가 發生하는 것도 주로 EUROSTAT와의 關係이다. 基本的으로 이 問題는 活動에 따라 事業體를 定義하고 分類하는 方法이 SNA와 CESA와는 相異한 것에서 發生한다. SNA는 事業體에 대해 보다 넓은 定義를 가지고 있으며 事業體는 主要한 活動分野로서 典型的인 아닌것을 生産할지도 모른다고 認識하고 있으나 統計上 및 計定上의 理由에서 다른 事業體로서 分離할 수는 없다고 한다. 다른 한편 ESA에서는 事業體는 同質的인 產出에 限定되어 있으며 非典型的인 產出로서는 副產物만이 許容되고 있다. 따라서 ESA에는 SNA에서 사용되는 V行列과 U行列(新 SNA의 補助·補足的 附表2와 3)의 必要가

없다. SNA에서는 分析目的을 위하여 V行列과 U行列을 單一行列로 轉換하는 일이 가끔 必要하게 될 것이라는 認識을 하고 있으나 데이터蒐集目的에는 V行列과 U行列편이 보다 便利하고 現實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第3部 當面行動을 위한 提案

220. 第2部에서 SNA의 更新과 他統計와의 接合에 關聯된 主要 問題를 보면 많은 경우 代替的인 方法에 대해 充分히 研究하고 論議할 必要가 있다는 結論을 얻었다. 相對的으로는 單純하고 簡單한 解決法이 採用될 수 있다고 보일 경우에도 SNA의 他部分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게 할 原則에 關계되는 問題가 發生한다. 그리고 이 報告의 第1部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變更의 如何한 提案도 그 有用성과 實現可能性을 國際機關과 各國의 專門家로 構成되어 SNA의 發展에 長期的인 責任을 질 수 있는 繼續的인 作業그룹에 依해 檢討되지 않으면 안된다. SNA의 如何한 主要改正도 그와같은 그룹의 支持를 얻어 비로서 眞實되게 檢討할 수 있게 된다.

221. 이와같은 點에서 생각하면 對象으로는 特히 限定된 提案만이 當面の 實現可能性이 있는 것이 된다. 이 第3部에서 論議될 것에는 두가지 形態가 있다. 즉 (1) 폭넓은 支持가 있었던 Atcherley의 報告에서 提示된 海外去來에 關한 提案과 (2) 1980年의 專門家그룹會合과 他會議에서 論議되고 一般의 承認을 받아들인 定義와 分類에 關한 限定된 提案이다.

#### A. 海外部門에 關한 提案

222. 上述한 바와 같이 Atcherley 報告에서 提示된 海外去來에 關聯한 一定數의 提案에 關해서 相談을 받은 專門家와 各國의 關係者 雙方間에 相當한 程度의 콘센서스가 있는 것같이 보여진다. 이中 8個는 現在의 SNA 取扱의 繼續이며 따라서 變更할 必要가 없다(적어도 SNA에서는). 그러나 其他 8個의 경우에는 BPM 取扱에 對한 變更 혹은 그 修正이 提案되고

있으며 4개의 경우에는 他 變更이 提案되고 있다. 이들 提案은 以下에서 個別的으로 提示되고 있다. 關聯해서 考慮해야 할 論議의 詳細한 것에 대해서는 Atcherley 報告와 各國反應의 分析 (ESA/STAT/AC.15/4) 을 參照하기 바란다.

### 1. 輸出入의 記錄時點

223. 所有權의 變更時點을 輸出入의 記錄時點으로서 記錄하는 것이 이 基準에 대한 完全한 調整이 統計적으로 實行不可能할지 모른다는 것은 認定하면서 提案되고 있다. 더구나 BPM 權告의 一部分이 아니라도 國際貿易 統計와 國民經濟計定에 記錄되는 商品輸出入의 價値間의 調整을 補表로 定하는 것은 有用할 것이다 (BPM의 變更).

### 2. 화이난설·리이싱

224. 所有權變更은 화이난설·리이싱으로 引渡된 財貨에 歸屬시키는 것과 같이 提案되고 있다. 逆의 金融請求權은 元金の 償還과 利子の 支拂에 關한 歸屬과 함께 借者에 對한 信用供與를 記錄할 수 있도록 歸屬시킬 必要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BPM의 화이난설·리이싱의 定義는 OECD/EUROSTAT의 定義로 바꾸어야 한다 (BPM의 變更).

### 3. 所有權 移轉없이 船積되는 貨物

225. 所有權 移轉없이 船積되는 貨物은 所有權의 變更이 發生하지 않을 때까지 輸出入에 包含되지는 않는다 (BPM).

#### 4. 差益賣買의 收益과 損失

226. 非居住者와의 外國換 去來의 賣買差益의 收益이나 損失은 所有權의 두가지 變化에서 發生하는 資本利得 내지 損失의 實現으로 取扱되어야 하며 關係되는 資産에 連結되는 資本計定에 包含되어야 한다고 提案되고 있다(BPM).

#### 5. 直接投資企業의 再投資收益

227. 「直接投資企業」의 再投資收益(소위 當該企業純貯蓄)은 海外去來計定에서 財産 및 企業所得計定에 包含되어야 하며 같은 量이 外國資産·負債(金融의 請求權의 다양한 形態에 따라 分類된다)의 純額으로서 나타내야 한다고 提案되고 있다. 이리하여 이 方法에는 歸屬所得의 流出과 歸屬資本의 流入을 包含하고 있다(居住者이며 直接投資家인 外國直接投資企業에 대해서는 逆). 「直接投資企業」, 「直接投資家」 및 「直接投資資本」에 대해 定義가 必要할 것이다. BPM에서 分明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直接投資關係를 構成하는 株式所有比率에 관한 보다 明確한 規定을 附加한다면 이와같은 것을 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直接投資를 構成하는 最低限의 比率은 25%라고 하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BPM의 改正).

#### 6. 金

228. 金은 BPM에서와 마찬가지로 貨幣用金(金融資産으로서 通貨當局이 保有하고 있거나 通貨當局의 統制下에 있는 것)과 非貨幣用金(其他 全部)으로 分割하는 것을 提案하고 있다. 그러나 BPM과는 달리 金の 貨幣化, 非貨幣化와 價值變化는 調整計定에 記錄할 것이 提案되고 있다(BPM의 變更).

## 7. 領土의 定義

229. 一國의 領土는 海外領土나 屬領이 本國과 經濟的으로 統合되어 있어 計定을 나누는 것이 實際的이 못된다는 경우가 아닌 限, 海外領土나 屬領을 除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表明하면서도 그것을 包含할 것인가 除外할 것인가에 對해서는 選擇의 餘地를 남기는 方法으로 定義할 것이 提案되고 있다(BPM의 改正).

## 8. 違法去來

230. 強制된 것이 아닌 支拂側의 同意로된 受取는 違法活動이라도 生産의 範圍內에 包含시켜야 하는 것이 提案되고 있다. 특히 密輸는 輸出에 包含시켜야 한다(BPM).

## 9. 海外去來計定の 範圍

231. 海外去來計定の 範圍는 去來에 限定되어야 하며 金을 商品에서 金融資産으로 再分類 取扱하는 點에서만 SNA와 相異하다(SNA의 變更).

## 10. 子會社間的 財貨의 移轉

232. 關聯되는 法的主體間에서의 財貨移轉은 支店을 除外하고(SNA와 같이) 關聯이 없는 法的主體間的 移轉과 同一하게 取扱한 것이 提案되고 있다. 支店과 本店間的 移轉은 오퍼레이팅·리이스의 決定과 같은 特定한 경우를 除外하고(SNA와 같이) 所有權變更으로 取扱하는 것이 提案되고 있다. 例外로 正確하게 무엇이 있는가를 定할 必要가 있다고 BPM에서 부여되고 있는 리스트를 出發點으로서 利用할 수가 있을 것이다(SNA의 改正).

## 11. 財産所得에 賦課되는 源泉稅

233. 財産所得에 부과되는 源泉稅는 粗후로에 着眼하여 記錄해야 한다.

## 12. 仲介去來

234. 仲介去來는 仲介서비스 規定과 같이 純베이스(즉, 受取量-支拂量)로 記錄해야 한다는 것이 提案되고 있다. 商品의 輸出入은 包含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BPM과 SNA의 雙方과 相違).

## B. 他提案

235. 이 節에서 列舉할 提案은 1980年의 專門家그룹會合과 여러 地域的 會合을 包含하는 從來의 會議에서 論議되어 왔으며 그런 論議中에서 一般的인 承認을 받은 것 뿐이다. 大部分은 후로의 定義에 關聯된 問題이며 一部는 分類에 關聯된다.

### 1. 國防支出

236. SNA에서는 國防目的用 財貨에 대한 政府의 支出에 관한 모든 것을 經常支出, 다시말해서 一般政府中間消費로 取扱한다. 이 取扱의 例外는 家口用住宅의 建設과 修善이다. 例外를 家口用住宅만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限定的이라고 一般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學校, 病院, 道路, 自動車와 같은 國防用뿐만 아니라 民間用으로도 頻繁하게 使用되는 財貨도 粗 資本形成에 包含시켜야 한다. 이와같이하면 그와같은 財貨가 公式上 民間用途로 變更될때 不規則變動이 發生하지 않게 될것이다. 이것은 各國에서 가장 많이 使用되는 方式과 一致할 것이다.

237. 第2의 問題는 「國防」의 定義에 關聯되는 것이다. 政府自身이 問題의 財貨를 生産할때 最終產出만을 國防用으로 보고 國防目的에 使用되는 資本財購入은 國防用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提案되고 있다.

238. 以上の 2個提案을 合하면 經常中間消費로서 分類되는 資本的性格의 國防支出範圍는 顯著하게 制限될 것이다. 그것은 大部分 非民間用途의 品目, 轉換不可能한 型의 裝備나 國防施設로 構成되게 될 것이다.

## 2. 未完成 建築物

239. SNA와 MPS 모두 重機械機器, 船舶, 航空機에 施設된 構造物은 在庫變動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建設에 대한 取扱은 다르다. MPS에 있어서는 未完成 建築物도 在庫變動에 包含하고 있으나 SNA에 있어서는 그와같이 部分的으로 完成된 建築物은 總固定資本形成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럽計定體系(ESA)에서는 第3의 取扱을 採用하고 있으며 建築의 進行은 그 買者가 發生할 때까지는 在庫變動으로서 記錄된다. 有形固定資產統計에 關한 指針은 SNA와 MPS 모두에 關聯하여 使用할 目的으로 作成되었으며 그中에서는 未完成建築物은 分離된 카테고리로서 나타내야 할 것, 그리고 總資本形成에도 在庫變動에도 包含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勸告되고 있다.

SNA計定에서는 거기까지 進行할 것에 대해 提案하고 있지 않으나 總固定資本形成은 完成한 建築物과 未完成 建築物의 在庫變動 雙方을 나타낼 것이 提案되고 있다.

## 3. 自己所有計定資本 形成

240. 自己所有計定資本形成은 產出을 測定할 目的으로 生産費用에서 計測

되어야 하겠지만 그와같은 費用中에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疑問이 發生한다. 自己所有計定資本形成의 生産費用은 實際로 생긴 直接費用 플라스 總費用 내지 間接費用의 該當 몫을 포함하나 利益分에 대해서는 전혀 計上하지 않는 것으로 提案되고 있다.

#### 4. 住宅의 定義

241. SNA에서는 現在 「住宅」의 明確한 定義가 缺如되어 있으며 總固定資本形成에서 住宅建設이 매우 重要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明確한 定義가 必要하다. 定義는 住宅센서스용으로 勸告되어 있는 것과 符合되어야 한다. 休暇나 週末용으로 購入되는 “여름집” “샤레이” 등의 건축물을 포함해야 한다. 家計의 唯一한 혹은 主된 住居로서 使用되고 있는 모빌·홈(Mobile-home)에 대한 支出도 包含시켜야 한다. 그러나 레크레이션 目的으로 家計에 依해 購入된 트레일러나 카라반은 耐久消費財로서 取扱되어야 한다. 마지막의 2個型的 嚴密한 境界는 各國狀況에 立脚해서 各國別로 決定해야 한다.

#### 5. 家 蓄

242. SNA에서는 家蓄을 2個의 카테고리로 分類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育種用, 羊毛, 우유等を 위하여 養育한 動物은 資本的 資産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屠殺用 家蓄은 在庫로서 計算해야 한다. 家蓄規模의 增加가 固定資本形成으로 取扱할 것인가 혹은 在庫變動으로 取扱할 것인가를 우선 決定할 必要가 있다. 家蓄의 두가지 類型間에 明確한 區別이 있는 나라도 있다. 즉 乳用牛와 肉用牛가 混用되는 일이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많은 開發途上國에서는 그 區別이 보다 애매하다. 大部分의 家蓄은 當初의 用途가

무엇이던간에 結局은 食用으로 屠殺된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는 비록 概念上的 相違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도 分割하는 것은 統計적으로 不可能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所有家蓄의 平均壽命, 혹은 動物의 種類에 따른 追加的인 代替基準이 導入되어 固定資本形成으로서 分類되는 家蓄과 在庫로서 分類되는 家蓄으로 區分할 것을 提案하고 있다. 잘 定義된 蓄産業 내지 養鷄業을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家蓄은 屠殺目的으로만 飼育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原來的 基準을 계속 使用하게 될런지 모른다.

## 6. 附加價值稅

243. SNA가 最終적으로 改正되었을 때 附加價值稅는 널리 使用되고 있지 않았으며 新SNA에서도 明確하게는 論議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유럽共同體加盟國이 附加價值稅를 採用하게 되어 明確한 取扱이 必須로 되게 되었다. ESA는 附加價值稅를 두개의 方法으로 取扱해왔다. 첫째로 全 加盟國이 附加價值稅를 實施하기 以前에 Gross registration이 勸告되었다. 즉, 粗課稅額과 控除額 雙方을 各各 活動種類別로 分明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 附加價值稅가 實施됨에 따라 ESA는 Net registration으로 바뀌었는데 Net registration은 實際로 支拂된 稅額, 다시말해서 粗課稅額 마이너스 控除額만을 나타내고 있다. ESA와의 兩立可能性이 여기에서는 支配的인 基準으로 보일 것이고 ESA에서의 取扱을 採用할 것이 提案되고 있다.

## 7. 公共企業의 利益과 損實

244. SNA는 狀況에 따라 公共企業의 利益과 損失에 대해 많은 相異한 取扱을 提案하고 있다. 公共企業에 대해서는 損失을 카버하는 모든 支拂은 補助金으로 생각되고, 다른 한편 利潤은 正常分과 正常을 超過하는 分으로



分割된다. 正常을 超過하는 分은 間接稅로 생각된다. 그러나 公共準法人企業에게는 損失은 그것이 費用을 下回하는 價格을 維持하는 慎重한 政策을 充足시키는 目的이라고 한다면 補助金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損失은 通常의 意味로서의 損失이다. 準法人獨占企業의 正常을 넘는 利潤은 다시 間接稅로 생각된다. 準法人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非法人政府企業에게는 損失은 항상 마이너스의 經常利益으로서 取扱되지만 正常을 넘는 利潤은 間接稅이다. 이와같은 約束은 一般的으로 各國에서 無視되고 있다. 利潤 가운데 正常分과 正常을 넘는 分과의 區別方法은 알려져 있지않다. 財政上의 獨占(Fiscal Monopolies) 利潤은 間接稅로 取扱하는 國家도 있다. 그러나 損失은 價格政策 其他와 關聯시켜서 分類되는 일은 거의 없다. 데이터를 自身の 要求에 適合시켜 나간다는 利用者의 自由를 가장 잘 지키기 위한 節次로서는 一般政府所得支出計定 가운데 獨立된 項目으로서 一般政府로 옮겨지는 公共企業의 利潤과 損失을 나타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行할 것이 提案되고 있다.

〈附錄 1〉

## OECD 國民經濟計定專門家 會議의 概況

## 머 리 말

1983年 5月 25日부터 3日間 파리에서 開催되었던 OECD 國民經濟計定 專門家會議에는 19個國<sup>(註1)</sup> 32名의 專門家와 國際聯合統計局, EC 統計局, IMF 統計局으로부터의 出席者가 出席하여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下記의 問題에 對하여 論議하였다.<sup>(註2)</sup>

1. 年金 및 生命保險
2. 利子取扱
3. SNA의 후렉시빌리티 (Flexibility)
4. 화이난스·리스 (Finance lease)

또한 四分期國民經濟計定에 대해 各國이 利用狀況等を 報告함과 同時에 每年 國際聯合과 OECD에 提出하고 있는 國民經濟計定の 統計數字 提出方法에 대한 各國의 要望事項이 論議되었다.

이 會議은 每年 OECD各國의 代表와 國際機關의 專門家를 集合시켜 開催되는 것으로서 國際聯合의 統計委員會와 함께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諸問題의 國際的인 檢討場으로서 重要な 會議로 되어 있다. 特히 當會議의 論議가 1990年을 目標로 하는 SNA改正에 反映되는 등 그 重要性이 높아지고 있다.

今回の 會議에서 主要한 討議內容은 以下와 같다.

## 1. 「年金 및 生命保險」의 取扱

우선 本件의 會議에 對備하기 위하여 OECD 諸國의 老齡年金시스템에 관한 論文 「OECD 諸國의 退職給付 (DES/N1/83.7)」가 報告되었다. 뒤이어 예일大學의 러그러스教授夫妻의 論文 「SNA에 있어서의 年金과 生命保險의 取扱 (DES/N1/83.7)」을 中心으로 議論이 이루어졌다. 當論文은 新 SNA가 開發된 후 20年이 지난 現在 年金이나 保險의 役割이 크게 變化되었다는 認識下에 社會保障, 民間年金, 生命保險, 損害保險에 關하여 SNA에서의 取扱法을 變更하도록 提案하고 있다.

우선 社會保障負擔에 대해 보면 現行 SNA가 家計에서 社會保障部門으로 支拂하는 것에 더해 雇傭主負擔分도 被傭者報酬의 一部로 看做하고 家計로부터 支拂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對해, 러그라스教授는 雇傭主負擔分은 被傭者報酬로 하지않고 直接 社會保障部門에 支拂된다고 하는 方式을 提案하고 있다.

이 方式을 採擇하면 要素所得表示의 GDP가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社會保障의 雇傭主負擔은 被傭者報酬의 一部가 아니고 間接稅로서 取扱되기 때문이다. 또한 勞動코스트와 被傭者報酬의 同一性도 喪失되게 되므로 大部分의 參加者는 이 見解에 同意하지 않고 現行 SNA를 支持하였다.

또한 社會保障給付의 경우도 現行 SNA에서는 例컨대 政府가 支拂하는 醫療費는 政府에서 家計로 給付되고, 家計에서 醫療機關에 支拂된다는 擬制를 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政府에서 直接 醫療機關으로 支拂되는 것으로 하여 當該 醫療費를 家計의 最終消費가 아니고 政府의 最終消費로 하는 方式을 提案하고 있다.

이 提案에 대해서는 贊成하는 意見이 많았다. 더우기 現在 EC 統計局은

政府와 家計의 消費 및 支出에 대한 方法을 整理하는 作業을 하고있다.

다음에 生命保險에 關해서는 近年 終身保險에 比하여 定期保險의 重要性이 높아지고 있으나 定期保險의 機能은 貯蓄機能이 아니고 死亡의 危險에 對한 單純한 保險機能이며 現行 SNA의 概念에서는 生命保險보다 損害保險에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定期生命保險은 終身生命保險과는 다른 取扱을 해야 한다고 提案하고 있다.

또한 終身保險에 대해서도 現行 SNA에서는 保險契約準備金으로서 積立되었다 해도 所有權은 契約者에게 있다고 보고 그것을 모두 家計의 貯蓄(家計의 生命保險會社에 對한 金融資産)으로 하고 있으나 準備金가운데 家計의 貯蓄으로 해야 하는 것은 解約返還金으로 充當하는 部分만을 해야 한다는 提案을 하고 있다.

以上の 提案에 對해서는 終身保險, 定期保險, 解約返還金 等の 詳細한 情報의 入手可能性에 대해 疑問이 提起되었다.

## 2. 利子の 取扱

캐나다統計局의 상가氏의 論文 「現行 SNA에 있어서의 利子取扱에 있어서의 利子取扱에 對한 代替案(DES/NI/83.6)」에 대해 論議가 이루어졌다.

同論文에서는 現行 SNA에서 財産所得으로 取扱되고 있는 利子を 서비스商品과 마찬가지로 取扱할 것을 提案하고 있다. 이에따라 銀行의 歸屬利子(歸屬서비스料)를 없앨 수 있을 뿐더러 利子에 關한 方法이 보다 簡明한 것이 된다. 例컨대 産業의 支拂利子は 中間消費, 家計 및 政府의 支拂利子は 最終消費로 된다. 또 非居住者와의 利子受拂은 서비스의 輸出入으로 取扱된다. 家計나 政府의 産業에서 받는 受取利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方法이 있을 수 있으나 本論文에서는 政府나 家計의 非營利的 生産物로 하

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이 경우에는 家計도 生産計定을 가지게 된다).

上記提案은 시스템의 根本的인 變化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SNA改正에 이 방법을 導入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認識이 支配的이었으나 특히 今後의 會議에서의 檢討에 對備하기 위하여 國際聯合統計局이 이 問題에 대한 諸提案을 취합 정리하도록 하는 要請이 있었다.

### 3. SNA의 후렉시빌리티

네덜란드中央統計局的 환·엑그, 고터, 환·투이넨氏의 論文「SNA의 후렉시빌리티(DES/NI/83.5)」에 대해 論議가 이루어졌다.

本論文에서는 SNA는 오늘날의 使用者 要求에는 充分히 對應하고 있지 못하며 政策立案이나 經濟分析의 主要한 用具로서 繼續 使用되기 위해서는 보다 후렉시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問題意識下에 以下와 같은 提案을 하고 있다.

우선 코어·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中核部分을 만들고, 빌딩·블록이라고 불리우는 補助시스템을 追加함으로써 使用者의 要求에 對應하고 있다. 코어 시스템으로서는 現行 SNA에서 金融以外的 歸屬概念을 除外한 것을 使用한다.

以上이 同論文의 要旨인데 코어·시스템으로서 上記와 같은 것을 使用하는 데에는 反對意見이 大部分이고, 코어·시스템을 使用한다고 하면 現行 SNA 그 自體로도 좋지 않은가하는 意見이 多數였다. 또한 빌딩·블록에 대해서도 具體的이 못된다는 意見이 많았고 本件에 대해서는 次期會議에 上記論文의 改正版이 提出되게 되었다.

### 4. 화이난스·리이스

리이스에 關해서는 1981年3月の OECD 國民經濟計定專門家會議 등에서 以下

와 같은 방식을 SNA改正에 編入시킬 것을 決定<sup>(註3)</sup>하고 있다. 卽, 화이난스·리이스는 오퍼레이팅·리이스와 區別하여 생각해야 하며 前者는 다음과 같은 過程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우선 借者が 市場價格으로 固定資產을 購入한다. 다음에 貸자가 론(loan)을 提供하고, 借자가 賃料를 支拂(利子和 元金支拂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함)함으로써 론을 償却한다. 卽, 契約이 체결됨과 同時에 借자가 物件의 所有者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今回は 以下 두가지 남은 問題에 대한 提案에 대해 論議가 있었다.

#### (1) 화이난스·리이스의 範圍

生産的인 物件에 限하지만 建物과 같은 不動產도 포함한다. 生産者만을 對象으로 하고 家計의 경우는 비록 耐久消費財에 對해 화이난스·리이스型의 리이스를 利用해도 對象으로 되지 않는다.

이 提案에 대해서는 大略 支持한 것 같다.

#### (2) 殘存價値(中古資產으로서의 市場價値)의 取扱

리이스期限이 끝났을 때, 借자는 殘存價値에 가까운 金額을 支拂하고 物件을 保有하는 權利를 가지나 만약 借자가 그 權利를 行使했을 경우, 支拂된 金額은 론支拂의 最終回로서 取扱된다. 또한 行使하지 않을 경우는 借자가 그 物件을 第三者(中古市場, 貸者, 他生産者)에게 賣却하여 賣却金を 最後의 支拂에 充當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方法은 參加者, 特히 프랑스代表에게는 受容되지 못했고, 賣却은 貸자를 迂回하여 된 것으로 해야 한다는 意見を 提出하여 事務局은 이에 대해 檢討하게 되었다.

## 5. 四分期國民經濟計定

OECD事務局이 表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作成할 때의 參考로 하기 위하여 各國의 狀況(四分期데이터의 利用狀況이나 各計定の 重要度等)을 應取하였다.

## 6. OECD 및 國際聯合에 대한 데이터提供에 대하여

各國이 每年 OECD 및 國際聯合에 提供하여 年報作成等に 使用되고 있는 國民經濟計定の 데이터에 대해 그 作成方法이나 提出方法에 대해 各國에서 要望, 提案등을 應取하였다.

## 7. 其 他

1982年3月の 專門家會議에서 OECD, 國際聯合統計局 및 EC統計局이 作業小그룹을 만들어 SNA改正에 대해 檢討하여 나갈 것을 決定하였다. 이 作業그룹은 그 後 이미 三回の 會合을 開催하여 統合業務計劃<sup>(註4)</sup>을 作成했으나 參考를 위해 同計劃이 參加者에게 紹介되었다.

### - 註 -

[註1] 本會議 參加國은 다음과 같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아메리카,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註2] 會議의 議題는 다음과 같다.

#### 1. 議題採擇



2. 年金 및 生命保險
3. 國民經濟計定上의 “빌딩·블럭” 사용
4. 利子の 取扱
5. 四分期 國民經濟計定
6. 화이난스·리스
7. 國民經濟計定 Questionnaire
8. 기 타

會議資料

- DES/NI/83.3 Draft Agenda
- DES/NI/83.4 SNA Guidelines on Quarterly National Accounts
- DES/NI/83.5 Flexibility i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 DES/NI/83.6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Treatment of Interest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of National Accounts
- DES/NI/83.7 Treatment of Pension and Insurance Transactions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of National Accounts
- DES/NI/83.8 Retirement Benefits in OECD Countries
- DES/NI/83.9 Financial Leasing

[ 註 3 ]

- DES/NI/81.5 Financial Leasing

[ 註 4 ] SNA改正을 위한 作業그룹 統合業務計畫表는 以下와 같다.

( 괄호 ( ) 內는 담당기관 )

CONSOLIDATED WORK PROGRAMM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REVISION OF SNA

## I. Structure and Sectoring of the System

1. Building blocks (OECD)
2. Links between macro and micro data (UNSO/SOEC)
3. Country practices in institutional sectoring (OECD/UNSO)
4. Unincorporated enterprises (SOEC)
5. Private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SOEC)
6. Statistical units (OECD)

## II. Prices and quantity comparisons

1. Use of chain indices in national accounts (SOEC)
2. Terms of trade (UNSO/SOEC/OECD)
3. Deflation in time and space (SOEC)

## III. Public Sector Accounts

1. Reconciliation and/or harmonization of GFS and SNA standards with regard to government accounts and tables (UNSO/IMF)
2. Own account production of general government (SOEC)
3. Classification of activities and purposes (SOED/UNSO)

## IV. External transactions

1. Reconciliation and/or harmonization of BOP and SNA standards with regard to external transactions data (UNSO/IMF)

## V. Household Sector Accounts and Income Distribution Statistics

1. Revision of income distribution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the household sector account in the SNA (UNSO)

2. Subsistence production (UNSO)
  3.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v. government and enterprises (SOEC)
  4. Subsidies (SOEC)
  5. Income measures (SOEC)
  6. Pensions and life insurance transactions (OECD)
  7. Interest (OECD)
  8. Illegal activities (OECD)
- VI. Financial flows, balance sheets and reconciliation accounts
1. Supplementary guidelines for statistics of financial flows, balance sheets and reconciliation accounts (UNSO)
  2. Inflation accounting (OECD/SOEC/UNSO)
  3. Depletion of subsoil assets (UNSO/OECD)
- VII. Reconciliation with other accounting systems
1. Regional accounts (SOEC/UNSO)
  2. Quarterly accounts (OECD)
  3. Development of MPS and Study of SNA-MPS links (UNSO/CMEA)

〈附錄 2〉

## 國際比較 프로젝트 專門家會議 概況

## 머 리 말

1983年 6月 20日(月)부터 22日(水)까지 파리에서 프랑스政府 國立經濟研究所  
總局(INSEE)의 招請에 따라 國際比較프로젝트(ICP)<sup>(註1)</sup>를 推進하고 있는 各  
國際機關<sup>(註2)</sup>의 專門家에 依한 特別會議(Inter-Organizational Meeting  
on the ICP)가 開催되었다.

現在 ICP는 1980年을 對象으로 한 第四期 프로젝트를 推進中이다. 이  
것은 本來 國際聯合統計局이 行하는 業務이지만<sup>(註3)</sup> 資金不足 등의 理由에서  
各地域機關(EC 統計局, 유럽經濟委員會, OECD, ECLA 등)이 地域內 ICP로서  
購買力評價(PPP)의 算定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各機關에 따라 그 算定  
方法 등이 相異하므로 世界水準으로서의 比較가 困難하게 되어 있다. 그러  
므로 各機關의 算定結果를 如何한 方法으로 聚合하고 또 調整·統合하여  
世界水準으로서의 比較를 可能케 할 것인가를 檢討하기 위하여 이번 會議가 開催  
된 것이다. 더욱이 1985年을 對象으로 한 第5期 프로젝트實施方法 등에 대해  
서도 檢討하였다.

以下 本會 合의 檢討事項에 따라 그 概況을 敘述해 보았다.

### 1. “CORE APPROACH”에 依한 世界水準比較

(1) 世界水準 比較는 Core Country 그룹을 通하여 行한다. 어느 地域內  
國家들의 PPP는 그 地域의 Core Country에 依해 他地域 國家들의 PPP  
와 連結된다.

(2) Core Country에 대해 信賴성이 높은 PPP를 作成하기 위해서는 其  
他 參加國보다도 넓은 範圍의 財貨·서비스에 價格을 定할 必要가 있다.

(3) Core Country의 選定에 있어서는 ①Core Country는 各地域의 代表的인 標本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②Core Country는 國際聯合統計局(UNSO)에 期限을 嚴守하여 價格 및 支出데이터를 提供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 ③Core Country의 數는 價格데이터의 照會等의 問題가 處理하기 容易하도록 그 數를 限定한다.

(4) 이 “Core Approach”는 第4期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第5期 프로젝트에도 適用된다.

## 2. 第4期 프로젝트(1980年 比較)

### (1) 經過報告

A. EC 統計局(SOEC)은 ①이미 12個國에 대해 PPP를 作成하고 公表를 畢하였다. ②試驗的으로 오스트리아(유럽·그룹2:後述)와 西獨의 二國間 比較를 하고 있다.<sup>(註4)</sup> ③아프리카 15個國에 대해서도 PPP의 計算을 畢하고 있다.

B. 유럽經濟委員會(ECE)는 ①「유럽그룹2」로서 5個國에 대해 暫定值를 計算하고 있다. ②그 計數는 오스트리아와 其他 國家들의 二國間 比較에 따라 計算되었다.

C. ECLA는 美州開發銀行에 依한 1979年 比較를 1980年 베이스로 改正作業中이다.

D. OECD는 SOEC의 프로젝트 對象國 以外の 加盟國(美國, 日本, 캐나다)의 價格데이터를 蒐集中이다.

E. UNSO는 西아세아 및 아세아太平洋地域에서의 프로젝트를 推進中이다. 現在 이미 日本 및 파키스탄에서 價格데이터를 入手하고 있다. 今年末까지는 12個國의 價格데이터가 UNSO에 發送될 豫定이다.

(2) Core Country 의 選擇

- 유럽 : 프랑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 北아메리카 : 캐나다
- 라틴아메리카 : 3 個國 (未定)
- 아프리카 : 2 ~ 3 個國 (未定)
- 아세아 : 日本 및 2 個國 (未定)

(3) Core Country 를 위한 價格 및 支出데이터의 追加

一般的인 財貨·서비스에 對한 데이터에 關해서는 거의 追加할 必要性이 없으나 建築에 關해서는, ①스페인에 對해서는 라틴아메리카의 Core Country에 包含되어 있는 몇개의 建築物에 價格을 定할 必要가 있다. ②日本, 노르웨이 및 캐나다에 對해서는 EC의 1 ~ 2 個國에서 價格이 定해져 있는 木造建築物에 對應하는 많은 데이터가 必要하다. ③더우기 日本에 對해서는 ESCAP 地域內의 建築價格의 比較에도 利用될 수 있는 方法으로 해야 하는 등의 決定이 이루어졌다. 또한 醫療, 教育 및 一般政府分野에서의 支出 및 그 價格構成要素에 關한 데이터蒐集 등 非市場서비스에 對한 提案·論議가 이루어졌다.

(4) 支出分類

第 4 期 프로젝트 支出分類은 各地域間에 相異하다 (基本分類數는 SOEC : 328, ECE : 300, ECLA : 140, 아프리카 : 120, OECD : 152, 아세아 : 152). 그렇지만 本質的으로는 UNSO의 152 個 分類를 基本으로 하고 있으며, 그 對應은 可能하다. 그 때 共通品目은 約 100 ~ 110으로 構成될 豫定이다.

(5) 애그리게이션方法

Core Country의 比較에 있어서 ①카테고리 레벨에서는 Country Product Dummy(CPD)法을 利用해야 하며<sup>(註 5)</sup> ②카테고리를 애그리게이션 하기 위해서는 G-K法이 가장 適切하다는 것에 合意하였다.<sup>(註 6)</sup>

또한 世界水準에서의 比較를 위해서는 國別 웨이트가 必要하지만 全體的인 웨이트 시스템에 關한 決定은 次期 會晤으로 移越되었다.

(6) 結果의 公表

① UNSO가 世界水準의 比較結果를 「Monthly Bulletin」 및 「Statistical Yearbook」에 公表한다.

② 數的인 結果에 追加하여 方法論의 記述에 대해서는 國際聯合出版物을 準備한다.

또한 世界銀行이 「World Atlas」에도 그 結果를 掲載할 수 있는 趣旨를 示唆하였다.

詳細한 것에 대해서는 次期 會晤에서 論議하기로 되었다.

(7) 第 4 期 世界水準 比較의 타임테이블

① 各地域比較에서의 價格決定方式 連結：1983年 8月

② ECLA 地域의 UNSO에 대한 데이터提供：1983年 10月

③ UNSO에 依한 ECWA 및 ESCAP 地域의 데이터 蒐集：1983年末

④ Core Country의 價格 및 支出데이터 提供：1984年 11月

⑤ 世界水準比較에 關한 速報結果 算出：1984年 4月

上記스케줄은 次期會晤에서 다시 討議한다.<sup>(註 7)</sup>



### 3. 第5期 프로젝트(1985年 比較)

#### (1) Core Country의 데이터 質

Core Country의 데이터 質과 比較可能性을 檢討해 나가기 위하여 Core Countries, UNSO, 地域機關의 代表는 繼續적으로 會晤를 갖기로 한다.

#### (2) 項目리스트

UNSO는 全「地域리스트」를 包括하는 財貨·서비스 리스트를 更新한다.

#### (3) 價格데이터의 段階的蒐集

1985年 消費者物價指數의 最終版은, 1986年 4月頃까지 利用할 수 없으므로 그때까지는 調査가 困難한 品目에 대해 調査·檢討를 進行하기로 한다.

#### (4) 比較困難한 서비스

SOEC는 第5期에서는 比較困難한 서비스(comparison resistant service)에 대해 投入側이 아니고 產出側에서 推計할 豫定이다. 投入價格도 1985年에 대해 調査하므로 Comparison resistant service는 投入法을 使用하는 것도 可能하다.

#### (5) 財政問題

ECE에서 프로젝트 推進上의 財源問題가 提起되었으나 UNSO는 豫算의 全體計劃을 作成할 趣旨에 대해 合意하였다.

#### (6) 第5期 프로젝트의 타임테이블

① UNSO에서 提起될 支出分類의 最終決定: 1983年 11月

② UNSO는 財貨서비스에 關한 世界리스트를 準備하여 關係機關會晤에 提出한다. 이에따라 Core countries는 調査品目を 檢討하여 追加·修正意

見을 陳述한다 : 1983 年 8 月

③ 各地域機關은 모든 Core country 의 데이터를 UNSO 에 送付한다.  
: 1986 年 5 月

④ UNSO 는 Core country 에 대한 算定結果를 公表한다 : 1986 年 10 月

- 註 -

[1] ICP 라 함은 各國通貨의 購買力과 一人當 實質國內總生産 (GDP) 을 比較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이다.

各國의 GDP 를 現實의 換時勢로 共通 通貨 (通常 美弗貨) 로 換算한 다는 通例의 方法은 換時勢가 반드시 通貨의 購買力을 反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適切하지 않다.

그러므로 ICP 에서는 購買力의 多國間 比較를 하는데에 一定한 統計上의 屬性을 가지고 있는 指數를 作成하고 그것을 使用하여 同時比較를 하는 技法을 開發하였다 (註4 및 註5).

[2] 參加機關名 : 國際聯合統計局 (UNSO), 世界銀行, OECD, EC 統計局 (SOEC), 유럽經濟委員會 (ECE), 라틴아메리카經濟委員會 (ECLA), 프랑스國立經濟研究所總局 (INSEE), 美國勞動省, 오스트리아中央統計局 및 日本

[3] 國際聯合 第 13 回 統計委員會의 勸告에 따라 國際聯合統計局에서는 1969 年에 ICP 에 着手하고, 1970 年, 1973 年 및 1975 年을 對象으로 各 第 1 期 (10 個國), 第 2 期 (16 個國) 및 第 3 期 (24 個國) 의 事業을 實施하고 있다.

[4] 二國間的 國際比較에 대해서는 比較國加重指數 (과쇄指數) 도 基準國加重指數 (라스파이레스指數) 와 함께 容易하게 作成될 수 있으므로 그 幾何平均을 취한 複시의 理想指數도 容易하게 作成可能하다.

$$F_{jd} = (LA_{jd} \cdot PA_{jd})^{1/2}$$

LA<sub>jd</sub> 는 j 國과 d 國間의 라스파이레스指數

PA<sub>jd</sub> 는 j 國과 d 國間의 파쉐指數

다시 이 핏셔指數를 n 國間에서 링크하는 方法도 생각될 수 있지만 (EKS 法) 이것도 어디까지나 二國間比較의 方法이다.

$$EKS_{jd} = \prod_{k=1}^n (F_{jk}/F_{dk})^{1/n}$$

[5] 下記의 G-K 法을 適用할 때, 各 카테고리 (例컨대, 신발)의 價格 데이터가 必要하다. 各카테고리는 몇개의 아이템 (例컨대, 구두, 게다 (나막신))으로 構成되고 있으나 나라에 따라서는 그것의 몇가지가 存在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와같은 경우에 그것들을 補完하여 카테고리의 價格을 算定하기 위한 方法의 하나로서 CPD 法이 있다.

具體的으로는 國家 (Country) 와 아이템 (Product) 에 關한 더미 (Dummy) 變數를 使用한 回歸分析에 따르고 있다.

[6] G-K 法은 各國別 GDP 의 構成要因 (카테고리) 別 價格 P<sub>ij</sub>, 數量 Q<sub>ij</sub> 을 賦與할 때 各카테고리의 國際價格 (π<sub>i</sub>) 과 各國의 購買力評價 (PPP<sub>j</sub>) 를 決定하려고 하는 것이다.

$$\pi_i = \frac{\sum_{j=1}^n (PPP_j \cdot P_{ij} \cdot Q_{ij})}{\sum_{j=1}^n Q_{ij}} \quad (i = 1 \dots\dots m)$$

$$PPP_j = \frac{\sum_{i=1}^m (\pi_i \cdot Q_{ij})}{\sum_{i=1}^m (P_{ij} \cdot Q_{ij})} \quad (j = 1 \dots\dots n)$$

이 (m+n) 線型同時方程式에 있어서 第n國을 基準國으로 하여 (PPP<sub>n</sub> = 1) 로 함으로써 π<sub>i</sub> 및 PPP<sub>j</sub> 의 解答을 얻는다.

[7] 次期會合은 11月28日부터 30日까지 룩셈부르크에서 開催되었다.

(資 料)

- ① 「行政管理廳統計主幹」 GDP 購買力の 國際比較에 關한 調查研究：  
1979年1月
- ② 「行政管理廳行政管理局國際統計課」 國際聯合 國際比較 프로젝트 第Ⅱ期結  
果報告書(假譯)：1980年 3月
- ③ 「The Statistical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Bank」 World Product And Income-International Com-  
parison of Real Gross Product 1975.

## Ⅱ. 國民經濟計定에서의 歸屬利子取扱

- 그 論點의 展開와 對應 -

— 目 次 —

1. 序 論 .....	151
2. 新 SNA 成立以前の 狀況 .....	152
3. 新 SNA 慣例의 內容과 問題點 .....	163
(附論) 非産業生産者로서의 銀行 .....	169
4. 上가案과 國際聯合統計局(UNSO) 案 .....	171
5. 結 論 .....	180

## 1. 序 論

「SNA에 대한 結末」이라고 表現되는 그 世界的 浸透에도 不拘하고 몇 가지 후로에 關한 SNA의 取扱이 研究家, 實務者의 廣範한 支持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1990年을 目標로 進行中인 SNA再改正作業을 契機로 明白해지고 있다. 研究家, 實務者間에 存在한 潛在的 不滿의 하나는, 銀行 및 類似 金融仲介機關의 取扱에 對한 것이었다. 所謂 「歸屬서비스」이다. 實際로 1983年 5月 파리에서 開催되었던 OECD國民經濟計定 專門家會議은 그 議題의 하나로서 「利子の 取扱」을 舉論하고, 銀行 및 類似한 金融仲介機關의 取扱에 對해 現行SNA上의 慣例에 對한 代替案(상가案)을 論議하였다. 또한 이 會議에 出席者로서 參加한 國際聯合統計局은 翌1984年 5月의 OECD國民經濟計定 專門家會議에서 現行慣例에 對한 自身の 改革案을 提出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情報로 보아 거의 確實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銀行 및 類似한 金融仲介機關의 取扱에 關한 SNA의 現在の 慣例는 廢棄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그러한 情報를 수렴하여 우선 銀行 및 類似한 金融仲介機關의 取扱에 關한 國民經濟計定上의 慣例와 그것에 關係되는 論點과를 新SNA成立 以前의 狀況을 包含하여 整理한다. 그리고 SNA再改正을 指向한 動向中에서 現在까지 나타난 두개의 主要한 提案인 상가案과 國際聯合統計局案의 內容을 紹介・檢討하여 그 위에서 筆者의 見解를 敘述하고자 한다.

## 2. 新SNA 成立 以前の 狀況

### (i) 事態의 説明

「國民所得計定上 方法論의 基礎에 있는 諸概念中에서 가장 不足한 概念의 하나는 銀行이나 生命保險會社와 같은 金融仲介機關을 取扱하기 위하여 構成된 概念이다.」 「國民所得計定에서 金融機關의 取扱은 여전히 가장 不足한 概念中の 하나이다.」

위 두개의 引用文은 쓰여진 時期가 相異함과 同時に 滿足하지 못하고 있는 國民所得計定上의 慣例自體가 相異하다. 두가지 모두 美國 商務省의 것이지만 實은 後의 引用文에 滿足하지 못하는 慣例는 前의 引用文의 筆者가 作成한 것이다.

銀行 및 類似한 金融仲介機關의 取扱에 關해서는 벌써부터 國民所得計定上 무엇인가 擬制가 必要하다고 생각되어 왔다. 新SNA(United Nations [1968])의 用語法에 따라 事態를 説明하면 銀行等은 그 本來의 意味로는 「産業」으로 간주할 수 없다. 즉 通常 生産費用을 카바할 수 있는 價格으로 市場에 販賣하기 위하여 財貨·서비스를 生産함으로써 그 活動이 補償되는 經濟主體는 아니다. 銀行이 市場으로 財貨·서비스를 販賣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代替關係 手數料나 保護預入) 그와같은 收入으로 銀行의 經常費用을 카바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銀行의 營業剩餘, 혹은 附加價值조차 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事實 銀行 等の 經營은 利子·配當 等の 受取財産所得과 預金利子を 中心으로 한 支拂財産所得과의 差額을 기초로 하여 成立되고 있다. 따라서 銀行 等を 生産者라고 생각하는 限, 그 生産額을 産業의 中核인 經濟主體



와 同一하게 測定한다는 것은 적어도 心理的 抵抗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SNA改正 第一次草案(United Nations[1965])에서와 같이 銀行 等の 生産額을 市場指向의 서비스 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負의 營業剩餘나 負의 附加價値가 發生하는 것을 認定하는 立場도 있다. 이 立場은 銀行等の 生産的 有用性을 考慮하고 있지 않다는 批判이 있을 수 있지만 對企業民間非營利機關의 新 SNA 에서의 取扱과 同一한 것으로 본다면 그와 같은 批判이 반드시 맞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인가의 擬制가 必要하다는 생각에도 相當한 妥當性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擬制는 銀行의 生産額을 市場指向의 서비스 以上으로 增加시키고 그 서비스가 處分되는 經路를 說明하기 위한 것과 그와 같은 實物面의 擬制가 있을 경우에는 並存하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金融面의(所得·支出計定에서) 擬制와의 雙方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i) 1947年 以前の 美國 商務省 慣例

本節 序頭の 두개의 引用文 가운데 첫번째 引用文이 批判의 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은 1947年 以前の 美國 商務省 慣例이다. 通常의 說明에 따르면 이 慣例에서 金融仲介機關은 「個人的 集合體(aggregate of individuals)」로서 行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金融面의 擬制로서 銀行의 受取財産所得은 마치 家計가 直接 그것을 受取한 것 같이 간주되는 한편, 預金에 對한 支拂利子は 計定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 이 慣例는 現實의 財産所得후로를 追加하는 것이 아니므로 「歸屬」으로 생각되고 있지 않다. 實物面의 擬制에 關해서는 利子を 除外하고 未分配利潤을 포함하는 「要素」

利用에 따라 銀行의 發生所得이 計算된다는 說明이 주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家計가 銀行의 中間投入과 利子以外の 「要素」를 따로 따로 購入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단 要素에 對한 支拂이라는 概念은 Warburton[1958]에 依해 指摘된 바와 같은 問題點을 가지는 것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또 新 SNA 에서와 같이 要素서비스의 購入이 可能한 經濟主體를 生産者에 限定한다는 理論을 前提로 하여 생각하면 위의 慣例은 政府서비스나 對家計民間非營利서비스와 同種의 生産者 概念을 銀行에 設定한다고 것을 意味하는 어떤 종류의 費用아프로치라고 말해도 좋으나 未分配利潤이나 配當을 費用으로 간주하는 것은 新 SNA 의 立場에서는 不可能하다. 費用아프로치에 대해서는 後述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이와같은 方法에 包含될 수 있는 二重計算要素를 指摘해두면 充分할 것이다. 實際 이 慣例은 國民所得을 過大評價하고 있다고 批判되는 것이다.

### (iii) 인테마=스톤의 方法

1947 年에 出現한 두개의 文獻, 즉 Yntema[1947]와 스톤의 이름에 連結될 수 있는 United Nations[1947]은 銀行 및 類似金融仲介機關의 取扱에 있어서의 國民經濟計定上 하나의 標準을 確立했다고 해도 된다. 實際로 이들 文獻에 依해 導入된 方法이 1947 年 以後의 美國商務省 慣例로 되고 國際聯合이나 OEEC 에 의한 國民計定統計作成上的 國際的 基準(前者는 舊 SNA 즉 United Nations[1953], 後者는 OEEC[1959])에도 들어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慣例-인테마=스톤의 方法이라 부름-은 두개의 「歸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金融面에서의 擬制이다. 銀行이 預金에따라 行한 貸付 其他

投資에서 받는 利子·配當 等の 財産所得 全額이 本來 預金主에게 支拂되어야 한다는 前提에서 銀行이 實際로 支拂하는 預金利子(貨幣利子) 外에 受取財産所得과 支拂預金利子와의 差額(歸屬利子라고 불리움)도 預金主에게 支拂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擬制은 必然的으로 또하나의 擬制을 수반한다고 생각되었다. 歸屬利子部分이 預金主로부터 銀行으로 返拂되기 위한 實物面의 擬制이다. 즉 銀行은 預金主에 對하여 마치 歸屬利子額과 同額의 「歸屬서비스」를 生産하고, 預金主는 이 서비스에 對한 代價로서 歸屬利子分을 銀行에 支拂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인테마의 說明에 따르면 銀行은 預金主의 資金을 자유롭게 使用하는데 대한 代價로 預金主에게 外見上 無料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歸屬서비스의 內容에 關하여 인테마自身은 設定된 預金口座에 附隨하는 서비스와 預金主의 資金을 投資하는 것에 關聯하여 提供되는 서비스를 想定하고 있다. 즉, 銀行의 基本的인 活動을 ① 要求拂(當座)預金口座나 貯蓄性預金口座에 수반하는 서비스의 提供과 ② 資金投資에 關聯되는 所謂 「預金主의 代理人」으로서의 活動 두가지로 보고 있으나 이 慣例의 批判者들은 주로 ①을 念頭に 두고 있는 일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스톤은 ②에 關해서는 明示的이 아니다.

歸屬서비스·歸屬利子の 部門分割은 預金分布에 따른다. 預金主가 家計이면 歸屬서비스는 最終消費支出의 一部分, 産業(生産者)이라면 中間消費의 一部分으로 간주해야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ii)에서 叙述한 方法과 인테마=스톤의 方法과를 比較하기 위하여 Yntema[1947] pp.36~39의 設例에 따라 두개의 方法에서 導出되는 國民計定을 各各 第1表, 第2表로서 行列形式으로 表示해 놓은(특히 第3表로서 擬制하지 않는 케이스를 나타냄) 設例自體가 完全接合性을 缺如하기 때문에

더미計定을 包含하는 擬似接合體系로서 나타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生産計定에서는 部門內의 去來는 連結操作에 의해 抹消하는데 利子·配當은 産業間의 후로를 그로스로 表示해두고 있다.

〈第1表〉 1947年以前の 美國商務省慣例에 따른 國民計定

	産業銀行 (生産) (生産)		産業銀行 (所得) (所得) (支出) (支出)		더미計定			其他 計定
					利子	配當	賃金	
産業(生産)		30						170
銀行(生産)								90+5
産業(所得) 支出	附加價値 200				10	5		
銀行(所得) 支出		附加價値 65						
더미計定	利子		75					
	配當		35	3				
	賃金		95	60				
其他計定			10	2	70+(-5)	30+(3)	155	

〈第2表〉 인테마=스톤의 方法에 따른 國民計定

	産業銀行 (生産) (生産)		産業銀行 (所得) (所得) (支出) (支出)		더미計定			其他 計定
					利子	配當	賃金	
産業(生産)		30						170
銀行(生産)	40							5+50
産業(所得) 支出	附加價値 160				10+40			
銀行(所得) 支出		附加價値 65			70			
더미計定	利子		75	10+90				
	配當		35	3				
	賃金		95	60				
其他計定			10	2	50+(5)	(3)	155	

<第3表>

擬制을 하지 않은 경우의 國民計定

	産業銀行		産業銀行		더미計定			其他計定
	(生産)	(生産)	(所得支出)	(所得支出)	利子	配當	賃金	
産業(生産)		30						170
銀行(生産)								5
産業(所得支出)	附加價值 200				10	5		
銀行(所得支出)		附加價值 -25			70	30		
더미計定	利子		75	預金利子 10				
	配當		35	3				
	賃金		95	60				
其他計定			10	2	(5)	(3)	155	

商務省舊慣例에서 銀行의 受取利子(70) 受取配當(30)은 直接家計의 所得支出計定(國家에서는 其他計定)에 記入되는 한편, 預金利子(10)는 전혀 無視되고 있다. 舊慣例의 實物面을 記述하기 위하여 家計는 銀行의 生産計定을 「經由」하여 銀行의 中間消費인 財貨·서비스(30), 銀行被雇傭者의 勞動서비스(60) 및 配當(3)과 未分配利潤(2)으로 나타내는 生産要素를 購入하는(合計 90) 것으로 생각해 보았다. 通常의 意味로서의(家計에 對한)서비스 販賣가 5 만이 있으므로  $95-30=65$ 가 銀行의 附加價值이다. 인테마=스톤 方法도 銀行部門의 附加價值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銀行의 歸屬서비스 一部分(42)은 産業이 購入하고 있으므로 國民所得은 그 部分만큼 減少하고 있다. 實際 商務省 舊慣例에서 國民所得은 265, 인테마=스톤 方法에서 國民所得은 225 이다.

인테마=스톤 方法은 商務省舊慣例와 比較해서(後述하는 것과 같은 不充分

한 점은 있지만) 銀行을 獨立的 經濟主體로 認定한 點과 銀行서비스中에 中間財的 性格의 것이 存在하는 것을 指摘한 點에서 評價되어야 할 方法이다. 그러나 批判되어야 할 點도 많다. 우선 歸屬利子·歸屬서비스를 家計나 企業과 같은 部門間에서 配分된다든가 또는 產業間에 配分하는 것에 關하여 데이터入手可能性의 問題가 있다. 또 預金者서비스의 애매한 內容도 물론이지만 그 代價가 歸屬利子 金額과 同一하다는 根據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銀行서비스 中에는 借者側에 對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方法이 1950,60年代에 스피글=실버맨提案이나 가와구찌 히로시(川口弘)教授가 提示한 見解를 導入했다고 생각된다.

#### (iv) 스피글=실버맨案과 川口案

市場이 生産된 財貨·서비스計定價値의 標準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國民 經濟計定の 傳統的 基準에 立脚해서 생각하면 歸屬計算의 範圍는 될수 있는 限 限定的으로 해야 한다는 命題가 導出된다. 같은 歸屬財產이라 해도 歸屬집세에서와 같이 同種의 財貨·서비스가 市場評價를 獲得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銀行 等に 關한 歸屬計算과는 根本적으로 相異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인테마=스톤流의 歸屬慣例에 對한 代替案으로서 1950,60年代에 提出된 두 개의 提案은 利子야말로 銀行서비스에 對한 市場評價이며 이것을 認定함으로써 歸屬措置에 依하지 않고 銀行에 正의 生産的 有用性(正의 附加價値)을 賦與할 수 있다고 主張하고 두개의 提案이라 함은 스피글 =실버맨案(Speagle and Silverman[1953]) 川口案(川口[1963,65])을 말하며 前者는 뉴욕州 銀行局에 屬하는 스피글과 실버맨 兩氏에 依해 1953년에 發表된 方

法, 後者は 日本의 國民經濟計定審議會에서 川口弘教授(當時專門委員)에 依  
해 1963 年에 提案된 方法이다. 最近의 SNA 再改正動向中에서 上가案이라고  
불리우는 提案은 前者를 基礎로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스피글=실버맨案과  
川口案, 兩案은 杼앙스의 差異는 있다고 해도 事實上 同一한 提案으로 생  
각할 수 있으므로 이 節에서 整理하여 論議한다.

兩者의 共通된 特色은 銀行의 主要業務에 對한 認識의 深度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兩者의 생각에 따르면 商業銀行의 主要業務는 다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즉 銀行의 所有者·債權者에 屬하는 資金을  
專門的으로 管理·投資하는 것 및 部分準備制度下에서는 同等하게 重要한  
것으로써 同時的 貨幣의 創造이다:.....兩者의 것과 全面的으로 相異한  
銀行機能의 評價는 商務省이 主張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에 따른 銀行業  
이라함은 換操作을 包含하여, 預金主를 위한 計定記錄을 維持하는 것이라고  
한다」(Speagle and Silverman[1953]) pp.131-132)

「近代的 銀行의 機能에 대해 多少라도 知識을 가지고 있는 者라면 銀  
行이 單純히 受動的인 預金接受機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銀行은 流動性 保有形態가 된다는가 過小單位가 된다는가 或은 經驗·知識·  
能力 過小때문에 危險費用이 過大로 된다는가 하여 그 自體로서는 對企業貸  
付에 運用不可能한 資金을 大量化·集中化하여 專門的 投資管理能力을 提供  
함으로써 貸付可能資金으로 變質시키는 것으로서 그 받아들이는 預金資金과  
貸出하는 貸付資金과는 質的으로 同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川口[1965] p.49)

그들은 銀行業務中에서 貨幣創造機能을 그 副產物로서 가지는 貸付  
業務에 對하여 主要한 웨이트를 두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預  
金主가 인테마=스톤方法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諸서비스는 外

觀上 無料가 아니고 直接的으로는 借者가, 間接적으로는 經濟主體가 支拂하고 있는 것이다. 預金主가 受益者라고해서 預金主가 實際로 支拂하고 있지 않는 것을 支拂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最近 자주 言及되는 去來者/去來原則에도 反對될 것이다.

이와같은 方法을 計定記錄속에서 表明하기 위하여 그들은 預金主가 銀行에 提供한다고 생각되는(要素)서비스를 銀行이 借者에게 提供하는 서비스와 區別하여 後者를 非要素서비스로 생각하였다. 川口案에서는 後者の 非要素서비스를 「貸付資金用役」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 預金主가 家計이고 借者가 企業일 경우에 대해보면 家計部門에서는 預金用役을 企業에 팔아서 預金利子 所得을 얻고, 銀行部門은 이것에 따라 貸付資金用役을 生産하고 그 賣上金으로서 貸出利子支拂을 받는다. 貸出利子和 預金利子の 差額은 歸屬과 같은 擬制을 하지 않고 銀行의 生産活動에 의한 附加價值分으로 간주된다.」(川口[1963]p.49)

「提案되는 方法은 單純하고 直接的인 것이기는 하지만 2個種類的 利子支拂間의 區別을 導入한다. 즉 投資業務의 專門家에 對한 報酬로서 受取할 수 있는 利子和 그 主要職業이 金融業務 以外에 있는 個人에 依해 受取되는 利子를 區別한다. 이와같이 利子取扱에 關하여 二重性을 導入할 것을 提案하는 意味는 相異한 統合된 水準에 있는 企業에 割當可能한 算出의 量的인 差에 注目함으로써 보다 잘 理解될 것이다. 實際 外部의 經濟顧問과 契約을 체결하고 있는 企業은 企業內部的 스태프로서의 에코노미스트를 가지고 있는 企業보다 작은 生産物의 源泉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後者는 被雇傭者이며 前者는



自己自身の生産物を 만들어 낼 수 있는 獨立的 經濟單位라고 하는 單純한 理由에 따른다. 類推에 따라 企業이 銀行으로 부터 借入할 때는 中間財의 水準으로 資本을 利用하는 것을 購入하고 있다고 해도 個人의 流動形態의 貯蓄을 直接 利用하고 있는 企業은 말하자면 그 홈·그라운드에서 팀의 一員으로서 「生産要素」를 雇傭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Speagle and Silverman[1953] p.130)

第4表로서 인테마의 設例를 스피글=실버맨案 내지 川口案에 따라 表示해 보았다. 銀行의 受取利子·配當은(貸付資金用役이라 함) 非要素서비스로 간주되므로 더미計定에는 記入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銀行의 受取利子·配當은 全額 企業이 支拂한 것으로 생각해 두었으므로 問題의 貸付資金用役은 中間財이다. 그러므로 設例의 國民所得은 擬制를 하지 않은 케이스와 同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銀行의 受取利子·配當中에 家計나 政府에 依해 支拂된 것이 있을 경우 貸付資金用役은 最終財이므로 國民所得은 그 分만큼 增加한다.

스피글=실버맨案 내지 川口案은 銀行 서비스中에는 借者에게 指向한 것이 있다는 것을 主張한 點에서 以下에 叙述하는 新 SNA 見解에 連結되는 것이 있는데 몇가지 弱點도 있다. 우선 川口案에서 貸付資金用役이라 불리우는 非要素서비스의 애매함이다. 當時 宮譯健一教授(國民經濟計定審議會專門委員)는 川口案에 對하여 國民所得計定과 産業聯關表의 統合(integration)의 觀點에서 다음과 같이 批判하고 있다. 「企業의 支拂利子を 利潤에서의 再分配로 보지 않고 企業의 코스트로서 中間經費에 다 包含한다고 하면 金融서비스의 投入係數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投入係數는 各産業의 金融機關에 대한 依存度の 相異(自己資金과 他人資金 構成의 差)에 依해 不完全하고 誤差를 낳는 缺陷을 必然的으로 수반한다.」(宮譯[1963] p.58)

또 利子후로를 要素서비스에 對應하는 것과 非要素서비스에 對應하는 것으로 分割하는 理由는 반드시 明瞭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고해도 當時 川口案에 對한 批判으로 있었던 바와 같이 利子を 要素費用으로 간주하는 것을 確立된 經濟理論에 따르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提案中에서 說明되었던 것 같은 預金資金과 貸付資金間의 質的差異는 認定한다고 해도 一定期間 他經濟主體에 資金을 提供한다고 하는 契約行爲의 內容에 本質적으로 差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本來(그것에 附隨되는 서비스는 別個로하고) 이와같은 契約行爲 서비스로서의 屬性을 가진다는 것은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家計가 企業에 直接 資金을 提供하고 있을 경우(社債를 購入하는 것을 包含)에는 非要素支拂을 받는다는 것은 符合性이 缺如된다.

### 3. 新SNA慣例의 內容과 問題點

인테 마=스톤慣例를 포함하는 舊SNA體系는 國民計定 作成上의 國際的인 基準으로서의 機能을 하는 것이 아니고, 2回의 小改正을 거친 다음 1968 年에 新SNA體系의 成立을 보았다. 이미 叙述한 바와 같이 SNA改正 第1次草案에서 스톤이 銀行에 關한 歸屬의 廢止를 意圖하고 있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完成한 新SNA體系에서는 事態는 달라져 있다.

新SNA體系에서의 銀行 및 類似한 金融仲介機關의 取扱에 對한 見解는 以下와 같이 整理될 것이다(新SNA para.6.32-35)

〈第4表〉 스피글=실버맨案 내지 川口案에 따른 國民計定

	產 業 銀 行		產 業 銀 行		더 미 計 定			其 他 計 定
	(生産)	(生産)	(所得支出)	(所得支出)	利子	配當	賃金	
產業(生産)		30						170
銀行(生産)	貸付資金用役 100							5
產業(所得支出)	附加價值 100				10	5		
銀行(所得支出)		附加價值 75						
더 미 計 定	利子		5	10				
	配當		5	3				
	賃金		95	60				
其 他 計 定			10	2	(5)	(3)	155	

(가) 銀行 및 類似 金融仲介機關의 附加價值나 營業剩餘가 常例의으로 負(마이너스)로 된다고 하는 變則的 事態는 解消시키려고 하지만 歸屬利子

는 廢止된다.

(나) 歸屬서비스料는 國內産業의 中間消費로서 殘存한다. 歸屬서비스의 內容에 關해서는 各 經濟主體의 貯蓄(물론 銀行自身の 것은 包含되지 않는다)을 産業에 對한 貸付로서의 橋梁役割을 하는 銀行의 主서비스로 생각한다. 따라서 産業·政府서비스·家計間에 歸屬서비스料를 配分한다고 하는 困難은 避하게 되었다.

(다) 歸屬서비스料는 原則적으로 銀行 및 類似 金融仲介機關이 그 保有하는 預金에 따른 貸付, 其他 投資에 對한 受取財産所得이 支拂預金利子を 超過하는 金額으로서 測定된다. 그러나 同時に 實際的 配慮로서 自己資金에 依한 投資로 부터의 財産所得 等を 포함한 모든 受取財産所得에서도 支拂預金利子を 빼는 것이 一般的으로 必要한 것이다.

(라) 歸屬서비스料를 産業의 中間消費로 分類하는 것은 産業이 貸付에 對해(元本 以外에) 支拂하는 金額을 서비스料와 「純粹」한 利子(“Pure” interest)로 分割하는 것과 같다.

(마) 歸屬서비스料를 여러 産業으로 配分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名目産業(Nominal industry)의 中間消費로 取扱한다.

(바) 이 名目産業은 體系의 所得·支出 計定에서는 金融機關으로 分類되므로 名目的으로 記錄되는 負의 營業剩餘=附加價値는 銀行에 歸屬된 絶對値와 같은 同額의 正의 附加價値와 相殺된다.

。 以上の (가)~(바)에서 알 수 있듯이 SNA의 새로운 見解로는 스피글=실버맨案이나 川口案이 要請한 것과 같이 銀行貸出面에서의 活動에 重點이 주어지고, 歸屬서비스도 인테마=스톤慣例와는 逆으로 貸者에 對한 서비스가

아니고 오히려 借者에 對한 서비스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內容規定에 關하여 事實上 아무런 說明이 되어 있지 않으며 그 서비스가 왜 産業內部에서의 分割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 즉 왜 歸屬서비스의 配分이 二重의 意味로 回避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分明하지 않다.

預金資金을 企業等に 貸付할 때, 借者の 信用을 調査한다든가 借者の 必要에 따라 滿期等を 包含한 貸出條件을 設定한다든가 貸付에 關한 書類를 作成・管理한다든가 利子나 元金を 集金 하는 일에 關하여 銀行은 借者에 게 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또한 그렇게 생각하면 新SNA (Para.6.31) 에서의 對個人金融會社에 關한 記述과 符合的인 것같이 보이나, 그렇다고하면 왜 銀行의 歸屬서비스가 産業에만 配分된다고 볼 것인가 또 왜 歸屬서비스測定에 關하여 貸付利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서비스를 隨伴한다고 생각되지 않는 國債利子나 配當을 包含하는 受取財産所得의 大部分이 利用되는지 說明할 수 없다.

國債利子나 配當의 受取도 어떤 뜻에서는 그로스이지만 新SNA 記述은 各部門의 貯蓄을 産業으로 連結하여주는 橋梁役割을 하는 것을 銀行의 主・서비스(量的으로 重要하다고 할것인지, 質的으로 重要하다고 할것인지)로 하고 있다. 貸付와 貸付以外の 投資와의 境界線은 明瞭하다고 할 수 없더라도 測定된 歸屬서비스의 크기와 內容規定이나 配分方法과의 사이에는 어떤 種類의 差가 있다. 또 國內産業에만, 따라서 非居住者나 家計等에는 서비스가 提供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 것, 혹은 提供되어도 支拂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은 「GDP를 擴大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利點은 있었을 것이고 이 點이 計定體系設計者에게 키・포인트 였다고 보일 것이나 國際的으로 重要的 金融센터를 가지고 있는 小國(例컨대 룩셈부르크)의 경우,

GDP 를 致命的으로 過小評價하는 것이 될 것이다.

産業間에서 歸屬서비스의 配分을 하지 않는 것은 (i)에 提示된 純粹利子 計算도 하지 않는 結果가 된다는 點에서도 重要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理由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데이터의 入手可能性問題를 포함하는 實際上的 困難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困難은 新 SNA 設計當時에 비해 오늘날에는 大幅 減少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實質系列의 作成까지 包含해서 생각할 경우 産業別 貸出殘高나 그것에 對應하는 디플레이터의 情報가 必要 할 것이다. 두번째로 新 SNA 의 部門分割이 實物과 金融의 二分法으로 불리우는 特色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銀行貸付에 對하여 責任을 가져야 할 制度上的 單位가 産業分類와 原則적으로 對應하지 않는다고 하는 問題가 發生된다. 特히 用途가 特定되어 있지 않는 貸付의 경우 相當히 深刻한 問題가 發生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로 筆者가 別途의 場所에서 提示한 見解이지만 新 SNA 取扱은 銀行 서비스를 事實上 「中間公共財」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는 立場이다. 新 SNA 에서는 財産所得후로를(双務的 契約內容을 가진 그 意味에서 反對給付가 있는) 經常移轉으로 보고 있으므로, 政府서비스의 후로가(反對給付가 없는) 經常移轉에 依해 마이너스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歸屬된 銀行서비스 후로가 經常移轉에 依해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는 것은 正當 할 것이다. 그러나 政府서비스와 달리 金融機關은 定義上 産業에 屬하므로 그 生産額을費用따라 測定하지 않고 他産業部門이 그러하듯이 利潤을 포함한 指標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후로는 多分히 公共財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歸屬서비스의 內容規定에도 關聯되지만 銀行組織全體가 社會에 提供하는 貨幣創造서비스까지 言及치 않더라도 預金으로 獲得한 資金을 産業間에 配分하는 서비스는 만드시 資金配分을 받은 産業

만이 提供되었다고 보는 必然性은 없기 때문이다. 利子が 資源配分에서 차지하는 役割은 잘 알려져있는 것이나 價格機構의 機能에 費用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銀行서비스 機能에도 費用이 드는 것이다. 이 費用을 負擔하는 것은 實際로 資金配分을 받은 産業이라 할지라도 그 負擔은 서비스에 對한 支拂形式을 取하는 것이 아니라 移轉支拂의 形式을 取하므로 住民全體에 便益을 주는 政府서비스가 住民의 一部에 대한 租稅에 依해 마이너스로 될 可能性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즉 銀行서비스는 公共財的 性格을 가지며 더구나 新SNA에서는 그 性格을 産業의 中間消費로 간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最後方式은 多少「解釋」의 테두리를 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 國民經濟均衡(MPS)에서는 財政·信用·保險이 一括되어, 一般的 集團的 必要(General Collective Needs)를 充足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銀行서비스를 公共財로 보는 것 自體는 그다지 妥當性이 缺如되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筆者는 이와같이 銀行서비스를 公共財로 보는 立場에서 한가지 提案을 한 일이 있다.(作間[1977]). 本節의 附論으로 하기로 한다.

第5表에서는 新SNA 取扱에 따라 인테마의 說例를 表示해 보았다. 産業을 一括하고 있으므로 新SNA 取扱의 모든 것이 表現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나)의 記述에 따라 歸屬서비스의 取扱은 所得·支出計定이 波及하는 것을 阻止하는 데에 體系設計者의 하나의 目標가 있었다고 생각되므로 銀行의 受取利子を 純粹利子和 歸屬서비스料로 分割하여 純粹利子만을 所得·支出計定에 記入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 點은 筆者의 解釋이다. 第5表는 産業을 一括하고 있으므로 純粹利子を 그로스의 受取利子에서 分離하는 것은 技術的으로 可能하지만 그 때문에 體系의 金融面에서 現實의 受取財

〈第 5 表〉

新 SNA 取扱에 따르는 國民計定

	產 業 銀 行		名目產業 의 代替	產 業 銀 行		더 미 計 定			其 他 計 定
	(生産)	(生産)		(所得 支出)	(所得 支出)	利子	配當	賃金	
産業(生産)		30							170
銀行(生産)	90								5
名目產業의 代 替									
産業(所得 支出)	附加價値 110		+90			10	5		
銀行(所得 支出)		附加價値 65	-90			70	30		
더 미 計 定	利 子			75	10				
	配 當			35	3				
	賃 金			95	60				
其 他 計 定				10	2	(5)	(3)	155	

產所得후로를 混亂시키는 것이 體系設計者의 意圖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리고 表中에서는 「名目產業의 代替」라는 計定을 導入하여 實物面과 金融  
面の 符合性を 保證하고 있다.



## (附論) 非産業生産者로서의 銀行

筆者는 銀行 其他 市場指向으로 金融서비스를 販賣함으로써, 主로 受取財産所得과 支拂所得의 差로 活動을 보상하는 것과같이 金融機關을 「産業」에서 빼고 「非市場金融서비스의 生産者」로서 政府서비스 生産者나 對家計民間非營利서비스生産者와 同等하게 取扱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이 있다(作間[1977]). 물론 政府서비스나 對家計民間非營利서비스의 生産額이 그러한 바와 같이 非市場金融서비스生産額은 費用으로 測定되고 生産額에서 商品·非商品販賣를 控除한 分이 自己消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費用접근」은 어떤 뜻에서는 1947年 以前의 美國商務省慣例以來의 것이나 費用概念에는 營業剩餘를 포함하고 있지않은 生産額=中間消費+被傭者報酬+資本消費+純間接稅이다. 新SNA에서는 生産要素概念의 適用에 매우 慎重하기 때문에 商務省舊慣例와 같이 利潤을 要素費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다음 節에서 叙述하는 國際聯合統計局案(1984年)은 費用접근을 部分的으로(中央銀行 및 特株會社等) 採用한 것이고, OECD 國民經濟計定專門家會議(1984)에서도 一部 參加者들이 費用접근을 支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實際 「銀行서비스의 利用者를 特定化하기 위한 理論的인 根據는 存在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에서 「만약 銀行서비스의 모든 것을 中間消費로서 取扱한다는 現行시스템에 不滿이 있다면 가장 單純한 代替案은 그 모두를 最終消費로 하는 것이다」고 하는 意見이 있었다고 傳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見解에 對해서는 銀行서비스의 一部分은 明白하게 中間消費的 性格을 가진다는 反對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否定하려고 하는 뜻은 없지만 政府서비스에도 同一하게 해당될 것이다. 예를 들면 道路나

橋梁의 維持・補修는 어떠한가, 農家에 對한 技術指導는 어떠한가, 이와같이 政府서비스中에도 中間項目이 相當히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널리 認定되는 見解라고해도 좋다. 政府서비스에 關하여 中間項目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最終的인 것으로 取扱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라면 銀行서비스에 대해서도 同一한 취급이 認定되어도 좋을 것이다.

大體로 政府서비스의 어느 程度를 中間的, 얼마만큼을 最終的으로 보고, 그것에 따라 國民所得이라는 스카라를 增減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意義가 있을까, 오히려 重要的 것은(時間比較・空間比較의 후레임웍으로서의 그것을 포함하여) 國民計定으로 表現되는 經濟遂行에 대한 描寫인 것이다. 政府서비스의 一部分이 中間的인 것일지라도 政府의 目的 分類形態로 그것이 알려지면 充分한 것이고, 더구나 典型的인 產業에서와 같이 單純한 投入-產出關係를 假定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考慮하면, 그 편이 바람직하다고 까지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銀行서비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第6表는 附論에서 서술한 方法을 使用한 경우의 國民計定이다. 資本消費 및 純間接稅는 無視하고 銀行의 生産額이 中間消費(32) 및 賃金(60)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았다. 이 90의 生産額中 市場指向의 서비스가 5만 있고 나머지(85)는 自己消費된다.

〈第6表〉 費用接近에 따른 國民計定

	産業銀行 (生産) (生産)		産業銀行 (所得) (所得)		더미-計定			其他 計定
			支出	支出	利子	配當	賃金	
産業(生産)		30						170
銀行(生産)				85				5
産業(所得・支出)	附加價值 200				10	5		
銀行(所得・支出)		附加價值 60			70	30		
더미 計定	利子		75	10				
	配當		35	3				
	賃金		95	60				
其他計定			10	2	(5)	(3)	155	

## 4. 상가案과 國際聯合統計局(UNSO) 案

### (i) 상가案의 內容과 批判

상가案이라함은 1983年 5月 파리에서 開催된 國民經濟計定專門家 會議에서 캐나다統計局의 상가氏에 依해 이루어진 銀行 및 類似金融仲介機關의 取扱에 關한 提案(Sunga[1963])을 가르킨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상가案의 基本的 方向은 스피글=실버맨案 및 川口案으로서 提起되어 Warburton[1958]이나 Ruggles and Ruggles[1982]에 依해 支持된 것과 같다. 卽 銀行의 受取利子(或은, 受取財産所得)를 非要素타입의 서비스에 對한 支拂로 보는 것에 그 中心的 論點이 있다. 그렇지만 重要的 改正點이 있다. 그것은 銀行의 受取利子を 非要素서비스로 봄으로써 家計의 受取利子와의 사이에 생긴 矛盾을, 家計(및 政府)의 受取利子도 非要素서비스로 간주함으로써 解消하려고 한 것이다. 後者の 후로는 家計프로퍼의 內部에서 行해지는 生産活動으로 포착된다. 그러므로 家計에 生産計定이 주어진다. 그 外에 상가는 配當을 利子和 區別하고 前者는 持分(equity)에 依한 파이낸스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配當에 依한 利潤分配는 非市場去來로 解釋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無視한다.

상가案에 對하여 OECD 專門家會議의 많은 參加者는 消極的인 것으로 傳하여지고 있다. 主要反對論은 利子후로의 複雜한 性格에 言及하는 것이다. 즉 「확실히 利子는 主要한 『서비스要素』를 갖겠지만 同時에 리스크 프리미엄 要素나 인프레的인 狀況下에서는 資本減價에 對한 補償의 要素도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見解이다. 그리고 現行 SNA 體系에 對한 根本的인 變更를 가져온다는 點도 상가案을 크게 支持하지 않는 原因일 것이다.

또한 家計의 利子受取를 商品(非要素)形態의 서비스에 對한 支拂로 한 點에 對해서는 翌年の 專門家會議에 國際聯合統計局에서 提出된 노트(United Nations[1984] Para.13) 中에서 「論理的으로는 勞動서비스供給도 資本서비스供給과 마찬가지로 取扱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하면 企業의 純產出에 企業所得과 純間接稅만 포함되게 되어 分析上 問題가 된다」라는 批判이 提起되었다. 實은 상가自身도 勞動서비스와의 關係에 言及하여 勞動서비스에 對해서는 雇傭側産業管理의 要素를 포함하는데 反하여 利子は 自己責任이고 自己의 危險負擔이므로 利潤에 보다 가깝다(Sunga[1983] Para,25)고 主張하고 있었다. 그러나 上가의 論理에 따라 勞動서비스와 利子를 區別하려고 할 경우, 賃金所得도 그로스한 것이며 多分히 自己責任要素가 있는 것을 指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오히려 家計가 受取하는 利子和 賃金과의 어느편이 더 그로스인가 하면 後者が 아닐까 하는 點에서 上가가 스피글=실버맨案(내지 川口案)에 對하여 行한 改正은 결코 有益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上가案의 提起에 따라 國際聯合統計局은 歸屬서비스慣例에 對한 스스로의 改正案을 提出하지 않을 수 없다. 以下에서 論할 것은 國際聯合統計局案인데, 國際聯合統計局案論議에 들어가기前에 스피글= 실버맨案(내지 川口案)에 對한 보다 重要한 貢獻이라고 생각되는 러글즈夫妻의 提案(Ruggles and Ruggles[1982])을 言及해 두는 것이 有益할 것이다.

時間적으로 前後하겠지만 러글즈夫妻는 SNA 再改正의 動向에 對해 커다란 影響力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두개의 文獻을 提出하고 있다. 하나는 United Nations[1982]로 發表된 國際聯合統計局的 레포트이며, 리처드러글즈에 依해 準備된 것임이 確認되었고 또 하나는 Ruggles and Ruggles[1982]이며 「Survey of Wrrrent Business」誌上에 發表된 國民經

濟計定の 統合體系이다. 두개의 文獻은 共히 銀行의 歸屬慣行에 대해 言及  
된 部分을 包含하고 있지만(United Nations[1982] Para.77 Ruggles and  
Ruggles[1982]) 前者보다 後者の 文獻에서 明瞭하게 스피글=실버맨의 方  
法을 支持하고 있다. 그리고 雙方의 文獻에서 特徵적인 것은 預金主指向의  
서비스를 「企業消費」로 處理하려고 하는 事實이다.

「企業消費」概念은 從來부터 러글즈夫妻의 作業中 重要な 位置를 占하는  
Construct 이다. 現在의 脈絡으로 이 概念이 가지는 意義는 「便益」 과  
「去來」의 乖離라는 事態에 適用됨으로써 알 수 있다. 러글즈夫妻가 자  
주 引用하는 것은(TV, 라디오등)매스·미디어에 對한 企業廣告支出에 依  
한 支援의 例이다. 매스·미디어의 供給形態에는 國家에 따라 큰差가 있겠으  
나 日本의 民間放送이나 美國과 같이 民間企業의 廣告支出에 의해 파이낸스  
되는 일도 많다. 그 경우 該當하는 支出은 中間消費의 一部分을 構成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매스·미디어 그 自體의 最終消費적인 性格은 分明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取扱에는 疑問의 餘地가 있다.

이 例에 나타나있는 問題는 主要한 便益을 받는 主體(企業에게  
도 메리트가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와 該當하는 支出에 關한 去來者와  
서로 다르다는 點에 있다. 現在의 國民經濟計定에는 去來者 / 去來原則이 취  
해지고 있으므로 當該支出을 家計의 最終消費支出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와 같은 支出을 「企業消費」라는 項目으로서 理解하려고 하는 것이 러글  
즈夫妻의 立場이다. 企業其他의 借者가 銀行에 對한 利子支拂을 通하여 預  
金主서비스에 對해서도 支拂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同一한 最終消費要  
素(그 相當한 部分은 企業의 最終消費支出이다)의 存在를 指摘할 수 있  
다고 하는 것이다. 但 實際의 利子支拂에 該當하는 預金主서비스를 分離  
하는 方法에 關해서는 반드시 明確하지 않다.

## (ii) 國際聯合統計局 (UNSO) 案

1984年5月の OECD 國民經濟計定專門家會議는 銀行 및 類似 金融仲介機關取扱에 關한 國際聯合統計局의 提案 (United Nations[1984]) 을 舉論하였다. 물론 이 提案은 前年の 專門家會議에 提出된 上가案을 받은 것인데 上가案은 ① 現行 SNA 體系에 對한 너무나 徹底한 改變을 수반한다는 點과 ② 家計의 受取利子에 關해서 이미 言及한 바 있는 不合理性에 對해 批判한 點이 SNA 慣例의 改正必要性을 以下の 理由에 따라 承認하였다.

첫째 ① 現行慣例는 銀行서비스에 포함되는 預金主서비스側面을 無視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에 ② 預金以外의 資金에 따른 貸付 其他投資는 現行慣例에서는 基本的으로 歸屬서비스의 測定에 使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는 不滿이 있다. 그리고 ③ United Nations[1982] 에서도 叙述되고 있는 것이지만 룩셈부르크, 스위스 및 싱가포르와 같은 重要한 金融센터를 가지고 있는 小國에 關하여 現行 慣例는 GDP 의 相當한 過少評價를 가져 온다는 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銀行서비스가 國內產業에게만 配分되고 있는 點은 改正되어야 하며 特히 海外部門에도 銀行서비스를 配分해야 한다. 또한 ④ 名目産業을 體系의 所得·支出計定에서 金融機關에 所屬시킨다는 點은 現行慣例의 重大한 缺陷이라고는 하지만, 歸屬서비스를 配分할 때의 데이터의 缺如를 根據로 이와 같은 慣例를 繼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以上과 같은 理由에 基礎한 UNSO 提案은 多樣한 內容을 가진 것이지만 대체로 그것을 3個部分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다. (가) 歸屬서비스의 內容과 測定에 關한 것, (나) 歸屬서비스配分에 關한 것, (다) 利子の 후로에 關한 것이다.

歸屬서비스의 內容과 測定에 關해서는 다음과 같은 提案을 했다(Para. 10-13).

(가)-(1) 歸屬서비스料는 貸出·借入 双方의 過程에서 銀行의 서비스에 對한 報酬로 생각한다.

(가)-(2) 歸屬서비스測定에서 預金뿐만 아니라 株式을 包含한 모든 負債에 따라 行한 貸付 其他投資에 對한 受取財産所得의 데이터를 利用한다.

(가)-(3) 단, 實質資産에서의 受取財産所得을 除外하고 다시 支拂面에서 銀行의 固定資産이나 營業에 必要한 其他資産을 마이너스 하기 위하여 使用된 借入資金(株式을 包含)은 除外한다.

(가)-(4) 金融機關中에서도 營業經費를 控除한 後의 受取財産所得이나 모든 所有者에 屬하는 性格을 가진 機關(株主가 事實上 그 機關을 完全히 조절할 수 있고 또한 獨立實質資産이 存在하지 않는 機關, 例컨대 銀行特株會社나 어떤 種類의 投資信託 等)에 대해서는 歸屬서비스를 費用에 따라 測定한다.

(가)-(5) 中央銀行은 一般政府部門에 分類하여 生産額을 費用베이스로 測定한다. 단, 中央銀行에 殘存하는 商業銀行機能(銀行部門·政府部門 以外の 部門預金を 管理한다든가 投資運用을 하기 위하여 借入하는 일)은 別個이다.

(가)-(6) 利子を 低水準으로 維持하기 위하여 政府가 銀行에 對하여 交附 金を 支拂했을 경우에는 經常移轉이 아니고 補助金으로 생각한다.

歸屬서비스配分에 關해서는 다음과 같은 方法이 提案되고 있다(Para.14-23).

(나)-(1) 銀行서비스를 配分할 때에는 理想的으로는 各 서비스에 關하여 實

際로 어떤 經費가 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것이 不可能할 경우에는 預金分布 및 貸付 其他投資分布를 使用해야 한다(預金殘高 1 円과 貸出殘高 1 円은 同等하게 보는듯 하다). 단, 配分은 實際서비스料 支拂(이 있다면 그것을) 포함한 總서비스料를 對象으로 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第 7 表〉 銀行서비스 配分

서비스 消費		國 內 部 門		海 外 部 門	
		銀 行	非 銀 行	銀 行	非 銀 行
서비스 提供					
國 內 部 門	銀 行	預金서비스 a	預金서비스 b	預金서비스 c	預金서비스 d
	非 銀 行	貸出서비스 e	貸出서비스 f	貸出서비스 g	貸出서비스 h
海 外 部 門	銀 行	預金서비스 i	預金서비스 j		
	非 銀 行	貸出서비스 k	貸出서비스 l		

(나)-(2) (가)에서 주어진 歸屬서비스의 測度는 第 7 表中 實線으로 둘러싸인 部分에 對應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國內銀行部門 間的 預金서비스(a), 貸出서비스(b)는 財産所得이 預金에 따른 것도, 따르지 않는 것도 相殺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또 海外部門으로의 預金서비스(c와 d), 貸出서비스(g와 h)는 海外銀行部門이 國內銀行部門에 對하여 提供한 預金서비스(i)와 貸出서비스(k)가 相殺되어 있으므로, 말하자면 銀行서비스의 純輸出이



(가)의 서비스測度에는 包含되어 있다.

(나)-(3) 그러므로 歸屬서비스의 配分에 使用되는 預金殘高데이터·投資殘高 데이터는 國內非銀行部門의 것과 海外部門의 純預金殘高, 純投資殘高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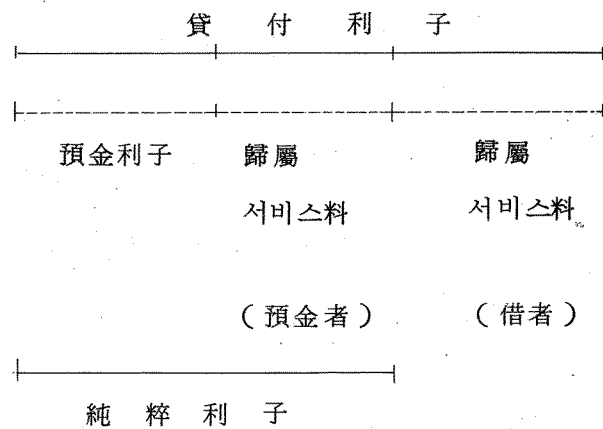
(나)-(4) 銀行部門內부의 預金서비스(a) 및 貸出서비스(e)에 대해서는 銀行·非銀行間의 서비스料와 預金殘高+貸出殘高의 比率(平均)을 使用하여 推計한다.

(나)-(5) 第7表의 破線으로 둘러싸인 部分에 대해서도 同一한 比率를 使用하여 推計한다. 中 國內銀行部門에 消費되는 部分(i와k)을 (2)에서 敘述한 純輸出에 加함으로써 銀行서비스의 粗輸出을 計算할 수가 있다.

利子후로의 記錄에 關한 提案은 以下와 같다(Para.24-27).

(다)-(1) 銀行의 現實受取利子는 그로스한 것이고 支拂預金利子는 純이므로 前者로 부터는 서비스料를 控除하고 後者에는 서비스料를 附加하여 「純粹」利子라고 불러주는 것을 計算할 수 있다.

(다)-(2) 그러나 所得·支出計定에는 純粹利子뿐만 아니라 現實의 利子후로를 歸屬서비스料에 대한 調整項目과 함께 記入해야 한다.



(다)-(3) 財産所得이 資本要素에 對한 報酬로서 支拂될 때에는 所得支出計定이 아니라 生産計定에 記入해야 한다.

UNSO 提案은 以上과 같다. OECD 國民經濟計定專門家會議에서 一部の 反對論이 있었지만 (費用베이스에 依한 測定을 支持하는 것等) 基本方向으로서는 統計局案에 支持를 보냈다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내)의 配分方法에 대해서는 우선 데이터상의 問題가 있다고 하는 意見이 있었다. 이 意見에 關해서는 UNSO 側에서 實行可能性을 테스트中이며 第1 印象으로서는 데이터상의 問題는 그다지 重大하지 않다고 하는 見解가 提示되고 있다. 또 實物과 金融의 二分法이라는 SNA 原則에서도 所得후로의 受取·支拂上 主體로서의 制度部門과 産業等の 經濟活動別分類를 對應시키는 것에 關한 原理上の 難點을 指摘하는 意見도 提出되어 있다. 이들 意見은 費用 베이스에 依한 歸屬서비스의 測定을 支持하는 見解도 포함하여 現行 SNA 慣例의 配分方法의 根據를 어디에서 求하는가(第3節參照)하는 解釋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어 興味있는 것이지만, 適當한 配分指標를 發見하는 것 만이 問題가 아니고 銀行서비스의 性格에 대해 一致된 見解와 SNA 體系全體와의 符合性 確保에 對한 觀點이 必要할 것이다.

더구나 (가)-(5)에 대해서는 反對 意見이 強하고, (다)-(3)에 대해서는 提案 그 自體의 意圖가 不明瞭하다고 했던 마지막의 것에 關한 明確化를 包含하여 UNSO 側에서 現在 提案에 對한 改正版을 準備할 豫定이라고 한다.

마지막의 것에 對해서는 보는法에 따라 SNA 體系의 相當히 根本的인 部分에 關係되는 問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實際 SNA 가 要素支拂概念의 適用에 關하여 限定的이라는 것은 正當한 根據를 가진다고 생각되어 「純粹」利子概念을 生産要素報酬와 正確하게 對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어떤가도 疑問이다.

그리고 名目후로인 利子후로를 使用한 歸屬서비스의 測定은 根本的 問題  
로서 時間比較・空間比較上的 難點을 避할 수 없다. UNSO 提案은 이 點에  
關하여 明瞭하지 않지만 만약 數量情報가 預金殘高 等に 依해 招來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國際比較上的 問題를 일으킬 것이다.

## 5. 結 論

(가) 銀行 및 類似金融仲介機關의 取扱에 關한 新SNA의 慣例는 룩셈부르크 等の 國際的인 金融센터를 가지는 小國의 GDP를 過少評價한다고 하는 點에서 改正해야 한다.

(나) 筆者自身은 第3節 附論에서 말한 바와 같이 銀行 等を 政府서비스型의 生産者로서 取扱(그 경우 生産額은 費用베이스로 測定하게 된다)하는 것을 支持한다.

(다) 그러나 OECD 國民經濟計定專門家會議에서 傳해지는 狀況에서 보면 費用接近法이 國際的으로 多數의 支持를 얻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UNSO 提案에 몇가지 點에서 修正을 求하는것이 次善의 方策이 될 것이다.

(라) 우선 前節(다)-(3)의 提案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마) 또 當期價格表示의 國民計定뿐만 아니라 時間比較, 空間比較의 關係를 吟味할 경우 提案되어 있는 銀行서비스의 內容을 더 한층 明確히 하여 들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바) 銀行서비스의 配分方法에 關해서는 實物과 金融의 二分法과의 關聯에 대해 더욱 論議가 必要하다.

(사) 中央銀行을 包含한 一部 金融機關에 關해서는 UNSO 提案과 같이 費用接近法의 採用이 要望된다.

〈附錄〉

OECD 國民經濟計定專門家  
會議의 概況

## 머 리 말

國際聯合은 現行 SNA의 經驗을 수렴하여 「시스템의 明確化」 및 「他國  
際的인 統計基準과의 符合性的 改善」을 主要한 目標로 하여 現在 SNA  
評價作業을 1990年을 目標로 進行시키고 있다. 이 評價에 있어서는 作業의  
中核을 이루는 國際聯合統計局의 專門家그룹과 關係 國際機關의 緊密한 協  
力이 必要하게 되어 SNA에 關한 事務局間 作業그룹이 設置되어 있다. 事  
務局間 作業그룹에는 國際聯合統計局, OECD 統計局, EUROSTAT, IMF 및 世界  
銀行이 參加하고 있다. 이 事務局間作業그룹의 役割은 SNA의 評價實行에 關  
한 計劃과 調整을 行하고 各國 및 國際機關의 SNA 專門家の 意見을 改正  
에 反映시키는 일이다. 每年 開催되는 OECD 國民經濟計定專門家會議도 이  
一環을 이루는 것으로 日本의 SNA에 있어서는 2年마다 開催되는 國際統計  
委員會와 함께 重要한 會議로 되어 있다.

會議은 每年 파리에서 개최되며 今회는 1984年5月23日부터 5月25日 까지  
의 3日間 開催되었다. 會議에는 20個國 36名의 專門家와 國際聯合統計局,  
EC 統計局, IMF, 國際聯合유럽經濟委員會로부터의 옵저버가 參席하고 國民  
經濟計定에 關한 下記問題를 論議하였다.

1. 利子取扱
2. 制度部門別 分割
3. SNA에서의 生産境界
4. 實質可處分所得의 測定方法
5. 統計單位

또한 上記議題 以外에 인프레會計 및 四分期別 國民經濟計定에 대해서도  
EC 統計局 및 國際聯合統計局에서의 討議結果報告가 이루어졌다.

이번 會議에서의 主要討議內容은 以下와 같다.

## 1. 利子取扱

國際聯合統計局의 論文 「SNA에서의 銀行 및 類似金融仲介機關의 取扱에 관한 提案」(DES/NI/84.6)이 報告되어 이 國際聯合統計局提案에 대해 論議가 있었다.

利子取扱에 대해서는 國際聯合統計局 顧問 리처드 리글즈教授의 SNA 評價에 관한 論文中에서 取해진 以來, SNA 改正의 主要問題로서 이 OECD 專門家會議에서도 過去 數차례 論議가 이루어졌다.

今回の 國際聯合統計局 提案을 要約하면 두개의 重要한 點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歸屬利子(歸屬서비스料)를 現行 預金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株式 等 受取利子도 포함한 것으로 하는 定義의 擴大이며 또 하나는 名目的인 歸屬利子産業만을 中間消費로서 취급하는 現行의 基準을 改善하고 그것을 預金主 및 借者에게 配分하기 위한 具體的인 案을 提示하는 일이다.

參加者의 大部分은 現行歸屬利子(歸屬서비스料)의 取扱에 대해서 룩셈부르크, 스위스와 같은 國際金融센터를 가지는 나라의 GDP 過少評價를 피하는 意味에서도 改正이 必要하므로 國際聯合統計局 提案의 方向은 好感을 가지게 하고 서비스料를 借者和 預金主에게 割當하는 것이 大개 받아들여졌다. 그렇지만 割當基準에 對한 데이터의 制約問題 혹은 中央銀行을 一般政府部門으로 分類하는 制度의 變更 等 個個의 提案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點에서 理論面의 整備와 統計데이터上 可能한 方法을 明確하게 해야 한다고 하여 國際聯合統計局에서 더욱 研究를 進行하고 本提案의 改正版을 作成하여 比較檢討 하기로 하였다.

## 2. 制度部門別 分割

1983 年에 制度部門別分割에 關한 境界問題를 OECD 諸國이 어떻게 解決하고 있는가 하는 調査가 實施되었다. 이 調査는 OECD 事務局 顧問 칼氏에 依해 實施된 것으로서 이 報告書를 기초로 OECD 事務局에서 公共企業과 民間企業, 政府企業(Departmental enterprises), 公的·民間準法人企業 및 對象計民間非營利團體 取扱에 대한 修正提案(DES/NI/84.7)이 準備되어 이 OECD 提案에 대해 論議가 이루어졌다.

### (1) 公共企業과 民間企業

SNA 매뉴얼(the Blue Book)에서는 公共企業을 定義하는 基準으로서 政府의 監督權(A) 및 所有權(B)의 觀點에서 檢討하여 分類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칼氏의 報告에 依하면 SNA의 基準이 「A 및 B」 또는 「어느 한편」이라고 애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各國에 따라 公共企業의 範圍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OECD 事務局 提案은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公共企業을 定義하는 基準으로서 監督權보다도 所有權을 重視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 倒産에서 救하는 目的으로 一時的으로 政府가 所有하는 企業은 公共企業으로 分類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때 所有權의 永續性を 考慮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2) 政府企業(Departmental enterprises)

SNA 매뉴얼에서는 一般政府와 政府서비스生産者를 區別하고 있다. 이것은 「企業組織에 依해 提供되는」 種類의 財貨·서비스를 大衆에게 販賣한다거나 政府自身에게 供給하는 政府部門 및 組織 등을 政府서비스生産者에서 除外



하기 때문이다. 이 政府活動에는 두개의 小分類가 있으며, 하나는 財貨·서비스를 他政府部門에 供給하는 것(補助機關이라 불리우는 것 — 造幣局, 印刷局 等)이고, 다른 하나는 財貨·서비스를 大衆에게 販賣하는 것이다. 後者は 小規模 그리고 不完全한 計定밖에 作成할 수 없기 때문에 公共企業에서 除外되어 있는 것이다(非法人的企業). 그러나 政府活動과 私的企業活動들의 境界가 不明確하게 됨에 따라 그 區分이 困難하게 되었다.

갈氏의 報告에 따르면 많은 OECD 加盟國은 小規模인 財貨·서비스를 大衆에게 販賣하고 있는 非法人公共企業을 政府서비스生産者에 包含하고 있다. 또 OECD 加盟國의 大多數는 SNA 매뉴얼의 政府企業(Departmental enterprises)의 概念을 拒絶하고 있으며 「一般政府」와 「府政서비스生産者」는 同一單位로서 취급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OECD 事務局은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大規模이며 完全한 生産計定을 作成할 수 있는 補助機關은 法人公共企業으로서 公共企業으로 分類하고, 한편 小規模이며 不完全한 計定을 가지는 政府企業은 政府서비스生産者의 活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고 活動別部門에서의 政府서비스生産者는 制度部門別의 一般政府와 合致시켜야 한다고 提案했다.

### (3) 公共·民間準法人企業

SNA 매뉴얼에서는 實際上 分明하게 法人과 같이 獨立하고 完全한 計定을 가지고 있는 企業을 「準法人」으로서 制度部門別 分割을 할 때에는 準法人은 法人企業과 같은 部門에 넣는 것으로서 一般通念과는 相異한 例外規定을 設定하고 있다.

그렇지만 갈氏의 報告에 따르면 非法人 및 準法人을 포착하는 方法이 各國에 따라 제각기 다르고 非法人도 準法人으로서 그 概念을 適用하려고 하

는 나라도 있다고指摘하고 있다.

또한 EC 統計局이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ESA (European System of Integrated Economic Accounts) 中에서 準法人基準을 採用하고 있으나 이들 指針은 EC 諸國에서도 活用되고 있지 않다.

이 문제에 對한 OECD 事務局의 提案은 民間準法人企業을 他非法人企業 (個人企業)과 마찬가지로 家計部門에 포함시키고 또한 統計事情이 허락하면 家計의 副部門으로서 分離하려고 하는 것이다.

#### (4) 對家計民間非營利團體 (PNPIs)

SNA 매뉴얼에서는 PNPIs 를 아래와 같이 定義하고 있다.

① 社會·公共서비스를 家計에 提供하며, 販賣로 인한 受取額은 生産에 要하는 費用을 完全히 包括하지는 않는다.

② 賣上에 依한 收入을 마이너스한 後의 生産費用計는 當該 團體의 最終消費支出을 構成한다.

③ 公的機關에 依해 監督받지 않는다.

④ 公的 機關에 依해 主 資金의 供給을 받지 않는다.

⑤ 2人 또는 그 以上の 專任 從業員이 있다.

그러나 갈氏의 調査報告에 依하면 SNA 의 定義는 法律上 資格을 言及하고 있지 않는 것부터 各國에 있어서 PNPIs 는 正確하게 分類되고 있지 않다. 또한 PNPIs 가 GDP 總額의 2~3% 以上인 國家는 드물고, OECD 大部分의 國家가 1% 以下로 되어 있다.

이 現狀과 데이타가 一般的으로 入手困難한 狀況인 點을 加味해 본 경우, PNPIs 를 SNA의 主要部門으로 다루는데 對한 意義는 적지는 않으리라고指摘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OECD事務局은 PNPIs에 대한 정보를 잃지 않고, 定義上의 統一에 依해 國際比較 能力을 높이는 結果가 되므로 PNPIs를 家計의 副部門으로 다룰 것을 提案하였다.

以上, 制度部門別 分割에 關한 4가지의 OECD 提案에 對해서는 大部分의 參加者가 同意하였다.

### 3. SNA에 있어서의 生産境界

OECD事務局이 提出한 論文 「SNA에 있어서의 生産境界」(DES/NI/84.7)에서 는 生産境界로서 (1) 非合法 活動(Illegal activities) (2) 自己消費生産者 (3) 自發的 事業(活動)의 3가지 活動을 다루며, 어떠한 活動이 原則으로 SNA에 包含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提起했다.

이 問題에 對해 參加者로 부터 各國의 現狀에 대한 報告가 있었는데 그 報告內容은 非合法活動의 範圍 및 GDP 혹은 GNP에서의 웨이트에 關한 報告에 集中되었다.

### 4. 實質可處分所得의 測定方法

OECD事務局이 準備한 論文(DES/NI/84.9)에 대해 論議가 있었다.

本 論文 中에서 OECD事務局이 舉論한 提案은 交易條件의 變化를 反映한 實質可處分所得의 適切한 測定法의 勸告를 作成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 具體的인 測定法으로서 2個의 方法을 取하였다.

하나는 輸出을 輸入價格指數로 디플레이트하는 니콜슨法이며, 또 하나는 輸出과 輸入의 디플레이터의 무엇인가의 平均으로서 만들어지는 디플레이터를

純移轉・純要素所得受取디플레이터로 하는 구라바야시(倉林)法이다.

니콜슨法에 대해서는 OECD 中 5 個國 — 英國, 美國, 네덜란드, 스웨덴 및 아이슬란드 —에서 利用者가 쉽게 理解할 수 있으므로 使用하고 있다는 趣旨의 紹介가 있었는데 本 會議에서는 交易條件의 測定法에 대해 하나의 方法을 選擇하지는 못하였다.

## 5. 統計單位

OECD 事務局이 준비한 論文(DES/NI/84.8)에 대한 論議가 있었다. 本 論文은 同事務局 顧問인 흐란쯔博士가 行한 「統計單位에 관한 國別調查報告書」에 따른 것으로서 同調查報告書는 國民經濟計定統計를 作成하기 위하여 基礎데이터를 어떻게 加工하고 있는가를 調査한 것이었다.

이 統計單位의 問題는 SNA와 ESA(European System of Integrated Economic Accounts)와의 符合性を 圖謀하는 觀點에서 생긴 問題라고 할 수 있다. 國際聯合 및 OECD는 SNA와 ESA의 符合性を 圖謀하는 見地에서 UN/OECD 國民經濟計定質問書를 1980 年版부터 改正하여 制度部門用의 生産計定을 導入하였다. 現在 經濟活動別 制度部門別 二重分類에 使用되고 있는 統計單位는 前者는 事業體單位(主로 生産되는 商品에 따라 分類된다)이며 後者는 企業單位이다. 이 때문에 二重分類된 去來間의 連結을 圖謀하기 위해서는 現在 經濟活動別로 使用되는 事業體單位(establishment)를 더욱 細分化하여 同質的인 事業體單位(establishment)를 얻는 것이 必要하다.

以上 說明한 바와 같이 本 議題에서의 論議의 中心은 事業體單位를 베이스로 한 計定과 企業單位를 베이스로 한 計定과의 接續이 가능한가 어떤

가 하는 것이었다. 論議 끝에 參加者의 同意를 얻은 것은 統計單位 問題에 대해서는 基礎統計에 있어서의 調査票段階까지 내려간 檢討가 必要하다는 것, 現行 SNA 혹은 ISIC (國際標準產業分類)에서 事業體單位의 同質性에 대해 보다 明確한 指針을 作成하여 指導를 實施해야 할 것 및 SNA 評價에 이 問題가 反映되었던 것이었다.

(本稿는 日本의 專修大學 助教授 作間逸雄氏에 의한 것이다).

### Ⅲ. SNA改正事業의 進展報告

# SNA 改正에 關한 進陟報告

- 第 23 回 國際聯合統計委員會事務總長提出報告 -

本稿는 1985 年 2 月 25 日부터 3 月 6 日까지 뉴욕에서 開催된 第 23 回 國際聯合統計委員會의 豫定議題 4a “National Accounts and balances :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關한 事務總長提出報告 “Progress Report on the Review of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를 번역 (一部는 抄譯)한 것이다.

國民經濟計定體系의 評價는 現在 國際聯合을 中心으로 OECD 等 國際機關의 協力下에 1990 年의 改正을 目標로 계속적인 作業이 이루어지고 있다. 本 報告는 이들 評價作業의 進陟狀況 및 今後의 作業計劃에 關한 最新 情報을 提供하는 것으로 國民經濟計定에 對한 今後의 展開를 國際的인 視野에서 생각할 수 있는 有益한 資料가 될 것이다.

## — 目 次 —

序 論 .....	201
I. 1975年 以後의 SNA 評價 概要 .....	203
II. SNA 評價項目에 關한 會合豫定 .....	207
III. SNA 改正을 위한 國際機關의 統合作業計劃 .....	210
A. SNA 構造 및 部門分割 .....	210
1. SNA의 構造(OECD) .....	210
2. 매크로데이터와 마이크로데이터의 連結(EUROSTAT) .....	211
3. 各國의 制度部門別 分割의 實施狀況(OECD/國際聯合統計局).....	211
4. 個人企業(EUROSTAT) .....	212
5. 對家計民間非營利團體(EUROSTAT) .....	212
6. 統計單位(OECD).....	213
7. 社會會計行列(SAMs/世界銀行) .....	214
B. 價格 및 數量의 比較 .....	214
1. 國民經濟計定에서의 連鎖指數의 使用(EUROSTAT) .....	214
2. 交易條件(EUROSTAT/OECD/世界銀行/國際聯合統計局) .....	214
3. 時間과 空間에서의 디플레이션(EUROSTAT) .....	215
C. 公定部門計定 .....	215
1. 政府計定表에 關한 財政統計와 SNA 基準의 調整, 統一 (國際聯合統計局/IMF) .....	215
2. 一般政府 및 政府企業의 自己計定生産(EUROSTAT) .....	216



3. 活動 및 目的分類 (EUROSTAT/ 國際聯合事務局)	216
4. 社會保障 (IMF)	217
D. 海外去來	217
海外去來데이터에 關한 國際收支表와 SNA 基準의 調整, 統一 (國際聯合統計局/ IMF)	217
E. 家計部門計定 및 所得分布統計	218
1. 所得分布統計가이드라인의 改正과 SNA 에서의 家計部門計定을 위한 基準 (國際聯合統計局 / 世界銀行)	218
2. 非公式活動 (國際聯合統計局 / 世界銀行 / OECD)	219
3. 家計 및 政府의 最終消費支出 (EUROSTAT)	220
4. 補助金 (EUROSTAT)	221
5. 所得의 尺度 (EUROSTAT)	222
6. 年金 및 生命保險의 去來 (OECD)	222
7. 利子 (OECD/ 國際聯合統計局)	223
F. 金融후로, 貸借對照表 및 調整計定	225
1. SNA 에서의 金融후로, 貸借對照表, 調整計定統計를 위한 補助的 指針草稿 (國際聯合統計局)	225
2. SNA 와 IMF 의 國際財政統計에서의 貨幣·銀行統計指針草稿와의 사이의 調整對應表 (國際聯合統計局 / IMF)	225
3. 金融資產 및 負債의 分類 (IMF)	226
4. 인프레會計 (EUROSTAT/OECD)	226
5. 地下資源의 枯竭 (國際聯合統計局/OECD)	226
6. 화이난샬·리싱 (Financial leasing) (EUROSTAT)	227

G. 生産計定 .....	227
1. 國民經濟計定렌드북 (國際聯合統計局) .....	227
2. SNA 의 投入・産出基準 (國際聯合統計局) .....	227
3. 서비스 (OECD) .....	228
H. 他計定體系와의 調整 .....	229
1. 地域計定 (EUROSTAT, 國際聯合統計局) .....	229
2. 四分期別 國民經濟計定 (OECD) .....	230
3. MPS 의 發展과 SNA・MPS 의 連結研究 (國際聯合統計局 / CMEA) .....	230

## 序 論

1. 統計委員會는 第22回 會合에서 事務總長報告 「SNA의 評價와 展開」  
(註1)를 支持하고 아래 點에 대해 合意하였다.
  - SNA 改正은 1990年까지 完了한다.
  - 修正, 擴張보다는 明確化 및 他統計와의 統一에 重點을 둔다.
  - 非市場歸屬 및 開發途上國에 대해서는 所得分布에 대해 높은 優先權을 賦與한다.
  
2. 委員會는, 同時에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事務局間 作業그룹에 對해 다음 事項을 委任하였다.
  - 作業計劃을 策定할 것.
  - 各國 및 國際機關의 統計專門家が 專門家會議에 充分히 參加하도록 準備할 것.
  
3. 이 報告는 統計委員會의 上記決定에 對應하는 그 後의 進展에 대해 整理한 것으로서 다음 3章으로 되어 있다.
  - 第1章 ... 1975年 以後의 SNA 評價의 概要
  - 第2章 ... 事務局間 作業그룹멤버 및 各地域委員會에 의해 1983年 부터 1985年 사이에 開催되는(되었던)會議의 豫定 및 1986년부터 1990年사이에 開催되는 專門家會議의 開催豫定(草案)
  - 第3章 ... 1990年 改正을 위한 事務局間 作業그룹멤버의 統合作業計劃의 評價(同計劃은 課題別 各그룹을 하나의 特別한 專門家그룹으로 統制하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各各 問題點을 明確하게 하기 위한 짧은 說明,  
지금까지 論議한 結果의 要約, 보다 詳細한 論議를 하기 위한 준비가 完  
了하는 時期를 提示하고 있다.

또한 本 報告에서의 計劃은 全部 暫定的이며 各 機關에 의한 豫算面에서의  
賛同에 依存하는 것임에 注意하기 바란다.

## I. 1975年以後의 SNA 評價概要

4. 統計委員會는 1968年의 第15回 會合에서 改正SNA의 公表에 贊同함과 同時에 事務總長에 對해 各國의 導入狀況을 그에 맞는 모든 概念的, (註2) 實際的인 困難과 함께 委員會에 報告하도록 要求하였다.

5. 國際聯合統計委員會는 1975年頃 SNA 導入時의 各國經驗을 調査하기 始作하였다. 1975年 12月에는 카라카스에서 改正SNA에 관한 地域間 세미나가 (註3) 열렸다. 地域會合은 아프리카에서 1975年, 西아시아에서는 1979年, 유럽에서는 1978年 (註4) 및 1980年 (註5) 에 開催되었다. 統計委員會의 第20回 會合에서 (註6) 調査結果의 假報告가 行해졌다.

6. 1980년에는 專門家그룹의 第1回 會合이 열렸다(E/CN.3/541). 將來의 作業方向이 論議되고 시스템의 明確化 및 他國際的인 統計基準과의 適合性の 改善이 重視되게 되었다. 導入實行의 繼續과 時系列의 接續을 위하여 시스템의 修正은 小規模에 그쳐야 한다고 結論지었다. 1982년에는 第2回 會合이 열려 보다 詳細한 勸告가 이루어졌다(E/CN.3/1983/5).

同會合에는 國際聯合統計局 顧問인 Richard Ruggles 教授가 準備한 主要 問題點目錄이 (註7) 提出되었다. 그 目錄은 所得과 消費의 計測 및 SNA 構造와 部門分割에 관한 明確化와 修正의 問題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한 地域計定, 四分期計定에 대한 擴張問題, SNA 指針과 他國際的 統計基準의 一致性問題 등을 檢討한 것이었다.

專門家그룹은 SNA의 評價에는 長時間을 消費해야 할 것이며 改正은 1990年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勸告하였다. 그리고 改正實行의 優先 順位를 定하고 關係國際機關의 緊密한 協力下에 評價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勸告하였다.

7. 其後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事務局間 作業그룹이 設置되었다. 當初에는 國際聯合統計局, OECD 統計局, EUROSTAT가, 그 後 IMF와 世界銀行도 參加하였다. 作業그룹의 役割은 SNA 評價實行에 關한 計劃과 調整을 行하고 各國 機關의 國民經濟計定 專門家の 意見을 改正에 反映시키는 것이었다. 同그룹은 SNA 評價作業에 包含시킬 問題를 明示하고 國民經濟計定の 概念的 發展에 關한 作業計劃을 各 機關間에 調整하고 1990年까지 改正을 하기 위한 戰略을 세웠다.

8. 作業그룹은, SNA 評價는 다음과 같은 順序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勸告하였다. 우선 統合計劃(本報 第3章 參照)에 提示된 問題에 대해서는, 關係하는 國際機關과 各國統計局 中에서 研究를 行한다. 이들 研究는 그 分野의 專門家에게 보여서 意見을 求하고 그 다음에 各國 統計局이 出席하는 地域會議에서 論議해야 한다. 다음 段階에서 統合作業計劃에 따라 열리는 一連의 問題別 專門家그룹會議에서 論議해야 한다. 이들 會議는 財政負擔配分을 考慮하여 個別 國際機關에 의해 後援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個別勸告를 整理하여 全體의 適合性を 確保하기 위하여 1~3회의 專門家會議를 開催해야 한다.

이들 3個種類的 會議는 다음 時期에 開催될 展望이다.

- 研究 및 地域水準會議

1983年~1985年

- 問題別 專門家그룹會議

1986年~1988年

- 緊合整理의 專門家그룹會議

1989年~1990年

9. 國際聯合統計局은 SNA 評價와 同時에 國民經濟計定을 整備 中에 있는 開發途上國 統計家에게 實際的인 指針을 주기 위한 핸드북 시리즈를 準備 中에 있다. 이 시리즈는 國民經濟計定質問書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SNA 의 表示를 얻기 위하여 必要한 데이터와 그 加工方法에 대해 作成된다. 現在 出版準備中인 것은 다음과 같다.

(a) 國內總生産 ... 1984 年에 印刷發注完了

(b) 公的部門計定 ... 1985 年에 出版

(c) 海外去來 ... 第 1 版原稿는 準備完了, 1985 年에 出版

(d) 金融후로, 貸借對照表 및 調整計定 ... 原稿準備中, 1986 年에 出版

이들에 이어 繼續해서 制度部門別計定, 家計部門統計와 所得分布 및 投入·產出統計에 대해서도 出版 豫定이다. 其他 必要에 따라 可能한 것을 追加해 나간다.

10. 開發途上國 意見を 最大限 反映하기 위하여 統計局은 事務局間 作業그룹멤버의 緊密한 協力を 얻어 데이터의 實行可能性(feasibility)에 關한 國別 研究指針을 基礎하였다. 이 國別 研究에는 選擇된 나라들이 參加를 要請받게 되고 地域委員會는 이들을 援助하도록 要求받았다. 評價項目으로서는 國民經濟計定の 推計順序와 密接하게 關係하고 따라서 이들 國家들의 데이터改善에 直接 關係가 될 것 같은 것이 選擇되어 있다. 그 範圍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SNA 와 IMF 의 國際收支表·財政統計의 指針과의 調整
- 制度部門別 分割
- 非公式部門의 自給 및 其他活動의 範圍
- 歸屬銀行서비스料의 取扱

- 交易條件效果의 代替의 計算法
- 地域計定
- 家計調查情報의 投入
- I-O 表와의 統合

모든 研究에 對해 參加國은 實施에 關한 質的인 情報뿐만 아니라 量的인 推計結果를 報告하도록 要請받고 있으며 報告는 關聯 會議에서 討議된다.

11. 國際聯合統計局은 長期間에 걸쳐 開發途上國에서 오는 統計家를 訓練하여 온 機關에 對해 訓練의 副教材로 統合計劃에 실렸던 問題를 取扱할 것을 提案하였다. 이것을 論議함으로써 開發途上國으로부터 有益한 意見을 吸收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對해 어떤 機關으로부터 贊意를 얻고 있다.



## II. SNA 評價項目에 關한 會合豫定

12. 國際機關 또는 國際聯合地域委員會가 開催하는 第1段階會議(1983~1984年 實績, 1984~1985年 豫定)

### EUROSTAT

- 1983年 12月 國民 및 部門別 貸借對照表, 인플레이會計를 보는 方法을 포함  
1984年 3月 SNA와 ESA 消費의 比較; 地價經濟; ICP의 웨이트  
1984年 11月 貸借對照表; 政府의 自己計定生産; 連鎖指數  
1985年 3月 消費, 補助金, 所得의 尺度 및 關聯되는 問題; 個人企業  
1985年 11月 貸借對照表; 인플레이會計; 社會經濟그룹에 의한 家計部門의 分割

### OECD

- 1983年 5月 銀行利子の 取扱; SNA의 構造(Building Block Approach)  
; 四分期別計定; 年金 및 生命保險; 화이난살·리싱  
1984年 5月 統計單位; 實質國民可處分所得의 計測; 制度部門別 分割; 生  
産境界; 인플레이會計; 銀行利子の 取扱  
1985年 5月 年金 및 生命保險; 地下資源의 枯渴; SNA 構造; 서비스

### 國際聯合地域委員會

#### 유럽經濟委員會(ECE)

- 1985年 10月 國民經濟計定 및 國民經濟바란스에 關한 作業部會; SNA와  
MPS의 接續, 天然資源의 取扱, 人口의 全消費, I-O表, 不

變價格表示의 國民經濟計定

아세아太平洋經濟社會委員會 (ESCAP)

- 1984年 3月 亞太 I-O 統計會議 (東京)
- 1984年末頃 貧困 및 所得分布에 關한 統計세미나
- 1985年 6月 家計經濟活動調查세미나
- 1985年末頃 國民經濟計定評價와 展開에 關한 세미나

라틴아메리카·카리브經濟委員會 (ECLAC)

- 1983年 10月 I-O 統計 및 短期指標 (리마)
- 1984年~ 1986年 所得分布, 自給生産, 制度部門別分割, 交易條件, 四分期別  
計定에 대해 2回, 暫定的으로 開催豫定

아프리카經濟委員會 (ECA)

- 1986年 資本形成에 關한 作業그룹
- 1987年 不變價格表示의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作業그룹
- 1988年 I-O表에 關한 作業그룹
- 1989年 小規模産業 및 家計産業의 데이터 改善에 關한 作業그룹

西아세아經濟委員會 (ECWA)

- 1983年 11月 所得分布統計 (바그다드)
- 1986年 天然資源의 枯渴

國際所得國富學會 (IARIW)

1985年 8月 總會의 評價에 關한 會期 ... SNA의 構造, 部門分割 및 他 統計基準과의 調整; 他 SNA 評價에 關聯된 會期 ... 所得分布 統計, 資産循環表 및 財政統計, 地域計定, 利子 및 金融仲 介機關의 取扱, 經濟 및 社會統計의 統合, 서비스의 計測

13. 第2段階 專門家그룹會議의 暫定的豫定(統合作業計劃을 參照, ( )內 는 對應되는 記號)

SNA의 構造 (A)	1986年
不變價格表示의 國民經濟計定과 ICP(B)	1986年
海外去來 (D)	1986年
公的部門計定 (C)	1987年
家計部門과 所得分布統計 (E)	1987年
生産計定 (G)	1987年
金融후로, 貸借對照表 (F)	1988年
SNA와 MPS의 接續 (H, 3)	1988年

14. 이들 가운데 SNA 構造에 關한 專門家그룹會議는 計定과 附表의 觀 點에서 시스템의 一般的인 틀을 淸금함과 同時에 시스템의 中心으로서의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up>8)</sup> 改正版設計도 取扱한다. 其他會議 는 그 틀속에서 作業을 하고 細部에 대한 勸告를 한다. SNA 構造에 關 한 專門家그룹은 最終段階에서 第2段階에서 생길 것이라는 意見差異를 調 整하는 一連의 會議에 再召集되게 될 것이다.

### Ⅲ. SNA 改正을 위한 國際機關의 統合作業計劃

#### A. SNA 構造 및 部門分割

##### 1. SNA 의 構造 (OECD)

15. 네델란드統計局이 1983年 OECD會議를 위하여 준비한 論文은, 中心이 되는 “Core-account”를 定義하고 特定한 分析目的을 위해서는 “building blocks”를 附加한다는 方法을 取함으로써 SNA에 커다란 柔軟性을 주면 어떠할까 하고 提案하고 있다. 會議參加者는 네델란드의 提案은 興味가 있고 또 有益하지만 “Core-accounts”와 “building blocks”의 定義에 대해서는 더욱 檢討해야 한다는 點에서 合意하였다.

16. 네델란드의 論文은 계속해서 1983年 8월에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非公式專門家會合에서 將來의 SNA 構造를 論議하는 基礎資料로서 使用되었다. 이 會合에서는 SNA 評價는 단순히 現行의 新SNA에 쓰여 있는 것을 包括할 뿐만아니라 政府計定, 所得分布統計, 家計計定, I-O 表等, 國民經濟計定の 特定한 問題에 대해 出版되고, 또는 將來 出版될 豫定인 補助的 指針도 包括할 수 있는, 可能한 限 包括的인 것이어야 한다는 點에서 合意하였다. 이와 같은 包括的인 시스템을 可能한 限 柔軟하게 하기 위해서 新SNA의 改正版에 對應하는 “core”, 補助的 指針에서의 代替的 分析 타입을 위한 “building blocks”, 마찬가지로 追加的인 分析타입을 위한 “Satellite accounts”에 따라 定義해야 할 것이다. “core”의 包括範圍를 現行의 新SNA와 同一하게 할 것인가, 卽 市場去來에 限定할 것인가, 혹은 現行의 新SNA의 範圍를 넘어서 擴張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대해서

는 最終的인 結論을 얻을 수 없었다. GDP와 國民可處分所得外에 GNP도 Core에 投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Satellite accounts나 Building blocks의 觀點에서 補助的 指針의 本質 및 新 SNA의 指針과의 關係에 대해서 더욱 論議할 필요가 있다.

最後로 SNA 指針은 어떻게 해서 國際的 標準化를 할 것인가 하는 質問이 나왔다. 指針이 概念과 分類의 標準化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計定과 表의 標準化까지 포함할 것인가, 後者의 경우 그것은 Core system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補正的 指針인 Sub-system까지 適用할 것인가, 이 問題들은 1985年의 國際所得國富學會, OECD, ECE의 會議와 關聯되어 있다.

## 2. 매크로데이터와 마이크로데이터의 連結 (EUROSTAT)

17. EC 統計局은 매크로데이터와 마이크로데이터의 連結을 國民經濟計定の 集計量을 分割하는 方法으로서, 또 基礎統計를 調整한다는 國民經濟計定の 役割의 一部로서 有益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國民經濟計定, 産業調査, 企業調査, 企業會計, 家計調査에서의 概念과 分類間의 連結이 課題이다. 統計局은 1986年 初에 具體的인 作業計劃을 作成할 것을 期待하고 있다.

(파라그래프 36 下部 참조)

## 3. 各國에서의 制度部門別 分割의 實施狀況 (OECD/國際聯合統計局)

18. 制度部門別 分割에 關한 境界問題를 OECD 諸國이 어떻게 解決해 나갈 것인가 하는 調査를 實施하였다. 그 調査는 公共企業과 民間企業, 政府企業 (departmental enterprise), 公共·民間準法人企業 및 對家計民間非營利團體의 取扱을 包括하고 있다. 國際聯合統計局은 이 調査를 完結하기 위

하여 開發途上國에 質問書를 보냈다.

이들 調査와 SNA 指針의 制度部門別 分割의 修正提案이 1984年 5月の OECD 會議에서 論議되어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a) 公共企業을 定義하는 基準으로는 監督權보다 所有權이 좋다. 그때 所有權의 永續性을 考慮할 必要가 있다.

(b) 政府企業을 政府서비스生産者에 포함시키고 後者에게 經濟活動別分類를 導入함으로써 二重의 部門分割을 避할 수 있을 것이다.

(c) 民間法人企業은 他個人企業과 함께 家計部門에 包含되어야 할 것이다. 統計事情이 허락하면 家計의 副部門으로서 分離하는 것이 좋다.

(d) 對家計民間非營利團體는 그 自體의 部門보다 家計의 副部門으로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4. 個人企業(EUROSTAT)

19. 國際比較上 問題가 되고 있는 SNA와 ESA의 二重部門分割은 國家에 따라 法人企業과 個人企業의 相對的인 重要度(및 SNA, ESA를 適用하는 方法)가 相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EC 統計委員會는, 무엇보다도 SNA, ESA의 正確한 適用을 가장 重視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解決되지 않는 것도 理解하고 있다. 하나의 方法은 모든 企業을 包含하는 表를 追加하고 家計데이터는 消費者로서의 役割에 限定하는 일이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代替의 方法을 檢討하고 1984년까지 報告書를 作成하기 위한 準備를 하였다.

#### 5. 對家計民間非營利團體(EUROSTAT)

20. 1983年 3月の EC 國民經濟計定作業部會에서 EC 統計局의 提案이 論議

되었다. 그 결론은 對家計民間非營利團體는 작고, 만일 SNA의 定義를 正確하게 適用하며 現在 對家計民間非營利團體로 分類되어 있는 團體의 대다수는 企業部門(예컨대, 一部學校, 病院) 또는 政府部門(예컨대, 一部國家에서의 大學)에 包含되고, 나머지 對家計民間非營利團體는 明示的으로 家計部門의 副部門으로서 取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 6. 統計單位(OECD)

21. 1980年版의 SNA 質問書에서와 같이 統合部門의 分析에 重點을 둔다고 하면 統計單位의 研究 및 前述한 制度部門·部門分割의 研究는 서로 關聯性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分析은 모든 制度部門에 대한 生産計定과 貸借對照表를 포함하는 完全한 計定에 基礎를 두고 있다. 이 사실은 經濟活動別·制度部門別 二重分類가 SNA의 生産計定 및 資本形成計定の 모든 去來에 要求되는 것을 意味한다. 이와같이 SNA에 있어서의 二重分類問題가 크게 되면 두개의 基準에 의해 分類된 去來間의 連結(미크로 레벨 뿐만 아니라 매크로 레벨까지)에 대해 現行의 SNA 指針을 再考하는 것이 重要하다. 또한 두개의 分類에서 使用되고 있는 現行의 統計單位, 卽 事務所 및 制度的單位, 特히 企業單位의 定義가 充分한 것인가 어떤가 吟味해 보는 것이 重要하다.

22. 1984年5月の OECD 會議에서는 國民經濟計定の 基礎統計에 使用되는 統計單位(또는 觀測單位)에 대해 國家別調查를 實施한 어느 報告書에서 論議되었다. 그 報告書는 特히 事業所型 및 企業型單位로 國民經濟計定統計를 作成하기 때문에 基礎데이터를 어떻게 加工했는가에 關한 것이었다. 會議의 結論은 報告單位와 推計目的으로 使用될 統計單位의 틀린 것에 대해

서 더욱 檢討할 必要가 있는 點, 그리고 雙方의 單位가 SNA計定の 代替的 셋트中에 反映되어도 좋다는 것이었다.

## 7. 社會會計行列(SAMs) (世界銀行)

23. 世界銀行은 開發途上國의 國民經濟計定에 있어서 데이터의 優先度에 關한 論文을 社會會計行列의 틀을 利用한 從來作業을 參考로 하여 準備하고 있다. 第1稿는 1984年末頃에 完成되었다.

## B. 價格 및 數量的 比較

### 1. 國民經濟計定에서의 連鎖指數의 使用(EUROSTAT)

24. 國民經濟計定에 連鎖指數를 使用하는 理論的인 利點·缺點 및 웨이트의 定期的 修正을 위한 코스트等에 關한 研究가 네델란드 中央統計局을 中心으로 推進되고 있다.

### 2. 交易條件(EUROSTAT/OECD/世界銀行/國際聯合 統計局)

25. EC 統計局은 1983年3月の 國民經濟計定作業部를 위해 實質國民可處分所得의 計測에 關한 論文을 準備하였다. 그것은 交易條件變化의 實質所得 效果計定 및 海外로부터의 純移轉·純要素所得受取의 디플레이션 各種 計算方法에 關한 것이었다. 交易條件의 計測에 대해서는 그 重要性이 一般的으로 合意되었지만 標準的 方法은 合意되지 못하였다.

26. OECD는 여기까지 提案된 各種 交易條件測度를 分析한 論文을 準備하여 1984年5月の OECD會議에서 論議하였다. 輸出을 輸入價格指數로 디플레이트 하는 니콜슨法이 分析的인 缺點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 單純



함 때문에 支持를 받았다. OECD 는 가까운 將來, 이 種類의 推計에 대한 出版을 考慮하고 있다. 推計順序의 詳細한 指針은 좀 더 檢討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資本利得·損失의 計測을 위한 方法論과의 統合을 考慮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世界銀行 및 國際聯合統計局은 相異한 交易條件測定가 開發途上國의 實質國民可處分所得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共同研究를 實施할 豫定이다.

### 3. 時間과 空間에 있어서의 디플레이션 (EUROSTAT)

28. 購買力 評價는 EUROSTAT 에 依해 實質値의 國際比較를 實現하기 위한 道具로서 國民經濟計定에 導入되었다. 이 比較는 時間과 空間에서의 디플레이션의 整合的인 시스템의 必要性을 浮刻시켰다. 예를 들면 國民經濟計定の 實質値를 나타내기 위하여 購買力 評價를 使用하는 것은 基準年에 대하여 計算된 購買力 評價와 暗示的 디플레이터間의 基本的 調整方法의 必要性을 일으킨다. 더우기 購買力 評價를 暗示的·디플레이터로 延長하는 것은 特定한 評價와 全體 GDP 評價間의 整合性問題를 일으킨다. EUROSTAT 는 이들 問題에 關한 論文을 準備하고 있는 중이다.

## C. 公共部門計定

### 1. 政府計定表에 關한 財政統計와 SNA 基準의 調整, 統一(國際聯合統計局/IMF)

29. 財政統計와 SNA 基準間에 數 많은 相異點을 反映한 對應調整表가 開發되었다. IMF와 國際聯合統計局이 現在 行하고 있는 共同프로젝트의 目的은 特定한 國家들의 事例研究를 基本으로 어떤 不一致點이, 數量的으로 重

要한가, 現在 入蒐 가능한 統計資料 및 技法으로 測定 가능한가, 分析的見地에서 보아 正確한가를 決定하기 위하여 不一致點의 評價를 實施하는데 있다. 그 研究는 政府部門의 SNA 指針뿐 만 아니라 財政統計도 調整하는 內容의 勸告로서 整理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 勸告는 上述한 條件을 充足하는 概念的인 差異만을 反映하는 것과 같은 兩시스템의 最終的인 對應調整表를 包含하게 될 것이다. 이 研究에 必要한 情報을 入蒐하기 위하여 國際聯合統計局과 IMF 의 合同質問書가 選擇된 10 個國의 國民經濟計定擔當者 및 政府統計擔當者에게 發送되었다. 그 結果도 國際聯合統計局이 1985 年 出版한「國民經濟計定 핸드북: 公共部門計定」에 掲載되었다.

## 2. 一般政府 및 政府企業의 自己計定生産 (EUROSTAT)

30. 一般政府部門에 依한 政府서비스 以外の 財貨·서비스의 自己消費 또는 他部門에의 販賣를 위한 生産의 取扱은 國家에 따라 큰 差異가 있는 것 같다. 더욱 整合性이 있는 取扱을 實現하기 위해 定義의 明確化 및 頻出하는 境界區分에 있어서의 룰(rule) 作成의 試圖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의 可能性으로는 政府企業(departmental enterprise)을 一般政府部門에서 企業部門으로 옮겨 一般政府和 政府서비스生産者를 完全히 一致시키는 것으로서 明確하게 定義된 政府企業의 概念을 設定하는 것이 考慮된다.

## 3. 活動 및 目的分類 (EUROSTAT/ 國際聯合事務局)

31. 國民經濟計定の 改正과 並行하여 分類의 統一化計劃이 進展되고 있다. 國民經濟計定과의 調整은 特히 서비스業에 대해 重要하다. EC 統計局은 活動 및 目的分類調整에 關한 研究를 1984 年에 實施하고 있다.

32. SNA 5.3 表의 政府의 目的分類에 代身하는 「政府의 機能分類」<sup>(註9)</sup>

의 導入은 많은 問題를 일으켰다. 政府의 機能分類는 原則적으로 政府去來 (支出)의 分類인데 實際로는 모든 經濟活動에 關한 ISIC의 分類와 같은 分類單位를 使用하고 있을런지 모른다. 實用上의 目的때문에 ISIC를 보다 細分한 分類를 政府에 適用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다음과 같은 難題가 생긴다. SNA에 있어서의 產業과 政府서비스生産者의 區別은 實際로는 이미 政府支出의 代替的인 하나의 細分類中에 充分히 反映되는데 必要한가, 또는 教育, 醫療 같은 政府活動은 1980年版의 SNA 質問書에 提示되고 있는 바와 같이 ISIC 목록의 地域·社會·個人 서비스에다 包含시키는 것보다는 ISIC 細分類로 나타냈을 경우 民間의 活動에 包含시킬 것인가.

#### 4. 社會保障 (IMF)

33. IMF는 社會保障의 構造와 傾向 및 그것들이 社會保障運用의 統計的 表示에 대해 意味하는 바를 論議하기 위한 論文을 準備하였다.

#### D. 海外去來

##### 海外去來데이터에 關한 國際收支表와 SNA 基準의 統一 (國際聯合統計局 / IMF)

34. 國際聯合統計局과 IMF는 現在 SNA와 國際收支提要表間의 海外去來分類調整을 可能케 하는 빌딩부록을 위한 獨自의인 데이터 利用可能性에 關한 共同調査에 着手하고 있다. 調査는 先進國, 開發途上國 모두를 網羅하고 있으며 結果는 國際聯合과 IMF의 共同論文에 掲載된다. 그 論文은 國際聯合과 IMF에 의해 開催되는 國民經濟計定과 國際收支表의 專門家會議議題로 될 豫定이다.

35. 그 合同會議은 2個의 시스템 分類體系의 統一을 最大限 達成하기 위하여 寄與하는 것이 期待되고 있다. 特히 世界銀行의 關心事項이 注意를 끌게 될 것이다. 그것은 居住의 定義 및 「通常居住者」의 所得을 보다 正確하게 나타내기 위한 送金取扱에 關한 것이다. 이것은 小國 및 移住勞動者가 많은 國家에게는 매우 重要한 問題이다. 共同프로젝트는 이와같은 寄與에 追加하여 既存의 基準테두리내에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變換하기 위한 指針을 提供하는 것이 되고 1985년에 完成 豫定인 海外去來에 關한 핸드북의 材料가 될 것이다.

## E. 家計部門計定 및 所得分布統計

### 1. 所得分布統計指針의 改正과 SNA에서의 家計部分計定을 위한 基準 (國際聯合統計局 / 世界銀行)

36. 國際聯合統計局은 「家計의 所得, 消費, 蓄積의 分布統計에 關한 暫定的 指針」<sup>(註10)</sup>의 改正을 計劃하고 있다. 그것은 指針을 將來의 SNA에 接近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한 家計最終消費, 消費者耐久財, 年金, 社會保障, 生命保險 및 損害保險과 같은 特定한 家計去來의 取扱 및 範圍에 關한 接近 및 가까운 將來의 論議結果, 그리고 所得分布統計에 있어서의 各國의 經驗을 考慮하기 때문이다. 專門家그룹에 의한 이와 같은 議論와 決定은 將來의 SNA에 있어서의 家計部門去來의 範圍와 分類의 基礎를 이룰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指針改正을 위한 提案은 家計調査開發計劃(NHSCP : National Household Survey Capability Programme)과 共同으로 展開하도록 되어 있는 研究結果에 따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國民經濟計定, 特히 家計部門計定の 데이

타信賴性を 改善하기 위하여 家計調査데이터를 國民經濟計定の 推計過程에 投入할 可能性을 評價하는 特定한 開發途上國事例研究를 包含하게 될 것이다. 이 事例研究는 1985年 以後에 豫定되고 있는 家計部門의 國民經濟計定데이터源泉과 推計技法에 관한 핸드북準備에도 有益할 것이다.

國民經濟計定에 家計調査데이터를 利用하는 것에 대한 論文도 준비되었다. 여기에 擧論된 문제는 改正指針에 反映된다. 더구나 世界銀行의 生活水準計測研究(LSMS : Living Standards Measurement Study)는 社會會計行列에서 家計調査結果를 家計部門의 作業에 利用하는 方法을 報告하게 되어 있다.

## 2. 非公式活動 (國際聯合統計局 / 世界銀行 / OECD)

37. 「非公式部門(informal sector)」이 意味하는 것은 組織이 相異하면 相異하게 理解되고 있다. 그것은 自給生産(Subsistence Production), 小規模의 事業體 또는 地下經濟를 일컬어 使用되는 일이 있다. 統計局은 非公式部門의 概念과 定義에 대해 各組織에서의 實態調査를 할 豫定이다. 이 調査結果에 따라 第19回 統計活動調整小委員會運營委員會에서 非公式部門의 分類와 概念의 統一을 위한 提案 第1稿를 準備하게 된다.

38. 自給과 非公式生産活動의 計測을 위한 共同研究는 個別國家들(開發途上國)의 國民經濟計定에서의 活動範圍, 評價, 分類, 統計出處 및 推計技法, 數量的 重要性 및 計測과 取扱에 관한 他觀點을 明確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데이터의 國際比較를 達成하기 위하여 現行SNA 테두리 안에서 또는 테두리를 넘어서 自給活動의 範圍를 擴張할 때의 可能性과 障害를 테스트하게 될 것이다. 貨幣經濟內에서의 去來와 非貨幣經濟內에서의 去來를 SNA上에서 區別하기 위한 統計的 實行可能性(Feasibility)과 分析的으로 바람직스러움을 明確히 評價하기 위하여 國別經驗이 分析에 使用

될지도 모른다. 데이터出處와 推計方法의 研究는 핸드북 改正에 有用할 것이다. 情報는 各國別로 實施되는 事例研究를 通하여 蒐集된다. 研究結果는 먼저 實施된 OECD의 自給生産에 關한 調査의 成果위에서 現在 實行되고 있는 非公式部門에 關한 보다 廣範圍한 調査, 卽 ILO의 無給家族勞動에 關한 調査와 非公式部門의 雇傭을 計測하기 위한 實驗的 調査, CLAC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經濟委員會)의 農村部에서의 雇傭과 所得에 關한 調査, ECA (아프리카經濟委員會)의 都市, 農村中心部에서의 小規模自營業의 데이터, 價格情報의 改善에 關한 調査를 充分히 考慮에 넣은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世界銀行에 依한 開發途上國의 國民經濟計定推計의 調査는 이 研究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39. 어떤 種類의 非合法活動이 原則적으로 SNA에 包含되어야 하는가 하는 考察을 한 報告가 OECD 諮問에 依해 準備되었다. OECD 事務局은 이 報告를 使用하여 1984年 5月の OECD 會議用的 SNA에서의 生産境界에 關한 報告書를 준비하였다. 이 報告에는 非合法活動에 追加하여 自給農業, 家庭生活, 自願奉仕活動과 같은 各種 非公式活動을 SNA가 包含하고 있는 範圍를 明確化하려고 試圖하고 있다.

### 3. 家計 및 政府最終消費支出 (EUROSTAT)

40. 1982年 12월에 EC 統計局의 作業그룹은 消費를 主體 및 形態에 따라 二重으로 分類하기 위한 어떤 諮問官의 提案을 考察하였다. EEC의 몇 개 國家는 現在 必要한 데이터 蒐集에 關한 問題의 評價와 未解決의 方法論的 問題의 發見을 위한 實驗을 行하고 있다.

41. 上述한 提案이 나온 理由는 現行 SNA의 指針에서는 最終消費支出이

民間과 公共의 區別에 關하여, 國際比較가 可能한 데이터를 提供할 수 없다는 것이다. 制度的 機構의 變化에 따라 問題는 惡化하고 있다. 卽 家計消費 가운데 점차로 커다란 比率을 占하고 있는 部分, 特히 保健·教育이 社會保障 및 類似한 機構를 通하여 政府에 의해 支拂된다던가 어떤 경우에는 企業에 의해 支拂된 中間消費로 되고 있는 것 등이다. 現行的 區別은 支出의 形態와 主體가 混合된 基準에 따르고 있으므로 國家에 따라 制度的인 取扱이 相異하면 이들 國家의 데이터는 比較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提案은 國際比較를 可能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移轉의 새로운 定義도 包含되고 있다. 提案된 새로운 消費의 定義는 SNA의 概念을 MPS, 所得分布統計暫定指針 및 ICP에 있어서의 概念에 接近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더욱 그 結果 政府에 依해 或은 단순히 支拂되는 財貨·서비스 (例컨대 國家의 保健서비스下에서 處方된 醫藥品)를 政府의 中間消費에서 除外하는 것이 되어 政府產出의 보다 좋은 尺度를 賦與하는 것이 될 것이다.

#### 4. 補助金 (EUROSTAT)

42. 消費(및 ICP)에 대해 이루어진 作業은 消費에 關한 補助金の 現行取扱을 再考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提示하고 있다. 特定한 消費者그룹에 依해 購入되는 財貨·서비스價格의 引下를 意圖하여 支拂되는 補助金에 特히 問題가 있다. 이와 같은 支拂은 生産者에 대한 補助金으로서 取扱하는 것보다, 消費者에 對한 社會給付로서 取扱해야 할 것이라고 提案하고 있다. 1982年12月の 作業部會에 豫備的 檢討를 위한 論文이 提出되었다. 두번째 論文은 1983年8月の IARIW 會議에서 論議되었다.

## 5. 所得의 尺度 (EUROSTAT)

43. 消費概念變更의 提案은 SNA/ESA의 所得集計値中 現物의 社會給付 (및 多分히 被傭者報酬)의 變更을 意味하고 있다. 1982年12月の 作業部會에서는 EUROSTAT의 提案을 再次 推進하고 다시 消費에 關한 限 모 든 歸屬計算과 現物所得을 포함하는 所得의, 廣義의 尺度와 自由裁量所得 (現金所得)이라고 하는 狹義의 尺度를 明確하게 區別해야 한다고 하는 一般의인 合意가 이루어졌다.

## 6. 年金 및 生命保險의 去來 (OECD)

44. 年金 및 生命保險去來의 SNA에서의 取扱에 대해 數 많은 提案이 諮問官에 依해 報告되고 1983年5月の OECD會議에서 檢討되었다. 出席者의 多數가 그 提案에 同意하지 않았지만 論議를 通하여 몇가지 現行 SNA指針의 不滿足스러운 點이 明白해졌다. OECD는 이 論議에 따라 1985年の OECD會議에서 最終評價를 行하기 위한 修正案을 내기로 하였다.

45. 諮問官의 報告는 現行 SNA에서 家計部門의 收入·支出로서 歸屬計算되고 있는 部分을 除外함으로써 家計部門計定을 單純化하려고 하는 提案을 많이 包含하고 있었다. 最初의 提案은 雇傭主의 社會保障, 年金等に 對한 負擔金을 最終的인 受取人의 收入으로 直接計算하려고 한 것이었다. 現行 SNA에서 이것들은 被傭者報酬를 通하여 家計部門의 所得으로서 取扱됨과 同時에 社會保障負擔을 通하여 家計部門의 支出로서 取扱되고 있다. 같은 趣旨로 政府 또는 保險部門에 의한 保健 및 類似서비스의 購入은 家計部門의 收入·支出로서 歸屬計算하는 것이 아니고 政府部門 또는 保險部門이 直接 서비스의 生産者에 對해 支拂하는 것으로 取扱해야 한다고 提案하고 있다.



46. 年金基金에 限해서는 그 純持分의 增加分을 家計部門의 貯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年金基金自體의 貯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同時에 負擔과 給付는 明示的으로 家計의 所得支出計定에 나타내어야 한다고 提案하고 있다. 生命保險에 대해서도 同一한 取扱을 提案하고 있다. 但 生命保險의 “Cash surrender value (保險解約返還金)”은 家計部門의 貯蓄으로서 남는 點이 틀린다. 이들 勸告는 家計部門計定을 所得分布統計 暫定指針에 接近시키는 方向에 있다. 그렇지만 1983年 5月の 會議에서는 몇가지 長點이 認定되기는 했지만 現行 SNA 편에 많은 分析目的으로 보아 커다란 長點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 7. 利 子(OECD/ 國際聯合統計局)

47. 歸屬銀行서비스料의 代替的인 定義와 取扱에 對해서는 現 SNA의 取扱에서 빈번히 發生하는 變則的인 事態에 비추어 論議되어 왔다. 現行 SNA 歸屬서비스料가 名目的인 金融產業에 割當되고 있으나 이는 이와 같은 서비스가 中間消費에만 屬한다는 假定에서 였다. 따라서 이 歸屬計算은 GDP에 包含되지 않는다. 스위스, 룩셈부르크, 싱가포르와 같은 歸屬銀行서비스가 非居住者에게 提供되므로 輸出로 간주되는 國家들에 대해서도 例外는 아니다. 또하나의 變則性은 I-O表를 分析에 使用할 때 分明해진다. 歸屬서비스料가 割當되는 名目的인 金融產業의 產出額이 0이기 때문에 그 部門을 포함하는 全體 I-O係數를 計算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것이나 其他 여러가지를 考慮하여 많은 國家들이 舊 SNA의 取扱을 따르고 있다. 卽 歸屬서비스料를 個別經濟活動 및 最終需要 項目에, 例컨대 實際의 利子收入 등을 配分上의 키(key)로서 割當하고 있다.

48. 國民經濟計定에 있어서의 利子の 取扱은 1982年, 1983년에 열린 OECD의 國民經濟計定會議에서 論議되었다. 1982年の 會議에서는 룩셈부르크統計局(STATEC)이 歸屬銀行서비스料의 取扱 變更에 대해 提案하고, 1983年の 會議에서는 캐나다統計局이 利子は 現行 SNA와 같이 財産所得으로서 取扱하지 않고 財貨·서비스의 支出로서 取扱해야 한다고 提案하는 論文을 發表하였다. 國際聯合統計局은 1984年 5月の OECD會議를 위하여 現在 勸告되고 있는 銀行서비스料의 歸屬計算을 維持하면서 利子 取扱에 關한 現行 SNA 指針의 몇가지 缺陷을 除去하기 위한 提案을 包含한 論文을 準備하였다. 統計局의 研究는 歸屬서비스料의 範圍를 預金에서 오는 利子の 純受取分 뿐만 아니라 株式을 포함한 他資産에서 오는 利子受取도 反映한 것으로 擴張하고 그 서비스料를 預金主나 他貸出者 및 借入者에 對해 割當하기 위한 具體的인 指針을 提案하고 있다. 이 論文의 最近版에서는 特定한 國家에서의 데이터利用可能性에 따른 實行可能性 研究(feasibility study)를 하고 있다.

49. 이들 論文에 關한 論議는 現在 SNA에서의 利子取扱을 改正하는데 대해 幅넓은 支持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룩셈부르크統計局 提案에 대해서는 다시 檢討할 必要가 있으며, 캐나다統計局 提案은 너무나 큰 變更을 要하므로 受容하기 어렵다. 國際聯合統計局의 提案方向은 好感이 가고 서비스料를 借入者와 預金主에게 割當한다는 것이 거의 受容되었다. 그러나 理論的으로는 受容되나 統計的으로 可能的한 割當基準의 定義에 대해서는 다시 研究를 進行시킬 必要가 있다고 느껴졌다.

## F. 金融후로, 貸借對照表 및 調整計定

### 1. SNA에서의 金融후로, 貸借對照表, 調整計定の 統計를 위한 補助的 指針 草稿(國際聯合統計局)

50. 다음 세가지 點의 既存資料內容이 草稿에 包含된다.

- 「SNA의 貸借對照表 및 調整計定에 관한 暫定的 國際指針」(註11)
- 「有形資產의 統計에 관한 指針」(註12)
- 1979년에 諮問官에 의해 準備된 金融후로에 관한 國民經濟計定해 드북 草稿

더우기 인프레會計(과라그라프 53-54 參照)나 企業會計의 새로운 發展과 같은 特히 貸借對照表와 國民經濟計定の 接續에 관한 새로운 發展이 考慮될 豫定이다. 또한 資本스톡이나 有形資產의 資本形成定義에 關해 SNA나 MPS의 接續에도 注意가 기울여진다. 끝으로 그 草稿는 SNA基準과 貨幣·銀行統計(MBS)에 關하여 IMF가 準備 中에 있는 基準間에 調整對應表가 包含하게 된다. 이 指針중 하나의 草稿가 한 諮問官에 依해 準備되어 SNA와 MBS의 調整對應表 및 統計데이터出處와 推計技法의 研究와 함께 國際聯合統計局이 準備하고 있는 金融후로와 貸借對照表에 관한 해 드북에 包含될 豫定이다.

### 2. SNA와 IMF의 國際財政統計에 있어서의 貨幣·銀行統計가이드의 草稿와의 調整對應表(國際聯合統計局 / IMF)

51. 國際聯合統計局의 「SNA 貸借對照表 및 調整計定에 관한 暫定的 指針」에 內包되는 基準을 IMF의 「貨幣·銀行統計가이드」草稿에 실려 있는 것과 같은 國際財政統計에서의 金融機關計定表 現 項目에 通常 使用되고 있

는 分類方法과 關聯되는 共同研究가 實施되려고 하고 있다. 이 研究는 1984年 늦게 혹은 1985年初에 完了될 豫定이다. 前述한 調整對應表(파라그라프 50 參照)를 위한 틀을 提供하는 것을 意圖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金融후로와 貸借對照表에 關한 핸드북에도 包含될 豫定이다.

### 3. 金融資産 및 負債의 分類(IMF)

52. IMF는 金融機關을 背景으로 생각한 金融資産 및 負債의 分類 그리고 部門의 區分에서 그 分類의 意義에 關한 論文을 마련할 豫定이다.

### 4. 인프레會計(EUROSTAT/OECD)

53. 어느 諮問官이 인프레會計에 關한 報告를 準備하였다. 그것은 EU-ROSTAT 및 OECD 會議에서 論議되고 1983年前半에 OECD에 依해 出版되었다.(註13)

54. 그 勸告에서 나오는 主要結論의 하나는 各國이 部門別貸借對照表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인프레에 依한 利得·損失을 計量하는데 關해 거의 發展을 期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EUROSTAT는 國際聯合의 勸告가 어떻게 해서 ESA의 構造에 짜여져 들어갔는가 또 EC 加盟國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入蒐 가능한가에 대해 專門家에 의한 調査를 하였다. 그 專門家の 報告書는 1983年 12月の 作業部會에서 論議되었다. 그 會合의 結論에 따라 EC 勸告의 草稿가 編集되고 各國이 적어도 初步的인 貸借對照表를 可能的 限 빨리 蒐集하도록 促求될 것이다.

### 5. 地下資源의 枯渴(國際聯合統計局/OECD)

55. 統計局은 枯渴의 定義와 測定 및 計定の 構造속에 投入할 可能性

에 관한 討議用論文을 回覽할 計劃이다. 國際聯合加盟國의 反應에 關한 報告는 1986 年에 入蒐 可能하게 될 것이다. 地下資源의 枯渴에 關한 IARIW 特別會議 및 同 ECWA 會議의 討議狀況도 報告中에 考慮된다. OECD는 炭火 水素資源의 枯渴을 OECD 諸國의 작은 샘플中에서 測定할 수 있는 可能性에 對해서는 諮問官의 研究에 依한다는 暫定的인 計劃을 가지고 있다.

## 6. 화이난살·리이싱 (Financial Leasing) (EUROSTAT)

56. 1982 年에 EUROSTAT, OECD 의 雙方會議에서 專門家에 依한 넓은 合意가 達成되었다. EUROSTAT는 이에 따라 資本財가 무엇인가 明確하게 定義된 화이난살·리이싱 決定下에 取得된 時點에서 이것을 使用者에게 割當한다고 하는 詳細한 最終提案을 起草하였다. 提案의 中心的인 생각은 歸屬된 購入이 金融會社에서 오는 歸屬된 론(loan)에 依해 相殺된다는 것이다. 最終提案은 1984 年에 入蒐 可能하게 될 豫定이다.

## G. 生産計定

### 1. 國民經濟計定핸드북 (國際聯合統計局)

57. 國民經濟計定핸드북의 「國內總生産」이 完成되어 1984 年에 出版되었다.

### 2. SNA의 投入產出基準 (國際聯合統計局)

58. I-O表設計와 作成은 相當한 程度로 分析的 基準에 따라 左右된다. I-O表가 屢번히 國民經濟計定과는 相異한 機關, 예를 들면 計劃機關等 I-O表를 直接分析에 使用하는데 關心이 있는 機關에서 作成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投入產出基準이 特定한 分析面의 要求에 따라 各國間에서 크게 相

異なる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I-O表의 作成은 分析目的에만 有用한 것이 아니라 國民經濟計定데이터의 質과 内部 整合性を 改善하기 위해서도 有益하기 때문에 SNA와 整合성이 있는 分析에 有用한 投入產出基準對備를 試圖하는 것이 重要하다. 그 第1段階는 SNA의 投入產出基準과 實際의 I-O表에서 使用하고 있는 基準과의 主要한 相異點을 論議하는 것이 各國의 分析的인 I-O表를 더욱 容易하게 國民經濟計定과 結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投入產出統計에 關聯하는 SNA 基準을 改善할 때에 有益할 것이다.

統計局은 I-O表에 關한 ESCAP(亞細亞太平洋專門家會議)(1984年3月, 東京)를 위해 「SNA와 I-O表의 概念的인 問題」라는 題下의 報告 第1稿를 準備하였다. 그 報告는 將來 統計局의 I-O表 統計에 關한 現行的 補助的 指針 및 關聯되는 統計出處와 推計技法의 指針을 整理할 國民經濟計定핸드북의 基礎로도 된다.

### 3. 서비스(OECD)

59. 서비스에 關한 統計는 國家의 水準, 國際的인 水準에서 充分한 注意를 기울이지 않았다. 情報化社會를 指向하는 가운데에서 情報分野에 關聯되는 統計의 創設問題는 極히 重要하다. 現在 몇개의 組織이 이 問題에 대해 研究를 進行하고 있다.

- OECD는 情報分野의 統計를 蒐集하기 위한 勸告作成에 從事하는 作業部會와 諮問官을 두었다.

- ILO는 서비스統計의 包括範圍의 妥當性問題에 대해 論文을 準備할 豫定이다.

- UNESCO는 國際通信聯盟(ITU)의 協力을 얻어 情報서비스에 關聯

되는 統計開發에 대해 研究할 豫定이다.

OECD 는 1985年 5月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會議를 위하여 이들 研究結果를 망라한 論文을 準備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 分析의 統計에 대한 國家的 必要를 反映한 國民經濟計定에 關聯되는 結論의 要約이 될 것이다.

## H. 他計定體系와의 調整

### 1. 地域計定(EUROSTAT/ 國際聯合統計局)

60. EC 統計局은 現在의 作業評價와 將來展開의 方向決定을 하기 위한 세미나를 1982年에 設置하였다. 國際聯合統計局은 1983年中 네델란드와 벨기에에 관한 2個의 研究를 통하여 家計部門을 위한 地域計定에 關한 作業에 關係하고 있었다. EUROSTAT 는 또 中央政府計定の 地域分割에 따라 發生하는 方法論的인 問題에 대해 더욱 研究를 進行할 것을 提案하고 이 研究를 1983年에 어떤 專門家에게 委囑하였다. 同時에 地域計定을 위한 프로젝트가 1983年에 始作되었다. 上記한 세미나에서의 論文이나 各國統計局 作業의 方法論的 記述은 1984年에 EUROSTAT 에서 出版될 豫定이다. IARIW 는 1985年 總會에서 이 問題를 論議하기 위하여 特別會議를 豫定하고 있다.

61. 國際聯合統計局은 各地域委員會와의 密接한 協力下에서 地域計定을 作成하고 있는 몇개의 開發途上國에서 地域計定作成의 分析을 行할 豫定이다. 이 研究는 地域計定 全分野를 커버하고 EUROSTAT 의 研究에 拘碍받지 않는다. 統計作成에 使用되는 데이터出處와 推計技法을 調査하고 「地域化된」計定과 取扱項目을 明確하게 할 豫定이다. 이 研究 結果는 1985年 以後에 準備될

豫定인 國民經濟計定の 利用에 關한 핸드북에서 利用하게 될 것이다. 그 핸드북은 地域計定の 特別한 要求를, 國家經濟計定の 特別한 形態로서 取扱하게 된다. 地域計定の 研究는 各地域委員會에 의해 따로따로 進行되고 있으며 1985 年에 마무리될 豫定이다.

## 2. 四分期別國民經濟計定(OECD)

62. OECD 는 1983 年 5 月의 會議을 위해 四分期別國民經濟計定の 利用 및 SNA 의 어느部分을 優先적으로 四分期推計할 것인가에 대해 論議하기 위해 짧은 論文을 準備하였다. 이 會議에서의 論議에 따라 OECD 는 現在 四分期計定을 作成하고 있지 않는 國家를 支援하기 위한 改正 SNA 에 包含시켜야 할 改正指針을 準備하였다. 이 指針은 1985 年中에 코멘트를 求하여 回覽된다.

## 3. MPS 의 開發과 SNA·MPS 連結의 研究(國際聯合統計局/CMEA)

63. 相互經濟援助會議(CMEA)의 協力을 얻어 國際聯合統計局은 MPS 概念을 SNA 에 接近시키는 改正을 計劃하고 있다. 統計局은 1984 年末에 資料를 準備할 豫定이다. 그 資料는 1985 年의 IARIW 總會에서 議論하게 될 것이다.

### - 註 -

- [1] 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83, Supplement No. 2 (E/1983/12 and Corr. 1), para. 27.
- [2] Ibid., Forty-fourth Session, Supplement No.10(E/4471), resolution 1 (XV), para. 9.
- [3] Report of the Interregional Seminar on the Revised System of



- National Accounts, Caracas, 8-19 December 1975 (DP/UN/INT-72-104).
- [4]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 and Balances,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System of National Accounts", Geneva, 13-17 February 1978 (CES/WP.22/51, CES/WP.22/52 and CES/WP.22/52/Add. 1).
- [5]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 and Balances, "Report of the tenth session", Geneva, 25-28 February 1980 (CES/WP.22/63).
- [6] 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79, Supplement No.3 (E/1979/23).
- [7] See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Review of major issues and proposals for future work and short term changes" (ESA/STAT/AC.15/2).
- [8]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 69. XVI. 3.
- [9]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 80. XVI. 17.
- [10]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 77. XVI. 11.
- [11]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 77. XVI. 10.
- [12]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 80. XVI. 2.
- [13] Jack Hibbert, Measuring the Effects of Inflation on Income, Saving and Wealth,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and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83).

# SNA改正事業의 進展

## - 第24回 國際聯合統計委員會 事務總長 提出報告 -

本稿는 1987年 2月 23日부터 3月 4日에 걸쳐 뉴욕에서 開催된 第24回 國際聯合統計委員會의 議題 5(a) “National Accounts and Balances : 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에 關한 事務總長提出報告 “Progress in the Revision of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를 번역한 것이다.

國民經濟計定の 評價에 對해서는 現在 國際聯合을 中心으로 OECD等 國際機關의 協力下에 1991年의 國際聯合統計委員會에서 採擇할 것을 目標로 繼續的인 作業이 進行되고 있다. 本 報告는 이들 評價作業의 進捗狀況 및 今後의 作業計劃에 關한 包括的이며 最新의 情報를 提供하는 것이며 또한 1985年의 國際聯合統計委員會에 提出된 同一한 報告(季刊國民經濟計定 No.68에 譯文收錄)의 續編에 該當한다.

특히 原文에는 第3章으로서 統計委員會에서 論議해야 할 要點이 添付되어 있는데 이 部分은 생략을 해도 第2章까지의 本文을 理解하는데는 支障이 없으며 또 本文의 記述과는 반드시 整合的이라고는 할 수 없는 部分을 包含하고 있으므로 생략하였다.

— 目 次 —

序 論 .....	237
I. SNA 評價計劃의 組織 및 方向提示 .....	239
A. 新 SNA 및 핸드북 시리즈 .....	239
B. 地域 및 專門家그룹會議 .....	244
C. 討議의 組織 .....	246
D. 統計委員會를 위한 SNA 에 關한 作業計劃의 提案 .....	250
II. 地域, 特別 및 專門家그룹 會合에서 討議된 技術的 問題 및 結論 .....	252
A. SNA 의 構造 .....	252
1. 概念的 構成과 그 實施 .....	252
2. SNA 關聯統計와의 調整 .....	254
3. 去來主體 및 去來分類와 計定構造 .....	256
4. 主要所得集計值와 評價의 尺度 .....	257
5. I-O 表 .....	258
6. 調整計定 .....	259
B. 部門分割 .....	260
1. 非金融準法人企業 .....	261
2. 公共部門 .....	262
3. 家計部門 .....	263
C. 去 來 .....	264
1. 生産境界 .....	264

2. 銀行서비스 및 利子 .....	266
3. 社會保障, 保險 및 年金基金의 去來 .....	266
4. 總家計消費 .....	267
5. 리 이 스 .....	269
D. 價格 및 數量의 比較 .....	270
1. 數量·價格指數計算에 있어서의 問題領域 .....	270
2. 實質所得의 尺度 .....	271
3. 時間과 空間에서의 디플레이션 .....	272

## 序 論

1. 統計委員會는 第23回 會合에서 事務總長報告 「SNA 評價에 있어서의 進展」(E/CN.3/1985/5)에 대해 討議하였다. 그 報告는 實施된 作業의 報告를 包含하는 것이었다. 委員會는 그 報告에서 提示된 統合作業計劃을 支持함과 同時に 1986年부터 1990年 사이에 暫定的으로 豫定되고 있는 一連의 專門家그룹會議에 同意하였다. 이와 같은 SNA 評價作業의 最後에 「國民經濟計定體系」<sup>(註1)</sup>(以下 新 SNA라함)의 改正이 이루어진다. 委員會는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事務局間 作業그룹이 그때까지의 評價作業 中에서 調整 役割을 다해온 것에 대해 謝意를 表하였다.<sup>(註2)</sup>

2. 本 報告는 統計委員會의 前回 會合에서의 要請에 答하여 委員會에 對해 이 統計分野의 새로운 展開에 關한 情報를 提供하기 위하여 準備된 것이다. 本 報告는 3個의 章으로 되어 있다. 第1章에서는 SNA 評價作業을 概觀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事務局間 作業그룹의 調整活動에 關한 情報, 改正版 新 SNA의 內容과 핸드북시리즈의 範圍에 關한 提案 및 改訂版 新 SNA가 完成될 때까지 열리는, 또는 이미 열렸던 地域, 特別 및 專門家그룹會合에 關한 提案이 包含되어 있다. 또 豫定된 專門家그룹會合의 參加者에 限하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들로 부터 意見를 듣기 위하여 SNA 評價情報의 提供方法을 改善함과 同時に 順次的으로 開催될 會合間에 情報가 圓滑히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措置에 대해 敘述되었다. 第1章의 끝부분에는 統計委員會가 評價作業의 여러가지 段階에서 어떤 種類의 成果를 期待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作業計劃이 提案되고 있다. 委員會는 이 案을 基礎로 (a)今回の 會合에서 무엇을 論議해야

할 것인가, (b) 1989 年의 會合에서 무엇을 評價할 것인가, (c) SNA 評價作業이 終了後인 1991 年의 會合에서 무엇을 期待하면 좋은가를 決定할 수 있다. 本 報告의 第 2 章에서는 지금까지 論議된 問題 및 얻은 結論에 關한 技術的인 詳細事項이 敍述되고 있다. 第 3 章에서는 論議를 위한 要點이 提示되었으나 여기에는 收錄하지 않았다. 第 1 章에서 敍述된 SNA 評價의 全體的인 組織과 方向提示에 關한 問題, 第 2 章에서는 提示된 情報에 關한 보다 技術的인 問題로 分離되어 있다.

## I. SNA 評價計劃의 組織 및 方向提示

3. 統計委員會 第 23 回會合 以後의 SNA 評價의 進展은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事務局間 作業그룹의 調整努力에 따라 可能하게 되었다. 作業그룹의 參加機關代表는 別個의 關聯 會合에 그들中 많은 數가 出席할 機會를 가질 수 있도록 年 2, 3 回 會合을 가졌다. 作業그룹은 前回の 統計委員會에서 委任받은 範圍內에서 新 SNA 및 핸드북, SNA에 關한 地域會合 및 專門家그룹會合, 그리고 SNA 評價作業의 促進을 위해 措置해야 할 其他 組織上의 事項에 關해 여러가지 活動을 해왔다. 作業그룹의 活動에 關한 多少 詳細한 情報를 다음에 제시한다. 이들 가운데 몇가지에 대해서는 SNA 評價의 充分한 成果를 얻기 위하여 매우 重要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1986 年 6 月 제네바에서 SNA의 構造에 關한 最初의 調整專門家그룹 會合 및 몇개의 地域會合(B 節 參照)을 開催하였다.

### A. 新 SNA 및 핸드북시리즈

4. SNA 評價의 結果는 新 SNA 를 再作成한 것 및 그 詳細한 內容과 整合的인 핸드북이나 關聯資料로서 提示될 豫定이다. SNA 評價는 新 SNA 의 再作成뿐만 아니라 國際收支表, 財政統計, 金融統計, 所得分布統計, 工業統計와 같은 既存의 特定한 統計메뉴얼에도 修正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더우기 유럽國民經濟計定(ESA: the European System of Accounts) 및 國民經濟바란스體系(MPS: the System of Balances of the National Economy)의 2 個의 代替的 國民經濟計定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이것들을 改正版 SNA 와 보다 效率的으로 連關시키기 위하여 改正이 豫定되고 있다.

5. 作業그룹은 改正版 新 SNA 草稿는 國際聯合이 委囑하는 諮問官에 依해 準備되어야 한다고 勸告하였다. 改正版 新SNA의 第1次 草稿는 1989年에 開催될 豫定인 調整專門家그룹會合(과라그라프 16 參照)에 時間적으로 맞도록 1988年 中盤까지는 準備될 것이다.

6. 새로운 新SNA 原文은 英語로 作成되는데 이것을 他言語로 번역할 때의 用語法을 一致시키기 위하여 草稿의 準備와 同時에 並行的으로 번역을 進行시키는 것이 提案되고 있다. 이와 같이 草稿段階에서 技術的인 번역을 해두는 것은 最終稿를 公式으로 번역할 때의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프랑스語譯에 대해서 EC 統計局(EUROSTAT) 과의 사이에서 暫定的인 決定이 되어 있으며 또한 스페인語譯에 대해서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經濟委員會(ECLAC)와의 사이에서 同一한 決定을 맺기로 提案되어 있다.

7. 新SNA의 改正版은 現行 SNA 보다도 包括的인 것이 되어야 한다.

現在의 新SNA와 同一하게 概念的인 構造에 關한 論議를 內包하고, 去來主體와 去來의 定義나 價格評價問題를 取扱할 뿐 아니라 關聯되는 既存의 모든 統計基準과의 關係— 이것에 대해서는 他메뉴얼에서 詳述될 것이다 — 의 記述을 包含해야 한다. 더우기 國民經濟計定の 利用, 國際報告形式 및 特定한 分析目的을 위하여 代替的 表章形式을 使用할 경우의 시스템適用法에 關한 提案을 包含해야 한다. 또한 新SNA는 教科書로도 使用되므로 國民經濟計定の 基本的인 解説을 반드시 包含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시스템實施面에서의 連續性を 確保하기 위하여 新SNA에서는 現行SNA와 改正版SNA와의 概念, 分類의 틀린 點을 定義해야 한다. 끝으로 去來主體 및 去來項目이나 其他 SNA의 特徵에 關한 詳細한 情報를 提



供하는 包括的인 用語解説이 廣範圍하게 미치는 相互參照리스트와 함께 提案되고 있다.

8. 改正版 新 SNA 의 骨子는 다음과 같다.

- 國民經濟計定の 基本的인 解説
- 國民經濟計定の 利用
- 概念的 構造
- 去來主體
- 去來(分類를 포함)
- 價格評價
- 代替的 表章形式
- 關聯統計시스템 과의 調整
- 質問書의 表形式
- 舊 SNA 와의 詳細한 關係
- 用語解説

9. SNA의 概念을 크게 變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合意되고 있다. 統計委員會 以前의 勸告에 따라 國民經濟計定の 作成者 및 利用者에게 SNA을 充分히 알기 쉬운 것으로 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明確化, 單純化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 新 SNA 에서는 明確化에 重點을 두고 SNA의 理論的構造를 記述한다. 한편, 핸드북에서는 他機能, 目的은 別個로 하고, 新 SNA 에서의 包括的 構造의 記述에 包含시킬 수 없는 것 같은 細部の 明確化를 行하여 新 SNA 를 補完해야 한다. 따라서 改正版 新 SNA 에서는 現行 新 SNA 의 構成要素를 널리 參考로 하여 實施에 關한 實際的인 限界를 考慮해 넣으면서 代替的 그리고 可能的 單純化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10. 明確化는 SNA가 보다 작고 單純한 核으로 縮少되는 것을 意味하지 않는다는 點에서도 一般的인 合意가 이루어졌다. SNA는 可能한 限 包括的이고 모든 必要한 細部項目(例컨대 準法人企業, 社會保障基金)을 包含해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다. 이와같은 細細한 規定은 반드시 모든 國家에 關係가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SNA는 現行新SNA의 指針뿐만 아니라 政府計定, 家計部門計定, I-O表, 金融후로, 貸借對照表 등과 같은 서브시스템의 보다 詳細한 規定에 關하여 過去에 出版되고 또는 將來에 出版될 補助的인 指針까지도 包括해야 한다. 地域間세미나 및 SNA의 構造에 關한 最初의 專門家그룹會合을 包含하여 몇개의 會議에서 構造의 包括性은 先進國, 開發途上國의 모두에게 有益하다고 強調되었다. 따라서 現行新SNA와 같이 開發途上國을 위한 SNA에 關한 獨立된 章을 設定하는 것은 適當치 않다고 하였다. 開發途上國에 特異한 問題는 個別的으로 言及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시스템 全體의 說明中에 內包되어 있는 部分으로서 나타내야 한다.

11. 新SNA의 再作成에 따라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핸드북시리즈가 國際聯合統計局에 依해 順次的으로 編集, 出版될 豫定이다. 핸드북은 新SNA를 分野別로 보다 詳細하게 한 內容, 즉 서브시스템의 概念的 構造, 特定 分析目的을 위한 計定·表, 이와같은 特定한 統計를 作成하기 위한 基礎統計와 推計方法, SNA 特定分野의 細부와 關聯統計間의 概念, 作成技術上的 連關을 包含한다. 끝으로 SNA의 概念的 發展을 國際收支表, 財政統計 등의 特定 分野에서 他機關에 依해 推進되고 있는 統計上的 發展을 調整하기 위하여 重要하며, SNA데이터 作成을 關聯統計의 作成과 連關시키는 것을 目標로 하는 것이다.

12. 핸드북시리즈의 範圍는 原則的으로는 無制限이지만 現在 統計局의 計劃으로는 1988 ~ 1989 年度末까지 7 卷의 핸드북이 刊行되도록 되어 있다.

이것들은 이미 入蒐可能하거나 또는 豫定되어 있는 것들이다. 內容은 다음과 같다.

- 生産計定
- 公共部門計定
- 海外去來
- 家計部門計定 및 所得分布
- I-O 表
- 不變價格表示의 國民經濟計定
- SNA 와 MPS의 比較

13. 핸드북시리즈의 刊行準備는 多少 늦어지고 있다. 「生産을 위한 計定」의 핸드북<sup>(註3)</sup>과 公共部門計定에 關한 핸드북은 이미 出版되었고 I-O 表, 海外去來, 家計部門計定 및 所得分布統計에 關해서도 原稿를 準備中이다.

家計部門計定에 關한 핸드북은 世界銀行과 協力하여 準備를 進行시키고 있다. 最近 要員의 削減이나 1986 ~ 1987 年度에 핸드북 刊行準備를 위해 當初 承認된 諮問官 委屬基金의 財源不足에 따라 I-O 表, 海外去來에 關한 2 卷에 대해서는 遲延을 避할 수 없을런지 모른다. 現在 原稿는 1988 年에 될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不變價格表示의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핸드북은 開發途上國의 몇차례 SNA 會合에서의 代表 要請에 따라 1988 ~ 1989 年의 計劃에 包含되었다. 統計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모든 핸드북은 現行的 新 SNA에 따른 暫定版으로서 1990 年 以前에 刊行된다. 그리고 新 SNA의 改正을 完了한 後에 統計委員會의 承認을 얻어 出版된다.

## B. 地域 및 專門家그룹會合

14. 事務局間作業그룹에 參加하고 있는 國際機關이나 地域委員會, 各國 統計機關의 積極的인 參加를 얻어 다음과 같은 SNA 問題에 關한 몇개의 會合이 열렸다.

(a) SNA의 廣範圍한 問題를 取扱하는 地域會合이 10回 열렸다. 몇가지 問題는 複數會合에서 論議되었다. 各 會合은 다음과 같이 組織되었다.

(i) 아프리카經濟委員會(ECA), 아디스 아바바, 1985年10月, 1986年9月

(ii) 유럽經濟委員會(ECE), 제네바, 1986年3月

(iii) 라틴아메리카·카리브經濟委員會(ECLAC), 샌디에고, 1986年4月

(iv) 아세아太平洋經濟社會委員會(ESCAP)방콕, 1986年7月

(v) EC 統計局(EUROSTAT), 룩셈부르크, 1985年7月, 同11月, 1986年4月

(vi) OECD, 파리, 1985年5月, 1986年5月

(b) 開發途上國을 위한 2개의 地域間會合이 各各 國際聯合統計局과 世界銀行이 主催하여 SNA 評價의 一般的인 方向決定에 대해 論議함과 同時에 國民經濟計定の 開發에 最近 着手한 이들 國家들이 詳細한 知識을 얻을 수가 있었다.

(i) SNA 評價에 關한 途上國을 위한 地域間세미나, 제네바, 1986年6月

(ii) 統計後進國을 위한 워크·샵, 멕시코, 1986年2月

(c) 國際所得國富學會에 依한 特別會合이 開催되어(네덜란드, 1986年8月), SNA 評價에 關한 많은 問題에 대해 學問的인 觀點에서 檢討가 이루어졌다.

(d) 2개의 專門家그룹會合이 開催되어 各各 新SNA의 改正과 핸드북 刊行準備를 위한 一般的인 指針 및 ICP와의 關係를 포함한 不變價格表示의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技術的 問題에 對한 接近을 勸告하였다.

(i) SNA 構造에 關한 專門家그룹, 제네바, 1986年 6月, 國際聯合統計局 主催

(ii) 價格·數量比較에 關한 專門家그룹, 룩셈부르크, 1986年 11月, EU-ROSTAT 및 OECD 主催

15. 地域 및 特別會合을 開催하기 위한 期間은 開發途上國地域이 會合을 組織하여 評價作業에 關하여 意見を 聚合하는데 보다 많은 時間을 必要로 하였기 때문에 1986年末까지 延長되었다. SNA 評價에 關한 開發途上國을 위한 地域間세미나는 開發途上國에 對해 SNA 評價作業의 一般的인 方向決定에 關한 意見を 表明한 보다 많은 機會를 주기 위해 當初의 會合 計劃에 追加된 것이다.

16. SNA 評價를 위한 殘餘期間에는 7個의 專門家그룹會合이 提案되고 있다. 그들 會合은 다음에 提示하는 바와 같이 暫定的으로 事務局間作業그룹의 다른 會員機關에 依해 主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他機關의 協力を 얻어 組織될 豫定이다.

- 海外去來에 關한 專門家그룹, 워싱턴, 1987年 3月, IMF 主催
- 公共部門 計定에 關한 專門家그룹, 워싱턴, 1988年 1月, IMF 主催
- 家計部門計定에 關한 專門家그룹, 로마, 1987年 9月, 世界銀行 主催
- I-O表에 關한 專門家그룹, 비엔나, 1988年 4月, 國際聯合統計局 主催, 國際聯合工業開發機關 (UNIDO) 協贊
- 金融후로 및 貸借對照表에 關한 專門家그룹, 워싱턴, 1988年 7月, IMF 主催
- SNA와 MPS의 連關에 關한 專門家그룹, 모스크바, 1988年 11月, 國際聯合統計局 主催, ECE 및 經濟相互援助會議 (CMEA) 協贊

○ SNA 調整에 關한 專門家그룹, 뉴욕, 1989年 및 1990年, 國際聯合統計局 主催

17. 統計委員會의 前回 會合에서의 要請에 따라 事務局間作業그룹은 소위 「코어」그룹의 專門家 6人—先進國, 開發途上國에서 各 3名씩—의 選任에 同意하였다. 이 「코어」그룹은 지금까지 열렸던 2개의 專門家그룹會合에 出席하였다. 그들은 事務局間作業그룹의 5개의 會員機關으로 부터 온 代表와 함께 各種의 專門家그룹會合에서 提出되는 勸告, 結論을 수렴하여 시스템 全體의 整合性を 考慮하면서 SNA가 改正되어야 할 輪廓을 描寫하는데 대해 責任을 가지게 된다.

### C. 討議의 組織

18. 事務局間作業그룹은 계속 開催된 專門家그룹會合에 있어서 討議를 調整하기 위하여 SNA 評價論點을 各 專門家그룹 會合의 議題로서 割當했다. 그 結果가 다음 表이며 SNA 構造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에서도 이에 대해 論議되었다. 表側은 論點, 表頭는 專門家그룹會合의 名稱이다. 表안에서의 論點은 各 專門家그룹의 主된 關心事에 따라서 割當되었다. 그것은 各 專門家그룹에게 主된 關心事が 아닌 것에 대해서는 擔當한 그룹의 結論이 受容된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이와같은 討議 順序는 前會合에서 이미 結論을 얻은 問題에 대해 重複된 論議를 避하기 위한 便利하고 效率的인 方法으로서 採擇되었다. 表中의 論點은 問題의 概括的인 것이며 各 會合의 議題로 하기에는 더욱 詳細하게 나타낼 必要가 있다. 表의 마지막 欄은 1989年 및 1990年에 2回 열리는 SNA 調整專門家그룹에 關한 것이며 空白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同그룹이 個別專門家그룹의 勸告問에 모순이

SNA 評價에 관한 論點의 專門家 그룹에 對한 割當

SNA 評價에 관한 論點	SNA 評價에 관한 專門家 그룹 (1986年 ~ 1990年)							
	SNA의 構造	不變價格表示 I C P	海外去來計定	公的部門計定	家計部門, 所得分布	生産計定, I-O 表	金融후로 貸借對照表	SNA와 M P S
<b>I. SNA 構造</b>								
1. 計定の 構造 및 殘差項目	○							○
2. 코어와 빌딩블록	○							
3. I-O表의 役割과 코모디티후로法	○					○		○
4. 調整計定 內容	○		○			○		○
5. 分類 및 統計單位	○							
5.1 現行分類連關性				○		○		○
5.2 代替的 分類						○		○
6. SNA와 代替的 計定 시스템 및 特定統計 시스템과의 連關	○		○	○	○	○	○	○
7. SNA 勸告의 代替的 實施								
7.1 地域計定								
7.2 四分期計定								
7.3 國際的 데이터編集을 위한 國民經濟計定質問書								
<b>II. 去來主體</b>								
1. 二重部門分割과 統計單位의 性質	○					○		○
2. 居住者去來主體	○							
2.1 部門分類	○							
2.2 居住			○					○
2.3 政府企業				○		○		
2.4 個人企業					○	○		
2.5 公的企業, 民間企業				○				
2.6 金融機關, 非金融企業						○		
2.7 民間非營利團體					○	○		
<b>III. 去來</b>								
1. 去來範圍와 記錄								
1.1 去來範圍와 記錄, 歸屬計算과 迂回	○							
1.2 去來境界	○							
1.2.1 生産境界						○		○
1.2.2 其他歸屬計算과 迂回						○		○
1.3 所有權原則			○			○		
1.4 마이크로와 매크로의 連關	○					○		
1.5 統合								
2. 去來分類								
2.1 總消費와 家計消費	○			○		○		○
2.2 資本支出								
2.2.1 總固定資本形成과 在庫品增加의 區別						○		○
2.2.2 經常支出과 資本支出의 區別	○			○		○		
2.2.3 固定資本減耗						○		
2.2.4 消費者用耐久財						○		
2.3 財産所得 및 移轉								
2.3.1 企業所得				○		○		○
2.3.2 稅金				○				
2.3.3 社會保障과 保險去來				○		○		
2.4 金融후로 및 貸借對照表								
2.4.1 金融資産分類			○	○			○	
2.4.2 無形資産 純購入							○	
<b>IV. 去來價格評價</b>								
1. 價格評價에서의 特別問題	○	○				○		
2. 價格 및 數量比較		○						
<b>V. 其他의 事項</b>								

발생될 것 같은 나머지 문제나 改正版 新SNA의 一連의 草稿를 取扱하기 때  
문이다.

19. 各 專門家그룹에는 中心이 되는 研究報告書 (discussion paper)  
와 追加的 資料가 準備된다. 前者는 그 專門家그룹에 割當된 問題를 取扱  
하는 것이며 그 以前論議의 要約과 地域會合, 特別會合 및 그 問題의 一  
部를 이미 取扱한 別個의 專門家그룹會合에서의 結論을 包含한다. 그 그룹  
을 위하여 論議의 要點을 붙인 註釋이 添付된 議題가 準備될 것이다.

SNA 構造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에는 2個의 中心的 資料가 事務局間作業그  
룹인 3機關—國際聯合統計局, OECD 및 EUROSTAT—에 依해, IMF, 世界銀  
行의 보다 큰 出資를 얻어 共同으로 準備되었다. 그 內容은 SNA 評價에  
있어서의 組織 및 過去의 展開(註4) 그리고 將來의 SNA 構造에 關한  
提案(註5)을 包含하는 것이었다. 其他 專門家會合에서는 中心的 資料의  
均衡을 잃게 되므로 導入할 수 없는 特定한 問題에 대해 追加的인 報告  
書가 準備될런지도 모른다. 또 公共部門, 海外去來, 家計部門計定 및 I-O  
表에 關한 各 專門家그룹에서는 國際聯合統計局이 原稿의 形態로 準備하고  
있는 國民經濟計定핸드북이 利用될 수 있을런지 모른다. 이들 資料에 追加  
해서 앞서 열렸던 專門家그룹의 會合이나 地域會合의 報告가 準備된다.(이  
것은 지금까지 열렸던 地域的인 會合, 世界的인 會合에서 採擇된 順序이  
다.) 各 專門家會合의 資料는 一般的으로 主催機關이 事務局間作業그룹인  
他機關의 協力を 얻어 準備한다.

20. 各 專門家그룹의 主要한 任務는 重要한 討論報告로 나타낸 論點에  
대해 結論을 내는 일이다. 追加的 資料도 提供되지만 이것은 背景說明을  
위한 것이다. 會員이 이에 대해 論評을 加하는 것은 自由이지만 이 資



료가 專門家그룹의 結論에 反映되어야 할 必要는 없다. 會合의 結論은 짧은 資料로 聚合되어 決定된다.(註6) 主催機關은 보다 詳細한 議事錄을 作成하고 會合에서 結論이 나온 數週後에 그 그룹의 會員에게 送付하여 論評을 求한다. 結論은 이와같이 해서 SNA 評價資料에 넣어 事務局間作業 그룹이나 他專門家が 利用할 수 있게 된다.

21. SNA에 關한 몇개의 會合에서 要請된 線에 따라 國際聯合統計局은 SNA 評價가 個別專門家그룹會合의 參加者 뿐만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節次를 만들었다. 全世界의 專門家 約 150名의 住所가 收錄되어 있고 그들은 主要한 SNA 評價資料를 받아 論評을 要求받는다. 이들 論評은 여러가지 地域 및 세계적인 專門家그룹會合에 參加하고 있는 專門家の 論評과 함께 新SNA를 改正할 때에 考慮해 넣을 수 있도록 參照하기 쉬운 形態로 整理된다.

22. 專門家그룹은 個個의 專門家로 부터 받은 數많은 意見中에서 到達한 結論을 考慮해야겠지만 改正版 新SNA는 統計委員會의 意向에 따라 檢討을 하는 一連의 專門家그룹會合에서 얻은 結論에 主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 D. 統計委員會를 위한 SNA에 關한 作業計劃의 提案

23. 위에서 概觀한 바와 같은 SNA 評價計劃 및 一般的 考察에 따라 改正版SNA의 採擇을 先導하는 現在 및 未來의 會合에서의 討議를 組織함에 있어서 統計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進行해야 할 것이라고 提案하고 있다.

(a)今回 會合에서 委員會는 이제부터 開催되는 專門家그룹 會合에서의 SNA 評價의 一般的 方向決定과 組織問題를 取扱함과 아울러 SNA의 構造에 關한 專門家그룹이 聚合定理한 改正版 新 SNA와 핸드북에 反映될 一般的 原則에 대해 論評한다.

(b) 統計委員會의 1989年 會合에서는 나머지 特定分野, 즉 海外去來, 公共部門計定, 家計部門計定, 金融후로 및 貸借對照表, 生産計定 및 I-O表, SNA와 MPS의 連關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의 結果가 提出된다. 또한 改正版 新 SNA의 第一次原稿 및 公共部門計定, 海外去來, 家計部門計定과 所得 分布統計, I-O表, 不變價格表示의 國民經濟計定, SNA와 MPS의 比較에 關한 핸드북의 暫定版 또는 草稿도 볼 수가 있다. 統計委員會는 1990年の SNA 評價에 關한 調整專門家그룹 第2次 會合 直前に 開催하게 된다.

따라서 委員會는 SNA 評價作業의 中間結果를 評價함과 同時에 特定分野의 專門家會合에서 받은 論評이나 얻은 結論을 수렴하여 新 SNA의 草稿를 檢討할 調整專門家그룹에 對해 最終的인 勸告를 주는 機會를 가질 수가 있다.

(c) 1991年の 統計委員會에서는 專門家그룹에서 評價作業이 終了한 後 新 SNA의 改善된 原稿 및 上記의 핸드북에 대해 檢討하고 그 原稿가 最終版이 되어 刊行準備에 들어가기 前に 最終的인 見解를 表現할 수가 있다.

## II. 地域, 特別 및 專門家그룹에서 討議된 技術的 問題 및 結論

24. 以下에도 지금까지의 會合에서 있었던 論議와 結論의 要約을 提示한다. 大部分의 結論은 1986年6月에 제네바에서 開催된 SNA 構造에 關한 最初의 專門家그룹會合에 關한 것이다. 그 會合에서의 勸告는 世界の 여러 地域을 代表하는 先進國, 途上國 모두에게 專門家の 見解를 反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SNA 構造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에서 結論이 나오지 않았던 경우에 대해서는 特別會合 또는 地域會合의 結論이 提示되고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이들 結論이 어느 會合에서 얻은 것인가에 대해 言及되고 있다. 特別會合, 地域會合은 제네바에서의 會合에서 最終的인 結論에 到達하기 前의 背景이 된 論議를 紹介하기 위해서도 引用되고 있다.

### A. SNA의 構造

#### 1. 概念的인 構成과 그 實施

25. SNA 構造에 關한 專門家그룹은 가장 넓은 意味로 知的, 抽象的인 構築物, 概念的인 시스템으로서 SNA 를 定義하였다. 그것은 改正版 新SNA 에서는 充分히 詳細하게 記述해야 하는 것이다. 그 시스템을 說明하는 方法으로서는 現在 新SNA 에서 表示하고 있는 것 같은 行列表示를 포함해서 여러가지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行列表示는 시스템의 外觀을 나타내는데 매우 有益하지만 많은 缺點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SNA 의 概念的 構成에 關한 2個의 中心的 討論報告書中 하나로 提案되고 있는 바와 같이

「T型計定」에 따르는 代替的 表現形式으로 補完해야 한다. 新SNA에 있는 表나 其他表示는 純粹하게 說明을 위한 道具이며 實際로 各國이 國民經濟計定統計를 推計, 發表, 表示한다던가 國際機關에 대한 報告에 使用한다던가 하는데는 반드시 有益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強調되고 있다. 新SNA는 시스템을 概念化한 것이며 統計作成의 優先順位에 관한 어떠한 情報도 包含해서는 안된다. 그런 種類의 情報은 핸드북에 包含되어야 할 것이다.

26. 途上國을 위한 地域間 세미나나 他途上國地域의 SNA 會合에 있어서는 시스템의 表示法 및 解說에 重點이 두어졌다. 그것은 SNA 實施面에서 生産計定에 焦點이 맞추어져 있는 現在의 틀을 超越하여 지금까지 大藏省, 中央銀行이 發表하는 財政·金融情報를 分析하는 것으로 滿足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SNA의 利用者로 獲得한다는 것에 各國은 도움이 될 것이다.

27. 핸드북은 國民經濟計定作成者에 對해 新SNA의 勸告에 따라 수많은 問題나 技法에 관한 實際的인 指針을 준다고 하는 點에 注意가 喚起되었다. 따라서 핸드북은 本來의 概念에 依해 充分하게 詳細한 計數를 얻을 수 없을 때, 概念의 一部分이 數量的으로 重要하지 않을 때, 또는 SNA의 精度가 個個國家의 特定한 狀況下에서는 不適切할 때에 使用할 수 있는 簡略法의 記述을 包含하는 것이 된다. 핸드북에서는 表·데이터作成의 優先順位에 대해 論議하는데 그때 모든 國家에 대해 優先順位를 固定하는 것이 아니고 各國이 分析이나 政策立案을 위한 必要性에 따라 實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핸드북에서는 國民經濟計定の 推計를 할 때의 Work Sheet로서 使用할 수 있는 作表의 形式이나 分析目的에 提供하기 위한 表示形式에 대해 詳細하게 檢討한다. 끝으로 新SNA보다도 더욱 詳細한 概

念說明과 함께 統計資料出處와 推計方法에 관한 詳細한 解說도 핸드북에 包含된다. 一般的으로 핸드북에서의 概念은 新SNA에서 使用되고 있는 概念과 같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所得分布·家計部門計定, 政府計定 및 海外去來와 같은 分野에서는 SNA의 서브시스템에 關한 特定한 分析때문에 SNA에서 使用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概念, 分類가 必要하게 될런지 모른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핸드북과 新SNA 概念의 調整方法이 明示的으로 說明된다. 핸드북에 包含되는 모든 情報은 示唆的인 것이며 SNA를 採擇하는 各國家들의 特別한 事情에 따라 適合하도록 할 必要가 있다.

## 2. SNA의 關聯統計와의 調整

28. SNA와 他統計와의 사이에서 概念과 데이터의 相違를 調和시키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相異點의 性質과 그 重要性을 明確하게 한다고 하는 必要性이 널리 表明되었다. 이와같은 調整의 努力은 SNA와 IMF의 財政統計(GFS), 國際收支表(BOP)間的 連關에 關해서는 進展을 보고 있으며 金融統計(MBS)에 대해서는 곧 始作될 것이라고 했다. 더우기 이와같은 接近은 國民經濟計定の 計數에 反映되고 있는 他統計 分野에 대해서도 有益하다고 느껴졌다.(註7) 특히 言及된 것은 ILO의 雇傭統計基準, 國際聯合食糧農業機構(FAO)의 農業統計基準 및 國際聯合의 工業統計, 家計部門計定, 所得分布統計에 關한 統計基準과의 連關에 대해서였다. EUROSTAT의 會合에서는 ESA(유럽統合國民經濟計定體系)와 SNA의 데이터 概念을 連關시키는 必要性에 대해 言及되었다. 만약 이와같은 調整이 實現될 수 있으면 EUROSTAT 및 國際聯合統計局이 國民經濟計定데이터를 蒐集할 때의 重複이 共同의 質問書를 使用함으로써 避할 수 있다.

29. SNA와 關聯統計間的 概念을 調和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各 統計에

對해 利用者 各各이 相異한 要求를 가지고 있다던가, SNA 또는 關聯統計에 變更을 加하는 것이 各 統計의 內部一致性을 確保하는데 어려움으로 實現되지 못할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위한 協同努力이 必要하다고 하는 合意가 있었다. 이 問題는 關聯統計의 概念的 檢討作業 및 關聯되는 SNA 專門家그룹會合의 雙方에서 철저한 對備가 必要하다고 認識되었다. 概念을 調和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可能性에 대해서는 이미 地域會合에서 言及되었다. 例컨대 ESCAP의 會合에서는 SNA와 GFS의 租稅概念에 대해 SNA 側에서 社會保障負擔을 稅金에 포함시키며 相續稅를 資本移轉이 아니고 稅金으로 다루며, 政府에 對한 手數料의 支拂을 家計에 依한 것인가, 企業에 依한 것인가 하는 區別을 폐지하여 모두 直接稅에 포함한다는 變更을 加함으로써 兩者의 調和를 취한다는 提案이 提出되었다. 同會合에서는 現行의 所得分布統計에 關한 暫定指針의 概念을 SNA의 家計部門計定基準에 接近시킬 것도 勸告하였다. OECD의 會合에서는 海外去來의 記錄에 있어서 投資收益의 再投資取扱을 除外하고 國際收支表의 取扱에 따라 所有權原則을 SNA에서 더욱 널리 適用한다는 것이 提案되었다. ECA(아프리카經濟委員會)의 SNA에 關한 會合에서는 現行의 SNA와 國際收支表에서의 居住者의 定義, 特히 國際的인 技術顧問, 移住勞動者, 自由貿易地區에서의 生産業體 및 넓은 地域에 居住하며 이 나라 저 나라를 빈번하게 移動하는 居住그룹에 대해 再檢討할 必要性이 強調되었다. 途上國을 위한 地域間세미나는 最終적으로 各 統計의 細細한 分類는 대강 그대로 두고 詳細한 水準이 아니고 集計水準에서 概念을 調和할 수 있는 可能性에 대해 言及하였다. 그 接近法은 SNA와 國際收支表의 調整에서 採用되어 雙方의 概念變更이 必要하게 되는 件數를 大幅的으로 減少시켰다.

### 3. 去來主體 및 去來分類와 計定構造

30. SNA 構造에 關한 專門家그룹은 改正版 SNA 에서 國際標準產業分類 (IS-IC), 政府機能分類 (COFOG) 나 其他分類에 使用되고 있는 한자리, 두자리, 세자리分類와 같은 分割方法과 同一한 階層構造를 가진 去來主體 및 去來分類를 導入하는 것을 承認하였다. SNA에서의 去來主體 및 去來의 現行分類 가운데 어느 것을 大分類로 하고 어느것을 內譯의 分類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專門家그룹會合에서 詳細하게 檢討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分類構造에 대해 決定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基準에 대해 言及되었다. 하나의 基準은 去來主體 및 去來그룹을 나누는 것이 많은 國家에게 있어서 關聯이 높은 것이던가 推計의 優先順位를 反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單位는 데이터의 國際比較가 可能한 程度의 詳細한 水準이 될 것이다. 그 基準에 따라서 專門家그룹은 民間非營利團體와 社會保障基金을 한자리 水準으로 表示하지 않고 各各家計와 政府안에 副部門으로서 포함시킬 것을 決定하였다. 또 하나의 基準은 去來에 關한 相異한 그룹分類가 SNA의 相異한 部門이나 部分에 關聯性이 높은가 하는 것일 것이다. 그 基準은 例컨대 全部門에 대해 表示되는 租稅 및 社會保障負擔·給付의 한자리 分類에 대해 決定할 때에 適用될 수 있다. 去來의 한자리 分類는 더우기 SNA의 概念과 財政統計나 國際收支表와 같은 關聯統計와의 調整이 이루어지는 水準이기도 하다.

31. 專門家그룹은 SNA의 計定構造에 關한 몇가지 修正案을 支持하였다. 하나는 現行 SNA의 生産計定을 두개의 部分으로 分割하여 殘差項目으로서 營業餘剩와 別途로 附加價値를 表示하는 일이다. 이것은 附加價値가 重要한 概念임에도 不拘하고 現在는 代替的 表章形式中에서 非明示的으로 밖에 提

示되고 있지 않아 이것을 明示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가지 承認된 提案은 所得支出計定을 다시 두개의 部分, 즉 被傭者報酬, 營業餘剩, 企業所得, 純間接稅, 財産所得의 部分과 經常移轉의 部分으로 分割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經濟全體에서의 國民所得에다 制度部門에서 相當하는 中間所得概念을 明示的으로 表示하기 위해서이다. 이 概念은 自身の 生産活動에 있어서의 投資뿐만 아니라 他生産活動 等に 對한 金融的投資를 通하여서도 所得을 낳는 企業部門의 收益性을 分析하기 위하여 有益할 것이다. 專門家그룹은 다시 資本蓄積計定은 資本移轉의 部分과 總資本形成, 土地 및 無形資産의 純購入의 部分으로 分割해야 한다고 勸告하였다. 이것은 貸借對照表에서의 實質資産의 變化를 反映한 새로운 殘差項目의 追加가 된다.

#### 4. 主要한 所得集計値와 評價의 尺度

32. 많은 國家가 國民經濟計定가운데에서 國民總生産(GNP)을 繼續 使用하고 있으나 SNA 構造에 關한 專門家그룹은 SNA에서 中心的인 集計値로서는 國內總生産(GDP)을 使用할 것을 勸告하였다. 그 勸告의 理由는 GDP는 所得과 生産 모두의 集計値라는 것이다. 卽 GDP는 經濟圈에서 發生하는 所得(附加價値)의 合計로서 表現할 수 있음과 同時에 總產出 - 中間消費, 最終需要 - 輸入으로서도 나타낼 수 있다. 한편 GDP는 所得의 尺度로서의 GDP에다 海外로부터의 要素所得의 純受取를 더하여 算出되는 單純한 所得集計値이다. 따라서 GDP는 中心的인 集計値로 繼續되지만 GNP, 國民所得, 國民可處分所得과 같은 分析에 使用되는 많은 代替的인 集計値가 시스템中에서 表示되어 이것들이 GDP에서 어떻게 誘導되는가가 新SNA에서 定義되어야 한다는 一般的 合意도 있다. 더우기 GNP에 대해서는 이것이 所得의 性格을 가지고 있는 理由로, 「國民總所得(GNI)」



으로 名稱을 바뀌야 한다고 勸告되었다. 舊 SNA에서 要素費用表示의 國民所得을 다시 導入해야 할 것이라는 意見도 있었으나 이것에 대해서는 最終的인 決定은 하지 않았고 現行 SNA에 反映되고 있는 여러가지 評價尺度의 用語法(true, approximate, basic and factor value and cost:producers', purchasers' and market values and prices)을 明確化, 標準化하기 위한 國際聯合統計局의 研究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 5. I - O表

33. I-O表의 一般的인 그리고 特히 SNA에서의 役割에 대해서는 많은 論議가 있었다. SNA의 1968年 改正 以前의 I-O表는 單純히 分析의 道具이며 國民經濟計定과는 關係가 없는 研究機關 등에서 開發되는 일도 많고 I-O表의 데이터가 關聯하는 國民經濟計定の 情報과 矛盾되는 일도 흔히 있었다. 1968年의 新 SNA는 I-O表의 構造를 統計시스템으로서의 SNA全體에 必須的인 部分으로서 表示하는 것으로 I-O表와 SNA의 上記한 바와 같은 關係를 크게 바꾸었다. 그 結果 I-O表는 國民經濟計定の 商品 및 所得의 후로에 關한 데이터의 內部一致性을 체크하는 統計的 手段으로서 使用되는 일이 많아졌다. 1968年版 SNA에서 導入된 產出表와 投入表는 所謂 코모디티·후로法을 위한 構成으로서 使用되는 傳統的인 財貨·서비스의 供給과 需要表에서 國內生産 및 輸入에 依한 供給과 中間需要 및 最終需要에 關한 詳細한 商品그룹別 데이터의 內部一致性을 維持하면서 推計하기 위한 補完的役割을 다하였다.

34. I-O表의 役割이 이와같이 變化했으므로 SNA 構造에 關한 專門家 그룹會合이나 그 以前에 열렸던 會合에서도 I-O表의 構成은 SNA의 必須部分으로서 維持해야 한다는 全體的인 合意가 있었다. 그러나 新 SNA에

서는 商品의 產出과 使用間의 內部一致性(整合性)을 反映한 產出表, 投入表 및 類似表에 記述하는 것을 限定해야 한다고 했다. 二次的 生産物의 產出, 投入에 關한 換의 假定에 따른 對稱的인 商品 I-O 表, 産業 I-O 表의 導出에 대해서는 더욱 專門的인 핸드북에 記載해야 한다. I-O 係數, 資本係數와 같은 分析用的 變數나 I-O 表를 分析에 使用하기 위하여 必要的 操作技術도 新 SNA 가 아니고 핸드북에서 다루어야 한다.

## 6. 調整計定

35. SNA 의 1968 年版에서는 시스템의 必須部分으로서 소위 再評價計定과 貸借對照表가 導入되었다. 再評價計定에는 貸借對照表의 資產·負債의 價額變化 가운데 후로計定에 反映되고 있지 않은 것이 包含되었다. 그 後 貸借對照表가 SNA 의 一部門으로서 다시 發展함에 따라(註8) 再評價計定은 資產·負債의 再評價 뿐만아니라 生成, 消滅도 包含하게 되어 이와같은 內容의 變化를 反映하고 名稱도 調整計定으로 變更되었다. 調整計定은 實際로는 OECD 가 인플레이會計의 關聯으로 實施한 特別研究의 경우를 除外하고 各國에 依해 統計的으로 綿密하게 檢討되어 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와같이 貸借對照表와 調整計定이 統計的으로 未發達한 것을 背景으로 現行 SNA 의 主要한 集計值로 考慮되고 있지 않은 戰爭, 洪水에 依한 被害, 하이퍼·인플레이, 鑛物資源의 發見 등과 같은 例外的인 事象을 反映하도록 후로計定の 概念을 바꾸자고 하는 提案이 있었다.

36. SNA 의 構造에 關한 專門家그룹은 調整計定の 範圍問題에 關해서는 暫定的 見解를 表明했을 따름이지만 이 提案과 같이 再評價 以外的 調整項目을 후로計定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強力하게 反對하였다. 特히 鑛物資源의 埋藏量 變化를 生産計定에 包含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GDP 가 時

系列的으로 許容하기 어려운 영향을 받기 때문에 強한 反對가 있었다. 이 提案의 대신에 現行의 調整計定을 두개의 部分, 卽 資産·負債의 再評價部分과 上記와 같은 例外的 事象의 영향을 포함한 部分으로 分割해야 한다고 勸告되었다. 이렇게 分割함으로써 보다 어려운 貸借對照表의 再評價問題는 將來의 研究課題로 한다고해도 現行 調整計定の 再評價 以外的 部分에 대해서는 各國이 統計的으로 綿密한 檢討가 促求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現行調整計定の 再評價 以外的 部分이 統計的으로 發展되면 分析家가 例外的事象을 反映한 代替的인 所得, 生産의 尺度를 導出하는 것도 可能하게 된다. 調整計定の 內容에 대해서는 1988 年에 豫定되어 있는 金融후로 및 貸借對照表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에서 詳細하게 檢討하는 것이 勸告되었다.

## B. 部門分割

37. 去來主體分類의 階層構造에 대해 SNA의 構造에 關한 專門家그룹은 海外去來計定에 追加하여 시스템中에서 4個의 主要部門, 卽 非金融法人企業, 金融機關, 一般政府 및 家計를 區別해야 한다고 合意하였다. 政府部門에 있어서의 社會保障基金, 家計部門에 있어서의 對家計民間非營利團體 等の 內譯은 去來主體分類의 두자리, 세자리에서만 나타난다. 細部를 檢討하기 위하여 繼續 開催되는 專門家그룹會合에서 各各 主要部門의 副部門으로의 分割에 關한 提案, 보다 明確한 部門定義의 設定 및 境界的 事項, 特히 準法人企業, 對家計民間非營利團體(對企業非營利團體 및 政府로부터 資金이 供給되고 있는 非營利團體와의 區別), 金融機關(例컨대 開發銀行)에 關한 決定을 하는 것이 合意되었다. 部門의 보다 明確한 正義를 決定할 때에는 國際比較性은 主된 基準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部門分割이 出發點으로

서는 SNA에 따르는 것이라해도柔軟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며 必要하다면 國內 分析目的을 위하여 더욱 有用하도록 適合시켜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38. 現行 SNA의 二重分割은 維持해야 한다. 卽 生産計定과 制度部門別計定の 分類로 따로 따로의 統計單位를 使用해야 한다. 그렇지만 수많은 修正이 提案되고 있다. 生産計定の 事業體單位別分類에 追加해서 制度單位別로 分類된 生産計定 및 附加價值要素의 事業體單位別, 制度單位別 分類間의 連關도 시스템에 맞추어 넣는 것은 全般的으로 合意되어 있다. 그러므로 生産에 關한 情報과 所得·支出計定 資本調達計定の 데이터와의 關係가 明示된다. 또한 個人企業(民間非法人企業)의 生産計定은 이미 SNA 質問書에 그와같이 되어 있는 것처럼 現在의 家計部門計定에 包含되어야 한다. 專門家그룹은 다시 生産計定을 위한 主된 分類體系는 ISIC(註9), 財貨·서비스分類는 CPC(Central Production Classification)(註10)로 하고 其他 모든 分割, 例컨대 産業과 其他 生産者, 商品과 其他 財貨·서비스間 現行區分, 市場과 非市場, 非公式과 公式, 近代의과 傳統的이라는 代替의區分은 이들 基本的인 分類에 따를 것을 確認하였다. 더우기 産業과 其他 生産者, 商品과 其他 財貨·서비스間의 現行區分은 現行 SNA의 二重部門分割을 主要 分類單位로 單純化하기 위해 再檢討해야 할 것이라고 提案되었다.

### 1. 非金融準法人企業

39. SNA의 1968年版에서는 法的으로 公共 또는 民間法人企業인 統計單位 뿐만아니라 法的으로는 非法人企業이라도 經濟的으로는 法人企業으로서 行爲하는 統計單位도 企業部門에 包含하기 때문에 準法人企業의 概念을 導入하였다. SNA의 構造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 및 지금까지 開催된 他 會合에서는 이 概念을 SNA 中에 남기는 것이 SNA의 制度部門分類의 背

後에 있는 것은 法的인 基準이 아니고 經濟的 行爲라는 것을 強調하는 것만으로 되었다해도 그렇게해야 한다고 合意하였다. 法律制度가 相異한 어떤 國家에서는 準法人企業그룹은 重要하며 公共部門, 民間部門 中에서 他와 區別할 價値가 있을런지 모른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그룹은 극히 적고 量的으로 重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핸드북에서는 나라에 따라 다른 事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記述해야 할 것이다. 準法人企業의 概念은 法的인 法人企業의 範圍에 對한 調整을 意味할 뿐이라는 것을 強調하기 위하여 專門家그룹은 法人企業部門의 呼稱을 現在와 같이 準法人企業으로 言及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非金融法人企業(non-financial corporations)으로 할 것을 勸告하였다.

## 2. 公共部門

40. 開發途上國을 위한 地域間세미나는 將來의 新SNA에 있어서는 推計 가능한 獨立된 그룹으로서 公共部門에 더욱 注意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勸告하였다. IMF의 財政統計와는 달리 現行 新SNA에는 一般政府의 概念밖에 없고 公共部門의 概念에 대해서는 明確하지 않다.

41. SNA 構造에 關한 專門家그룹은 公共企業과 民間企業의 主要하고 또 實用的인 區分은 法的基準 卽 株式의 多數所有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確認하였다. 支配權의 基準은 例컨대 株式을 多數所有하는 것이 年度에 따라 民間部門이 된다던가, 公共部門이 된다던가 하는 特殊한 狀況下에서 補助的인 基準으로서 使用되어야 한다. 그러한 狀況은 政府의 支配에 커다란 變化를 미치게 한다던가 當該企業의 政策的 役割을 變更시킨다던가 하는 것에 반드시 連結되는 것이 아니므로 所有權의 基準에 따라 再分類하는 것은 適當하지 못할런지 모른다. 한편 ESCAP의 會合에서는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사이에서 生産의 比率이 急激히 變한다고 해도 그것이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사이에서의 支配權移動을 明確하게 反映하고 있을 경우에는 完全히 避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指摘이 있었다.

42. 專門家그룹은 政府補助機關은 他와 分離하여 識別하지 않고 어떠한 分類에서도 항상 政府에 包含하여야 한다고 勸告하였다. 한편開發途上國을 위한 地域間세미나의 一部 參加者, 그리고 ESCAP, ECLAC 會sum의 參加者는 政府企業(departmental enterprises)으로서 小規模로 그다지 重要하지 않은 것은 政府, 大規模인 것이면 항상 準法人企業으로 取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그 提案은 現行 SNA에서의 政府서비스生産者와 一般政府範圍의 差異를 解消하고 二重의 部門分割을 적어도 公共部門에서는 시스템에서 除外하는 것을 意味하고 있으며 一般的으로는 受容되지 않았다.

### 3. 家計部門

43. SNA 構造에 關한 專門家그룹은 個人企業(民間非法人企業)을 포함하는 家計部門에 獨立된 生産計定을 設定하는 것에 대해 合意했으나 非法人 家計生産活動의 正確한 範圍가 어떤 것인가, 反對로 말하면 民間部門의 準法人企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確固한 結論이 나와 있지 않다. 途上國을 위한 地域間세미나는 公式(formal) 및 非公式(informal) 生産活動의 區別을 導入하여 定義할 必要性을 強調하고 또 그것이 民間準法人企業과 非法人家計의 經濟活動과의 區別에 關聯된다는 것을 示唆하였다.(註 11) 세미나는 또한 家計의 經濟活動을 위하여 生産計定을 導入하는 外에 家計部門의 所得支出計定과 資本調達計定에서의 他去來도 可能하면 個人企業에 대해 分離해야 한다고 提案하였다. 이들 問題에 關한 詳細한 指針은 1987 年에 開催될 豫定인 家計部門計定에 關한 專門家그룹會sum에서 더욱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 C. 去來

44. 去來의 論議는 一般的으로 去來境界, 特히 生産境界에 對해 焦點을 맞추어 왔다. SNA 構造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 및 지금까지 열렸던 專門家그룹會合은 去來境界의 重要한 두개 要素 즉 實際去來에는 포함되지 않은 非市場去來의 歸屬(imputation) 및 去來의 擬制(attributions) 範圍를 明確하게 할 必要性을 強調하였다. 專門家그룹은 그 一環으로서 將來 SNA 에서는 去來란 무엇인가 하는 明確한 定義를 提示해야 한다고 提案하였다. 「去來」라는 用語는 現行의 新SNA에서 頻번히 使用되고 있으며 SNA에 있어서는 基本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45. 歸屬 및 擬制가 實際의 去來額과 分離해서 算定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도 合意되었다. 그렇지만 專門家그룹은 表示해야 할 가장 重要한 概念은 歸屬 및 擬制를 包含하는 去來全體라고 主張하였다. 이 勸告는 SNA 中에 市場去來와 非市場去來를 分離한 別途의 計定을 만들려고 한 네델란드統計局의 以前의 提案(註12)에 對한 逆의 勸告였다.

### 1. 生産境界

46. SNA의 生産境界는 大幅으로 變更해서는 안된다는 一般的인 合意가 되어 있으나 若干의 明確化가 必要하다. 例컨대 農家の 穀物在庫(途上國에게 매우 重要할 可能性이 있는)나 水上輸送, 建物の 修理·維持와 같은 活動의 取扱, 더우기 非合法活動의 取扱과 같은 問題가 있다. 農家の 穀物評價에 關해서는 生産者價格을 비롯하여 運送코스트를 包含함과 함께, 穀物이 實際로 販賣되는 地點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測定해야 할 것이라는 合意가 있다. ESCAP의 會合에서는 新SNA에서의 基本的인 生産境界를 擴張

하는 것에 대해 예를들면 自己計定の 家內生産活動, 耐久財의 서비스 등을 取扱하는 핸드북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提案하였다.

47. 開發途上國을 위한 地域間세미나에서는 政府部門과 共同體活動(communal activities)에 대해 GDP를 擴張할 것을 提案했다. 政府部門에 대해서는 道路, 댐, 政府建物과 같은 主要建築物에 關한 固定資本減耗를 매우 長期間 걸릴 것일지라도 實際 減價해나가는대로 GDP에 計上해야 한다고 提案되었다. 그리고 家計部門에서 自家에 대해 行하여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政府가 保有하는 建物에 關해서도 賃貸料를 歸屬計算해야 하는 것으로 提案되었다. 共同體活動은 途上國에게는 重要的 것이며 SNA에도 包含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活動에 從事하고 있는 無賃金勞動의 評價 및 共同體活動의 結果, 만들어진 道路, 橋梁, 學校와 같은 實物資產의 適切한 部門間配分에 대해 다시 指針이 必要하다. SNA의 評價에 關한 ECA 會合에서는 政府의 產出에 關한 現行의 定義는 再調整할 必要가 있다고 表明하였다. 그것은 生産을 위한 것이 아니고 政治的 目的때문에 雇傭되고 있는 政府職員의 被傭者報酬가 GDP에 包含되어 있는데, 政府負債에 對한 巨額의 利子支拂이 政府의 GDP에 對한 寄與에 反映되고 있지 않다는 觀點에 따른 것이었다.

48. 生産境界에 대해서는 女性進出을 위한 나이로비戰略會議(註13)에서도 論議되었다. 그 會合에서는 國民經濟計定, 經濟統計, GNP에서 發展의 모든 側面, 모든 部門에 對한 女性의 貢獻을, 그것도 報酬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特히 無報酬活動도 計測하여 反映시키기 위한 努力이 있어야 한다고 勸告되었다. 이러한 目的에 따른 特定한 提案이 1986年10月13日~17日에 산트·도밍고에서 國際聯合統計局 및 女性進出을 위한 國際研究·



研修機關에 의해開催된 女性所得 및 非公共部門에의 參加・生産의 計測에 관한 專門家會合에서 檢討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中 하나는 傳統的인 GDP 概念을 補完하는, 擴大된 GDP 概念의 開發이다. 이 提案에서는 特히 家事의 雜用에 關聯한 非市場活動이 他者에 의해 實行될 可能性이 存在하는 限에는 擴張된 GDP 概念에서의 生産的活動에 包含된다.

## 2. 銀行서비스 및 利子

49. 歸屬銀行서비스料의 推計와 利子の 取扱에 대해서는 OECD와 EEC의 會合에서 合意가 되어 있다. 그 一般的인 感覺은 現行SNA에서의 歸屬銀行서비스料의 推計를 明確化하여 現在와 같은 名目的인 金融部門에의 配分을 變更해야 할 것이다. 銀行서비스料의 推計는 國內銀行이 預金에 關하여 受取한 利子和 支拂한 利子の 差額에 따를 뿐만 아니라 輸入된 銀行서비스料의 歸屬計算도 包含해야 한다고 合意되어 있다. 歸屬된 料金は 歸屬銀行서비스의 輸出도 包含하고 그 서비스를 利用하는 部門에 配分해야 한다. 그 配分에 있어서는 金融機關에서의 貸付와 그것에 對한 利子支拂 뿐만 아니라 預金主에 對한 歸屬서비스의 料金-이 때문에 預金主의 受取利子は 작아졌다-도 考慮해야 한다.

50. 計算된 歸屬서비스料는 純粹利子후로(pure interest flows)를 얻을 수 있도록 借用者의 支拂利子에서 控除되어 預金主의 受取利子에 加算되어야 한다. 所得支出計定에는 現行SNA와 같이 實際의 利子支拂을 計上하는 것이 아니고 純粹利子후로를 記錄해야 한다고 合意되어 있다.

## 3. 社會保障, 保險 및 年金基金의 去來

51. 現行SNA에서의 社會保障 및 保險의 去來取扱은 複雜하다. 그 特

徵은 勞動所得, 消費 및 貯蓄의 매크로經濟的으로 意味있는 集計値를 얻기 위하여 實際의 去來에 調整을 加하고, 一部去來에 대해서는 家計를 迂回시키고 있는 것이다. 現行의 取扱方法을 多少 單純化, 明確化하는 것에 대해 OECD의 會合에서 論議되었다.(註 14)

52. 會合에서는 많은 修正案이 받아들여졌지만 其他의 경우에는 現行 SNA의 取扱을 維持할 것이 主張되었다. 參加者大部分은 家計部門을 迂回하는 現行取扱을 廢止하는 것에는 替代하지 않았다. 會合에서 年金基金의 負擔金支拂과 給付金受取를 現在와 같이 家計의 資本調達計定에 家計의 年金基金에 對한 純請求權의 增減으로서 反映시킬 뿐만아니라 所得支出計定에서 나타내는 것이 合意되었으나 後者를 資本調達計定에서 除外하는 것은 家計貯蓄에 許容할 수 없는 變化를 가져오게 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會合에서는 定期의 生命保險을 終身生命保險과 區別하여 損害保險과 같이 取扱할 것을 合意했다. 現行 SNA에서는 損害保險에 대해 家計의 金融機關에 對한 純持分の 增減을 家計의 資本調達計定에 包含하고 있지 않다.

#### 4. 總家計消費

53. 1968 年에 SNA의 第3版이 完成되어 公表된 以來, 家計의 消費와 所得의 패턴은 低所得層의 支出을 補助하는 援助를 위한 政府介入이 增大的 結果로서 顯著하게 變容하여 왔다. 몇개 國家에서는 政府가 醫療서비스, 教育, 住宅, 運輸코스트의 一部 또는 全部를 引受하고, 또한 低所得層의 食品, 衣料費와 같은 生活必需品에 대한 支出의 어느 部分을 負擔해 왔다.

54. 이와같은 措置의 結果 政府가 그러한 方法으로 介入하지 않았다고 假定했을 경우와 比較하여 家計의 消費支出이 低下된 것같이 보인다. 그렇

지만 實際로는 家計의 消費은 반드시 달라지지는 않았으며 家計消費의 資金供給 形態가 바뀌어졌을 뿐이다. 또 政府介入方法이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家計의 所得, 消費 및 貯蓄데이터의 國際 比較性이 影響을 받고 있다.

55. 家計消費의 國際比較性과 他時點比較性的의 問題는 EUROSTAT 會合에서 널리 論해져 왔다. 이들 會合의 結論에 따라 SNA 構造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은 現在 MPS (註 15)에 包含되어 있는 것이라던가 所得分布에 關한 暫定指針 (註 16)에 使用되고 있는 것과 類似한 住民의 消費라는 概念을 改正版 SNA에 새로이 導入할 것을 勸告하였다. 그 概念은 SNA에서의 現行家計消費概念보다도 넓고, 原則적으로 消費者로서의 家計에 直接 便益을 주는 것과 같은 政府 또는 企業의 消費支出의 많은 部分을 包含한다.

56. EUROSTAT 會合의 參加者는 總消費概念을 더욱 詳細하게 檢討하였다. 그 結果 COFOG (政府機能分類) (註 17)에서 定義된 다음 支出項目에 屬하는 政府消費의 全額을 家計의 總消費에 包含시킬 것을 勸告하였다.

- 教育(04), 保健(05), 社會保障 및 福祉(06)
-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08.01), 文化(08.02)
- 住宅供給(07.11)의 一部, 家庭廢棄物의 蒐集(07.31)의 一部, 運輸시스템의 運營(12.12)의 一部

그리고 企業이 現物支給하는 賃金·俸給으로 取扱하는 項目의 數를 增加시켜야 한다고 勸告했다. 이것에 따르면 企業의 支出中 家計의 最終消費로 간주되는 部分이 增加하게 된다. 세번째로 保健, 教育, 住宅의 市場生産者에 對하여 支拂되는 모든 補助金 및 特定한 社會적으로 定義된 目錄에 屬하는 使用者가 負擔하는 價格을 低下시키기 위하여 他生産者에

게 支拂되는 補助金を 補助金으로서 取扱하는 것이 아니고 家計에 對한 社會給付에 包含해야 한다고 提案했다. 이것은 補助金を 받아 生産된 商品에 대해서는 外見上の 價格이 아니고 그 全코스트가 家計消費에 包含된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EUROSTAT 會合의 一般的인 勸告는 現行 SNA의 家計部門計定の 構造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總消費 및 其他 修正은 보다 詳細한 內譯部分에 대해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5. 리이스

57. 1970 年代에는 設備리이스가 急成長하였다. 즉 企業이 銀行에서 資金을 빌려 自己自身이 資本財를 購入하는 대신에 銀行이 買入해서 長期에 걸쳐 賃貸하는 設備를 企業이 使用하도록 되었다. 화이난셜·리이스 契約은 産業用設備, 電算機, 建物 그리고 社會資本이나 住宅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도 있고 또 新品 뿐만아니라 이미 어떤 財貨에 關하여 契約되는 일도 있다. SNA는 이러한 去來慣行을 明示적으로 認識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리이스는 他設備의 賃貸와 同一하게 取扱되었다. 그 結果 企業의 總固定資本形成과 銀行의 貸付가 減少하고 銀行의 總固定資本形成이 增大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時系列的變化는 人工的인 것이다. 왜냐하면 리이스契約은 傳統的인 銀行貸付의 明白한 代替이며, 따라서 그와같이 取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設備를 選擇하고 그 維持에 責任지는 것은 비록 法的인 所有者가 아니었다고해도 그 設備를 使用하는 企業이다.

58. 화이난셜·리이스問題는 EUROSTAT와 OECD 會合에서 廣範하게 論議되었다. 大部分의 參加者는 화이난셜·리이스는 設備賃貸의 單純한 擴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金融去來로서 明確하게 區別해야 한다는 것에 合意하였다. 그들은 賃貸된 設備는 리이스契約이 締結된 순간에 使用者(借用者)의

資本形式으로 記錄되고, 또한 銀行이나 所有主로 부터 借用者의 部門으로 貸付가 歸屬計算되고 더우기 定期的인 支拂이 元金の 返濟와 利子の 支拂로 兩分되어야 한다고 合意하였다. 화이난셜·리이스會社는 銀行部門에 分類되어야 한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더욱 詳細한 檢討가 必要하다.

海外去來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에서는 國際收支表에서의 화이난셜·리이스 現行取扱과 上記勸告와의 調和를 圖謀하게 될 것이다. 또한 金融후로 및 貸借對照表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에서도 詳細한 檢討가 必要하다.

#### D. 價格 및 數量的 比較

59. 本 報告는 價格 및 數量的 比較 그리고 不變價格의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1986年11月10日~14日開催)前에 作成되었지만 이 段階에서 이미 착실한 進展을 볼 수 있다. 이들 問題는 OECD, EEC, ECE, ECLAC, ESCAP에 依해 組織된 SNA 評價에 關한 모든 會合에서 檢討되었기 때문이다.

##### 1. 數量·價格指數計算에서의 問題領域

60. OECD의 會合에서는 「資源코스트 對使用者價格」問題를 詳細하게 檢討하였다. 이것은 價格·數量指數를 計算할 때의 質的相違取扱에 關한 가장 重要한 問題의 하나이다. 또한 最終的인 結論은 얻고 있지 못하였지만 必要하고 可能한 限 使用者價格에 따른 質의 調整을 하는 것이 明白히 많은 支持를 얻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資源코스트의 相違가 使用者價値의 相違를 매우 낮은 것, 그리고 이에 따라 資源코스트 情報도 調整要因으로서 使用될 수 있다는 것도 認識되고 있다.

61. 특히 서비스의 數量・價格指數問題에 대해서는 많은 會合에서 相當히 詳細하게 論議되었다. OECD는 最近 加盟國에서 實際로 使用되고 있는 方法에 關한 調査를 했다. 서비스指數에는 固有한 困難이나 制約을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方法論을 改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強한 意識이 있다. 이들 問題는 價格・數量比較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에서 詳細하게 檢討되는 外에 유럽統計家會議에서 이 問題에 關한 特別會合을 가질 것이다.

## 2. 實質所得의 尺度

62. 現行 SNA에서는 實質로 나타내는 唯一하고 包括的인 集計値는 國內總生産이다. 不變價格表示의 國內總生産은 實質生産의 明解한 尺度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經濟發展에 重要한 影響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그밖의 많은 所得후로의 「實質效果」를 表示하는데에는 不足하다. 그 가운데 가장 重要한 것은 交易條件效果이다. 또하나 考慮해야 할 重要한 項目은 海外로 부터의 實質純要素所得이며 이것에 依해 實質國民總生産 또는 國民總所得이 決定된다. 더우기 其他 海外로 부터의 純經常移轉 및 固定資本減耗를 디플레이트 함으로써 實質純可處分所得을 얻을 수 있다.

63. 특히 重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交易條件效果이다. 實際로 1973 年の 物價暴騰 以後 많은 國家와 몇개의 國際機關에서 交易條件效果를 補完한 成長指數作成이 始作되었다. 그 大部分은 定期的인 것이었다. 이들 指數에 따라 決定되는 不變價格의 集計値는 一般的으로 實質國內總所得으로 불리운다. 새로이 基本的인 情報를 必要로 하는 것은 아니나 推計方法에 關한 國際的인 指針이 없으므로 主로 交易條件效果의 1單位(輸出價格指數와 輸入價格指數의 比)를 어느 集計値에 適用할 것인가 하는 點에 따라, 實際

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상이하다. 그 집계치로서는輸出과輸入의 平均(國際聯合統計局에서 採擇되고 또 많은 著作物에서 提案되고 있는 方法) 및 輸出(많은 國家에서 採擇되고 때로는 니콜슨方式으로 引用되고 있는 方法)의 두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64. 實質國內總所得에서 實質國民總所得을 얻기 위하여 海外로 부터의 純要素所得이 디플레이트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르기 위해서는 普通 國內總生産의 暗黙的·디플레이트가 사용된다. 要素所得후로中에서 利子支拂에 대해서는 特히 注意할 必要가 있다. 利子支拂은 金融資産의 인플레이션에 依한 損失이 強한 連結이 있으므로 만약 受取利子が 實質國內所得에 더하여지기만 하고 이 損失이 控除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問題는 價格·數量 比較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에서 研究한다.

### 3. 時間과 空間에 있어서의 디플레이션

65. 購買力國際比較프로젝트(ICP)參加國의 增大(1980년에는 60個國이 實質生産과 購買力評價의 國際比較에 參加하였다)에 따라 數量·價格의 時間的指數와 空間的指數間에 보다 큰 一致性을 가지게 하는 것이 尙重 要하게 되었다. SNA 評價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과 ICP 實務會合 모두가 이 要請을 重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66. 그렇지만 時間的指數와 空間的指數 사이에 完全한 一致性을 確保할 수 없다는 點에 注意해야 한다. 時間的指數는 基本的으로 一國의 尺度를 使用하지만 空間的指數는 어떤 國際的인 尺度를 使用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이 이유에 따라 基準年의 空間的 指數를 時間的 指數로 延長推計한 값이 當該年의 空間的指數와 正確하게 一致한다는 것은 期待할 수 없다.

- 註 -

- [1]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 69. XVII. 3.
- [2] Official Records of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83, Supplement No. 2(E/1983/12 and Corr.1), para. 27.
- [3]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86. XVII.11.
- [4] See "Organization of the SNA review" (ESA/STAT/AC.27/2), 17 March 1986, a paper prepared jointly by the Statistical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OECD and EEC, with contributions from the IMF and the World Bank at the request of the 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
- [5] See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revised SNA" (ESA/STAT/AC.27/3), 17 March 1986, a paper prepared jointly by the Statistical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OECD and EEC, with contributions from the IMF and the World Bank at the request of the 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
- [6] The first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Expert Group on the SNA Structure, are presented in a brief report entitled, "Expert Group Meeting on the SNA Structur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Geneva, 22-27 June 1986.
- [7] See "Links betwee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and related fields of statistic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balance-of-payments statistics (BOP),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 and money and banking statistics (MBS)"



(E/CN.3/1986/7), 8 November 1986.

- [8]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 10. XVII.10.
- [9]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 68. XVII.8.
- [10] See "First Draft of the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ST/ESA/STAT/SER.M/77/Rev.1).
- [11] The question of coverage of household production activities is also discussed in "Draft recommendations for a statistical programme for household and small-scale industries" (ST/ESA/STAT/SER.M/80), 12 August 1986.
- [12] Pieter G. Al, Cornelis A. van Bochove, A Proposal for the Synoptic Structure of the Next SNA, (DES/NI.86.8), OECD, April 1986.
- [13] See Report of the World Conference to Review and Appraise the Achievements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Women: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Nairobi, 15-26 July 1985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 85. IV. 10), chap. I, sect. A.
- [14] Richard and Nancy Ruggles, "The treatment of pension and insurance in the national account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December 1985.
- [15]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 71. XVII.10.
- [16]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 77. XVII.11.
- [17]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 80. XVII.17.

## 정 오 표

본 내용증	雇傭主 → 雇用主
p.49 < 89번 4행 >	價値付與 → 價値附與
p.50 < 4행 >	후레임윌크 → 후레임윌크
< 90번 4행 >	價値付與問題 → 價値附與問題
p.85 < 맨밑에 >	敎果書 → 敎科書
p.98 < 위에서 4번째 >	번커油 → 병커油
p.110 < 중간부분 >	算出 → 產出
p.116 < 225번 1행 >	舶積 → 船積
p.117 < 맨위에 >	差益賣買 → 賣買差益
p.140 < 밑에서 5행 >	DECD → OECD
p.197 < C.란 >	公定部門計定 → 公共部門計定
p.204 < 밑에서 2행 >	緊合整理의 → 綜合整理의
p.209 < 4행 >	資産循環表 → 資金循環表